2025
법무연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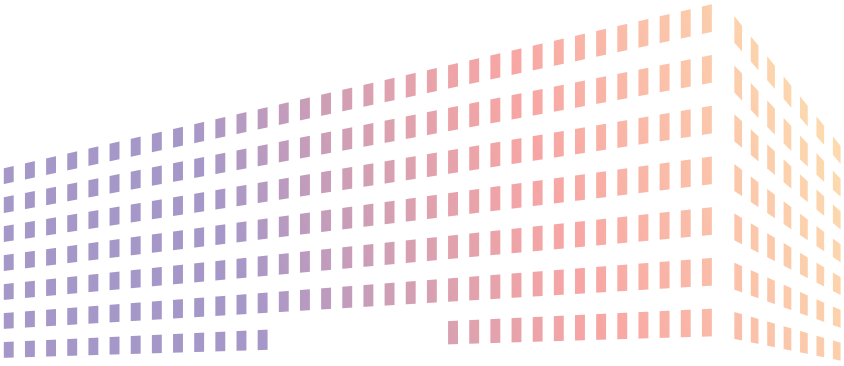

법무부

2025
법무연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목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법무행정비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정 성 호

법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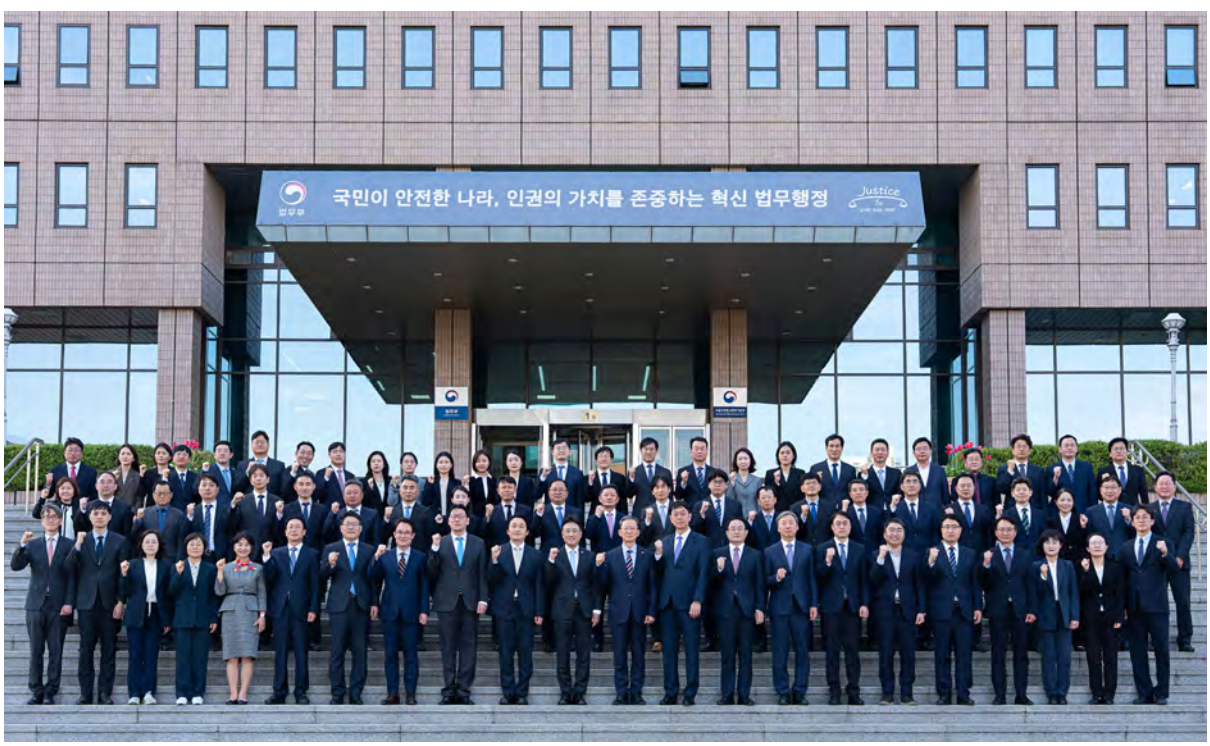

법무부 간부 일동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며 법무부는 지난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하에 내란으로 무너진 법질서를 정상화하고, 민생안정과 K-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뛰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법무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주요 정책성과를 「2025년 법무연감」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는 ‘미래를 향한 법무행정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 소명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을 시민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앞두고 검사의 공익대표성 강화와 국가송무의 전문성, 국제업무 역량 제고를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과 재심 사건 등에서 관행적인 시효주장, 국가상소에서 벗어나 상소 포기·취하하고, 과거사 형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등 과거 국가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 잡으며 K-민주주의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정부 로펌으로서 국제분쟁 대응에 전력을 다해, 배상청구액이 6조 9천억원에 달하는 론스타 ISDS에서 승소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또한 법률구조, 형사사법정보, 국경관리,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정책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범죄에 대해 총력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자에 중형이 선고되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수익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형법」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금융범죄·식품의약범죄 등 다중피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재활 의지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를 시범운영하는 등 범죄예방에 힘썼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적 개입과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아동 유괴와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나아가, 67년간 큰 개정이 없었던 「민법」 계약법 분야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민법 현대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시대에 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민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위해 'K-STAR 비자트랙'을 도입했고,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확대했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K-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크루즈 자동심사대 설치, 기업인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자동 심사 이용 국가 확대 등 관광과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용적인 출입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법」이 개정되는 등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 범위를 넓히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외국인 인권 보호, 재난 대응 법률지원단 운영,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행정의 모든 변화는 결국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가 쌓여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법무행정의 책임도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법무부장관 정성호

1월

1. 1. • 국립서울현충원 및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참배

1. 2. • 2025년 법무부 시무식 개최

1. 13. • 2025년 정부 업무보고(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 브리핑

1. 14. • 2025년 정부 업무보고(사회 II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1. 16. •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

1. 17. • 2025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1. 1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추모식 참석

1. 20. • 2025년 제1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1. 23. •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2월

2. 10.
-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한국법학원 부원장 회의 참석

2. 11.
- 제18기 4차 법무부 정책위원회 정책현장 방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13.
- 2025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2. 19.
- 2025년 3·1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2. 21.
- 2025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2025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2. 24.
- 2025년 제2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및 제16기 해단식 개최

2. 28.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3월

3. 1.
-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3. 4.
- 2024년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식 개최

3. 5.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3. 6.
- 법무부·세계은행·대한상공회의소 해외진출기업 공동법률세미나 개최
- 2025년 제1차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3. 7.
-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홍천 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3. 10.
- 검찰업무수행 유공 포상식 개최
- 법무연수원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

3. 11.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3. 14.
- 신임 해양경찰청장 접견
-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

3. 19.
-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지식재산권 공동세미나 개최

3. 21.
- 다문화 아동 교육 우수학교(이태원 초등학교) 정책현장 방문
-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
-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5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3. 24.
- 2025년 제3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현장 방문(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3. 26.
-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

3. 27.
- 경북지역 산불 관련 교정시설 현장 방문(안동교도소, 경북북부교도소)
- 2025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3. 31.
- 제5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개최

4월

- 4. 1.
  -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4. 2.
  - 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브리핑
- 4. 15.
  - 제18기 5차 법무부 정책위원회 정책현장 방문(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4. 17.
  -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참석
- 4. 18.
  - 경북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 개최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4. 23.
  - 2025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4. 24.
  - 제3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4. 25.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4. 28.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접견
  -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 2025년 제4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4. 29.
  - 이집트 형사사법 관계자 접견
- 4. 30.
  -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업무협약식 개최

5월

5. 7.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5. 8.
- 대한상사중재원장 접견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접견

5. 12.
-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제32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직원교육 실시

5. 13.
- 2024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유공 포상식 개최

5. 14.
- 안양소년원 정심봉사단 봉사활동

5. 16.
- 정책현장 방문(강릉지청, 강릉교도소, 강릉보호관찰소)

5. 19.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5. 20.
- 법무부-한국교정학회 정책간담회 개최
-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5. 21.
- 2025년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5. 22.
-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참석

5. 26.
- 2025년 제5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5. 27.
-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5. 30.
-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5. 31.
-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6월

- 6. 4.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6. 5. • 제70대 법무부장관 이임식 개최
- 6. 6. •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6. 20. •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 6. 23. • 20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2025년 제6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6. 25.~27.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개최
- 6. 26. •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참석
- 6. 30. • 제68대 법무부차관 취임식 개최

7월

7. 7.
-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

7. 10.
- 2025년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7. 16.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 17.
-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7. 18.
- 제2차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 개최
- 2025년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7. 21.
- 제71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2025년 제7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7. 24.
-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7. 29.
- 제37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식 개최

7. 31.
-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 참석
-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 참석

8월

8. 1.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개최

8. 5.
- 성장전략 TF 1차 회의 참석

8. 7.
- 2025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개최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8. 8.
- 2025년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025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8. 11.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8. 12.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8. 13.
-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참석
- 마약류 대책협의회 참석

8. 15.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 참석

8. 18.
- 2025년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 개최

8. 19.
- 한국법학원 부원장 회의 참석

8. 22.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예방

8. 25.
-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참석
- 2025년 제8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8. 26.
- 2025년 법무부 부패방지교육 실시

8. 27.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 포럼 참석

8. 28.
- 2025년 제4회 난민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 개최

9월

9. 9.
- 정책현장 방문(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9. 9. ~ 12.
- 제19회 ASEN 초국가범죄에 관한 장관급(AMMTC) 회의 참석

9. 11.
-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접견

9. 15.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참석

9. 16.
-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접견

9. 19.
- 정책현장 방문(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정부교도소)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

9. 21.
- '2025년 경기도 HOME Festival 행사' 참석

9. 22.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 개최
-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국제중재센터 의장 접견
-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
- 2025년 제9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9. 23.
-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9. 24.
-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9. 25.
- 복지시설 방문(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9. 26.
- 정책현장 방문(안양소년원)

9. 27.
- 한국법학자대회 참석

9. 29.
- 복지시설 방문(안양의집)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9. 30.
-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10월

- 10. 1.
  - 정책현장 방문(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교도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 2.
  -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접견
  - 법무부 교정본부–한국여자농구연맹 업무협약식 개최
- 10. 14.
  -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 수감
- 10. 16.
  - 신임검사 대상 강화(講話)
- 10. 17.
  -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접견
  - 국제사형반대위원회(ICDP) 위원 접견
- 10. 21.
  - 보건복지부 1차관 접견
  - 법무부 명예 교도관 위촉식 개최
- 10. 22.
  - 2025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0. 24.~28.
  -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10. 24.
  - 2025년 제7회 난민위원회 개최
- 10. 25.
  -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 참석
- 10. 27.
  - 2025년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0. 28.
  -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10. 29.
  -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0. 30.
  - 2025년 법사위 종합감사 수감
- 10 31.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11월

11. 3.
-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1. 10.
-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개최

11. 11.
- 국제형사재판소(ICC) 前 재판관 접견

11. 12.
-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서울카르텔총회 개최

11. 14.
- 정책현장 방문(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11. 17.
-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11. 18.
- K-STAR 비자트랙 대학 선정위원회 개최

11. 19.
-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 2025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 제1회 미니 타운홀 미팅 개최
-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 2025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11. 20.
- 2025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11. 21.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세미나 실시
- 정책현장 방문(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1. 24.
- 2025년 제11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1. 26.
- 정책현장 방문(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보호관찰소)
-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11. 28.
- 정책현장 방문(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12월

12. 1. • 2025년 출입국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12. 2. •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12. 3. •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관련 학술 포럼 참석

12. 4.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12. 5. •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현판·지정증 수여식 개최

12. 7. •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12. 8. • 2025년 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개최

12. 9.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

12. 10.
-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접견
- 대만 검찰총장 접견
- 제37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 11. •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12. 15.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제5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

12. 17. • 2025년 기독탄신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12. 18. •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12. 19.
- 2026년 정부 업무보고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12. 22.
- 2025년 제12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식 개최

12. 29. •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 개최

12. 30. •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5년 법무부가 만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5년 법무부는 국민께 신뢰받고 성과로 보답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5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5. 01.

2025년 법무부 시무식(2025. 1. 2.)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2025. 1. 16.)

제2기 법무부 2030자문단 발대식(2025. 1. 23.)

2025. 02.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2025. 2. 11.)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안양소년원 방문(2025. 2. 11.)

2025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2025. 2. 21.)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및 제16기 해단식(2025. 2. 24.)

2025. 03.

2024년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식(2025. 3. 4.)

법무부-세계은행-대한상공회의소 해외진출기업 공동법률세미나(2025. 3. 6.)

홍천희망센터 개관식(2025. 3. 7.)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접견(2025. 3. 14.)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지식재산권 공동세미나(2025. 3. 19)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2025. 3. 21.)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2025. 3. 21.)

다문화 아동 교육 우수학교(이태원 초등학교) 정책현장 방문(2025. 3. 21.)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2025. 3. 24.)

경북지역 산불 관련 교정시설 현장 방문(안동교도소, 경북북부교도소)(2025. 3. 27.)

2025. 04.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2025. 4. 1.)

경북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2025. 4. 18.)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2025. 4. 25.)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접견(2025. 4. 28.)

이집트 형사사법 관계자 접견(2025. 4. 29.)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업무협약 체결식(2025. 4. 30.)

2025. 05.

신임검사 임관식(2025. 5. 7.)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접견(2025. 5. 8.)

이문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접견(2025. 5. 8.)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2025. 5. 12.)

2024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유공 포상(2025. 5. 13.)

안양소년원 정심봉사단 봉사활동(2025. 5. 14.)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2025. 5. 20.)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2025. 5. 27.)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2025. 5. 30.)

2025. 06.

제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임식(2025. 6. 5.)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개최(2025. 6. 25.)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2025. 6. 26.)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임식(2025. 6. 30.)

2025. 07.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25. 7. 16.)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식(2025. 7. 21.)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5. 7. 21.)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2025. 7. 24.)

제37기 공익법무관 임용식(2025. 7. 29.)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 기조연설(2025. 7. 31.)

2025. 08.

신임검사 임관식(2025. 8. 1.)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2025. 8. 1.)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2025. 8. 8.)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5. 8. 11.)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2025. 8. 12.)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2025. 8. 13.)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2025. 8. 13.)

조희대 대법원장 예방(2025. 8. 22.)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예방(2025. 8. 22.)

2025년 법무부 부패방지교육(2025. 8. 26.)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2025. 8. 27.)

2025년 제4회 난민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2025. 8. 28.)

2025. 09.

2025년 법무부 양성평등주간(2025. 9. 2.)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접견(2025. 9. 11.)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접견(2025. 9. 16.)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2025. 9. 1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책현장 방문(2025. 9. 19.)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2025. 9. 19.)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접견(2025. 9. 22.)

도모코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2025. 9. 2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2025. 9. 22.)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2025. 9. 24.)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방문(2025. 9. 25.)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2025. 9. 26.)

안양의집 방문(2025. 9. 29.)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위촉식(2025. 9. 30.)

2025. 10.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책현장 방문(2025. 10. 1.)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2025. 10. 1.)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2025. 10. 1.)

법무부 교정본부-한국여자농구연맹 업무협약식(2025. 10. 2.)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 수감(2025. 10. 14.)

2025년 법사위 종합감사 수감(2025. 10. 30.)

신임검사 대상 강화(講話)(2025. 10. 16.)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접견(2025. 10. 17.)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접견(2025. 10. 17.)

법무부 명예교도관 위촉식(2025. 10. 21.)

제54회 교정작품 전시회(2025. 10. 24.)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2025. 10. 25.)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2025. 10. 28.)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2025. 10. 2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2025. 10. 31.)

2025. 11.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2025. 11. 3.)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2025. 11. 3.)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예방(2025. 11. 4.)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APCCA)(2025. 11. 10.)

정창호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접견(2025. 11. 11.)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서울카르텔총회(2025. 11. 12.)

서울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2025. 11. 14.)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2025. 11. 14.)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2025. 11. 17.)

제1회 미니 타운홀 미팅(2025. 11. 19.)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2025. 11. 19.)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2025. 11. 19.)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현장 방문(2025. 11. 21.)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시상식(2025. 11. 28.)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25. 11. 24.)

2025. 12.

2025년 출입국 해외주재관 회의(2025. 12. 1.)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관련 학술 포럼(2025. 12. 3.)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현판 수여식(2025. 12. 5.)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2025. 12. 7.)

2025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2025. 12. 8.)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2025. 12. 9.)

싱 타이 차오 대만 검찰총장 접견(2025. 12. 10.)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2025. 12. 11.)

제5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2025. 12. 15.)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2025. 12. 15.)

2026년 정부업무보고(2025. 12. 19.)

2026년 정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2025. 12. 19.)

연말연시 국군 장병(육군 제8기동사단 오뚜기부대) 위문(2025. 12. 26.)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사례 표창 수여식(2025. 12. 29.)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식(2025. 12. 30.)

2025

법무연감

2025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 총 설

제1절 |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 62
제2절 | 기구·인원 • 68
제3절 | 예산·시설 • 87

제2장 | 업무실적

제1절 | 기획조정업무 • 98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 98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 101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105
4. 법무행정개선 추진 • 109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111
6.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 • 114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 116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 122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 125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 129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136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139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 143

제2절 | 정책홍보업무 • 156
1. 기관장 소통활동 • 156
2. 언론 홍보활동 • 158
3. 홍보 기획 • 159
4. 대국민 소통활동 • 162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 169

제3절 | 법무업무 • 170
1. 민법 전면개정 추진 • 170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 172
3.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 176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 178
5.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 181
6.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 183

2025
법무연감

CONTENTS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 185
8.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 188
9.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 190
10. 친일재산 매각대금 등 환수소송 제기 • 191
11.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193
12.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195
13.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 202
14. 북한주민 재산의 체계적 관리·감독 • 207
15.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208
16.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 211
17.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 214
18.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 216
19.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219
20. 경제형벌 규정 개선 • 221
21. 전자어음제도 운영 • 222
22. 전자증권제도 시행 • 224
23. 중재산업 활성화 • 226
24.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 228
25.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230
26. 선진법제포럼 개최 • 232
27.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 233
2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238

제4절 | 검찰업무 • 240

1. 검찰 역량의 강화 • 240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 243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 253
4. 국민의 권익 보호 • 270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 274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304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 306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307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 309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 310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 311
12.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318
13.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개정 • 319

14. 다중사기 범죄 대응 등을 위한 사기죄 관련 「형법」 개정 • 321
15.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개정 • 322
16.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확대 관련 「형법」 개정 추진 • 323
17.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 324
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 • 325
19.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326

제5절 | 범죄예방업무 • 327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 327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 336
3. 감호제도 개선 • 342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 347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 349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 354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 358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 362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 365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 372

제6절 | 감찰·감사업무 • 377
1. 감찰업무 • 377
2. 감사업무 • 379

제7절 | 인권업무 • 382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 382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 388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 398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412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 416

제8절 | 국제법무업무 • 419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 419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 427
3.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 433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435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 442

2025
법무연감

CONTENTS

제9절 | 교정업무 • 444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 444
2.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 450
3.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 455
4.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및 시설 개선 추진 • 461

제10절 |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 467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467
2.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과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474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 업무 체계 개편 • 483
4.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487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495
6.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균형잡힌 난민정책 추진 • 499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507
8.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511
9.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추진 • 521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 526
1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533

제11절 |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 537

제3장 | 법령정비

제1절 | 개관 • 540
제2절 | 법률 • 541
제3절 | 대통령령 • 567
제4절 | 총리령 및 법무부령 • 579

제4장 | 국회업무

제1절 | 국회업무 • 600

제5장 | 통 계

제1절 | 법무업무 통계 • 608
제2절 | 검찰업무 통계 • 620
제3절 | 범죄예방업무 통계 • 642
제4절 | 인권업무 통계 • 679
제5절 | 국제법무업무 통계 • 681
제6절 | 교정업무 통계 • 682
제7절 |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 704

제6장 | 자 료

제1절 | 직제 • 722
제2절 |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 760
제3절 | 장관 연설문 • 770
제4절 |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 814
제5절 |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833
제6절 | 인사 • 859
제7절 | 국외훈련·출장 • 860
제8절 | 국제교류 현황 • 861
제9절 | 상훈 • 867
제10절 | 위원회 현황 • 887
제11절 |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894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1 법무연감

Justice 1st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 1 절 |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장윤정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등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3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핵심 정책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법무부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5년도 국정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정운영의 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관점에서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에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1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3개 추진전략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① AI 3대 강국 도약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④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표 1-2 이재명정부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목표	추진 전략	국정과제 (주관 3개)	주관 (협조)	주요 내용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행안부)	① 검찰청의 폐지와 (가칭)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	②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
			공수처 (행안부)	③ 공수처의 역량 강화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개보위)	① 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 제도 개선 및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법무부 (다부처)	②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을 위한 인력구조 및 제도 개선
			법무부	③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법무부 (법원행정처)	④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기본이 튼튼한 사회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 (다부처)	①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법무부 (다부처)	②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 법원행정처)	③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법무부 식약처 (다부처)	④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경찰청 (다부처)	⑤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경찰청 (과기부, 법무부))	⑥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2. 법무행정의 지표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환희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4대 전략목표 아래 8개 성과목표 및 46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3 202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표 1-4 202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주요내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①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전세사기·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경제범죄, 산업현장 반법치행위 등 엄단
		②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범정부적 마약범죄 대응,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 구축 등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③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산업재해 사건 등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엄정 대응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마련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철저 및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⑥ 능동적 범죄대응 및 부패대응 공백방지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특정경제범죄법」과의 법정형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정형 체계의 모순 해소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1 전자감독 확대 등 실효적인 재범방지 대책 추진 • 스토킹 사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행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범죄예방정책 및 추진중인 국정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체감도 향상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교육청·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활성화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소년원 학생 직업교육 및 직업탐색 지원, 맞춤형 정신건강 처우 실시 등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처우개선 등을 통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치료·재활 환경 구축,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 마약류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재범 방지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법무보호사업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및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지원
Ⅱ.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이행점검 및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지원 및 국제인권 대응 철저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 개선, 직접조사 강화, 실태조사 확대, 조사 업무와 제도개선의 연계 강화, 인권교육 확대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실현한다	③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접근성 향상을 통한 법률복지 실현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인권 보호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사업 추진	•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신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정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체감도 향상
		③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수용관리 및 접견 서비스 활성화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수용관리 강화 및 접견 서비스 활성화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정밀분류심사로 심리치료, 인성교육 등 처우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재범위험성 등 면밀히 평가 후 가석방 실시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취업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취·창업 교육 및 맞춤형 취업 알선으로 사회복귀 지원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다양한 교정교육, 귀휴,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수형자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의료인력 확보 노력, 의료장비 현대화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백신접종 및 외부전문업체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활동 등 대응 역량 강화
		⑧ 성폭력·이상동기 범죄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심리적 위기 진단 도입 등 수용자 심리상담 실효성 강화
		⑨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중독·재활치료 강화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 실시 • 출소 후 치료재활 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Ⅲ.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 국민생활의 기본인 「민법」 계약법 개정, 기업환경 개선과 민·상사 법체계 정합성을 위한 상사법 개정,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가족법 개정안 마련 추진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전자공증제도 활성화, 적정한 감독권 행사 등을 통한 공증사무의 공공성 및 신뢰도 제고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및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중심으로 손해전보 및 공익적 환수소송 적극 제기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송무지도점검,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교육 등 소송수행자의 송무 역량 강화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신규 기능 수요 발굴·탑재 및 기존 기능 개선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한 법률과 제도 통합 준비, 통일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전문가 양성,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 주주권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를 위한 「상사법」 개정 추진 • 도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등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시험위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CBT(컴퓨터 기반 시험) 정착
	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국제규범 성안 및 국내 도입 추진을 통한 민·상사 법제 선진화, 이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 주도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 국익과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소송 수행·관리, ISDS 예방,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등의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시스템 운용
		③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제도개선	• 국제투자분쟁(ISDS) 발생 시 분쟁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 및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운영 활성화 등 효과적·체계적 대응으로 국부유출 방지
Ⅳ.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국경관리 체계 구축	• 전자여행허가제, 전자입국신고 제도(e-Arrival Card)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및 국익 위해자 유입 차단
		②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적극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로 국가경쟁력 확보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업무 체계 개편	• 상시 단속 체계 가동을 통한 엄정한 단속 기조 유지 및 제도 정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및 외국인 보호기간 감축 등 보호업무 체계 개편
		④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행, 제2금융권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효과적인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강화, 다국어 홍보 확대를 통한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2025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출입국 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제·개정 등 추진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등 심의·의결,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귀화 면접심사 제도 운영 등 국적제도 개선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실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정책 효율성 제고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법령·지침 개정 및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 강화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조사관 교육 실시,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문자 알림 실시 등으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제 2 절 |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5. 12. 31. 현재 2실 4국 2본부 10관 58과·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장, 법조인 양성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 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을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이로운법' 홈페이지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원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개별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 데이터분석 기반의 강력범죄자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2. 8.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2027. 6. 30.까지 존속)하여 소년 범죄예방정책 수립 및 소년보호관찰 제도 운영 등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벤처형 조직으로 설립된 범죄예방데이터과가 존속기한 만료(2023. 5. 31.)로 해소된 후,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능형서비스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개선, 국가연구개발 추진과 같은 범죄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 국제법무국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를 두고 있으며,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부 내 국제개발협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특별점검팀을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특별점검팀 및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교정시설 수시 점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과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있다.

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관리 및 제공, 출입국외국인 통계연월보 작성, 외국인 관련 빅데이터 분석,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국적판정,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을 전담하고 있다.

차.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표 1-5 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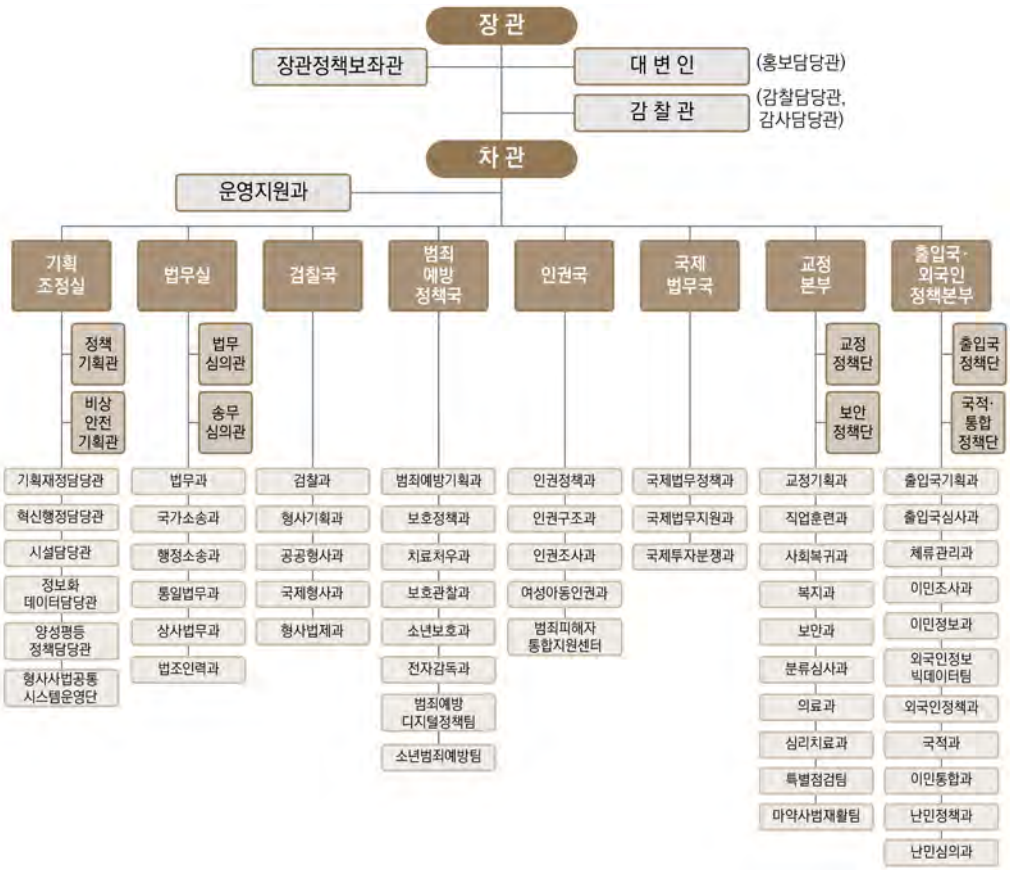

2. 인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신규 가입에 따른 국제인권 인력, 법무부 기록관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 등 3명을 증원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라 본부 1명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며,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에 따라 20명을 감축하여 2025. 12. 31. 현재 본부 정원 771명, 현원 749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표 1-6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71	2	27	738	4
현원	749	2	56	688	3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5.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표 1-7 검찰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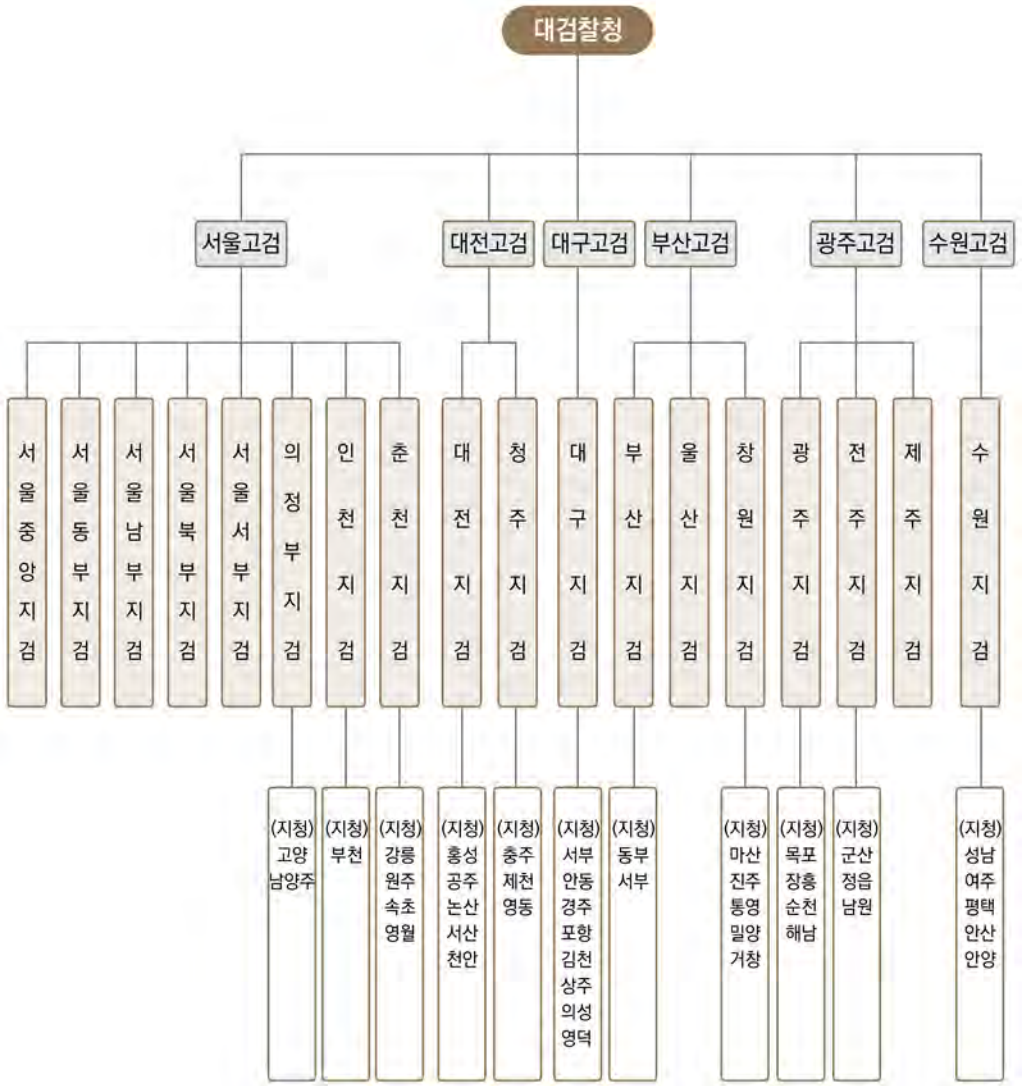

표 1-8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657	2,292	8,365

표 1-9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1,996
검찰총장	1	0
고등검사장급	7	4
대검검사급	32	30
검사	2,252	1,962

표 1-10 검사 외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365	8,453
고위공무원단	26	12
검찰부이사관	18	16
검찰수사서기관	183	163
임기제서기관	1	1
서기관	5	5
검찰사무관	455	347
검찰주사	1,518	1,541
검찰주사보	1,758	1,757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6
검찰서기	1,228	1,225
검찰서기보	684	924
마약수사직	314	296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29	223
시설·공업직	97	95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1	265
방호직	158	153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04	1,318
연구직	75	74
전문경력관	5	4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5.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40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국립법무병원,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표 1-11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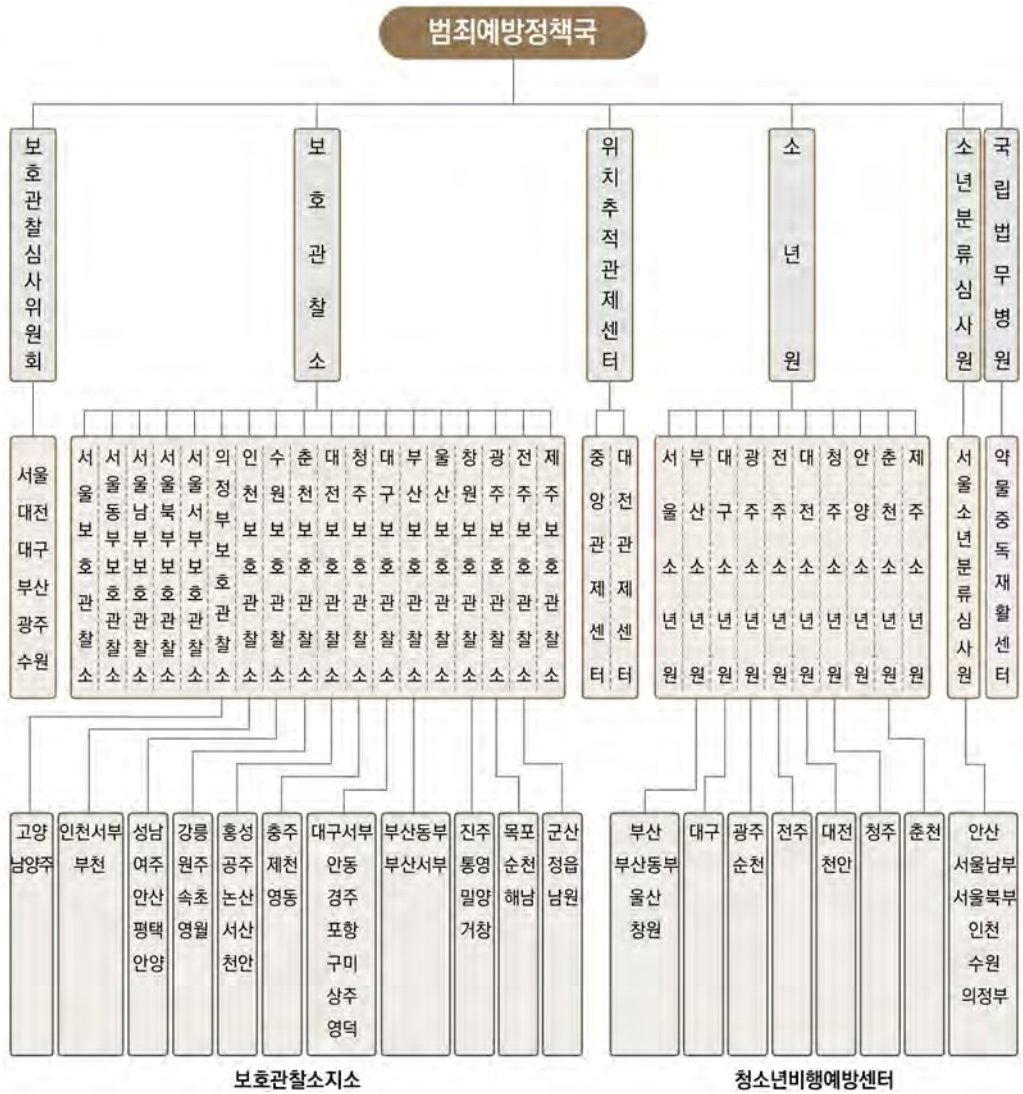

표 1-12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2,072	2,062
고위공무원단	1	0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9	28
서기관(임기제)	4	4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5
보호사무관	189	181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351	348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487	477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4
보호서기	491	485
보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시설서기	0	1
공업서기	4	5
운전서기	2	2
보호서기보	418	434
보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3	3
운전서기보	55	52
방호서기보	14	14
관리운영직군	2	8

표 1-1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67	975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5
과학기술서기관	9	9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과학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46	46
의무사무관	12	5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4	103
공업주사	1	1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4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보호주사보	189	183
공업주사보	4	4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9	17
약무주사보	1	0
보호서기	188	182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6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71	200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3
공업서기보	19	19
시설서기보	1	1
식품위생서기보	4	4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7	56
방호서기보	13	17
관리운영직군	4	7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0	19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4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3	3

표 1-1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61	445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과학기술서기관	13	1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	2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0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1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3	3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6
약무주사	2	2
간호주사	33	32
간호조무주사	2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2
공업주사	1	1
의료기술주사	1	2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2
간호주사보	62	57
간호조무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2	2
조리주사보	1	1

직 급	정 원	현 원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3	3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3	2
간호서기	60	60
의료기술서기	4	4
간호조무서기	16	16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1	1
보호서기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2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3
운전서기보	2	2
간호조무서기보	137	136
조리서기보	17	16
방호서기보	11	11
관리운영직군(서기보)	2	2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0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4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2	2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2

3. 교정기관

2025.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2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8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625명이며, 2025. 12. 31. 현재 16,610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15 교정기관 조직도

표 1-16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625	16,610	15	9	117	66	381	1,616	2,043	5,813	6,440	4	121
교정	15,419	15,449	15	5	58	34	342	1,496	1,836	5,595	6,038		
의무	115	89		4	59	30	22						
약무	16	14					13	3					
간호	186	183					1	38	62	85			
의료기술	36	36						15	14	7			
식품위생	89	89						13	35	24	17		
행정	0	0											
시설	73	67				2	2	29	24	11	5		
전산	12	11					1	2	5	4			
공업	238	235						17	60	69	92		
방송통신	4	4						3		1			
운전	271	269							5	5	261		
보건	1	1								1			
관리운영	40	40							2	11	27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10											10
전문경력관(나군)	111	109											111

4. 출입국기관

2025.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2개 출장소 및 1개 외국인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668명이며, 현원은 2,660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17 출입국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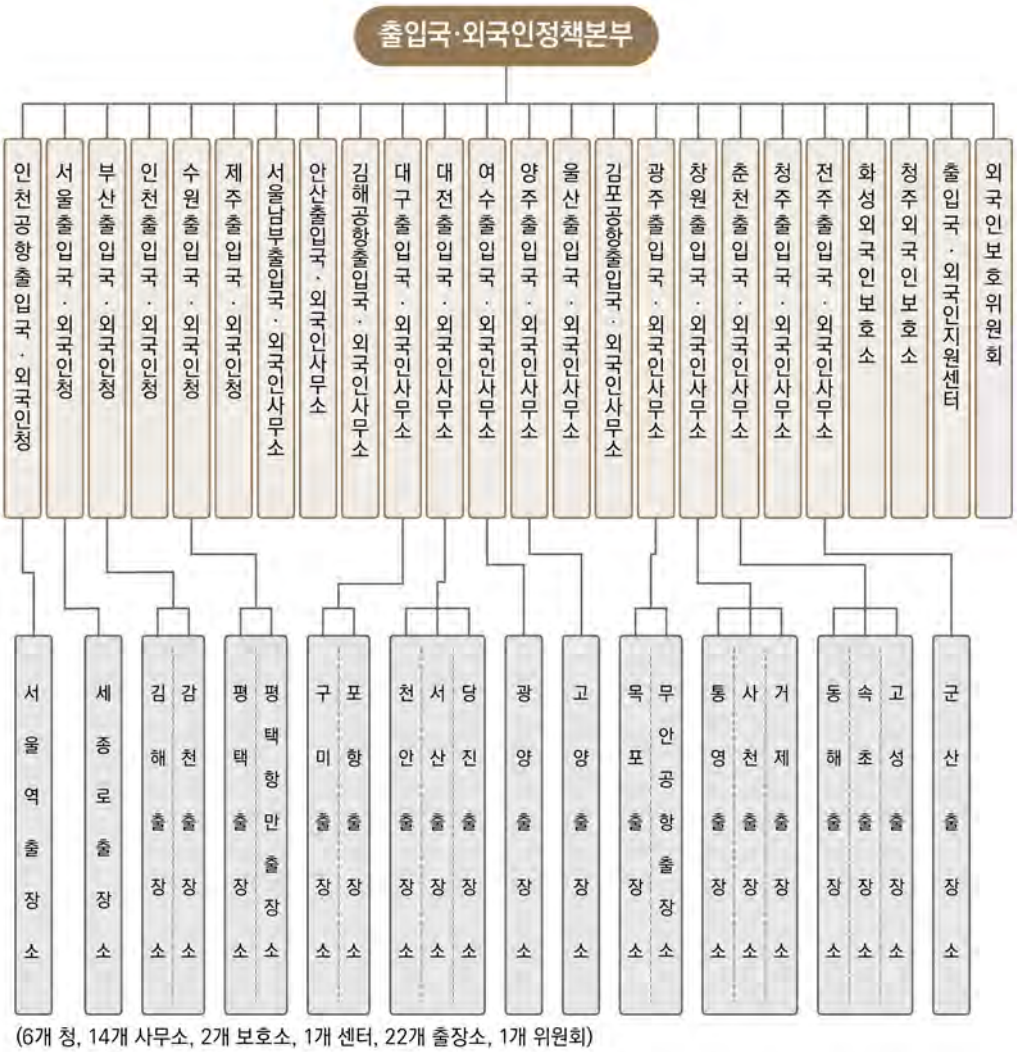

(6개 청, 14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2개 출장소, 1개 위원회)

표 1-18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668	2,660
고 위 공 무 원	4	3
부 이 사 관	4	3
서 기 관	32	2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25	123
출 입 국 관 리 주 사	442	428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719	721
출 입 국 관 리 서 기	705	695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526	555
전 산 직	44	44
의 무 직	3	2
간 호 직	4	3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0	58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표 1-19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4	130
검 사	19	20
고 위 공 무 원	6	3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등	7	6
행 정 사 무 관 · 교 정 관 등	21	20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4
행 정 주 사 보 · 교 위 등	20	29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4	25
행 정 서 기 보 · 운 전 서 기 보 등	11	3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5.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표 1-2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0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 3 절 | 예산·시설

1. 예 산

>>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박길

가. 개요

2025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 대응역량 제고,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약자 보호,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5.4% 증액된 1조 6,673억 6,300만 원, 세출이 1.1% 증액된 4조 4,464억 1,07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이 1,443억 2,3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표 1-2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예산	세 입	1,445,459	1,445,459	1,667,363	221,904	15.4
	세 출	4,414,107	4,414,107	4,464,107	50,000	1.1
기금	수 입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지 출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324,930	1,324,930	1,543,683	218,753	16.5
세 출	4,293,578	4,293,578	4,340,427	46,849	1.1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세 출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수 입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지 출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나. 일반회계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16.5% 증액된 1조 5,437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1.1% 증액된 4조 3,404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473조 6,594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3%, 세출이 0.9%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3,404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4%인 2조 9,246억 원, 교정활동이 10.5%인 4,562억 원, 검찰활동이 6.8%인 2,949억 원, 범죄예방활동이 4.0%인 1,716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인권활동·출입국관리·법무교육훈련 등 7개 프로그램이 11.3%인 4,932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표 1-22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293,578	4,293,578	4,340,427	46,849	1.1
인 건 비	2,621,040	2,621,040	2,661,080	40,040	1.5
기 본 경 비	159,954	159,954	167,311	7,357	4.6
사 업 비	1,426,463	1,426,463	1,423,274	△3,189	△0.2
기금전출금	86,121	86,121	88,762	2,641	3.1

표 1-23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426,463	1,426,463	1,423,274	△3,189	△0.2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4,022	4,022	2,961	△1,061	△26.4
• 국가배상금지급	100,000	100,000	131,765	31,765	31.8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658	658	678	20	3.0
• 기업환경지수 개선	253	253	2,653	2,400	948.6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5,162	5,162	4,659	△503	△9.7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400	3,400	2,595	△805	△23.7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820	820	826	6	0.7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44	744	779	35	4.7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5,197	5,197	5,283	86	1.7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766	766	771	5	0.7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78	278	286	8	2.9
• 법률구조	64,817	64,817	67,337	2,520	3.9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998	4,998	5,143	145	2.9
• 인권교육	204	204	191	△13	△6.4
• 아동인권 증진	245	245	245	-	-
• 국제인권역량강화	241	241	246	5	2.1
• 이민정책개발지원	386	386	190	△196	△50.8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562	2,562	3,455	893	34.9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51,419	51,419	55,163	3,744	7.3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5,757	5,757	9,849	4,092	71.1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608	24,608	30,410	5,802	23.6
• 외국인보호관리	22,287	22,287	21,372	△915	△4.1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27	15,427	17,639	2,212	14.3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1,132	11,132	10,927	△205	△1.8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10,754	10,754	13,909	3,155	29.3
• 검찰청시설운영	82,041	82,041	82,703	662	0.8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24	7,924	7,957	33	0.4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1,021	11,021	12,097	1,076	9.8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701	2,701	2,509	△192	△7.1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457	25,457	19,187	△6,270	△24.6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기술 연구개발(R&D)	1,800	1,800	2,400	600	33.3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6,839	36,839	33,339	△3,500	△9.5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419	10,419	9,861	△558	△5.4
• 형사부 등 수사지원	86,475	86,475	47,838	△38,637	△44.7
• 공공수사	3,276	3,276	1,346	△1,930	△58.9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4,644	14,644	9,918	△4,726	△32.3
• 마약수사	8,204	8,204	7,823	△381	△4.6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3,481	3,481	2,760	△721	△20.7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52	6,252	4,858	△1,394	△22.3
• 공판활동지원	2,037	2,037	1,265	△772	△37.9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7,262	7,262	6,648	△614	△8.5
• 형사보상	40,000	40,000	42,000	2,000	5.0
• 형사법정비	349	349	349	-	-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381	381	516	135	35.4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728	728	734	6	0.8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8	158	150	△8	△5.1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275	5,275	4,717	△558	△10.6
• 교도소행정지원	48,515	48,515	51,516	3,001	6.2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834	100,834	85,596	△15,238	△15.1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6,459	16,459	17,241	782	4.8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69,102	269,102	290,348	21,246	7.9
• 교정교화	11,920	11,920	11,457	△463	△3.9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5,568	15,568	17,373	1,805	11.6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 (R&D)	877	877	2,000	1,123	128.1
• 소년원생수용	26,887	26,887	26,971	84	0.3
• 청소년비행예방	5,447	5,447	5,577	130	2.4
• 갱생보호활동	48,124	48,124	46,856	△1,268	△2.6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680	12,680	12,581	△99	△0.8
• 보호관찰활동	16,114	16,114	17,102	988	6.1
• 전자감독	32,427	32,427	36,847	4,420	13.6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6,271	6,271	6,277	6	0.1
• 특별감찰활동	404	404	404	-	-
•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032	5,032	5,437	405	8.0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605	1,605	1,577	△28	△1.7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137	-	-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008	1,008	1,008	-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08	608	608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7,993	17,993	20,107	2,114	11.7
• 정보기획지원	33	33	37	4	12.1
• 양성평등정책 지원	233	233	233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9,117	39,117	41,485	2,368	6.1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0	800	811	11	1.4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7,096	7,096	2,803	△4,293	△60.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722	29,722	20,751	△8,971	△30.2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0,843	10,843	4,141	△6,702	△61.8
•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626	5,566	△2,060	△27.0

표 1-24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293,578	4,293,578	4,340,427	46,849	1.1
• 법무활동	121,300	121,300	153,256	31,956	26.3
• 인권활동	70,505	70,505	73,162	2,657	3.8
• 출입국관리	144,332	144,332	162,914	18,582	12.9
• 검찰활동	350,182	350,182	294,858	△55,324	△15.8
• 국제법무활동	6,542	6,542	6,117	△425	△6.5
• 교정활동	446,830	446,830	456,158	9,328	2.1
• 범죄예방활동	164,395	164,395	171,584	7,189	4.4
• 특별감찰관활동	914	914	874	△40	△4.4
• 법무교육훈련	7,782	7,782	8,159	377	4.8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2,894,675	2,894,675	2,924,583	29,908	1.0
• 기금전출금	86,121	86,121	88,762	2,641	3.1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36억 8,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643억 4,3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93억 8,8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1억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7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7억 4,600만 원, 국고금 환급금 1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6억 5,200만 원, 교도작업 621억 500만 원, 직업훈련 43억 9,900만 원, 시설보완 38억 9,7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억 2,7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표 1-25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기타경상이전수입	103	103	103	-	-
교 도 소 수 입	64,343	64,343	64,343	-	-
기 타 잡 수 입	369	369	100	△269	△72.9
전년도세계잉여금	6,560	6,560	9,388	2,828	43.1
기금예탁원금회수	46,500	46,500	47,000	500	1.1
기금예탁이자수입	2,654	2,654	2,746	92	3.5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 (B)	2024 대비		내 역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교 도 작 업	58,651	58,651	62,105	3,454	5.9	• 작업재료비 • 기타보전금 • 일반수용비 등	26,154 26,808 9,143
직 업 훈 련	4,164	4,164	4,399	235	5.6	• 실습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531 1,105 1,763
시 설 보 완	4,475	4,475	3,897	△578	△12.9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2,444 1,453
기 본 경 비	599	599	652	53	8.8	• 운영비 등	652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예 탁	52,640	52,640	52,627	△13	△0.0	• 예탁액	52,627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448억 7,700만 원이며, 수입은 기타재산수입 7억 3,000만원, 변상금 17억 1,9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1억 6,4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05억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87억 6,200만 원이며,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93억 8,300만 원, 성평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94억 1,300만 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56억 9,600만 원, 해양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5,3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 예수원금상환 22억 3,000만 원, 예수이자상환 1,500만 원, 여유자금 480억 3,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표 1-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 기금		2025 기금 (B)	2024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417	730	313	75.1
변 상 금	1,797	1,797	1,719	△78	△4.3
기타경상이전수입	2,717	2,717	3,164	447	16.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6,002	46,002	50,502	4,500	9.8
일반회계전입금	86,121	86,121	88,762	2,641	3.1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4 기금		2025 기금 (B)	2024 대비		내 역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7,597	47,597	49,383	1,786	3.8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5개 사업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37,354	37,354	39,413	2,059	5.5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602	3,602	5,696	2,094	58.1	•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숙소 지원 등
해양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53	53	53	-	전년동	• 임시숙소 지원
운 영 비	48	48	48	-	전년동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2,230	△270	△10.8	
예수이자상환	49	49	15	△34	△69.4	
여 유 자 금	45,851	45,851	48,039	2,188	4.8	

2. 시 설

>> 시설담당관실 시설주사 원상일

가. 개 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6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0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5개 등 총 271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정책체험 등을 통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관계자 간담회,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5년 신규사업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 신축, 대검찰청 별관 증축, 전주보호관찰소 별관 증축 등 총 5개 사업을 착수하였다. 계속사업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인천지검 북부지청 등 18개 주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775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460억 원(25.9%), 보호시설에 172억 원(9.7%), 교정시설에 997억 원(56.2%), 출입국외국인시설에 146억 원(8.2%)을 집행하였다.

2025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1-27 2025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 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 사 기 간
		부 지	건 물		
신규 (5)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 신축	19,595	8,339	418	2025. 1. ~ 2029. 12.
	대검찰청 별관 증축	기존	9,000	325	2025. 1. ~ 2029. 12.
	전주보호관찰소 별관 증축	기존	1,433	49	2025. 1. ~ 2027. 12.
	대구보호관찰소 별관 증축	기존	3,657	125	2025. 1. ~ 2027. 12.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리모델링	기존	4,567	102	2025. 1. ~ 2027. 12.
계속 (18)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200,319	41,709	1,535	2022. 6. ~ 2025. 12.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23,402	16,774	576	2024. 8. ~ 2026. 11.
	거창보호관찰소 신축	3,300	1,179	48	2024. 3. ~ 2025. 8.
	울산보호관찰소 증축	기존	2,536	70	2024. 1. ~ 2025.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9,035	17,633	1,055	2023. 12. ~ 2026. 5.
	춘천소년원 재건축	기존	7,795	281	2023. 1. ~ 2025. 3.
	진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800	63	2024. 1. ~ 2025. 7.
	군산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800	63	2024. 1. ~ 2025. 7.
	대구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746	25	2024. 3. ~ 2025. 2.
	순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602	60	2024. 3. ~ 2025. 10.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기존	2,000	81	2023. 11. ~ 2025. 5.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기존	2,156	85	2023. 12. ~ 2025. 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7,729	8,538	385	2024. 12. ~ 2027. 10.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기존	7,730	195	2024. 12. ~ 2027. 12.
	인천구치소 수용동 증축	53,898	4,804	238	2025. 12. ~ 2027. 12.
	평택출장소 청사 신축	3,906	2,210	99	2025. 6. ~ 2027. 3.
	평택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3,000	3,318	126	2025. 6. ~ 2027. 5.
	청주보호관찰소 청사 증축	3,395	2,536	93	2025. 6. ~ 2026. 2.

2 법무연감

Justice 1st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홍보업무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국제법무업무

제9절 교정업무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1절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제 1 절 | 기획조정업무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손장혁

가. 개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국정과제·현안 추진 지원, ② 신속·효율적인 조직 관리, ③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④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정기직제·수시직제 증원 및 기구 신설, 자율기구 운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 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1)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2025. 2.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에 따라 출입국 심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및 청주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정원 136명(6급 11명, 7급 23명, 8급 35명, 9급 67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2025. 2. 25.).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였다(2025. 6. 2.).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을 감축하였다(2025. 6. 10.).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 등 8개 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 6. 30.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7급 9명, 8급 9명)은 보호관찰소 정원(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 7. 1.).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였다(2025. 9. 23.).

2) 자율기구 운영

국정과제 및 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율기구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2024. 6. 25.~2025. 6. 24.), 「교정정보 빅데이터팀」(2024. 6. 3.~2025. 6. 2.) 및 「교정대외협력단」(2025. 6. 25. 신설)을 운영하였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기구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교정정보 빅데이터팀」은 누적 수용자 약 300만 명(2024. 4. 기준)의 방대한 교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연계·활용할 목적으로, 2024. 6. 3. 신설되어, 교정정보 시각화 구현 사업, 교정행정 비정형데이터 활용 정책연구용역 추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용 단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재범 위험성 계측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과 연계한 실효적 사회 안전 체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교정대외협력단」은 제80주년 '교정의 날'·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교정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교정행정의 지평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교정행정 관련 국내 및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다각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 향후 계획

부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문제해결형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국정과제 성과창출 뒷받침, ② 자율·책임에 기반한 탄력적 조직 운영, ③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④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무행정 수요 변화 및 필수·추가적인 인력 수요 등을 검토하여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를 통해 조직·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법무행정 분야 인력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손장혁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의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8개 중점과제 분야에서 19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며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혁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에 참여하여,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으로 은상(국무총리표창),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으로 동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장과 직원들이 별도의 사회나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진정성 있는 조직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등 법무부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미니 타운홀 미팅

정부혁신 3대 전략과 중점과제 | 미니 타운홀 미팅

나. 주요 혁신 성과

1)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는 수기 작성·제출 등의 불편한 점이 있으며,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입국 외국인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심사 환경 제공 및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자입국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2025. 2. 24.).

이를 통해 입국심사 대기시간 감소 및 공항 혼잡도 완화 등 입국 외국인에게 더욱 신속한 입국심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입국 외국인 정보의 정확성 향상, 전자화된 입국 외국인 정보 사후 분석 등 출입국업무 및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수립 등에 기여하였다.

그림 2-2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2)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법무부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과 재범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감독기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감독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리치료 초기면담 워크북을 발간(2025. 3.)하였고, 심리치료 전문가 배치를 확대했으며, 재범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주택침입형 범죄자가 주택 밀집 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면 경보가 작동하도록 하고 배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직을 권고하는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신청하였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특정범죄 재범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2-1 전자감독 특정범죄 재범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정범죄 재범(재범률)	74건(1.65%)	45건(0.99%)	49건(1.09%)	43건(1.0%)	41건(0.94%)

그림 2-3 전자감독대상자 개별 재범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강화

3)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심리·의료·경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단일 창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고 연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원 누락이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원의 신속성과 연속성이 제고되었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회복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4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4)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부산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마약중독자 상시 재활 교육기관으로서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출소 이후에는 치료·복지·주거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어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출소 전부터 치료·복지·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회복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출소 이후에도 재활과 사후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연계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소 전 상담을 통해 개인별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기관·복지 기관·지자체와 연계하여 출소 즉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치료·재활·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및 온라인 소통 채널(이음톡)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복지 지원 연계 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등 회복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5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사회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손장혁

가. 추진배경

그동안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법무부 비전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와 민생 보호 등 법무부 내·외부 영역에서 적극행정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과감한 ‘2025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이 안전한 나라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노력

민생의 안정을 위해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인권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법률구조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동시에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정책을 실현하였다.

그림 2-6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적극 추진

-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2025. 9.)
- 해외 최우수인재와 그 가족에게 세제·교육·주거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탑티어(Top-Tier) 비자 적용 분야 및 대상 확대(2025. 11.)
-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여 신속한 조사·수사 협력 시스템 구축(2025. 7.~)

* 검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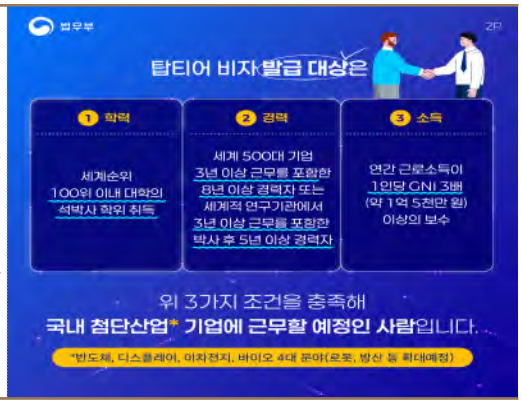

그림 2-7 국가 책임을 다하는 인권 중심 정책 적극 추진

- 국가 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및 여순사건 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원칙적 취하·포기(2025. 8.~10.)
- 친일재산 매각 대금 환수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약 78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2025. 10.)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 전국보호관찰소에서 1,788명 투입(2025. 7.~8.)

그림 2-8 법률구조 통합지원체계구축 및 범죄피해자 실질적 지원 확대

- 여러 기관에 산재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AI를 통해 최적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매칭·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 2026. 1. 대국민 서비스 시작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생계비를 1인 기준 10만원 증액(2025. 1.~)

그림 2-9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정책 추진

- 택배, 배달업 등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국민 안전 위협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중 대응(2023년 대비 14.5% 감소)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권보호 강화(2025. 10.)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직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12명을 선발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적극 추진하였다.

표 2-2 2025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2개 사례)

구분	등급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살인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함께 설계한 피해자 중심의 다각적 회복지원체계 구축	인권구조과
	우수상	교정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마약류중독 수형자의 회복지원 네트워크 구축	부산교도소
		국민공모제로 재난(화재·수해), 범죄 취약지 긴급 복구 완료	대전보호관찰소
		「판례분석 리포트」 제작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 강화 및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려상	탑티어(Top-Tier)비자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다	체류관리과
		전자민원 "국가공인 안심 문자서비스(RSC)" 도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스팸문자로 인한 외국인 피해 예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5년 소·확·행 직원선발	범죄예방정책국	출국규제 시스템 개발 및 주소 찾기 기능 개선(전자감독 업무 개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Razor로 마음의 상처를 Erase! 보호관찰청소년 주저흔 제거 사업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교정본부	생명이 위험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수형자의 '출생 미신고' 아동 구조	순천교도소
		"수용자 직업훈련의 한계를 넘다" 학점은행제 기반 기술+지식기반 융합형 직업훈련체계 구축과 운영	서울남부교도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여행허가(K-ETA) 고도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및 신청 수수료 결제수단 추가 등 민원인 편의성 제고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포차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매뉴얼」 제작 및 집중 단속 실시	춘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4)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부(部)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다각화 노력으로 적극행정 강사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러닝 교육 이수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감사원 부감사관을 초청하여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10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강의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손장혁

가. 추진배경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변화관리 교육

창의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①전화외국어, ②전자도서관, ③생성형AI 활용과정, ④독서증진, ⑤오디오북, ⑥워크숍 및 학습동아리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나) 직무 워크숍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청렴, 지식행정 등 직무역량강화 워크숍(6개, 47백만원)을 실시하고 전자감독 심리치료, 바른급식사랑방 등 우수·신규 학습동아리(9팀, 6백만원)를 지원하였다.

표 2-3 2025년도 교육과정 운영(2개 분야 7개 과정, 7,507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오디오북	전 직원	1,004	6~11월	3회
	② 전자도서관(e-book)	전 직원	-	연중	
	③ 독서증진	전 직원	2,548	6~11월	6회
	④ 생성형AI 활용과정	전 직원	346	6~11월	3회
직무역량 강화	⑤ 전화외국어	전 직원	828	6~11월	3회
	⑥ 워크숍(6개)	전 직원	402	5~12월	
	⑦ 학습동아리지원	우수·신규 학습동아리(9팀)	2,379	연중	
합계	7개 과정		7,507		

※ 우수(5)·신규(4)학습동아리 활동회원(2,379명)

- 교정심리 및 정책연구회(211명), 바른급식사랑방(370명), 전자감독(1,030명), 난민연구모임(195명), APIS 정보분석(417명), 교정연구회(9명), 전자감독 심리치료(13명), 인천공항 AI활용 출입국심사 기법연구회(136명), 국제인권규범 연구모임(8명)

2)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으로, 2025년에는 총 773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이 중 115건을 채택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소속기관에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등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5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신설',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등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림 2-11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표 2-4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출입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신설	최우수	체류관리과
2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우수	이민정보과
3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전자입국신고 도입	장려	출입국심사과
4	범죄예방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우수	전자감독과
5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법(法)페스티벌 거버넌스 구축	장려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인권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우수	인권구조과
7	교정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우수	부산교도소
8	기획조정실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Zero, 행정력 Up	우수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구성원의 창의력 강화와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변화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발굴·추천하는 제도를 함께 추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신지혜

가. 추진배경

정부는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부응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적극적 처리, 타 부처 소관 민원의 신속한 이송,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전한 민원환경의 구축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6,401건**으로, 그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5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5. 1. 1.~12. 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건수	36,401	30,561	5,840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행정복지센터·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 31건 발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시스템 오류 해결' 등 6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3) 국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법무부는 2025년에 총 2,397건의 국민청원을 접수하여, 2,237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청원은 2022년 개편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약 99.3%)하였으며,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한 청원은 총 17건에 불과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청원 접수·처리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총 44차례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비공개 청원을 심의하였고, 이 중 231건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의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952명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5년 접수된 총 1,347건의 국민제안 중 '변호사시험 응시표에 응시날짜 기재' 등 24건을 채택, 7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표 2-6 국민제안 주요 반영사례

연번	개선사항
1	법무부 어린이 홈페이지에 정부포털 어린이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를 적용
2	법무부 채용정보 게시판에는 채용정보 글만 작성하여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 게시글 분리
3	법무부 홈페이지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교정민원콜센터 1363의 상담시간 표기
4	온라인 민원서비스 누리집 서식 현행화
5	변호사시험 응시표에 응시날짜 기재

5) 민원행정 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5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제1·2차 민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84점으로 전년도 대비 0.49점 하락하였으며, 일반민원에서는 접근용이성(7.92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민원 처리 시간이(7.06점)이 가장 낮게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8.5점으로 전년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업무 숙지도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100.0점)를 받았으나 최초인사 여부(84.4점), 용어사용 태도(99.8점) 등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는 BSC 공동지표 평가점수로 반영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 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민원 지도 점검은 교정시설·출입국기관·소년보호시설 등 9곳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원사무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 현지 지도, 시정조치하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의 중요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신문고·국민제안·온라인 청원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유수민

가. 추진배경

정부는 신산업 혁신 가속화, 균형성장 기반 조성, 경제·산업 활력 제고, 생명·안전 보호 및 민생 규제 합리화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유연한 접근과 현장·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추어 경제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경제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였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일반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경제형벌 규정이 민생경제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1,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 현장 의견 반영한 규제 개선 및 제도 마련

15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을 신설하였으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하였다.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2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외국인 해기사 체류자격 부여 방안 등 1차 6개, 2차 6개 제안에 대하여 수용 결정하였다. 선원 인력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직업(E-5) 대상에 외국인 해기사를 추가하였으며, 장기 정주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시범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제주도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정식 도입하여 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 유연화, 경제·산업의 활력 제고, 민생 규제 합리화 등 다방면의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규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장윤정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별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특정평가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역점정책 부문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인권 보호	■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조직 출범(당정 보이스피싱 TF),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 • 서민다중피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해서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추진 ■ 마약사범 엄단 및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범죄 억제 • 검찰-세관 합동 분석팀(PRO-APIS) 통해 마약 우범자정보 31회·1,593건 공유, 원점타격형 국제공조(SOP) 및 수사관 파견으로 해외 거점 단속 강화 • 지속적인 마약류 유입과 유통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4대 권역(서울, 인천, 부산, 광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활동 연장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재활 교정시설 확충(4 → 5개소)을 통해 마약범죄 재범률 저감 ■ 재범 고위험군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 재범 고위험군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1 전담인력 추가 확보(61명) 확보 •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취업·심리 상담, 생활지도 등 사회정착을 돕는 '집중사례관리팀' 구성, 전국 26개 팀 운영 •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해자 접근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독립몰수제 및 필요적몰수제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입법 이후를 대비한 환수·환부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 • 마약범죄 수감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마약범죄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재활·회복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필요
2.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 서비스 혁신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행정 편의 제고 • 수사·기소·재판·집행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생성·유통·관리하는 형사전자소송 실현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 대폭 확대(55종 → 172종)를 통해 국민의 직접 방문 부담을 해소하여 편의성 증진 ■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구조 및 범죄피해 지원 강화 • 생성형 AI 기반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법률구조에 대한 접근성 개선('26.1월 서비스 개시) •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핫라인 구축 및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법령 개정 ■ 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법무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증진 • 신속·정확한 전자여행허가(K-ETA) 심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K-ETA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자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교정 빅데이터 시각화, 수용자 위험행동 DB 구축	• 생성형 AI 기반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및 행정플랫폼에 대한 실제 이용자 만족도, 접근성 및 AI 정확성·책임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 • 형사사법절차 완전전자화, AI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도입 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3.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 다양한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여건을 강화 • 우수 이공계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 ■ 지역 맞춤형 비자 확대와 관광·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산업 인력난 완화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인력 수요에 대응 • 자동심사대 설치, 선상 심사제도 시행,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 및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및 필수 돌봄 인력 양성 ■ 도산제도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영세업자 도산 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도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 경제형벌 정비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로 인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검토 – 가짜뉴스 등,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판매, 건강보험 부자 유급, 유해상품 판매 등 5개 분야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인재 유치 이후 정착률·고용 성과·지역·산업 기여 등 연계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기업 처벌 완화와 소비자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므로, 실제 경제활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영향 분석 필요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합리화과제 2건 중 2건 완료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례 「상법」 개정, 1,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및 지속 추진 • 15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편, 비자·체류정책협의회 2차례 개최, 선원 인력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외국인 해기사 전문직업(E-5) 대상 포함 및 특례 규정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지정, 제주도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 정식 도입을 통한 관광 활성화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정부, AI로 혁신하는 정부, 성과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3개 분야 19개 과제) – 혁신역량 강화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에 따라 혁신 참여 문화가 정착되고, 태도 변화가 실제 성과로 연결 – 대표과제 :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체계 구축하여 획일적·금원 중심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 단계 별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의견과 환류 체계 고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절차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는 과정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성과 홍보 극대화, 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기관장 중심의 후속대응으로 부정여론 확산 방지 등 성과를 보였음 • 온라인 소통활동, 보도자료 현안대응 성과 등은 보통인 편이나,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온라인 소통활동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기관장 정책소통 및 온라인 소통을 위한 노력 필요	•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노출(검색) 확대를 위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선별하여 적용 필요 • 유통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기획 콘텐츠 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기반 스토리형 콘텐츠'공급 필요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한 46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정책 효과, 계획수립의 충실성 등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7개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1등급(매우우수)인 2개 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생계비 증액(60만 원→70만 원), 지급기간 연장(최대 6개월 →12개월)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였다.

1:1 전자감독 확대, 심리치료 및 정신질환 대상자 초기 개입 강화 등 위험요인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특정범죄 재범률이 2025년 0.94%으로 전년 대비 0.06%p가 감소하였다.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3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6개(18.7%), 보통 21개(65.6%), 미흡 5개(15.6%)로 3단계 등급화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분야에서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과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었다. 최근 5년간 인력운영 추이와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방향과 분야별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직 진단·컨설팅과 자체 조직진단을 병행하여 업무량 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 및 부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등 조직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사분야에서는 평가기준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정과제 공유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가 활성화되어 상시학습 이수율이 높게 유지되었고, 유연근무제 참여 확대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필수보직기간 준수율이 높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나, 조직 특성상 계획인사교류 및 외부인사 임용 등 일부 지표에서는 추진 여건의 한계로 실적이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생애주기 관리와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디지털정부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정보자원 정비와 오류 개선을 통해 관리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폐합 검토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더불어 장애 대응 관리체계와 예방 점검, 보안 관리 강화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무부는 총 311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956개 부서 및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3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림 2-13 성과관리와 BSC 체계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환희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매주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57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34건으로 10건을 이행 완료하고 24건은 추진 중이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은 23건으로 14건을 이행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이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34건, 2025. 12. 31. 기준)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25년 6월	라이따이한 2세 비자 허용 검토	종 료
2	2025년 6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추진중
3	2025년 6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 대국민 공개 추진	추진중
4	2025년 7월	주가조작 수사 신속성·공정성 강화	종 료
5	2025년 7월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종 료
6	2025년 7월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7	2025년 7월	경제형벌 합리화TF 즉시 가동	종 료
8	2025년 7월	산업재해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종 료
9	2025년 7월	행정법령 중 처벌조항 조사·점검	추진중
10	2025년 8월	검찰개혁 쟁점 관련	추진중
11	2025년 9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응	종 료
12	2025년 9월	집합건물 관리비 부당이득 개선	추진중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3	2025년 9월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	추진중
14	2025년 10월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범죄 대응에 만전	종 료
15	2025년 10월	리스크 집중점검 실시	종 료
16	2025년 10월	출입국·이민의 체계적 관리방안 보고	종 료
17	2025년 11월	불합리한 기소사례 조사	추진중
18	2025년 11월	차별·혐오 근절 대책 수립	추진중
19	2025년 11월	혐오 발언 대응 신속 추진	추진중
20	2025년 12월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공소시효 배제 입법 추진	추진중
21	2025년 12월	로비 규제 입법 추진	추진중
22	2025년 12월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입국심사 유연하게 운영	종 료
23	2025년 12월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 개선	추진중
24	2025년 12월	신속한 형벌체계 정비	추진중
25	2025년 12월	마약 치료재활 인력 확충	추진중
26	2025년 1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중
27	2025년 12월	경미범죄 기소 남용 방지	추진중
28	2025년 12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중
29	2025년 12월	범죄수익 환수 강화	추진중
30	2025년 12월	독립적 마약 문제 전담기구	추진중
31	2025년 12월	교정시설 부족	추진중
32	2025년 12월	교제폭력 대응	추진중
33	2025년 12월	형사보상금 지출 추이 및 무죄율 통계 보고	추진중
34	2025년 12월	상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	추진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23건, 2025. 12. 31. 기준)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25년 6월	연구개발인력 해외유출 대응책 마련(과기정통부)	종 료
2	2025년 6월	고발당한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처리방안 등 검토(인사처)	종 료
3	2025년 7월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 마련(노동부)	종 료
4	2025년 7월	인천 맨홀사고 관련 현장 안전관리 면밀 조사 및 특단의 대책 마련(노동부)	종 료
5	2025년 7월	공공 일자리 사업 검토(노동부)	종 료
6	2025년 7월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발굴 및 예산안 반영(기재부)	종 료
7	2025년 7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마련(노동부)	종 료
8	2025년 8월	전시법령안 정비 추진(법제처)	추진중
9	2025년 9월	특정국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욕하는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경찰청)	종 료
10	2025년 9월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 및 백업 주기 파악(행안부)	종 료
11	2025년 9월	현장 신청 수수료 면제 등 지원 방안 마련(행안부)	종 료
12	2025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지적사항 검토(국조실)	종 료
13	2025년 10월	부처 주요 현안 정리(국조실)	종 료
14	2025년 10월	국정홍보 기능 강화(문체부)	종 료
15	2025년 11월	국내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비자제도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과기정통부)	종 료
16	2025년 11월	재외동포 건의사항(동포청)	추진중
17	2025년 12월	혐오·가짜·허위정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국조실)	추진중
18	2025년 12월	재외국민 현황 파악 시스템 개선(동포청)	추진중
19	2025년 12월	마약사범 재활치료 강화(복지부)	추진중
20	2025년 12월	임신중지약물 사용 문제(성평등부)	추진중
21	202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업무보고 실시(국조실)	추진중
22	2025년 12월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신속 추진(행안부)	추진중
23	2025년 12월	특사경 제도 현황 검토(국조실)	추진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1) 비상대비 계획 수립

전년도 을지연습 시 발굴한 개선과제와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시 법무·검찰·보호·인권·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계획인 『충무3700 법무부 집행계획』과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을 개정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충무계획 시행태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117개 소속기관의 시행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을지연습 실시

2025년도 국제정세는 세계적 군사분쟁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교착 국면이 지속되어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미국 중심 자유주의적 규범과 가치 중심의 질서에서 국익 중심의 다극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군사적 위협 위주에서 테러·국제범죄,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과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시 대비 정부 총 연습인 을지연습을 2025. 8. 18.부터 3박 4일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법무부는 충무집행계획 상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보완·발전시키면서 전시 법무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도상연습과 전시현안과제 토의주제로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전시 우발상황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장관 주재 전시현안토의로 법무부 전시 소관 업무를 고려한 드론 등 무인기에 의한 교정시설 방호대책과 같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법무부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림 2-14 2025년 을지연습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

장관 주재 전시현안 토의

3)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안보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시설 방호지침』을 개정하여 비상사태 시 법무시설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법무부 소관 53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방호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소속기관 방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호시설 및 전시종합상황실 운용태세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한편 2025년에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며 통합방위법규 개정 협의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평상시에도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였다.

나. 재난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1)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2021년 법무시설 내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본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2025년에는 급변하는 재난관리 환경과 경북지역 대형 산불 같은 대형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발굴한 보완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무시설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최신화하였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시설 내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및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으로 순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출입국·외국인본부 소속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기관 내 화재 발생 및 집단도주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법무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재난발생 현장의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13개 협업기능 작동 및 매뉴얼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림 2-15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현장 훈련

3)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사고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 노후화 시설물, 사고우려시설 등 12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민간전문가 188명, 전문업체 86곳과 협력하여 점검한 결과, 구조체 균열, 건축물 철근 노출 및 지붕 파손, 건축구조의 불안정성 및 옥상 누수 등의 결함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현장조치와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16 법무부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4) 월간 재난안전결산 제도 운영

법무부는 재난안전 예방과 관련하여 매월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 소속기관이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월간 재난안전결산 제도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월 중점점검테마로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을 선정하여 점검을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을 폭격한 집중호우로부터 별다른 피해 없이 법무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12월에는 '겨울철 화재 대비 시설물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정된 중점 테마 이외에도 일반 시설물·장비 및 매뉴얼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5) 일일재난위험 징후평가 실시 및 결과 전파

법무부는 일 단위로 재난담당 전문기관 자료, 언론보도 등 재난과 관련한 각종 징후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일재난위험 징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법무샘의 일일재난위험 신호등으로 전파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재난예방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 하였다. 만약, 위기징후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단계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무시설 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17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법무샘 게재

법무샘 내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배너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박상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과거의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반복 업무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업무효율 향상과 법무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행정 과정에서 생성·활용되는 각종 행정데이터와 외부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계·분석하여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절차에 업무자동화(RPA)*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전략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및 신기술 기반 행정은 법무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정보기술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행정 데이터 중 개방 확대 및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업무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문서 작성, 자료 검색, 파일 다운로드 등 반복적인 사무 절차를 사람이 수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 처리하는 기술

2) 추진내용과 성과

첫째, 법무행정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법무부 저활용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분석', '법무 정보시스템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지역별 미성년 외국인 현황 분석', '수용자 자살 위험 요인 분석',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분석' 등 총 8종의 과제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서 정책 검토 및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며, 별도로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감정상태(긍정, 부정) 키워드 분석 매뉴얼'을 작성·제공하여, 수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내용의 감정 흐름 분석, 보도자료에 대한 국민 반응 분석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기본·심화 과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법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정책' 등 총 13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공공데이터 실질적 활용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신기술 등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중 단순·반복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자동화 기술(RP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의뢰서 작성', '공무직 근태관리 및 급여명세서 전자우편 전송', '법무 정보시스템 일일점검' 등 총 9종의 업무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의뢰서 작성' 업무의 경우 연간 수행 시간을 80%(수작업 21,600분→자동화 처리 4,320분) 절감하는 등 업무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법무부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국민이 법무 공공데이터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오픈API* 방식의 공공데이터 2종〔장단기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월별 체류외국인 현황 조회 서비스〕을 포함하여 총 26종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로써 법무부는 현재 총 276종의 법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 활용 확대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프로그램

3) 발전방향

향후 법무부는 기존 행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자료의 데이터화, 연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확대하여 신규 데이터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 관련 뉴스 스크랩', '업무시스템 서비스 점검', '일일 현황 통계 작성' 등 총 15종 업무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중 업무자동화(RPA)를 추가로 개발·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2026년 하반기 중 내부 행정에 도입·적용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과 행정 효율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데이터 분석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업무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AI 학습데이터를 꾸준히 발굴하며, 사회적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선제 제공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이미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이 법무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였다. 2025년에는 대표 홈페이지와 온라인민원서비스 등 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접근성, 편의성 및 보안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법무정책 제안,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참여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참여 중심의 법무행정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2025년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관리수준 진단 100점,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95.86점을 달성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 참여형 온라인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법무정책제안, 장관과의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 수단과 연계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홈페이지 콘텐츠 품질 강화를 위해 통합검색 화면(UI/UX)을 개선하고, 첨부파일 음성낭독 기능을 도입하였다. 전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갱신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포용적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분기별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점검을 통해 정책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보안 분야에서는 연 3회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전 사이트에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였다.

온라인민원 서비스에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국립법무병원 토요면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자책(E-book)을 신규 공개 등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자 2,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0.5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의 '편리성' 항목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발전방향

2026년에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UI/UX)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24+ 개편에 따른 변호사·사법시험 합격증 연계 기능을 개선하고, 온라인 민원 신청 시간 분산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사용자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 총량관리 강화와 보안 점검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의 중심의 디지털 법무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다. 실무 중심 법무지식 축적·공유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이미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업무효율 향상 및 조직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무지식*의 축적·공유라는 목표하에 업무 개선사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 등 현장성과 실효성이 높은 자료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형 및 무형의 실천적 정보

2) 추진내용과 성과

2025년 2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지식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식등록 주간', '최초 등록 시 마일리지 점수 추가 부여' 등 지식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전개하였고, 단순한 지식 등록 실적보다 업무 연관성과 실무 활용도를 중시하는 평가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법무지식 중 창작지식 점유율이 4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5월 데이터·지식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내 데이터 업무 담당자와 지식활동 우수직원, 학습동아리 운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지식과 AI의 업무 활용 방안·학습동아리 사례 공유 및 분임 토의,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여 지식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분기별 우수지식인 선정 시 최초 지식등록 직원을 배정하여 지식활동 신규 유입을 장려하고, 연말 지식행정 우수직원 평가에서는 업무 연관성 및 창작 지식의 질적 수준을 핵심 기준으로 반영, 수준 높은 지식 활동을 전개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고품질 지식 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25년 7~9월 '법무지식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개인부문 '외국인 유학생 자주하는 질문 BEST 10', 단체부문 '직영작업장 운영 가이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지식을 발굴·포상하였고 부내 전 직원에 공람하여 지식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신규 학습동아리 9개를 자체 선정, 운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습동아리가 단순한 모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현안 해결 및 동아리 간 성과 공유, 우수 연구 사례의 지식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 성과가 조직 전체의 지식으로 확산하도록 노력을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업무 활용도가 높은 실무형 법무지식의 등록 및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와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업무 연관성과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지식 사례와 학습동아리 활동 성과를 연계하여 실무 노하우 발굴 및 활용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라. 법무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권만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등 위협 유형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기관 정보시스템과 주요 데이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고 운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제고를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AI 기반 공격 확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 고도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센터 중심의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위협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2026년도에는 보다 고도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2025년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상시 관제 및 점검·대응 체계를 운영하였다. 우선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일 평균 7억 6천만 건의 접근 정보를 분석·처리하여 해킹

시도 차단, 정보유출 예방, 보안 위협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침해 대응 분야에서는 비정상 경로 침입 시도 및 정보 수집형 공격을 식별·차단하였고,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총 2,694건의 취약점을 발굴·조치하였다.

또한 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 추진하여 총 2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해킹메일 대응훈련, 도상훈련, DDoS 대응훈련,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실전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위협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신규 침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해사이트 정보 26,751건을 제공하는 등 위협 대응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보안카드뉴스(12회), 뉴스레터(245건), 보안권고문(221건)을 발송하여 임직원의 보안 인식 제고와 자율적 보안 준수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25년 주요 실적은 공격 차단 31,587건, 정보 공유 67,352건, 사이버위협 예방 활동 75,640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공격 차단 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정보 공유 건수는 전년 대비 14.2% 감소하였으나, 이는 위협정보 공유 체계 효율화 및 운영 최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3) 발전방향

2026년에는 AI 기반 공격 확산과 공급망 및 국가기반시설 대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AI 기반 이상행위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공격 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관제 효율성과 탐지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백업시스템 구축과 정기 복구 훈련을 병행 추진하여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이러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2026년에도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마. 법무 통신망 고도화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정상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가 주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자체 행정전산망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법무부는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이 되는 노후 통신·보안 장비의 교체 및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체 대상 장비의 상당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거나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고, 이중화 구성이 미흡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무통신망 장애 발생 시 전자발찌 위치추적, 수용자 접견, 출입국심사 등 핵심 법무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회적 혼란과 국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및 보안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통신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을 중심으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이중화 구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핵심 거점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를 우선 교체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최신 사양의 장비 도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는 물론 통신망 처리 용량과 전송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네트워크 장비 외에도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증설하여 통신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제 체계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주요 기관의 핵심 서비스에 대해 통신망 이중화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중화된 네트워크 구조는 재난·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법무부 민원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향후 법무행정의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추가적인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발전방향

법무부는 향후에도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품질과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융합 서비스 수용을 위한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윤정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확대를 위해 2025년 5월 공수처와 이동통신 3사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연계를 추가하였고, 2025년 8월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 이동통신사 통지 업무 연계를 추가하였으며, 2025년 10월에는 형사사법포털과 경찰·해양경찰 간 사건 민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계 목록은 총 2,449종에 이르고, 하루 평균 약 210만 건을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93억 8,000만 건에 달하는 정보 공유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민원 서비스를 55종에서 172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인터넷·모바일 앱 등으로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표 2-7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5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25. 12.)
포털 접속	1억 1,051만 건	6억 3,208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112만 건	727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2,299만 건	1억 7,030만 건
벌과금 조회	123만 건	2,922만 건
민원서비스	18만 건	106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오은정

법무부는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형사사법 업무에 적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개통한 노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검찰·경찰·해양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여 202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36개월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 9. 19. 차세대 KICS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은 형사사법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미래지향 IT구조 개선을 전략목표로, 종이문서로 진행되던 형사절차를 전면 전자화하여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2-18 사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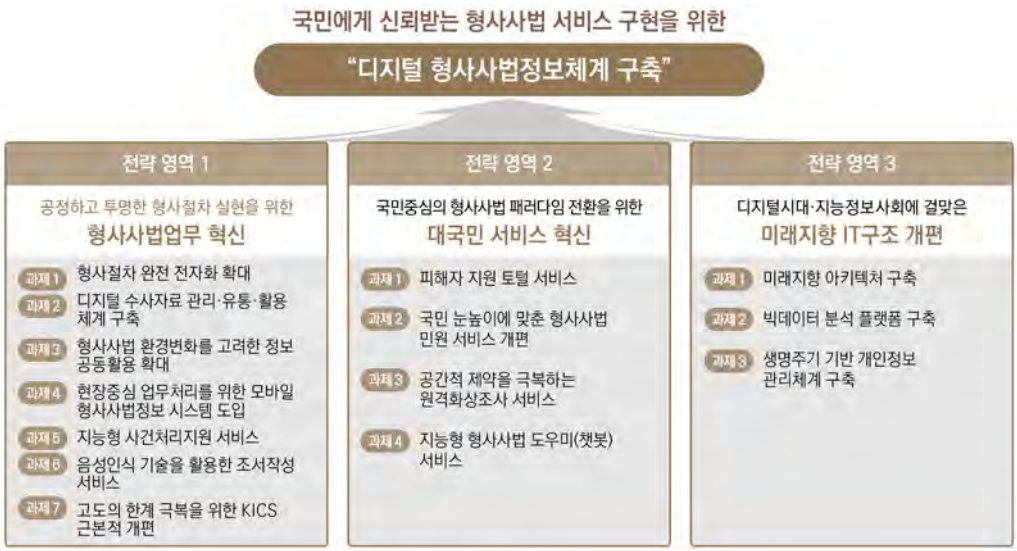

차세대 KICS 구축으로 법무부 및 검찰, 경찰, 해양경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적 처리기반을 마련하였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적용을 위해 2025년에는 법원과의 전자문서 처리를 위한 개발을 착수하여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시대를 준비하였다. 법무부는 다른 형사사법기관들과 함께 2025. 10. 10. 서울동부를 중점지역으로 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개시하였고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2025. 12. 15.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도입과 형사사법 기관 간의 전자적 자료 송·수신 확대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사건처리기간의 단축과 형사절차의 투명성, 국민의 절차적 권리 향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행정주사 윤영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5년에는 성별 편견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무정책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법무행정,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법무행정 정책 성주류화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4가지 대과제와 교육 대상별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법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개선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정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로드맵 마련 등 수요를 반영한 12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인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개발·배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은 집합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은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5급 이상 관리자 교육과 6급 이하 실무자 교육을 각각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1박2일 합숙교육으로 실시하였다. 관리자 교육 100명, 실무자 교육 120명, 신설한 양성평등업무 담당자 과정을 3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집합교육은 전체 9회, 25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은 16회 운영하여 총 978명,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214회 운영하여 총 4,780명이 이수하였다. 2025년의 양성평등교육 실적은 총 239회, 6,009명으로, 연초 성과목표인 221회, 5,656명 이상 수료와 교육 만족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2024. 89.9점 → 2025. 90.2점)

법무부 '2025년 양성평등의 날'은 분기별로 총 4회 운영하였다.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법무샘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법무부 '2025년 양성평등주간'에는 본부 직원 1,000명 대상의 '커피차 나눔 행사'로 '보드판

양성평등정책 설문조사 이벤트'를 운영하고, '영화상영교육'과 양성평등 키워드를 활용한 'N행시 공모전', 양성평등의식 수준 확인을 위한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형 조직문화를 개선하였다.

그림 2-20 양성평등주간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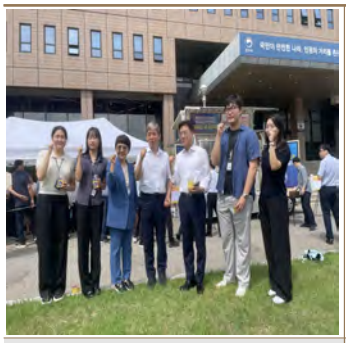

커피차 행사

영화상영교육

N행시 공모전

2) 정책·제도 분야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3기를 발족(2025. 12.)한 이래,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안건으로 양성평등 중장기정책 연구용역 자문, 인권친화적 양성평등 환경개선 사업 방향 논의 등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주제를 상정하여 운영하였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우리 부 2025년 시행계획 총괄 부서로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 총 10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 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우리 부 2025년 시행계획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등 4개 정책 목표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확대 및 신분 비공개 수사 등 24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가 포함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이 통과(2025. 10.)되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에 따른 범죄행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2025. 6.)되는 등, 주요 과제를 완료하였다.

노후화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인권친화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법무 시설을 대상으로 전 소속기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현황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인권친화(양성평등) 환경개선'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25년은 기관 3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2026년부터 전 소속기관 대상으로 정식 사업화하여 시행 예정으로, 법무부의 양성평등 정책 수준 제고를 도모하였다.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정책 소통간담회(2025. 7.), 소속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자 간담회(2025. 9.)를 실시하여 다양한 통로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법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법무부 홍보물 제작 양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2025. 8.)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하는 등,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정책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그림 2-21 정책·제도 개선 및 발굴

양성평등정책 소통간담회

소속기관 간담회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폭력예방교육의 다양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사건 처리의 내실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를 고려한 이수율을 제고하고자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2024년) 데이터·실제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찾아가는 '현장소통 폭력예방교육'을 신규 구성하여 자체 교안을 개발하고 소속기관 21개소, 총 870명의 방문교육을 실시(만족도 4.65점)하는 등 현장소통 강의를 운영하였다. 본부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및 2차 피해의 이해'를 주제의 폭력예방교육(본부 직원 참여율 2024년 88.8% → 2025년 95.4%), 고위직 대상의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조직을 위한 관리자 리더십' 세미나를 실시(고위직 참여율 2024년 88.2% → 2025년 94.4%)하고, 장관의 '성비위 엄정 대처'를 천명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시스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업무 지도점검(4개 기관)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10개 기관)을 확대 실시하였다.(2024년 1회 → 2025년 2회)

그림 2-2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본부 직원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폭력예방 세미나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조직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급별 교육, 합숙교육, 영화 등 문화융합형 교육 도입, 소속기관 대상의 찾아가는 현장소통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 지도점검과 모의훈련, 기관장의 성비위 엄정 대응 천명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하였다.

향후 교육방법을 보다 다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그간 업무추진 과정과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반영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고도화를 통해 건강한 성평등 문화가 조직 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백지완

2025년 법무연수원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위한 역량 있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을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두루 갖추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며 소통 능력과 배려심 및 진취적 사고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세부 목표로 하여 검찰·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과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총 718개 과정, 6,071회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총 491,091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집합교육은 172개 과정 297회 11,073명, 사이버교육은 546개 과정 5,774회 480,018명이다.

교육과정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교육수요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된 직무교육을 신설하고 참여·실습형 과목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예술·인문학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양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직렬별로는 특화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검사 교육에서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 및 「국민참여재판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신설하여 공익대표 기능과 공판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검찰직 교육에서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역량 강화」 과정 신설을 통해 기업범죄 대응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보호직 교육에서는 「무도실무관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신설하여 전자감독 무도실무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출입국관리직 교육의 경우 「출입국 9급 신규자 보수」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경력채용자의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교정직 교육에서는 「교정 빅데이터 분석 실무자 양성」, 「심리적 취약 및 중독 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 과정을 신설하여 과학적 교정행정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과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행정기관 국가송무 수행자, 군검사 등 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 전반의 법 집행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박양규

1) 전결검사 역량강화,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 등 과정 신설

가) 추진배경

형사부 전문화 과정 교육생 대부분이 초임 검사와 저년차 검사로, 경력검사는 신임부서장 교육 전까지 사실상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고, 7년 이상 경력검사의 경우 사법통제, 영장처리, 감찰 등 새로운 업무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전결권을 부여받고, 부서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겸하므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여 「전결검사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검사의 직무가 민사·가사·행정 영역까지 확대되어 기존 수사 및 공판 중심의 교육과정에 검사의 공익대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변화된 공판환경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신설하였다.

나) 상세내용

경력 7년 차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결검사 역량강화」과정은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새로 부여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하였고, 경력검사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과정은 일선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대한 주임검사와 공익전담 변호사를 섭외하였고,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였다.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직무역량 강화」과정의 과목은 배심원 선정, 공소유지 유의사항, 모의재판 및 강평 등 국민참여재판 전반을 다루는 과정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각 신설한 과정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전결검사 역량강화」과정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위한 과목으로 '교정, 보호, 출입국' 업무 소개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과정은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실제 사례에 대한 주임 검사와 공익 전담 변호사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국민참여재판 직무역량 강화」과정도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아나운서를 섭외한 스피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검사 교육과정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 전까지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개정 후에는 검사의 역할과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과 일선청 수요 및 검사들의 요청에 맞춰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이재경

2)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정의와 인권에 대한 열정 및 실력을 겸비한 신임검사 양성을 목표로, 검찰 업무 관련 기본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해 로스쿨·법무관·경력 신임검사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 합격자들과 법무관·경력 출신 신임검사들 간 법조 경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무경험 및 형사법·형사절차 관련 실무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사무개론, 결정문 작성법, 공직윤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교준비과정교육(3~4월)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신임검사 통합교육(5~10월)을 통해 결정문, 조서, 영장 및 수사보고서 작성법과 조사·공판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사건·공판기록으로 지도교수의 맞춤형 1:1 지도를 병행하는 등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을 강화하여 신임검사의 직무역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출신과 기수가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상호 존중과 연대감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25년도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신임검사 총 139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3학기(기본·심화·종합 직무교육)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변호사시험 14회 신임검사 90명은 입교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관 이후, 변호사시험 11회(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4명 및 당해 추가로 임관한 경력 신임검사 25명은 8월 임관 이후, 각 10월까지 종합직무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신임검사들이 정식 발령 후 신속히 검찰 업무에 적응하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공판 교육(조서·영장·결정문

작성, 증인신문조서·의견서 및 보고서 작성, 공판·조사기법 1:1 지도 등)을 통해 신임검사들의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임검사 교수진이 발굴·조제한 기록들을 활용한 통합형 기록실습을 확대하여, 신임검사들로 하여금 사건 처리의 방향과 작성 필요 서류를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게 한 후 통합 기록실습 답안에 대한 지도교수 1:1 첨삭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도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신임검사들이 민생범죄 사건에 대한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재산범죄 주요 판례, 민사집행법, 보전소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실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민·다중 피해범죄, 기업·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 소속 회계지원팀을 통한 기본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 소속 전문인력을 강사로 초빙하여, 통신·문서감정·DNA·디지털포렌식·가상화폐추적기법 등 과학수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진술증거 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 기초한 형벌권 집행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은 장애인·재심 전문 변호사 등 실무인력을 섭외하여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성평등·수평적 소통 문화와 관련한 토론을 확대 편성하여 구체적인 사건(직장 내 성범죄, 증오범죄, 혐오표현, 정신질환과 장애 등)에서의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유도하고 대검 인권정책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검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강의하여 신임검사들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조사·공판 교육은 롤플레잉 '조사실습',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 참여형·체험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신임검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 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직무역량평가 관련하여서도 과목별 1,000쪽 상당의 실제 기록을 배부하여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인지,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체 서류를 작성토록 하는 등 종합적 요소가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일선 업무 처리에서 배당기록을 검토하여 결정,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였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균형적이며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확대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직무윤리 사례토론 등의 소양교육, 멘토-멘티 방식의 지도교수 '1:1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업윤리를 겸비한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개선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임웅진

1) 정책적 필요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교육과정 개편

가) 추진배경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반 지능형 범죄 증가, 범죄예방을 위한 면밀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 증가,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양한 출입국 관련 행정 수요 증대, MZ세대 공직 진입 확대 등 변화하는 업무·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렬별로 단계별·전문화 교육과정에 필요한 과정들을 신설·조정·폐지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첨단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기술경쟁의 심화로 기술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등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검찰직 교육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 강화」과정을 신설하여, 전국청 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D-NET 사용역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실무」, 「재산형 집행 실무」과정의 교육 기간을 확대하여 수사관들의 범죄 대응 수사역량과 형 집행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보호직 교육에는 「무도실무관 역량향상」과정을 신설하여, 전자장치 훼손 및 경보처리 등 긴급상황별 비상출동 시 직면하는 무도실무관의 위기 대응능력 향상 및 직무 관련 전문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별도 집합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았던 소속기관 일반직원(운전, 전기, 방호 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 직무역량강화」과정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청렴한 공직 생활 등 올바른 공직관 정립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출입국관리직 교육에는 「출입국 9급 신규자 보수」과정을 신설하여, 9급 경력 채용 직원의 원활한 조직 분위기 적응을 도모하고 관련 업무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출입국 9급 신규자」 과정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강화하는 등 신규 공무원의 초기 직무 적응력,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신규자 대상 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문 분야 수사역량 및 형 집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정 신설·조정, 범죄예방 관련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신설, 출입국 행정 관련 실습·실무 위주의 교과목 개편을 통한 내실 있는 신규자 과정 조정·운영 등에 대한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 단계별·전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았다.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법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 필요 및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 확대할 계획이다.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주무관 박승구

2) 교정행정 홍보 및 교정직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교정훈련센터는 신규 교정직 7·9급 교육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용동 근무, 긴급상황별 조치 및 구조 훈련, 포승술, 진압술 등 실무 중심의 실기 훈련을 진행하는 교정직 종합현장실습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정훈련센터는 1,134.33㎡(343평)의 면적에 교정역사관, 모의 수용동 및 법정, 신입실, 중앙통제실, 출정 대기실, 접견실, 전화실 등을 구비하여 교정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교육생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정훈련센터는 법무연수원 내·외부 교육생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설참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직 교육과정 및 교정현장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특히 2025년에는 「신임검사 통합」과정, 「검찰 5급 승진자」과정, 「보호직 신규자」과정과 국군교도소 직원, 사법연수원 교수진,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등 다양한 내·외부 관람객이 방문하여 교정역사관, 모의수용동, 모의법정, 진정실, 보호실 등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장비를 체험하는 등 교정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및 교정행정의 발전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5년에 실시한 주요 참관 및 견학은 아래와 같다.

표 2-8 2025년 교정훈련센터 참관 및 견학 현황

구 분	신임검사 과정	검찰 승진자 과정	보호직 신규자 과정	국군교도소 직원	사법연수원 교수진	일본총합연구소 대표단
인 원	110명	70명	58명	8명	5명	5명

더불어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교정훈련센터 내 디아섹 홍보액자를 전자액자로 교체하여 교육생 자체제작 UCC 영상 등 시각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림 2-23 법무연수원 교정훈련센터 참관 및 견학

사법연수원 교수진 참관

일본총합연구소 대표단 참관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훈련센터는 향후 참관 및 견학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현장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정행정과 법무연수원 교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알리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주무관 홍재성

3)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계획 수립

가) 추진배경

최근 중독 수용자 및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에 따라 현장 직원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와 처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정사고 대응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교정행정 구현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통합적 리더십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교육 대상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정 현장의 핵심 현안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신설 및 실무 중심적인 교육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중독 수용자 및 정신질환 수용자 급증에 대응하여 「심리적 취약 및 중독 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과정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 상황 조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용자 처우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정 빅데이터 분석 실무자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연계한 위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였다.

5급 승진후보자의 기초역량 강화 및 기관장급 고위공무원의 조직 내 소통 기술 향상과 환경변화 적응을 위해 「5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위공무원 역량 심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은 이론 위주 교육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강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정직 7급」과정의 현장실습을 2주로 확대하고 교정훈련센터를 통한 상황별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조기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 실무 중심의 교육 혁신을 통해 조직 내 소통이 강화되고 교육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에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 심화 교육」과정을 직렬 통합 운영으로 확대하여 인적 교류와 교육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및 「작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과정을 신설하여 맞춤형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앞으로도 핵심 현안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최동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표 2-9 2025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이주영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우만우	
위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나영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종헌	
위 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준	
위 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위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옥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 관련 외국 법무·검찰의 조직운영 및 교육현황 비교 연구』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주제 2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5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 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2-10 2025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관련 외국 법무·검찰의 조직운영 및 교육현황 비교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2	형사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민사 법리 연구 - 중요 재산범죄 관련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 구현

>>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운영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상세내용

2021년을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및 진천군 지역주민과 진천군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게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을 주말·공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개방하고 있다.

진천 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협의에 따라 사용료는 100% 감면 중이며, 2025년 테니스장 11회, 대운동장 4회, 풋살장 42회, 실내체육관 96회 개방하였다.

또한 테니스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풋살동호회는 인근 지역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시설개방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4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다목적 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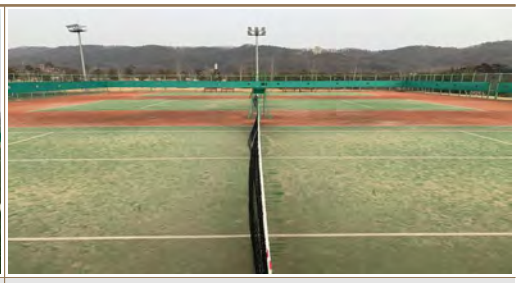

〈테니스 코트〉

바. 국제협력 강화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최동우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ODA) 검사 등 법조인,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제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91개국 144개 과정, 2,281명을 대상으로 연수국의 법무·행정 제도개선 지원 및 대한민국의 선진 법무·한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실시한 국제연수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2-11 2025년 국제연수과정 내역

국가	과정명	현지/초청	연수기간	인원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초청	5. 18. ~ 5. 31.	13명
라오스	라오스의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감식 역량 강화	초청	7. 6. ~ 7. 19.	15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익 위해자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	초청	8. 31. ~ 9. 13.	15명
캄보디아	캄보디아 법무부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초청	10. 13. ~ 10. 25.	15명

법무연수원은 2025. 4. 22.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2025. 5. 14.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 국제연수 등 상호 협력분야 MoU(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고, 국제검사협회(IAP)와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25. 12.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4회 국제검사협회 아·태지역 초청연수」 개최를 지원하였다.

또한 태국 지방검찰청 대표단, 우즈베키스탄 국립 타슈켄트 법대 총장,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등의 법무연수원 방문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3) 향후 계획

풍부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형사사법 발전 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국제연수 과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해외 형사사법기관과 법무·검찰 분야의 공동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추진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와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무연수원 본원이 진천군 소재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10주년을 맞아 더 큰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점진적인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방수, 각종 내외부 시설물 교체 등의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 본원은 충북 진천군 소재의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 10주년을 맞아 직원 공모를 통해 개정 원훈과 카페테리아 명칭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원훈석 등 개선 사업, 카페테리아 현판 제작 및 인테리어 개선 사업과 각종 표지판 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새벽에 출근하는 조리원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출근자 전용 주차공간을 식당 근처에 마련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고, 야간시간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던 북문에 출입증으로 통행 가능한 회전게이트를 설치하여 직원과 교육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보수·보강을 실시하였다. 제2강의동 및 인동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실내체육관 및 국궁장 조명기기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여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림 2-25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원훈석 변경 사진

행복관 카페테리아 개선 사진

용인 분원은 개청 37년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도모와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해 가로등 교체, 장애인 램프 교체, 원훈 옆 광장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특히 사용률이 저조한 기존 족구장을 개선하여 풋살 및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직원 및 교육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종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생활관용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 본관 보도블럭 교체 등 주요 시설물의 적시 교체를 통해 안정적 시설 유지를 도모하였다.

그림 2-26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구장 설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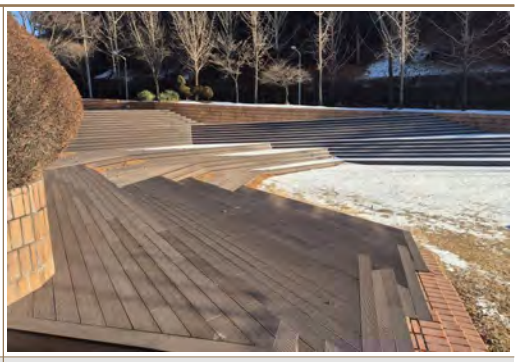

노후 광장 개선 전경

3) 향후 계획

진천 본원은 이전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조경관리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제2차 조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좀 더 수준 높은 조경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본관동 및 수안당 옥상방수, 대운동장 조명기기 교체, 배수불량 둘레길 개선 및 보도블럭 재정비 등 토목 시설개선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분원은 생활관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본관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교육·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무연수원은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생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제 2 절 | 정책홍보업무

1. 기관장 소통활동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법무부장관 인터뷰(총 15회)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퇴근, 정책현장 방문 및 국회 출석 시 다수 언론을 상대로 즉석 일문일답 방식의 언론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여 주요 법무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법무정책 이슈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효율적으로 소통하였다.

그림 2-27 법무부장관 인터뷰

MBC 인터뷰(2025. 11. 3.)

KBS 인터뷰(2025. 12. 2.)

나.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총 9회)

중요 현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개최함으로써 주요 현안 및 법무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법무부장관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2025. 1. 14.) △명태균 특검 법안 관련 브리핑(2025. 3. 14.)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2025. 4. 1.) △법무부 핵심과제 관련 브리핑(2025. 4. 2.)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2025. 5. 12.)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5. 8. 11.)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브리핑(2025. 8. 28.)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2025. 11. 19.)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2025. 12. 19.) 등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2-28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5. 8. 11.)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2025. 12. 19.)

2. 언론 홍보활동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실국본부장 언론 브리핑(총 1회)

법무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본부장이 2025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1회의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국제법무국장, 2025. 11. 19.)이다.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총 379건)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 실시하였다. 연간 보도자료 299건을 배포하여 법무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80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법무정책 관련한 언론사의 취재 요청 953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하였다.

다. 오보 대응(총 70건)

대변인실은 법무부 정책 관련 언론 보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간 70건의 오보 및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 직접 해당 언론사를 접촉해 오보 내용이 신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공식적 조치를 요구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홍보 기획

>> 대변인실 사무관 박종범

가. 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 및 대응

법무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주제 선정 등을 위하여 매주 대변인 주재의 '주간 홍보기획 회의'(이하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는 대변인 주재로 홍보기획팀장, 홍보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법무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취업 사기 등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외 홍보협의체인 국정홍보점검회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입체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표 2-12 대내·외 홍보협의체

구분	홍보협의체	참석 대상	주재
외부	국정홍보점검회의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대변인	문체부 2차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	문체부 차관보
	외신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외신대변인	해외홍보정책관
내부	주간 홍보기획회의	홍보기획팀장, 홍보 담당 사무관 등	대변인

나. 정책소통평가 실적 관리

국무조정실에서는 부문별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이 시행되어, 정책소통평가(특정평가) 세부 지침 중 디지털 소통 및 언론보도 대응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변인실은 변경된 평가 지침에 따라 지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지표별 실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평가에 적극 대비한 결과, 2024년 '미흡'에서 상승한 '보통'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및 이벤트를 기획·제작하였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포맷(시리즈·숏폼·이벤트·협업)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국민 정책정보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지표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3 정책소통평가 지표별 주요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정책 소통 활동	부처 정책홍보 참여 활동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회의, 외신대변인 협의회 참석을 통한 부처 정책홍보 참여 활동 강화 • 타부처 협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우수 홍보사례를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무정책에 대한 전 부처 공감대 형성
	부처 보유 매체 협업 홍보	• 보유 매체(영상·문자매체, 간행물)를 활용하여 범정부 협업 홍보 활동 참여 - 보유 매체 : 영상모니터 43대, 문자전광판 10대, 간행물 1권 - 지정·수시과제 100% 표출
정책 소통 성과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소통	• '디지털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실시 •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정책 소통 우수사례 제출 -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무행정〉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선순환적 홍보 • 영문 보도자료 배포, 외신 취재지원 등 외신과의 소통 노력 지속
	언론보도 대응 및 우수사례	•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오보대응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외국인 입국 확대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 및 사회적 혼란 차단에 기여 - 온·오프라인 오보대응 70건
	디지털 소통	• (영상) 기관장 현장방문, 기획 홍보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법무부 SNS 채널 활성화(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이미지) 보도자료 배포 당일 카드뉴스 제작·배포하고, 카드뉴스 외에도 국민 체험형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
	기관장 소통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를 매주 점검하여 실적 관리(실·국·본부 협조) • 기관장 SNS 활용 소통 성과(신설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협조
체감도	소통 만족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온라인 소통 체감도	•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홍보에 활용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

다. 외신 소통활동

2025년에는 코시스센터에서 주최하는 외신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 연수에 꾸준히 참석하여 타 부처 외신대변인과 협업을 강화하고 외신기자와 직접 소통하였다. 국내 상주 외신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여 외신 취재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 국제투자분쟁 사건 등 외신에서 관심 있는 법무부 주요정책을 영문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정부와 민간·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주 배경 인구 정착지원 정책인 '멘토링 특강'과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외신프레스 투어를 진행하고 이주배경 인구의 한국 정책을 지원하는 민·관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였다. 또한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출입국 주요정책을 영문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특히,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로 국익을 수호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승소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체부와 협업하여 외신기자 간담회(「법무부 국제법무국의 역할과 성과」)를 개최하였고, 이후 영문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등을 연달아 실시하며 국제 법무정책 성과에 대한 외신 소통활동을 적극 펼쳤다.

라. 홍보 콘텐츠 광고 강화

법무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 홍보를 추진하였다. 2025년 9월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와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버스 TV 5,000대, 지하철 5~8호선 주요 환승역, 신림선 전 구간, 서울 주요 아파트 타운보드 등 생활 밀착형 옥외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CBS 라디오 캠페인을 병행하여 "공유만 해도 범죄"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OTT·SNS·라디오를 결합한 타깃 맞춤형 미디어 믹스 전략을 통해 캠페인 영상 총 300만 회 이상 조회, 정책 관련 문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민 안전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법무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림 2-29 홍보 콘텐츠 광고

신림선 미디어 포스터

아파트 타운 보드

OTT 티빙 광고 화면

OTT 넷플릭스 광고 화면

4. 대국민 소통활동

>> 대변인실 서기관 이상우

가. 대국민 캠페인 진행

캠페인 전개에 앞서, 신종 디지털 범죄와 무차별 범죄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과 함께 캄보디아 취업 연계 납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온라인 범죄가 현실의 신체·생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 필요성이 커졌으며,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를 결정하였다.

1)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취업 사기 등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함께 해외 취업을 빙자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해,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였다. 특히 2025년 10월 캄보디아 취업 연계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 피해 사례를 반영한 시의적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였다.

본 캠페인은 “공유만 해도 범죄”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제작·공유·시청 전 과정이 중범죄임을 명확히 알리고, 해외 취업 사기와 연계된 위험 요소를 함께 경고하는 통합형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OTT, SNS, 라디오를 결합한 타깃 맞춤형 미디어 믹스 전략을 통해 젊은 층의 높은 노출 빈도를 확보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라디오 매체를 활용해 생활 공간 속 침투형 소통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캠페인 영상 총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해외 취업·디지털 범죄 관련 정책 문의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실제적 관심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30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취업 사기 등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딥페이크 영상(2025. 10. 1.)
▲조회수 1,054,964

딥페이크 영상(2025. 10. 1.)
▲조회수 865,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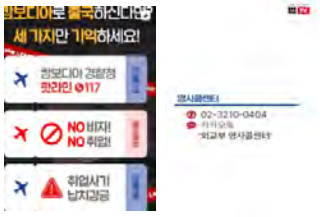

캄보디아로 출국하신다면(2025. 10. 20.)
▲조회수 1,427,115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법무부는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역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도 홍보와 함께, 피해 이후의 회복과 지원 절차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소통 전략을 병행하였다.

서울버스 TV, 지하철, 경전철, 아파트 타운보드 등 옥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라디오 광고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유튜브 채널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장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를 병행 제작하였다. 해당 콘텐츠는 인플루언서가 피해자 관점에서 센터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정책 정보를 일상적인 서사 속에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캠페인은 범죄 원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재범 방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범죄 피해 발생 이후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법무부의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중심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2-3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관련 콘텐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캠페인
서울버스 TV
(2025. 10.)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캠페인
광화문역
(2025. 10.)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2025. 7. 21.)
▲조회수 94,208

가족을 지키는 우리의 일상
(2025. 11. 30.)
▲조회수 30,818

나.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생중계

법무부는 주요 정책 현안과 국가적 이슈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무 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2025년에도 법무부 유튜브 채널(법tv)을 활용한 실시간 생중계를 운영하였다. 2025년 실시간 생중계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 브리핑과 법무부 주관 공식 행사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정책 브리핑 분야에서는 '2026년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특검법안 관련 브리핑',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등 주요 법무 정책과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정책 배경과 결정 내용을 즉시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제21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 발표' 등 법무부 주요 공식 행사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도 주요 행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생중계 운영은 법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신뢰 기반 소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2-32 법TV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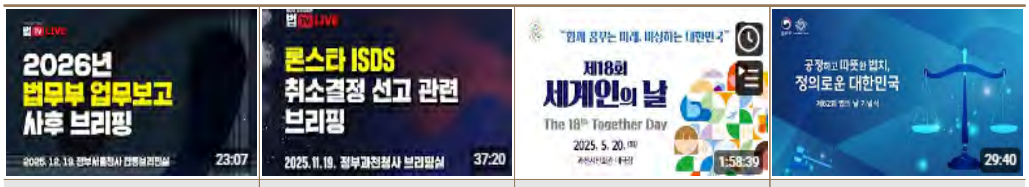

2026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 론스타 취소결정 브리핑 | 제18회 세계인의 날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다. 디지털 매체(SNS) 기반 정책홍보의 효율적 운영

2025년 법무부는 유튜브(법tv)·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플랫폼별 역할을 분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포맷 다변화(시리즈·숏폼·이벤트·협업)를 통해 정책 메시지의 접근성과 확산력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특히 복잡한 정책 정보를 '쉽게-재미있게-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설계를 통해 단발성 이슈 홍보를 넘어, 중·장기 소통 자산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채널 운영의 효율을 높였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 시리즈 제작으로 정보 전달력을 고도화하였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우선 선정해 '빅.파.이' 시리즈를 기획·발행하고,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교육형 포맷('일타

강사' 콘셉트)을 적용하여 어려운 정책(비자·전자감독·교정 등)을 명확하고 친숙하게 전달하였다. 대표 콘텐츠인 「[빅.파.이①] 비자첵~! 대한민국 비자?」(2025. 7. 11.)는 조회수 53,775회, 댓글 225개를 기록했으며, 후속 시리즈(②전자발찌·③교정 등)로 연계해 정책 이해–관심–참여의 흐름을 구조화하였다.

둘째, 현장 기반 스토리텔링과 연속물 기획으로 공감·신뢰를 확장하였다. 교정 현장을 다룬 「천안개방교도소 키움동 이야기」(1부 2025. 8. 13./2부 2025. 8. 21.)는 교정정책의 인간적 가치와 집행의 투명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2부작 구성으로 제작되어, 총 조회수 127,076회 및 높은 공유 반응을 확보하였다. 특히 댓글에서 교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현장 인력·운영 개선 등 구체적 제안이 도출되는 등, 콘텐츠가 정서적 공감대를 넘어 정책 피드백 창구로 기능하도록 운영 성과를 축적하였다.

셋째, 참여형 콘텐츠와 협업 확산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MZ세대 친화 포맷(심리테스트/MBTI형)을 적용한 「저스티스 DNA」 4단계 시리즈(2025. 8. 6.~8. 11.)를 통해 흥미 유발→정보 제공→참여 독려의 흐름으로 설계했으며, 특히 4차 이벤트 게시물은 댓글 937개, 좋아요 828개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호작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민감 사회 이슈(묻지마 범죄 등)는 민간 전문 채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와 협업(2025. 7. 21.)하여 심층 스토리텔링 구조에 정책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법무부 채널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였다(조회수 92,399회, 좋아요 1,810개, 댓글 512개).

이와 같은 운영은 ①시리즈 기반의 지속 가능 소통 구조 구축, ②현장성과 공감에 기반한 신뢰 형성, ③참여·협업을 통한 확산 효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채널 운영의 질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정책 소통의 효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림 2-33 정책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및 이벤트

빅파이① 일타강사가 정리! (2025. 7. 11.) ▲조회수 53,775	빅파이② 전자발찌 빈틈없이! (2025. 7. 28.) ▲조회수 57,272	죄지은 엄마! 키움동 이야기! (2025. 8. 31.) ▲조회수 126,698	국민이 작가! 국민이 감독! (2025. 8. 18.) ▲조회수 419,151

라.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 혁신

>> 대변인실 사무관 양지훈

올해 법무부는 법무 정책에 대한 국민공감과 이해를 넓히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접목한 이미지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2025년 대변인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드뉴스는 111건이며, 카드뉴스 외에도 인터랙션을 활용한 국민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

카드뉴스 제작 시 국민의 이목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콘텐츠의 전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각적 위계를 조절하는 등 홍보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1) 시각적 주목성과 메시지 직관성을 강화한 콘텐츠 구성

단순 정보 나열형 홍보물에서 벗어나 시각적 흡입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한 카드뉴스 콘텐츠 기획·제작에 주력하였다. 정형화된 공공기관 홍보물 형식에서 탈피하여 광고적 표현기법과 스토리텔링 요소를 접목하고, 국민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표지 콘셉트와 레이아웃, 색채 및 그래픽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동시에 갖춘 이미지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핵심적인 정책 메시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구성하고, 시각적 위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을 유도하는 등 콘텐츠의 주목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조회수 11,554회, 2025. 7. 22.), △추석맞이 국민안심 정책한상!(조회수 15,151회, 2025. 10. 2.), △민생엔 생기! 지역엔 활력! 관광 활성화 정책(조회수 11,811회, 2025. 10. 23.) 등에 접목되어 높은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하나의 카드뉴스에 모든 정보를 과도하게 담기보다는 정책 주제를 여러 편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단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담긴 카드뉴스 중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조회수 11,465회, 2025. 7. 10.), △Welcome! 글로벌 출사표!(조회수 9,317회, 2025. 12. 2.) 등은 높은 조회수와 선호도(좋아요)를 기록했다.

아울러, 장관의 주요 현장 행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장 세 컷」 시리즈를 기획·운영하였다. 해당 시리즈는 3장의 이미지로 구성하여 정책 현장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짧은 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의 주요 일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세컷]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조회수 18,579회, 2025. 9. 22.), △[현장세컷]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조회수 16,033회, 2025. 9. 22.) 등의 조회수와 이용자 반응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장관의 현장 행보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34 시각적 주목성과 메시지 직관성을 강화한 이미지 콘텐츠

추석맞이 국민안심 정책한상!
(2025. 10. 2.)
▲조회수 15,151

Welcome! 글로벌 출사표!
(2025. 12. 2.)
▲조회수 9,317

[현장세컷]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2025. 9. 22.)
▲조회수 16,033

2)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 기반 콘텐츠 제작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및 정책 확정 이전 시점에서 국민에게 법무부의 정체성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 상호작용 기반 인터랙션 콘텐츠 '나의 저스티스 DNA'를 기획·제작하였다. 법무 정책과 제도가 아닌 법무부 고유의 소속 직군을 홍보 주제로 하여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일반 대중에는 다소 낯선 법무부의 다양한 직군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콘텐츠에 접목시켜 몰입감 있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해당 기획은 △인터랙션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최종 결과물로 하였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댓글 이벤트 기획을 추가로 실행하였다. △인터랙션 콘텐츠는 12,806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두 편의 △카드뉴스는 각 21,031회, 15,906회의 조회수를 나타냈다. △댓글 이벤트는 396,765회의 조회수와 922개의 댓글, 8,232개의 좋아요라는 최종 참여수를 보여 효과적인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35 상호작용 기반 콘텐츠: 나의 저스티스 DNA

[인터랙션 콘텐츠] 나의 저스티스 DNA (2025. 8. 11.)
▲조회수 12,806

[카드뉴스] 법무부를 만드는 사람들 저스티스 DNA ① (2025. 8. 7.)
▲조회수 2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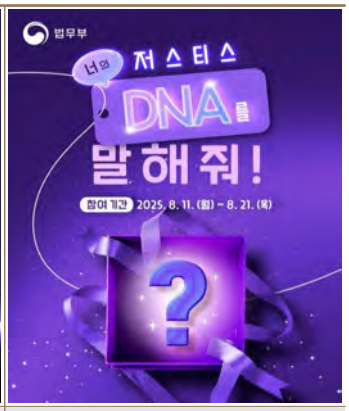

[SNS 댓글 이벤트] 너의 저스티스 DNA를 말해줘! (2025. 9. 22.)
▲조회수 396,765, ▲댓글 922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 대변인실 서기관 이상우

어려운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8.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초등부(1), 중등부(1), 고등부(3), 대학부(20), 성인부(15) 총 40명을 선발하여 총 12개월간 활동하였다.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2025년 한 해 총 930건의 기획기사, 카드뉴스, 영상을 제작·게시하였고, 산불 현장 인명구조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2025. 4. 18.), 2025 법무부 청렴워크숍 현장 취재(2025. 5. 28.),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2025. 8. 12.), 서울남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2025. 10. 21.), 김천소년교도소 제로캠프 뮤지컬 '꽁' 공연 취재(2025. 11. 20.) 등 다양한 법무 현장을 취재하여 기사화하면서 법무 정책 현장을 친근하게 소개하였다.

그림 2-36 국민기자단의 다양한 법무현장 취재 모습

제 3 절 | 법무업무

1. 민법 전면개정 추진

>>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법무관 최우석, 법무관 송기우, 법무관 윤지석

가. 추진배경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사법(私法)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함에도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입법자의 입법이 아닌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서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하여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첫 번째 과제로 법률행위·채무불이행 등 사법(私法)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법 규정들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12. 18. 국회 제출하였고, 후속 과제로 국민 경제활동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저당권·유치권 등 담보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 주요 추진 내용

1) 계약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2월 입법예고를 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 12. 18. 국회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①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② 종래 규정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③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④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해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 담보법 개정안 등 마련 추진

법무부는 「민법」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법 후속 과제로 국민의 경제활동 및 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당권·유치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기초위원회 회의를 거쳐 담보법 개정안 예비초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검토위원회에서 예비초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 사항, 규율 목적, 비교법적 상황에 대한 개관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민법개정위원회는 담보법 후속 과제로 소멸시효, 등기의 공신력, 취득시효 등 권리변동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기초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에 학문적·실무적 합의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법개정위원회에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고, 법무부는 관련 학회와의 교류, 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나아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자 국민생활의 인프라인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법률분쟁의 합리적·효율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무관 홍형석, 법무관 조성우

가. 변호사 징계 및 변호사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추진배경

사회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종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생겨나는 속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제22대 국회에서도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행정소송에 조속히 대응하였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 소송 법제와의 정합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추진내용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중 공석을 새로이 위촉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80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정된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대상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전부 승소(16건)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각종 법률에 관한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의견을 회신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및 퇴직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법조인접직역 자격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바, 법무부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논의 및 학계·실무계의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관 부처로서 내실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각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의 변호사 징계 기구 및 징계 절차'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의뢰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3) 기대효과

비위 변호사 제재 및 변호사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리걸테크 관련 규제 정비

1) 추진배경

최근 ChatGPT를 위시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법률서비스 기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조계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여 헌법상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며,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리걸테크의 구체적인 운영 양태에 따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추진내용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법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최근 수년간 리걸테크 산업의 향방을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법적 분쟁으로까지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2023년 11월 학계·실무계·리걸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25년 5월에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바람직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총 3장 5절 20조 체계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정의에서부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광고 내용 제한과 같은 세부 운영 기준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을 유도하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 또한 병행하였다. 2025년 5월에는 폴란드 변호사협회(Naczelna Rada Adwokacka, NRA)·법조자문사협회(Krajowa Izba Radców Prawnych)·법무부(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Poland), 에스토니아 법무디지털부(Republic of Estonia Ministry of Justice And Digital Affairs)·변호사협회(Eesti Advoktuur), 핀란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Finland) 등을 방문하여 리걸테크 규제에 관한 EU 국가들의 규제·업계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2025 Legal Tech AI Forum와 같은 다양한 관련 포럼·심포지엄·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 간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충실히 모색하였다.

3) 기대효과

리걸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생태계를 육성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양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제도 정비

1) 추진배경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판례, 법률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법률상담을 내용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밀유지권 도입 논의는 단순한 변호사 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형사 절차는 물론 민사·행정분야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민·형사 분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비밀유지권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였고, 그 결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2025년 12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료 분쟁 등에서 변호사의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함으로써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3) 기대효과

비밀유지권 도입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도입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 법무과 서기관 김신우, 법무관 신기철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 IT 기술의 발전과 전자거래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과 불편이 존재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6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본인 인증수단에 여권 등을 추가하여 재외국민의 전자공증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제고되었다.

한편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 시행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의 전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공증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의 전자공증시스템은 ① 전자공증 받은 문서를 인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점(온·오프라인 호환성 문제), ② 대상이 사서증서로 한정되는 점, ③ 기타 어플리케이션 및 웹 프로그램의 이용 불편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블록체인 기반 보안성 강화 및 신규 기능 도입을 통해 차세대 전자공증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1차년도 사업을 2023년 1월 블록체인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선정받아 추진하였고, 2024년 그 추진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① 전자문서 형식의 공정증서 작성 기능의 도입, ②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공증문서의 보관·유통이력 관리를 통한 보안성 강화, ③ 본인인증 수단 확대 등을 통하여 전자공정증서의 신뢰성, 안정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제1차년도 사업에 따른 신규기능은 『제3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2차년도 사업도 2024년 2월 블록체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받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성과를 토대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차년도 사업은 ①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사서증서 인증 기능의 블록체인 기반 보안성 강화, ② 전자공증문서를 위·변조방지조치를 추가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강화, ③ 전자공증문서를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유통받을 수 있도록 기능 연계, ④ 모바일 공증시스템 재구축, ⑤ 종이 공증문서의 전자적 보관 기능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2025년에는 특히 ① 블록체인 노드 증설을 통해 시스템 기반을 확충하고, ② 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문서 내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전자공증 문서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촉탁인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③ 공증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하여 모바일 기반 '원패스(One-Pass)' 서비스 구현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8년부터 시행된 화상공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다방면으로 추진하였다. ① 지하철 역사 내 전자공증제도 광고를 게시하고, ② 전자공증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③ 지정공증인 대상 지원물품을 제작·배포하여 제도 이용 기반을 확대하였다.

표 2-14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비교

구 분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 방식	•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 명의 서류를 직접 작성	• 인증 대상 문서인 사서증서를 당사자가 작성하고 공증인은 그에 대한 인증을 수행 •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대상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함
효력	• 공문서로서 증거력 인정 •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력 인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으로 인한 증거력 인정
전자공증 (현행)	• 전자공증 불가(법령 정비 중)	•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운영(2010) • 화상대면 공증기능 도입(2018)
고도화 사업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1차년도 사업(2023)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2차년도 사업(2024)

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들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다양한 서류에 대해 전자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증인들의 종이 공증문서 보존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지정공증인을 대상으로 신규 기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여, 전자공증서비스의 편익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 법무과 서기관 김신우, 교위 임유성, 법무관 조재범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다만, 제도 출범 이후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는 2020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25년 제도 출범 12주년을 맞이하였다. 12년간 꾸준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 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전국 250개 읍·면에서 제1기 마을변호사 415명을 위촉하며 출범하였다. 이후 마을변호사 인원 수 및 배정 지역을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제7기 마을변호사 1,239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총 1,580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마을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5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6. ~ '14.6.)	제2기 ('14.6. ~ '16.6.)	제3기 ('16.6. ~ '18.6.)	제4기 ('18.6. ~ '20.6.)	제5기 ('20.7. ~ '22.7.)	제6기 ('22.8. ~ '24.8.)	제7기 ('24.8. ~ '26.8.)
배정 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1,414개 읍·면·동	1,425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71명	1,228명	1,239명

표 2-16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담 건수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2,650	2,290	3,122	2,725	3,043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24,000여 건에 달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마을변호사를 찾는 주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단계적 해소에 따라 마을법률담당공무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다.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한 이래로, 국가재난, 사회범죄 등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2024년에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과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각 구성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7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변호사제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에 2024년 제도 운영 현황, 우수사례 등을 수정 반영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림 2-37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적 홍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버스음성광고와 터미널 조명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활동물품을 제작하여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마을변호사 포스터와 홍보 리플릿을 신규 제작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민원인 대상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림 2-38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조명광고

5.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 법무과 사무관 이승민, 교위 임유성

가. 추진배경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소·법무법인·국가기관·지자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마쳐야만 개업·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

법무부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 이수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의 근무를 통한 실무 역량의 함양 및 저연차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20년 1월경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6월경 기획재정부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의 운영 예산을 협의하여 전 기관의 소요 예산을 배정받았다. 2023년까지 국가기관 실무수습변호사 제도 창설 이래 법무부 주로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을 통한 통일된 선발절차를 안내해왔지만 2024년부터는 법무부가 기재부와 국가기관별(검찰청 제외) 예산 협의 및 통합선발을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직접 기재부와 예산 협의 업무 및 기관별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도에 총 37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채용은 2024년까지 법무부가 통합선발을 담당하고, 각 국가기관이 면접, 채용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2021년 5월경 13개 국가기관, 총 72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18개 국가기관, 총 130명, 2023년에는 총 20개 국가기관, 총 135명, 2024년에는 총 45개 국가기관, 총 146명, 2025년에는 총 42개 국가기관 132명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부는 2026년에는 37명을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채용 국가기관의 법률사무 수요에 맞추어 법률자문, 행정소송 수행, 법령연구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판 참관, 세미나 참석, 진로 상담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적극 선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법치행정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무관 정우진

가. 제도 취지

공익법무관 제도는 병역미필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후 법률구조·국가소송 기타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제8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제2조, 제9조).

1995년에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임용·배치, 복무지도·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집행 등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인원 및 배치 현황

공익법무관이 최초 임용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기수, 2,602명의 공익법무관이 임용되어 복무하였다(복무만료 33개 기수, 2,365명). 2025년 8월 1일 기준 총 195명의 공익법무관이 68개 기관(법률구조공단 25곳, 각급 검찰청 18곳, 소송수행청 21곳,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4곳)에 배치되어 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래 2010년대 중반까지는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재학생 중 병역미필자 수 감소,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방부·병무청 등과의 정기 협의, 관련 제도 정비 등 공익법무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2-17 연도별 공익법무관 총원 및 신규임용자 인원수

(단위 : 명)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95	27(27)	2011	212(73)
1996	100(73)	2012	294(147)
1997	103(3)	2013	387(165)
1998	95(19)	2014	530(217)
1999	75(53)	2015	582(200)
2000	140(68)	2016	622(205)
2001	190(69)	2017	583(178)
2002	195(58)	2018	469(86)
2003	216(89)	2019	324(60)
2004	207(60)	2020	200(54)
2005	204(55)	2021	142(28)
2006	188(73)	2022	122(40)
2007	202(74)	2023	131(63)
2008	240(93)	2024	171(68)
2009	233(66)	2025	195(64)
2010	231(72)		

※ 괄호 밖이 해당 연도에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 총원, 괄호 안이 해당 연도 신규임용자 수

다. 기대효과

구조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배치되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지휘·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청의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패소와 소송지연을 억제하고, 패소율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전(1994년)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 패소율이 약 35%에 달했으나, 공익법무관 제도가 정착된 2018년에는 패소율이 약 10%로 크게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가. 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신청사건 현황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이선민, 김민수, 행정주사 성하윤

1) 국가소송 현황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의 수행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수호하면서도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가 2억 원 이상 사건의 소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025년 국가소송 사건 수는 14,843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약 7조 2,55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가소송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의 비중 확대에 따라 국가소송의 승인·지휘 업무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5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소송수행자 교육, 송무지도점검, 소송총괄관회의 개최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보다 0.6%p 감소한 8.6%를 기록하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과 같다.

2)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법에서는 국민들이 소송보다 간이한 국가배상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심의회를 통한 국가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개산액(槪算額)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전국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서 심의한 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하여 심의·처리하고 있다.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국가배상 신청절차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된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이 9,949건 접수되어 전년(9,970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 중 4,207건을 처리하여 954건을 인용하고 3,080건을 기각하는 등 지속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건과 고액·고난도 사건(지구심의회에서 이송된 사건)을 체계적으로 심의·처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현장조사 및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지구배상심의회 단계부터 자료수집을 체계화하여 조사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국가배상 심의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나. 국가소송 수행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이선민, 행정주사 성하윤, 법무관 최정연

1) 국가송무 수행자 교육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자의 송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연수원의 '국가송무 소송수행자 과정'에서 '국가소송개관', '국가소송 주요 패소 사례 및 공통 법리',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이해', '서면작성연습, 답변서 발표 및 강평'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국가송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5. 6. 13. 우정인재개발원에서 '국가소송 프로세스의 이해'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송무지도점검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고·지검의 국가소송 지휘 및 국가배상 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송무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6개 검찰청(대전고검, 광주고검, 청주지검, 울산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의 국가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지도점검은 각 고·지검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할 사건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수검대상 기관에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각 고·지검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검대상 기관은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국가송무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3)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5. 12. 8. 국가송무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65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국가송무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법무부와 지휘청·수행청 간 협업을 통한 국가송무의 체계적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등 공익법무관의 국가송무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가송무 주요 수행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송무에서 공익법무관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4) 2025년도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25. 12. 22.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및 송무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송총괄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구상권 행사 개관, 정부법무공단 소개, 소송수행해태 관리 등의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소송수행 시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법무부는 각급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격려하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소송 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송수행자 및 송무 담당 공무원의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무업무유공자 101명(국가소송 55명, 행정소송 46명)에 대하여 총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정유경, 행정주사 남승우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과 법률자문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로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단의 홍보노력 등으로 공단의 2025년 수임사건은 송무 1,704건, 법률자문 2,382건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2008년 수임사건 송무 377건, 법률자문 633건). 특히,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이후 뇌 기능 개선제(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축소 정책을 시행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일부 환수를 진행함에 따라 60여개 관련 제약사들이 공동 대응하여 고시취소, 협상명령취소, 계약무효 등 총 26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단은 23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20건의 사건을 전부 승소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담합행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의 국고손실 환수를 중점 지원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111건의 소를 제기(94건 확정)하여 4,738억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된 舊 일본인 소유 재산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2016년부터 중점 지원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총 165건이 확정되어 161개 필지 합계 252,032㎡를 국가 소유로 회복하는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8.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이현진, 정유경, 법무관 주훈철, 최정연, 정진, 신상훈

가. 추진배경

권위주의 통치시 이루어진 강제수용·가혹행위를 비롯한 국가폭력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거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에 응하여, 법무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관행적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취하 및 포기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요 상소 취하·포기 현황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수 확정(심리불속행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5. 8. 5.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 9. 12.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총 49건(피해자 417명)에 대하여 국가의 상소를 취하·포기하였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법무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아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2025. 8. 5.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 9. 12.까지 총 22건(피해자 230명)에 대하여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하였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2025. 8.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2025. 9. 30. 피해자 109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다.

故 김오랑 중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무 수행 중 반란군에게 대항하다가 전사하였다. 김오랑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공무원들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고, 고인의 사망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유가족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오랜 시간 고인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22. 12.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故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2025. 8. 선고되었다. 법무부는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였던 국가의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수행한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5. 8. 26. 항소 포기를 지휘하였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2025. 9. 29.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 11. 13.까지 총 281건(피해자 933명)에 대하여 국가의 상소를 취하·포기하였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 10. 19.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 4. 1.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2025. 10. 9.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2025. 11. 28.까지 총 12건(피해자 195명)의 상소를 취하하고,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총 22건(피해자 339명)에 대한 상소를 포기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늦게나마 상처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9.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정유경, 행정주사보 김혜림

가. 추진배경

국고손실 환수소송이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물품구매 관련 입찰담합 등으로 인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관리된다. 국가는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손실액의 완전한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적 환수방안, 즉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는 각 소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수소송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고손실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 9. 22. 법무실 국가소송과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바 있다.

나. 추진경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출범 이래 국가 상대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의결서 및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법무부의 국가소송 승인권한이 확대된 이후,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통해 소 제기 및 환수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 전(全) 단계에 걸쳐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추진성과

2025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급 검찰청과 소송 수행청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사건 관련 판결문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소송행위 총 52건을 승인하고, 총 8건의 신규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친일재산 매각대금 등 환수소송 제기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이선민, 법무관 조건희

가. 추진배경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을 위하여 2005. 12. 29.「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되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정의하면서, 위 기간 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하고,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다(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06. 7. 13.부터 출범하여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약 1,139만㎡, 매매가 약 2,106억 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 24명의 116필지(약 193만㎡, 매매가 약 267억 원)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2010. 7. 12. 그 활동을 종료하였고, 법무부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소송승계규정')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완료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소송승계규정에 따라 법무부 국가송무과(現 국가소송과)에 구성된 '친일재산송무팀'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을 승계하여 수행하였고 92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승소율 약 96%, 일부승소 포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승계받은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법무부는 2022년까지 광복회 등으로부터 친일재산 의심 토지에 대한 환수 요청을 받는 경우, 친일재산 환수 여부 및 환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검토 결과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구비되어 있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 총 8건을 제기하여 그 중 7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친일재산환수 신소제기

법무부는 광복회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친일재산 의심 토지 중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 제기를 유보하여 왔다. 그런데 2024. 12. 19. 선고된 대법원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일재산에 관한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더라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친일재산의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친일재산이 환수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다고 판단을 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종전에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유보하였던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조사위원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자료조사 및 법리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유보대상 토지 중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토지들에 대해서 신소를 제기하여 2025. 10. 10.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7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2026. 1. 14.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의 후손들을 상대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5억 7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향후 계획

법무부는 현재 제기한 소송들에 대한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 방법 등에 관한 특칙 규정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만 적용되는 등 현재 법무부의 친일재산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바, 친일재산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11.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국가소송과 검찰사무관 이동희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규모 증대 및 전문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통신수단 발달 등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송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 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을 구축하고, 2016년 9월 전체 행정기관을 수행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추진 성과

법무부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왔고, 2020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2021년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검찰 사건번호→법무부 사건번호) 및 지역관할에서 사건유형으로 배당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에는 수행청 시스템의 Non-ActiveX 전환 등 주요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지휘청 시스템을 Non-ActiveX 전환하고 상소 및 불변 관련 전자 승인·지휘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송무 지휘체계 전자화하였고, 2024년 11월에는 이를 전체 승인·지휘로 확대하여 국가송무 지휘·승인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혁신하였다. 또한 노후 서버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25년 11월에는 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정보를 연계하여 소송관리 업무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현행화 하였고,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을 불변 현황 정보 제공 범위에 추가토록 구현하였다. 또한, 2025년 수행청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관 등을 위한 체험형 실습 교육을 10회 진행하여 총 20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결과 2025년 전체 지휘 건 중 전자지휘 비율은 국가소송은 99.1%(6,690건 중 6,627건), 행정소송은 100%(9,770건 중 9,770건)이다.

그림 2-39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승인·지휘 개요

수작업 업무 폐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주요내용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사건 관리, 지정서 출력 등 송무수행을 전자적으로 처리 •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로 소송 수행자가 소송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제공

다. 기대 효과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국가송무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무행정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전자문서 기반의 지휘·승인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종이 문서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송문서를 축적하여 지식화함으로써 선진 송무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휘청은 물론 전체 수행청에 걸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국가송무 관련 판례 등 정보·지식 관리·공유를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등 승인·지휘청은 시스템을 통해 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행정소송과 검사 김영준, 법무관 은해찬, 신동찬, 이창우

가. 개요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12. 28. 국가 송무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자인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에서 통일적 지휘를 통해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상 과오 시정, 제도개선 권고 등 개별 사건의 지휘를 넘어 법치행정 구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송무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체계화를 통해 소송수행청에 대한 보다 실질적·효율적인 소송지휘를 추진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송수행청의 송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 소송지휘 업무 전자화

과거 공문과 실물기록, 그리고 수기결재 기반으로 진행되던 행정소송 지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청과의 소통 취약성 및 비효율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9월 '상소 지휘'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 기반의 행정소송 전자지휘를 도입·실시하고, 2024년에는 즉시항고, 조정권고 이의, 소송참가 및 기타 소송행위에 대한 전자지휘 기능을 도입·실시하여 행정소송 지휘업무 전반의 전자화가 이루어졌다. 2025년 1월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 현황 조회 기능, 5월에는 보조 수행청 당사자 기능 표시 기능, 11월에는 수행청 완결사건 소송문서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하는 등 소송수행자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 송무업무 수행(효율적·통일적 행정소송 지휘·감독, 직접수행)

1) 개관

국가송무체계 개선으로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이 모두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소송 지휘, 중요 사건 지정·관리 등 행정소송 업무 전반을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된 이후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행정소송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43,321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5.99% 감소하였다. 행정소송 신건 접수 건수는 2016년 이래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 이르러 전년 대비 약 2,762건 감소하였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사건 처리 건수는 17,320건이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9〉와 같다.

2) 주요 행정소송 직접수행·지휘 사례

가) 중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이 제기한 보호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석방된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절차 기간 동안의 관리·보호조치를 유지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의 부친인 토O OOO OO는 2003년 콩고 정부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2008년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인정결정을 받아 난민인정자(F-2-4)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였다.

원고는 2019년 국내체류 중 특수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1년 3개월 복역한 뒤 2022년 9월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은 원고의 가석방 출소 당일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보호하면서 보호명령을 집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및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에 대한 관리 및 보호가 모두 해제되어 원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출입국관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4. 3. 11. 원고 소 제기
- 2025. 2. 26. **1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1심 판결 요지) 강제퇴거명령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고,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한 보호명령 또한 재량권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함
- 2025. 2. 28. 원고 항소 제기
- 2025. 9. 12. **2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 항소 기각
- 2025. 10. 13. 원고 상고 제기
- 2026. 1. 8. **3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3심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3) 법무부 소송수행 사항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을 상대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였다. 난민인 원고가 난민 협약 및 난민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 행정상 공익은 이에 못지않게 중대하였으므로, 난민의 지위를 겸하는 외국인인 원고에 대한 행정집행의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절차에 관한 절차규정 및 실무,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소명하였고, 1, 2심 법원은 피고 법무부의 위 변론 내용을 토대로 심리한 결과, 위 강제퇴거명령 관련 절차들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출입국관리에 관한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바,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난민에 대한 출입국행정절차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국에 동일 쟁점으로 다수 재판 계속 중이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상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무익한 소송 수행을 방지한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5. 7. 13.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2. 5. 13.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2022. 5.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3. 2. 3. 원고 소 제기
- 2024. 8. 14. **1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1심 판결 요지) ❶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❷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2024. 8. 30. 원고 항소 제기
- 2025. 8. 28. **2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2심 판결 요지) ❶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❷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추가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년 10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법무부 지휘 사항

피고는 2심 패소 이후, '정당한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상고 제기 지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대법원 소부 2곳에서 '정당한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번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입법취지상 대법원 판례 태도를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상고 포기를 지휘하였다(법무부의 상소 포기 지휘 이후, 피고가 상고 제기 필요성의 근거로 삼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법무부는 이후 전국의 관련 소송수행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전파하였고, 동일 쟁점 사건들에서 같은 취지로 상고 필요성을 검토하여 소송지휘를 하였다.

본건은 동일 쟁점으로 재판 중인 다수 사건에 대한 리딩케이스가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명확히 반하는 소송 수행청의 상소 제기를 방지하여 무익한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내지 소송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송의 조기 종결을 통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교육활동침해 조치처분 취소 사건에서 1심 패소한 수행청에 대해 적극 항소 제기 지휘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해석에 관하여 교원지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재학중인 학생으로 원고의 담임교사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 메신저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하였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5. 5. 25. 원고 소 제기
- 2025. 7. 9. **1심 판결 선고 [피고 패소]**
  * (1심 판결 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 등과 무관하게 친구들과 사이에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SNS 문자를 보내던 중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 2025. 8. 4. 피고 항소 제기
- 2025. 11. 28. **2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 (2심 판결 요지) 원고의 발언은 수업시간 전·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반드시 특정 장소 내지 시간적 개념으로 한정해서 해석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SNS를 이용한 원고의 행위도 교원지위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함
- 2025. 12. 15. 원고 상고 제기
- 2025. 12. 29. 상고장 각하명령

(3) 법무부 지휘 사항

피고는 1심의 해석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아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해석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부재하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동법 제정 목적에 반한다고 보아 항소 제기 지휘하였다.

2심 법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은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교원의 수업 중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달리 원고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였고, 피고 승소 판결 선고 및 확정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동종 사안들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 강화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청을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송업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NDSL 이용률,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소송비용 회수현황 등)를 조사·점검하고, 소송수행청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송무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5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요 소송수행청, 소송수행해태가 빈번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더욱 내실 있는 송무업무 관리·감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라. 헌법재판 업무 수행

1) 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다수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어 법무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각종 헌법재판에서 법령 및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 심판대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공포 및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 12. 31. 기준 법무부가 헌법재판에서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86건이다.

2)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타 부처 주요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따라 심판 대상 법령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2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총 16건(취하 등 제외)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하였는데 그 중 합헌 15건, 헌법불합치 1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위헌제청 등[2025. 4. 10. 2024헌가12, 2024헌바287(병합)] :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지급 규정 부재) 위헌제청[2025. 7. 17. 2023헌가8] : 합헌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3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위헌제청[2025. 11. 27. 2024헌가3] : 합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위헌제청[2025. 11. 27. 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 합헌

3)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25년에는 총 3,046건(취하 등 제외)의 헌법소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등 433건, 각하 2,576건, 위헌 등 35건, 헌법불합치 2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위헌확인(2025. 1. 23. 2021헌마886)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초과) 위헌확인(2025. 10. 23. 2022헌마1247) : 헌법불합치, 각하
- 형법 제39조 제1항 등(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 위헌소원(2025. 6. 27. 2020헌바318) : 합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위헌확인 등[2025. 6. 27. 2022헌마1505, 2024헌마140(병합)] : 기각, 각하
-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위헌확인(2025. 11. 27. 2020헌마1454) : 각하

4) 탄핵심판

탄핵심판 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의 존부와 탄핵결정의 필요성 등을 심리하여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바, 법무부는 중요 탄핵사건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변론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0조에 따라 필요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25년에는 총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선고 되었는데, 그 중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2024헌나8)을 비롯하여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2건,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8건 있었다.

- 대통령(윤석열) 탄핵(2025. 4. 4. 2024헌나8) : 인용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2025. 12. 18. 2024헌나7) : 인용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2025. 1. 23. 2024헌나1) : 기각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2025. 3. 13. 2024헌나2) : 기각
- 검사(이창수) 탄핵(2025. 3. 13. 2024헌나3) : 기각
- 검사(조상원) 탄핵(2025. 3. 13. 2024헌나4) : 기각
- 검사(최재훈) 탄핵(2025. 3. 13. 2024헌나5) : 기각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2025. 3. 24. 2024헌나9) : 기각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2025. 4. 10. 2024헌나6) : 기각
- 검사(손준성) 탄핵(2025. 7. 17. 2023헌나3) : 기각

13.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가. 통일 대비 법제연구 강화

>>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서기관 한경태, 서기관 김태희

1) 추진배경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2025년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북한 개정 민법 연구」, 「북한 이탈주민 지원 법제 개선」, 「남북관계 개선 관련 법적 쟁점」 총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위원 총 20명), 운영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통일법무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5년 12월에는 제54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 소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림 2-40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안 100여 건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통일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2024년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4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한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북한 형법 주석 연구」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2025 북한 형법 주석」을 2025년 5월 발간하였다.

「2025 북한 형법 주석」은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 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아 향후 남북한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림 2-41 연구자료 발간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4년 연례보고서

2025 북한 형법 주석

한편, 2010년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 학술지(계간지) 「통일과 법률」 2025년 2월 제61호부터 11월 제64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호당 연구논문 4~8편과 실무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활동 수기, 남북관계 동향 등을 게재하였으며, 제63호와 제64호에는 분단국 키프로스의 통일 논의에 관한 논문을 실어 통일법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원고의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2-42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과 법률」 제63호

키프로스 통일방안의 국제적 보장 문제에 관한 소고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남북관계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통일과 법률」 발간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홍진희, 주무관 박보경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법무과는 매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며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25년에는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11. 4.~12. 9.)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수강생 63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제15기 아카데미에서는 미래 통일법제의 주요 법적 쟁점과 방향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였다. 강연은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남북 경협 가능성 및 관련 쟁점'(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도경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제12기 이후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여 강연자와 수강생 간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하였다. 온라인 교육 도입 이후 아카데미에 대한 대학생·대학원생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제14기부터 학생 대상 수강료의 50%를 감면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제15기 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55명이며, 강연별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95.0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역대 아카데미 수료 인원 :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10기 68명, 11기 72명, 12기 75명, 13기 104명, 14기 68명

그림 2-43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률신문 광고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무실장 축사

제15기 아카데미 1강(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강연

2025년 6월 ~ 10월에는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1회 개최되는 논문 공모전은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약 4개월간의 공고 및 홍보를 거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북한 파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과 우수상 2편("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신속중재절차 도입에 따른 남북경협에의 온라인 분쟁 해결 도입 검토", "북한 송금 브로커의 비범죄화에 대한 성찰")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통일과 법률」 제65호(2026년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그림 2-44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시상식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14. 북한주민 재산의 체계적 관리·감독

>> 검사 심재신, 서기관 김태희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재산관리인의 각종 신청·신고·보고사항을 법령에 따라 엄밀하게 검토하고, 재산관리인이 적법·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탈법행위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기·수시신고 및 처분허가 이후 금융재산 및 부동산재산의 변동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평가

재산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북한주민 소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15.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통일법무과 검찰사무관 김도언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더불어 법치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북한사회에서 체득한 낮은 준법·인권의식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며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1)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강화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은 유선 및 온라인(통일법제 DB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 2025년 1~12월까지 총 31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주지역 관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구조 연계를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통일법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시 법률상담 제공

그림 2-4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률상담

서울남부하나센터 방문 상담 현장

2)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에 더불어 법적 문제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를 1:1로 매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한 법률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법제DB, 유선·카톡·대면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준, 총 73명의 지원변호인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기 북한이탈주민 27명이 매칭되어 있다(종결 건 포함 총 115명 지원)

3) 적극적인 제도 홍보

제도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지원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고 있는 「월간하나」(정착사례·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월간지)에 2024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자료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년 2월부터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코너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식 및 법률지원」 리플렛을 제작하여 법률교육 시 배포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 2-46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홍보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예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포스터

북한이탈주민 법률상식 및 법률지원 리플렛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법률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송지원 연계 및 모니터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내실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위한 법률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빠짐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6.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전문위원 오석진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래 우리나라 기업기배구조상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주식가치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방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여러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현행 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23년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주주총회 내실화 및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3년에 '상법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각각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 중 일부 사안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제2211251호)을 2025. 7. 3.에 통과시키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제2205704호) 중 일부 사안만을 2025. 7. 3.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나. 주요내용

1)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제2211251호)의 통과로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와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가 신설되었다(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해당 규정은 2025. 7. 22.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2)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제2211251호)의 통과로 상법상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근거를 마련하고(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2항). 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의 출석 방식과 기술적 요건, 총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율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해당 규정은 2027. 1. 1. 시행 예정이다.

3) 상법상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제2211251호)의 통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변경되었고, 일반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비율 또한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이 혼용되는 문제는 부칙을 통해 개정법 시행일부터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의제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상장회사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2026. 7. 23.로 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의 비율을 갖추도록 하였다.

4)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제2211251호)의 통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하였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해당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7. 23. 시행된다.

5)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제2205704호)이 통과됨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제2205704호)이 통과됨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었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장회사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26. 9. 10.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방대한 상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이사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고, 의결권 제한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 이후 KOSPI 지수가 5,000을 돌파하는 등 법개정의 효과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 향상 및 국민 재산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17.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2015년에 도입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각 절차 단계의 기간(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등)에 하한을 규정하여 절차 소요시간 단축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급여소득자는 간이한 절차(개인회생, 간이회생) 이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 변경을 위한 제도의 부재로, 추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영세 소상공인 파산 시 채권자에게는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영업용 집기류 등이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파산 이후 생계유지 및 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동 개정안이 의원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 제2204441호)으로 2024. 9. 30. 국회에 발의되었고, 2025. 9.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논의 중이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형벌 정비의 일환으로 「채무자회생법」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설명의무위반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2025. 12. 20. 의원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제2215690호)으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나. 주요내용

1) 간이회생제도 신속성 개선 및 대상 확대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상세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 단계별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이회생절차 이용 대상을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한 것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및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개인회생절차로 신청된 파산대상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도입하는 내용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3)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경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아니한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기존에 설명의무 위반을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채무자회생법」개정 추진으로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 만큼(최소 2주 이상) 절차를 단축하고, 부채의 규모, 구조 등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성이 제고되고, 부채구조가 단순하고 정기 소득이 있어 회생가능성이 높은 일정 부채 규모의 급여소득자 및 기업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차를 잘못 선택하거나 신청 이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 신속히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소상공인이 파산하는 경우 영업용 필수재산이 보전되어 파산 이후 생계유지 및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설명의무위반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18.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임서현 법무관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점수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9년 10월까지 발표된 종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EoDB: Ease of Doing Business)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2021년 9월 기업환경 평가(EoDB)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2023년 새로운 평가체계인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 Business Ready)의 개요를 새롭게 발표하였고, 2024년 10월 1차 평가 대상국 50개국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대한민국은 2차 평가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24. 10. ~ 12. 정부 대상 설문조사 평가가 진행되었고, 법무부는 기업입지(Business Location),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기업도산(Business Insolvency) 항목과 관련된 답변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4년 11월 분쟁해결과 기업도산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 각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였고, 2024년 12월 서울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법률가 및 유관부처의 실무자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법무부는 2025년에도 신기업환경평가기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받던 담보거래(Secured Transactions) 부문에 관한 연구용역을 3건 이상 진행하였고, 나아가 UNCITRAL 담보법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미국의 선진 담보법제를 배우고자 뉴욕과 워싱턴 D.C. 출장을 통해 현지 로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2025년 12월 서울 마포에서 총 60명 규모 대규모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담보법제에 관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이 반영되어 2025년 말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2차 평가대상 101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❶ 공공서비스에서 1위, ❷ 운영효율성에서 4위, ❸ 규제체계에서 6위로 평가되어, 공식 수치는 아니나 단순 합산평균 기준 78.24로 전체 1위를 달성하였다.

표 2-18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전체)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호주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14위	29위

* 2023년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 개편 전 종합평가 결과

표 2-19 2025년 기업환경지수 공공서비스 분야 주요 2차 평가대상 국가 순위

국 가	대한민국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크로아티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표 2-20 2025년 기업환경지수 2차 평가대상 주요국 점수 합산평균 내역

국 가	한국	영국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홍콩
점수	78.24	74.14	73.46	73.25	72.95	69.30

나. 미국 워싱턴 D.C. 현지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내역 홍보

세계은행은 2024년 10월 기존 기업환경평가기준(EoDB)과 평가방식을 달리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새로 출범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하면 법무부는 4개 분야(기업입지, 금융서비스, 분쟁해결, 기업도산)를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2023년 1차로 50개 국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한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는 2차 평가대상 국가로서 2024년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전술).

이에 법무부는 UCC(미국 통일상법전) 제9장 등 우수한 담보법제를 갖춘 미국에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기존 기업환경 사업내역을 공유하는 한편, 동산담보를 포함한 각종 담보법제에 관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글로벌 로펌인 White & Case L.L.P. 및 International Law Institution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 변경된 기업환경 지수 평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 자금조달법제 비교를 주제로 한 현지 세미나를 주최하여 서울대학교 민법 교수, 세계은행 B-ready 팀 팀장, 미국 담보법제 전문 변호사 등의 발표를 통해 각종 의견을 교류하며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였다. 이처럼 법무부는 현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내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B-Ready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그림 2-47 2025 미국 워싱턴 D.C. 세미나 개최 등

미국 현지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World Bank) 방문 및 B-ready 팀 면담

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5. 12. 2. 서울 마포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2025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미국),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싱가포르·일본·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48 2025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19.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무관 최민서

가.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법률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재 102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5년 1년간 30건 법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20여건의 법률지원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법률지원 절차의 신속·간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문에 앞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게시하여 사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4Min 가이드, Case Study 등의 영상을 통하여 간편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2025년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변호사 25명을 위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4명을 초청하여 지원단 활동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기업의 경우 자문 및 소송지원 지원금 한도를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주 질의되거나 혼란을 야기한 사항들을 수정함으로써 법률지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위와 같은 개선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 및 법률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2025년 11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공회의소 각 지부에 팜플릿을 배포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 해피빈 광고를 진행하여 약 2만 7천여건의 캠페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림 2-49 2025년 12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네이버 해피빈 광고〉

그림 2-50 2025년 12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홍보 팜플릿〉

20. 경제형벌 규정 개선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무관 이준승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종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형사벌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마련되고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온 측면이 있다. 이에 2025. 8. 1. 법무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형벌 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 등을 중점으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2025년 9월 당정협의회에서 1차 과제(110개 형벌규정), 2025년 12월 당정협의회에서 2차 과제(331개 형벌규정)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2-51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 회의 및 당정협의회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2차 당정협의회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여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형벌은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함으로써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기업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1. 전자어음제도 운영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서기관 전혜영

가. 전자어음제도 개관

전자어음제도는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및 어음상의 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이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구축한 전자적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 및 이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의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2009. 5월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하였고, 2014. 1월 및 2022. 2월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2025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5년도에 전체 전자어음은 약 105만 건(전년대비 약 9% 감소), 1,017조 원(전년 대비 14% 증가) 상당액이 발행되었고,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중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7.2%, 금액 기준 63.9%(전년과 같은 수준)의 추이를 보였다. 종이어음은 약 15만 5,000건(전년대비 5% 감소), 574조원(전년대비 약 8% 증가)이었다.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 및 보완하는 안정적인 금융 및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자어음의 부도율은 최근 5년간 건수 기준 0.57%에서 0.66%로 증가, 금액 기준 0.07%에서 0.03%로 감소하였다.

그림 2-52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 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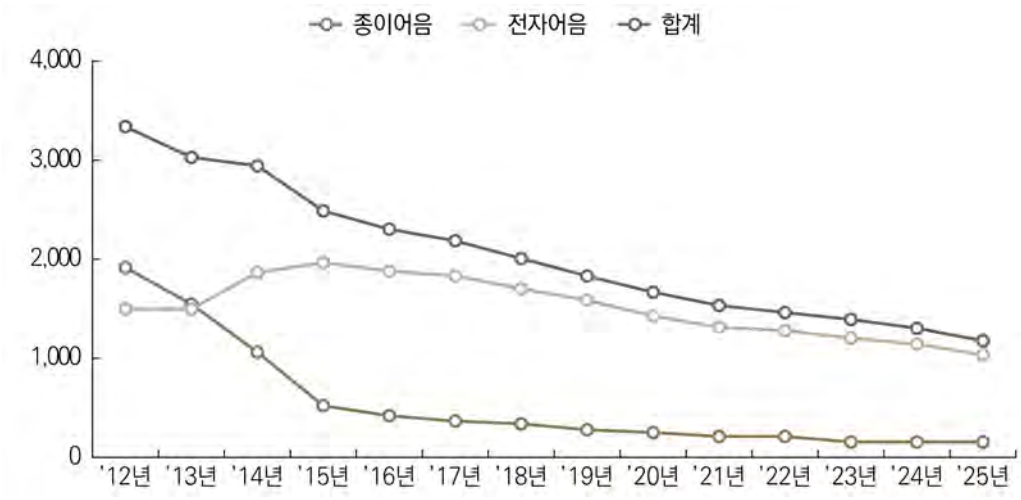

그림 2-53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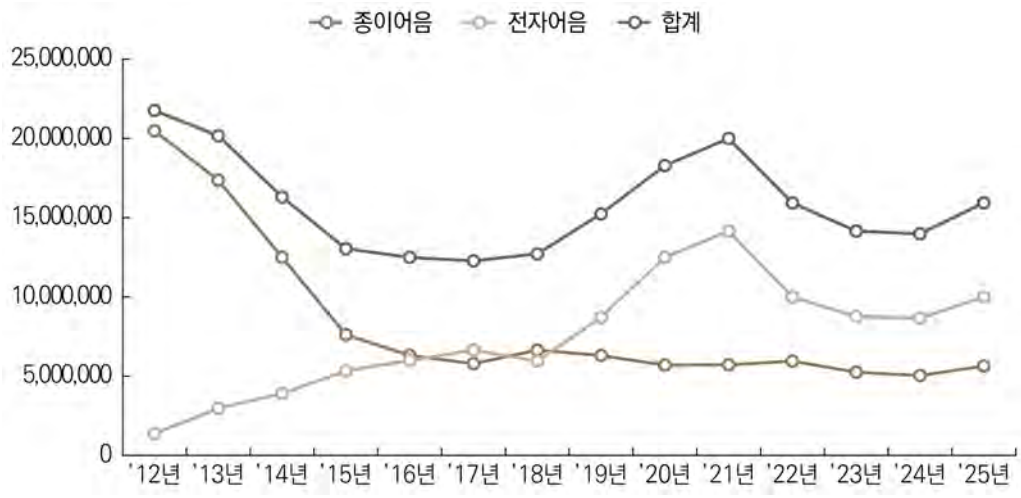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실물어음(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전자어음제도 자체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전자어음의 유통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2. 전자증권제도 시행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서기관 전혜영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6. 3. 2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고 신규 발행 시에도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김재섭 의원안, 민병덕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 2025년도 전자증권 관련 통계

2025년도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1,225개사로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고, 발행수량은 약 134.87억주로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으며, 발행금액은 약 35.84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45.5% 증가하였다. 특히 코스닥 상장주식은 68.6억주로서 전년 대비 32.6% 감소하였다. 한편 신규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발행회사는 총 192개사로, 전년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신규 발행되거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주식은 17.8억주로 전년 대비 32.8% 감소하였다.

그림 2-54 연도별 전자증권제도 신규 이용 실적

(단위:억 원, 백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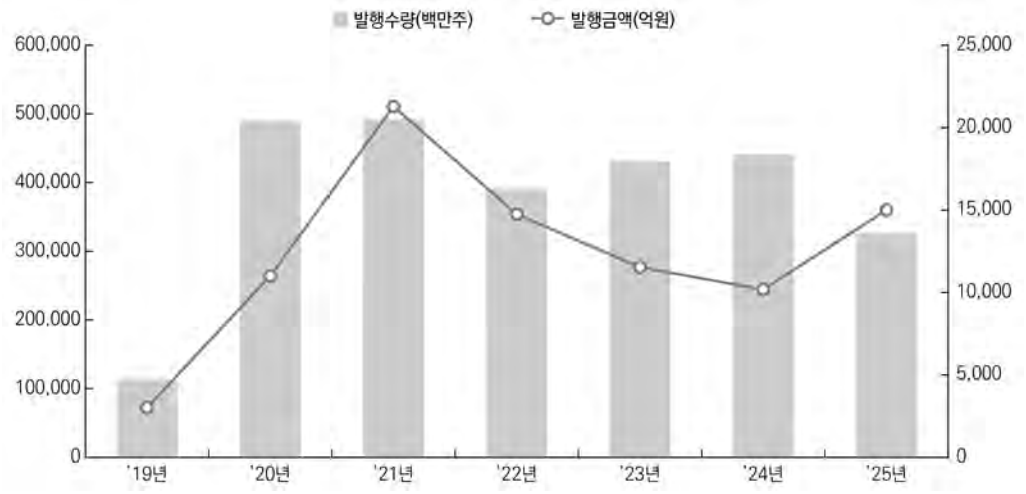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의 발행수량과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6. 1.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 중으로, 전자등록 및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23. 중재산업 활성화

>>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사무관 김영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 시행하였다.

표 2-2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❶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❷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 진 전 략	
1. 중재 제도·인프라 강화	1. 대한상사중재원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2. 중재지원체계 수월성 제고
2.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내부역량 강화 2. 국제중재를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국내중재 제도 정착	1. 국내중재 저변확산 및 중재이용률 제고 2. 신규중재 수요의 개척
4.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전자중재를 위한 ODR시스템 구축 추진 2. 중재인 등 중재인력 발굴, 육성 및 전문화 3. 중재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ADR 페스티발 및 아·태 ADR 컨퍼런스(법무부 등 공동 개최)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프랑스, 싱가포르, 두바이,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중재주간 행사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최근 활동 내역과 역량을 홍보하는 등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중재교육원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재 전문인력을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국내·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고 대법원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며, 특히 국제중재규칙은 Court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등 중재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5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349건으로 이 중 국제중재사건은 48건이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다.

24.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기존 기부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 공익신탁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부수단으로서 설립절차가 법인보다 간소하고 신탁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기부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웹툰·해피빈 공익신탁 캠페인·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까지 밝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지원 공익신탁, 영웅견사랑 공익신탁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총 39개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 11. 14.「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3. 12. 21.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1)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적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등 진행

법무부는 2025. 10.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2025. 1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법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진행 및 홍보 방안 모색

법무부는 주요 경제주간지에 지면광고, 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등을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기부에 관심이 많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신탁을 홍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PB 센터 등을 통해 공익신탁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나아가 2025. 9. '공익신탁 인식조사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55 공익신탁 홍보 관련

경제주간지 홍보

금융기관 공익신탁 홍보 영상송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까지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으나,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를 통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 등의 소득과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신탁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기부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다.

25.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상사법무과 전문위원 오석진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6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109호는 윤진하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에 있어 정상가격의 역할에 관한 검토』와 김지평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주주총회 진행의 실무상 쟁점』, 정성두 검사(법무부)의 『개정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수사협조자 등 감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의 의의』 3편, 그리고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24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110호에는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분할과 부인권』 등 3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111호는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주, 이사, 회사의 상호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를 비롯하여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112호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엄상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김병연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미국 Crypto 3법의 내용과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정건희 변호사(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제한에 관한 쟁점 연구』를 포함하여 총 12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56 선진상사법률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9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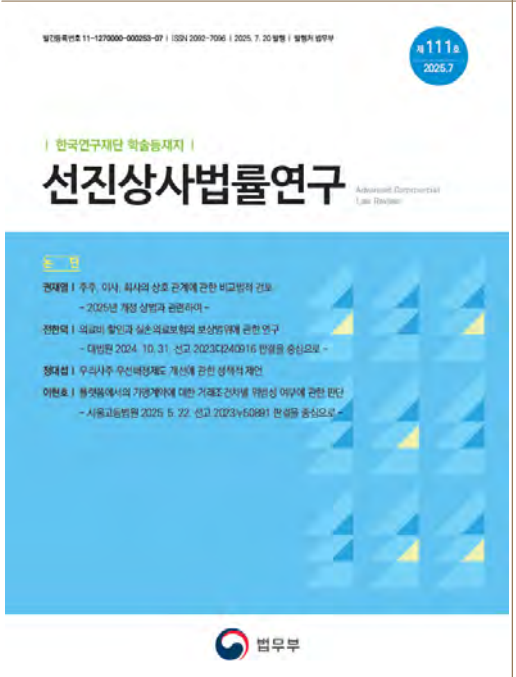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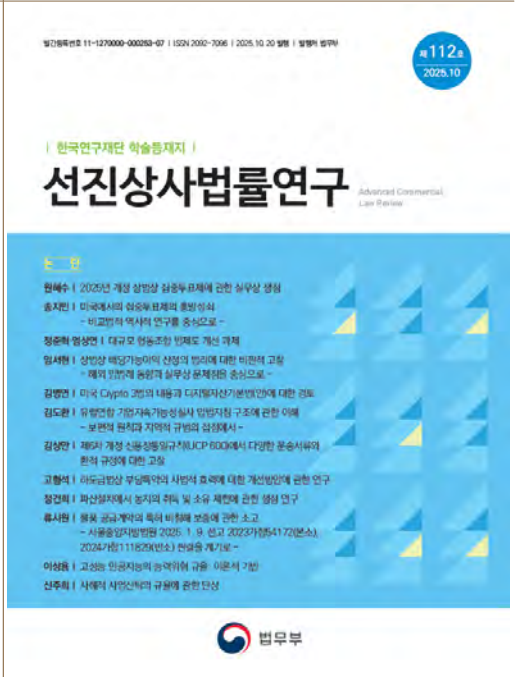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2호

26. 선진법제포럼 개최

>>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전문위원 오석진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2025년 상법 개정 이후 충실의무 규정에 대한 해석 방향과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회사 및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2025. 12. 18.「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개회사와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에 이어 정준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대한 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김춘 정책1본부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재규 선임연구위원(한국ESG기준원), 윤재숙 부장(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최재형 팀장(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 문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사들이 조직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법조계와 학계, 경제계 등 각종 이해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림 2-57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연사 단체사진

선진법제포럼 주제 발표

27.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 법조인력과 사무관 권호연

가.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출제 및 시험 시행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25. 1. 1.부터 2025. 1. 18.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출제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무가, 변호사 등 능력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였다. 충실히 구축된 문제은행 및 검토 시스템 가동, 실력있는 시험위원 위촉 등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출제 과정에 국내·외 기출문제 DB를 매년 최신화하고 중복 검사 실시 및 모의 난이도 평가 등으로 출제 문제 검증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답오류 0%를 달성하는 등 문제 오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2025. 1. 14.부터 1. 18.까지 4일간(1. 16. 휴식일 1일 제외)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3,763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실제 3,336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88.7% 였다.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手記)와 CBT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응시자의 99.8%(3,328명)가 CBT로 응시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는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시험 CBT 방식 최초 시행 이후 2년차로 CBT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5. 2. 3.부터 2. 5.까지 3일간 채점위원 전원 참석하에 각 과목별로 순위중심·세트반복형 가채점회의를 개최하여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험 정답 가안(假案)에 대해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각 과목별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여 전원 합의 방식의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정답을 결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5. 4. 24.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표 2-22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3,255	3,290	3,336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1,725	1,745	1,744

그림 2-58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표 2-2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3	1,959	1,952	2,001	1,962	1,933	1,952	1,933	1,866	1,904	1,888	1,825	1,634	26,607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6	1,719	1,691	1,745	1,729	1,726	1,706	1,728	1,631	1,645	1,553	1,482	1,210	22,975
누적 합격률 (%)	91.23	88.44	87.75	86.63	87.21	88.12	89.29	87.40	89.39	87.41	86.40	82.26	81.21	74.05	86.35

그림 2-5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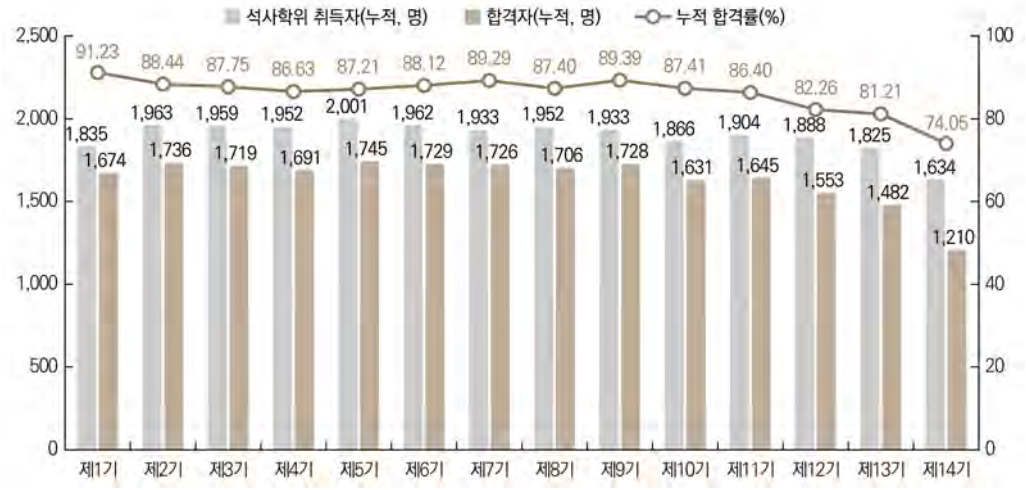

나.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은 2025. 8. 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10개 시험장(서울 5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또한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보다 상승하였다.

표 2-24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13회 (2022)	14회 (2023)	15회 (2024)	16회 (2025)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2,256	2,128	2,131	2,121	2,356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2,177	2,047	1,969	1,720	2,170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96.50	96.19	92.40	81.09	92.11

그림 2-60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제3차 모의시험 CBT 운영 지원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시험 도중 일부 시험장에서 네트워크 전산 장애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시험을 위해 원광대학교는 신규 시설을 구축하여 새로운 시험장을 준비하였다.

이에,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시험장의 전산 장애 개선 여부 및 신설 시험장의 시설 안정성 검증을 목적으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3차 모의시험 기간 중[2024. 10. 18.~10. 22.] 전년도 변호사시험에서 전산 장애가 가장 많았던 이화여자대학교와 신규 시험장을 마련한 원광대학교에 지원팀을 파견하였다.

시험장별로 법무부 소속 직원, 변호사시험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전산 전문인력 및 CBT 프로그램 개발업체 직원들로 인력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시험 진행 요령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장애 발생 시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차 모의시험 운영 지원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 결과,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새로 구축된 시험장을 포함한 전체 시험장의 노트북 및 네트워크 등의 문제 발생 빈도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2)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변호사시험 시행 14회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변호사시험 제도를 재점검하고 리걸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법조 인력 수급 상황

변화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5. 4. 「제4기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발족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 선택과목 등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선택과목 개선, 결원보충제 연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사유에 임신·출산 추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군법무관 제도 부활 등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고, 국회 토론회,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담회, 대한변협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법무부장관 예방 등을 통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제도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 편익 지원 확대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6명 포함) 전원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였다. CBT 시험에서 장애 응시자에게는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였고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또한 종이 법전 대신 노트북 탑재 법전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 노트북을 제공하여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한편, 수기 방식 응시자의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국대학교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수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이은주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3. 3. 제정, 2016. 9. 4. 시행)에 따라 2016. 10. 11.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개소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총 2,605건의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3개월 마다 이관받아 분석을 완료한 후 가해자 인명카드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서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환기 정의 또는 통일 시 책임규명(가해자 처벌, 공직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보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 억제하기 위함이다.

표 2-25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03	40	111	211	217	2,605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23. 8. 8. 법무실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을 소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체제불법 청산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통일법무과와 긴밀히 협업하게 하는 등 법무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3. 8. 18. 기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사무실을 재이전하고 정상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특정도가 높은 기록을 중심으로 인물, 죄명, 기관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북한인권침해에 대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반인도범죄를 구성요건적 관점에서 분석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전환기 정의 관련 국제사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급자에 대한 책임규명 등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유엔 인권메커니즘 활동을 지원하고, 2025년 11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등을

면담하는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였다.

그림 2-6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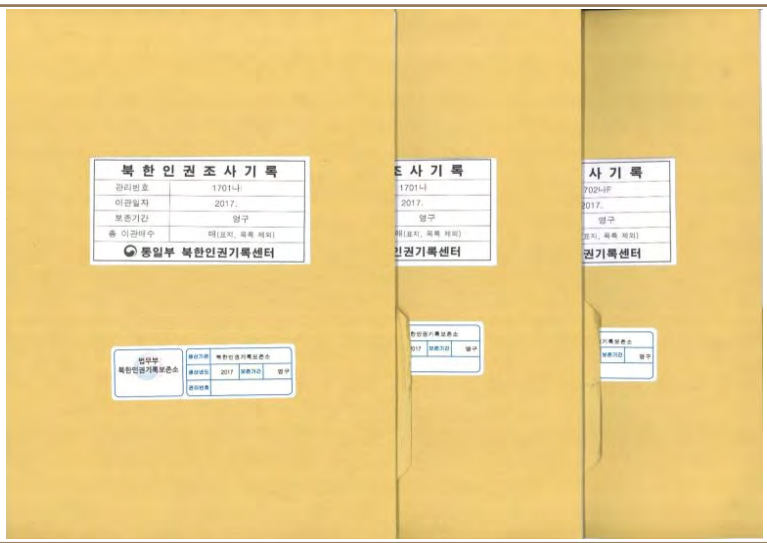

북한인권침해 조사기록의 분석 및 영구 보존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가해자 인명카드 작성에 더해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북한 고위층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규명 방안과 반인도범죄 소추 쟁점 및 형사재판모델 등을 기초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체제불법 자료를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활용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 4 절 |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 검찰과 검사 홍석원

가. 검사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개요

2025년도 검사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였고, 각 검찰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검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고충이 있는 검사의 경우 근무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였다.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5. 2. 3.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의 추천에 따라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우수 검사를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5. 8. 27. 하반기 검사 인사 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하였고,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하여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에 최초로 여성 검사를 보임하였으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검사가 파견 중인 기관별로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내 외부기관 파견 보직을 7석 감축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3. 6. 기준 약 28.4조 원, 가상자산 종목은 1,399개로 약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며 신종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 해간 시가총액 약 9조 원, 가상자산 종목만 37개가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가 이어지고 있고, 1일 평균 거래액도 약 3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군소 부실·불량 코인 난립 속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법 코인 암시장 운영, 코인 예치 서비스 사기 등 각종 신종범죄의 먹잇감이 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무·검찰은 2023. 7.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FIU)·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및 출범하였다. 하지만, 임시 조직이었던 합동수사단만으로는 정해진 가동 시한으로 인해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범죄정보공유를 담보할 수 없었고, 신생 시장의 허점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엄단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 단속체계를 유지·발전시켜 그 노하우를 계승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는 내부자에 의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선진기술 소요가 있는 외국으로의 유출·도피가 빈번하여 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증거확보와 유출자 엄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 9.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3. 12. 전담부서인 '사이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칭하여 국정원,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구 및 FBI 등 외국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총력을 다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네트워크 가동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7. 3. 1. 개청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관할 구역 내에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주요 교정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김해국제공항의 여객수송·물동량 증가, 에코델타시티 입주 등 관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범죄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국 10개 차치지청(부천, 고양, 성남, 안산, 안양, 천안, 대구서부, 부산동부, 부산서부, 순천) 중 유일하게 사무국이 구비되지 않아 수사지원 기능에 제약이 있었다.

2)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2025. 2. 25.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과 총무과·사건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316호)을 개정·시행하였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침탈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자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국내·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공조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여 국내 산업기술 보호·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증원된 인력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제도개선, 양형기준 상향, 기술유출사건의 형사 관할 집중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일선 검찰청에 대한 원활한 수사지휘와 신속한 수사지원의 토양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부산서부지청의 사무국 신설에 따라 청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인 사건 접수·처리 및 체계적인 검찰행정사무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관할 내 빈틈없는 범죄대응이 예상된다.

다.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 및 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1)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반영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검찰청사 방수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2)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검찰의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1~2년 단위로 전국 검찰청을 순환근무하고 있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예산이 기존에는 철도운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도서지방 근무자들을 위해 지원 범위를 항공운임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경향 각지에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의 비상대기소 호실을 증설하고 출장여비를 증액하였으며, 시설·환경관리사 사무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모바일포렌식 수사장비 도입, 가상화폐추적 수사역량 강화, AI기반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AI 기반 첨단증거분석 시스템 도입, 통합 심리분석 및 녹화 장비 도입, 약물 사전검사 자동화 구축 등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 서울중앙지검에, 2016. 1. 대구·광주지검,

2017. 2. 대전·부산지검, 2018. 2.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 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8. 12.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20. 4.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0. 6.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고, 2021. 7.부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 12.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 일선 청에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 7.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학대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 12.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 6., 9., 10. 대검찰청은 사건처리기준 및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동영상, 사진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2022. 12. 지역 거점 검찰청인 각 지방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권역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2. 12. 피해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QnA 및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하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를 연구한 책자를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6.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2022. 6.부터 2023. 12.까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5. 1.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일선 검찰청,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였고, 2025. 3.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조서 열람 시 음성 변환 파일 바코드 조서를 제공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요청에 따른 음성 변환 파일 또는 점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 4.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공소제기시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장에 편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장애를 겪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활한 사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대검찰청은 2025. 12. 발달장애인이 흔히 저지르는 성범죄, 재산범죄 등 죄명별 공소사실을 장애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을 개발하여 전국 청에 배포하였으며, 통상의 형사처벌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범죄 억제와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 하에 장애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성범죄 외에 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도 확대 추진하고, 범죄유형별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하여 일선 검찰청, 보호관찰소, 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2. 11.부터 2023. 6.까지 「디엔에이법」 시행 이전에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보관된 DNA가 남겨진 미제 사건들을 법 시행 이후에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범'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죄 등 중대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을 다수 밝혀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 5.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3. 12. 전국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검찰청은 2024. 3.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통합매뉴얼'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 8. 18개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를 전국 31개청으로 확대 지정하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찰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2024. 9.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여 수사실무를 점검하고, 2024. 10.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반영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시행하였다.

검찰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관련 사범의 수사 및 처리 통일성·형평성을 위해 2025. 2.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절차 등을 수록한 「디지털성범죄 수사실무」를 2025. 6. 제작·전국 청에 배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5. 11.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전국 청에 전파하여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를 당부하였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 11. 전국 여성·아동 전담 검사·수사관 및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 및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공유 등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2025. 9.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7.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6.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채무자 대리인제도',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등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6. 소년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하였고, 2021. 9.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신속·적정한 소년사건 조사 및 처분을 위해 검찰청과 소년보호기관(전국 11개)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21. 11. 전국 확대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22. 1.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선도활동 위축화 극복방안으로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13년경부터 소년사범 처분 충실화 및 학교폭력 대책 일환으로 학생인 소년범 사건에 대해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처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년간 동결되어 있던 교사 자문료를 기존 1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그 결과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그쳤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건수가 2023. 9. 18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된 고소·고발 등사건 등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2023. 9.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일선청에 전파하였고, 검찰 수사 중인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후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등을 일선청에 배포·전파하여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 및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소년 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12./2025. 11. 「전국 소년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소년 선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소년전담검사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 12. 전국 각 청의 검사들이 관할 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준법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준법교육 표준강의안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대검찰청은 2025. 3. 「아동보호심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가 실효됨과 이 경우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 아동 등 외에 경찰서의 장 등 집행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함을 주지시켜 아동 등 사건관련인의 인권보호에 기여 하였으며, 2025. 9.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 등 엄정 처리 지시」를 전파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며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철저, 공소 유지 및 구형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였다.

한편,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5. 1.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 각급청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025. 4. 「발달장애인 사건 배당 및 수사 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발달장애인 사건'으로 표기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검사에게 배당하고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 조회, 신뢰관계인 동석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절차를 각별히 유념하여 수사하도록 하였고, 2025. 6.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 시정" 주제로 "2025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8. 6. 부산고검, 2009. 9. 대구고검, 2010. 4. 광주고검, 2010. 12. 대전고검, 2011. 5. 인천지검, 2012. 6. 수원지검(2019. 3.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2023. 7. 서울동부지검, 2024. 7.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 10.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0. 12.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를 당사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S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대한변협과 문자통지 수신용 변경된 변호인선임서 적극 활용 홍보에 관하여 협력하면서 변호인 문자통지 확대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검찰청은 2020. 10. KICS에 '변호활동 관리부'를 신설하여 변호활동의 전산 입력 기능을 구현한 이래 '변호활동 관리부' 입력 사건 확대, 업무담당자 및 기관장 등 간 변호활동 내역의 공유 기능 구현 등 지속적으로 변호활동 관리 투명화를 추진하여 왔고, 2022. 12. 업무시스템에 '변호활동' 메뉴를 신설하고 모든 변호활동을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3. 1. 변호활동 관리 전면 전산화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 모든 변호활동 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25.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25. 1. 1.「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5주 이상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절차 개시기한을 정지하였으며, 2025. 4. 2.「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주요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이 자동 통지되도록 변경하는 등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5. 3. 21.「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현직 외 전직 임직원도 형벌감면 신청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형벌감면 신청 순위 승계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25. 12. 2.「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회복적 사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의 취지 및 실무 여건 등을 반영하여 형사조정 회부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4. 5. 16.「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열람·등사 주체를 기존 '피해자'에서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사망·중대한 심신 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열람·등사 범위 또한 기존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외의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 가능한 것에서 '권리구제' 또는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외의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5. 4. 4.「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사유 발생 시 환부 통지와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였다. 2025. 9. 23.「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가 공소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관이 필요한 사건에 한 하여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 공판 실무를 반영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검찰사건처리기준」개정 시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2013. 6.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2014. 4.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2016. 1. 시행)〉을 반영하였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18. 시행)」,「도로교통법(2019. 6. 25. 시행)」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2021. 5.「검찰사건처리기준」3차 개정 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중사범'을 6개 법률로, '특별법범'을 260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신병 및 구형과 관련된 대검의 최근 주요 지침·지시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42개 범죄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2022. 6. 3.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2022. 8. 19.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 급증에 따른「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2. 10. 5. 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처벌강화를 위하여「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2023. 3. 8.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교제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각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4. 27.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동물보호법(전부개정) 시행 대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023. 6. 26. 마약류 거래 확산 추세 억제를 위해 공급사범 뿐 아니라 투약사범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 등으로「마약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3. 7. 11.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개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2023. 7.「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2019. 6. 25.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2020. 2. 시행)」,「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수정안(2023. 4.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4. 7. 1. 서민·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성착취·스토킹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불법사금융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하였고, 2025. 7. 22. 불법사금융 영업, 초과이자 수수 등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취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5. 8. 5. 개정 취지에 맞추어, 양형인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형 기준의 하한을 일부 상향하는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상 허위 정보 제작·유포, 음해성 정보·혐오 표현 반복 게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025. 5. 8.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5. 7.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 7. 전면 개정한 「불법사금융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구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상향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6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아울러 2004. 7.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6〉과 같다.

표 2-26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재청구	항고	기타
2021년	178	347	89	211	0	12	4	14	17
2022년	261	520	103	332	1	26	7	22	29
2023년	409	898	217	544	0	31	3	21	82
2024년	428	852	191	574	1	21	1	30	34
2025년	404	774	159	507	0	20	2	42	44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금융·증권범죄, 공정거래범죄, 국가재정범죄, 조세포탈, 대형 경제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반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 5. 대검찰청 반부패부 직제를 개편하여 반부패기획관실 신설,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 조세, 대형 경제사건)로 나누어 전담 분야에 따른 주요 현안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3. 5.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및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였으며, 2025. 2.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를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범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재정 범죄의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주축으로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관련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일본 등 주요국가의 처벌사례를 중심으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책자를 일선청에 배포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지속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5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부패범죄 사범 217명을 단속(63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115명 단속하여 23명을 구속하고, 공정거래법위반 등 경쟁질서 저해사범을 59명 단속하여 5명을 구속하는 등 각종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처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전담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210억 7,725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 유발 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표 2-27 2025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4(3)	2(2)
건축	7(0)	2(0)
토지	2(0)	2(0)
공사	3(0)	1(0)
보건·환경	1(1)	0(0)
교통	0(0)	0(0)
소방	0(0)	0(0)
노동	0(0)	0(0)
수사	5(4)	2(2)
세무	1(0)	0(0)
교육	0(0)	0(0)
병무	0(0)	0(0)
금융	50(1)	9(0)
법조주변	4(2)	4(2)
납품	6(3)	3(1)
사이비언론	0(0)	0(0)
기타	134(21)	38(8)
합계	217(35)	63(15)

※ ( )는 공무원

표 2-28 2025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1(0)	1(0)	0(0)	0(0)	2(0)
4급 이하	40(11)	14(1)	9(0)	27(1)	90(13)
합 계	41(11)	15(1)	9(0)	27(1)	92(13)

※ ( ) 구속인원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 (2019. 6. 25. 시행)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처한 결과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표 2-29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2021년	92,640명	28,596(177)명	30.86(0.19)%
2022년	105,444명	24,976(125)명	23.68(0.11)%
2023년	104,136명	22,298(210)명	21.41(0.20)%
2024년	99,940명	20,693(333)명	20.70(0.33)%
2025년	89,290명	17,784(296)명	19.91(0.33)%

한편,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헌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각 검찰청에 조치사항을 시달(2021. 11. 26)하고,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2021. 12. 6)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2. 12. 서울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2023. 4. 대전 스쿨존 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등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2023. 7. 1. 전국 검찰청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달하였다. 나아가 2024. 1. 압수 차량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압수물의 보관·관리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 2024. 9. 30. 기준 전국에서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였고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에 이르는 101건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검찰 송치 건수(인원)를 분석한 결과 매달 평균 300건대를 상회하였던 위 범죄 송치 건수가 근절대책 시행 후인 20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3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음주운전의 감소세와는 달리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역시 끊이지 않자 2025. 12. 검찰은 경찰, 법무부와 함께 ①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등 재범 관련 기준을 추가하고 ②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형 시 적극 반영하며, ③ 특별준수사항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에 시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응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시키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상 입법목적 및 무고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2024. 12. 3. 공포된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2025. 6. 4. 시행)에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하였다.

한편 검찰은 교통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통사범수사실무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교통사범수사실무를 2024. 12. 전면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였다.

2)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2023~2025년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의 발생에 이어 살인 예고 모방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대검찰청은 2023. 8. 일선청에 이상 동기 범죄 및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하여 경찰과 신속·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신병과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2023. 9. 일선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여 원칙적 구공판을 내용으로 하는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상동기 강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2025. 6. '이상 동기 강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명령·감호제도의 실효성 및 적극 활용 방안 연구' 정책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책자를 일선청에 배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의 암장 방지를 위해 변사체 검시 및 강력사건 수사 시 법의학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15. 1. 법의학 교수 등 26명으로 구성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상동기 및 정신질환 강력범죄에 대한 일선 청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 1. 정신의학 전문가 3명을 포함한 법의학 자문위원 33명으로 구성된 제4기 법의학자문위원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2024~2025년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 '하남 교제살인 사건',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등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2024. 7. 일선청에 반복적 범행 등 중한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및 양형의견 적극 개진 등 공소수행 철저,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제폭력·교제살인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지시하였고. 2025. 6.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유형상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를 전파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 8.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5. 9. 한 달 새 광명시,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2025. 9. 일선청에 법무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등 엄정 처리 지시」를 전파하였고, 2025. 10.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회의」를 실시하여 전국 사건 현황 및 처리 경과 공유, 신상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1.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대검찰청은 2023. 7.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 대상, 보복성 스토킹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였고, 2024. 1.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 적극 활용 지시, 2025. 8.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등 스토킹처벌법 업무상 유의사항을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25. 8.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협력 사항을 점검하였고,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지정(2025. 12. 말 기준 전국 60개청, 120명)하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처리하는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조직범죄 엄정 대응

우리나라 조직범죄는 1980~1990년대 폭력을 이용한 업소 갈취, 주류 도매상 운영 등 전통적 방식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던 '제1세대형' 조직범죄부터, 1990년대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제2세대형' 조직범죄, 2000년대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한 '제3세대형' 조직범죄로 변모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경제 및 시대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 범죄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가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 개념이 아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의 개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코인사기,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온라인 불법도박, 성착취물 제작·유통,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의 범죄와 같이 '경제적 이익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폭행, 협박, 기망 등 모든 불법적 방법을 통원하는 구조화된 단체 또는 집단'이라는 개념, 즉 '제4세대형'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은 2025. 4. 미국 국무부, FBI에서 주관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회의(ICTOCT)에 참석하여 20여 개 국가와 국내·외 조직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4. 9. 상품권 이용 범죄수익 세탁사건의 수사착안사항, 2024. 10. 형법상 범죄집단·단체에 관한 해설자료, 2025. 5. 폭력범죄단체활동 법리 해석 자료 등을 일선 청에 전파하여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2025년도 주요 조직범죄 수사 사례로 ▲MZ조폭 관광파 조직원 7명이 리딩방,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무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내부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자행한 사실을 밝혀내어 10명을 구속기소한 사례(안산지청) ▲가해자를 잘못 특정하여 송치된 조직 내 '빠따' 폭행 사건에서,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하여 은폐된 진범을 밝혀내 직접 구속하고,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20~30대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한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부평식구파'를 단속하고 범죄단체로 의율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30명을 기소한 사례(인천지검),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범죄단체활동 혐의 보완수사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신규 폭력단체인 '진성파'의 전모를 밝혀 조직원 9명을 기소한 사례(서울중앙지검), ▲부산 양대 폭력 범죄단체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 공동상해 사건을 송치받자, 사경과 협력하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 10명으로부터 서신 44통을 압수하고, 접견 내역 확보·분석하여 행동강령, 연락체계, 조직원 명단 등을 확인함으로써 단순 폭력이 아닌, 조직적 보복폭행이었음을 규명해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의율하여 조직원 20명을 기소한 사례(부산지검), ▲인천, 시흥, 고양 등지에서 총 9개 리딩 투자 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총책을 포함, 38명을 구속하는 등 총 92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사기 조직을 엄단한 사례(인천지검) 등이 있다.

표 2-30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폭력행위등 (단체등의구성·활동)	345(91)	178(43)	226(33)	291(72)	236(44)	350(52)	293(48)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등	354(268)	515(254)	588(246)	609(256)	792(415)	931(411)	1,550(895)

※ ( )는 구속구공판 인원

2)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엄단

2022. 7.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9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대검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전세사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2019.~2021. 8.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 및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이르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서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다가구, 다세대주택('빌라', '원룸'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청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결과,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차 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야기되므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연계하여 2022. 7. 25.부터 현재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참여하여 전국가적 대응에 협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22. 7. 11.「전세사기 엄정 대응지시」를 시작으로 2022. 10. 13.「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지시」, 2023. 4. 24.「전세사기 사범 철저 수사 및 엄단 지시」 등을 통하여 전담검사를 편성하고, 주요사범 구속 수사, 사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 검토, 피해자 지원 및 적극 항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속 지시하였다.

또한, 검찰은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23. 1. 18. 검찰·경찰·국토부가 참여하는「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수도권(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7대 권역에「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였으며, 2023. 4.부터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2025. 11. 기준 전국 60개 청 96명)을 편성,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세모녀 전세사기 19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기존 전세계약에 따라 잠재되어있던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경기하락 여파 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 2023. 11.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무기한 연장되었고, 검찰은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 적극 의율',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 '피해회복 적극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지속 엄정 대응 중이다.

종래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인 개인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다수의 임차인을 타겟으로 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하고, 임대인·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 ②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③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탁부동산 이용' 사기, ④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관계 기망' 사기 , ⑤ 전세사기 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대출사기 및 HUG 등 기관에 대한 허위 서류에 기한 보증서 발급, 보증서 위조 등 파생 범죄 등으로 정리된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 주요 수사사례로는 ①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기소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총 피해자 355명, 편취금 795억 원)',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의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 내집마련 자금 73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직접 구속기소 사건, ③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총 17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④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9회에 걸쳐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 사건', ⑤ 신탁주택에 대하여 신탁사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아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주택을 매입하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깡통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98명으로부터 약 86억 원을 편취한 '깡통전세 86억 원 전세사기 사건', ⑥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결탁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전세사기에 악용한 사건 등이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로는 ① 다수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괄팀장, 실장팀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건', ② 전세사기 주범이 부동산임대법인, 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수의 중개보조원 등 총 19명과 범죄집단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을 편취한 '광주 빌라왕 사건', ③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수도권 등에 가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을 편취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 결과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로는 ① 무자본갭투자로 세입자 110명을 상대로 123여 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② LH·SH 협력업체 사칭·계약서 위조 등 수법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억 원 편취한 사범에 대해 징역 9년 선고된 사례, ③ 원룸 9개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66억 원을 편취한 주범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된 사례, ④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6억 원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 징역 7~12년 선고된 사례, ⑤ '깡통 부동산' 155채에 관하여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하여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59억 원을 편취한 주범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된 사례 등이 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로는 ①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 계좌추적, 관계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동해 망상지구 소재 토지 214필지, 시행사 주식 등 약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사례, ② 19~34세 청년층을 상대로 가짜청년 임차인을 모집하여 7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총책의 차명 재산 약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③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4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 소유의 건물 및 주식 약 4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④ 전세대출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면서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약 9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들 소유의 외제차 3대 및 귀금속, 현금 등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⑤ 전세사기 피해금 41억 원 중 25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 후 부동산·수입차·가상자산 등을 매입·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에서 주범들의 차명재산 총 21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5까지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주요 단속 실적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단속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기소 인원	145	1,154	1,056	907	3,262
구속 인원	45	313	100	34	492

3) 서민다중피해 범죄 엄정 대처

불특정 다수 사회 취약층을 겨냥한 경제범죄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범죄 형태가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여전히 다수의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서민다중피해범죄는 전통형 사기(전세·보이스피싱)부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추어 법 개정, 처벌 강화, 수사 역량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전담검사의 책임수사 체계를 구비해 종국 처분에 힘쓰고, 일선청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 요구 등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 토대를 차단하고 피해금액 환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은 2025년 다중피해범죄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장기미제·대규모 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였다.

특히, 2025. 9.부터 4개월간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역량을 모아 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에 매진한 결과, 4개월간 총 55건, 535명 기소(4명 직구속)하는 성과 달성하였다. 피해자는 약 6만 7,000명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5조 4,983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대검은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25. 4.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다단계와 불법사채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 신속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수 수사사례 등을 소개하며 수사 검사들의 수사 노하우 등 수사기법을 공유하였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수많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수익을 은닉·세탁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사행행위를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로 간주하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도박범죄의 수사·단속 뿐 아니라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전 분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2023. 11. 법무부·성평등가족부·과기부·방미통위·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팀에 참가하여,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조사·연구, 3개 분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2024. 1. 도박중독 청소년 등에게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형식적으로 실시되던 교육(1일 8시간 집합교육)의 시간 및 횟수를 늘려 실질적인 치유·재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개정된 지침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실시하였다(2023년 354명, 2024년 949명, 2025년 718명으로 대폭 증가).

대검찰청은 방미통위·사감위 등과 도박사이트 차단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예방조치 활성화를 위해 2024. 7. 조직범죄과에 '온라인 도박 수사지원팀'을 신설하여 2025년까지 총 43개 도박사이트 및 관련 계좌 36개에 대한 차단·지급정지조치를 시행하였다.

2025년도 주요 사행행위 범죄 수사 사례로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사 중 자금세탁범죄 단서를 발견하여 계좌, 통신내역, CCTV 분석, IP 추적 등을 통해 3년간 총 725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가담자 5명을 직구속 기소한 사례(대구지검), ▲필리핀에서 10여 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금 합계 5조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 9명을 구속 송치받아 도금 규모 및 조직적 범행 사실을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 하고, 1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여 추징보전한 사례(인천지검), ▲약 2년간 국내에서 85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6명에 대해 차명계좌 거내래역 분석을 통해 도박자금 614억 원을 43,000여 회에 걸쳐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금세탁범죄를 추가 인지하여 기소한 사례(의정부지검), ▲2,000억 원대 상당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 보석 석방된 국내 자금세탁 총책의 USB를 확보하여 과학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여 금융기관 명의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혐의, 초고가 차량을 재판매하여 4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추가 인지해 직구속 기소한 사례(부산지검) 등이 있다.

표 2-32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도박 등	28,119	20,585	17,441	18,568	19,956	13,619	12,066	13,705	30,087	23,631
게임산업법	12,403	10,233	7,837	7,580	6,428	4,618	4,908	5,087	4,761	4,385
국민체육진흥법	1,720	846	687	1,063	945	1,145	639	531	1,052	852
사행행위규제법	1,321	757	493	473	393	373	264	161	145	71
한국마사회법	666	721	963	1,082	763	366	575	790	856	513
합계	44,229	33,142	27,421	28,766	28,485	20,121	18,452	20,274	36,901	29,452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의 범죄는 ① 일반인이 SNS에 일상공유와 상업활동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타인의 사진도용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 ②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불법 웹툰 사이트·유투버 등의 리뷰 콘텐츠 불법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③ '병행수입정품'을 가장한 위조품 판매 사기 사례, ④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위조품 유통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기 위해 2015. 11.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2017. 12.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2018. 2.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고, 2016. 4. 변리사 자격증 소유자를 특허수사자문관(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채용, 전국 최대 규모의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7. 10.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기술유출·특허법위반 등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이 직접 쟁점 기술을 시연·설명하고, 검사가 기술적 쟁점 등을 신문하며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할 수 있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였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충분한 변론 및 기술적 공방 기회가 부여되는 특허범죄 수사에

특화된 원스톱(One-Stop)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범죄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① 영화 불법다운로드를 유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 등 7명 기소, ② K-방송 콘텐츠를 6년간 전세계에 불법송출한 사범 구속기소, ③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한 경복궁 낙서 사건 구속기소, ④ 3년간 국내 웹툰·웹소설 불법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구속기소, 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까지 제작·광고한 사범 기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한 유형으로서의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차단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 10.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를 반부패·강력부에서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① 2025. 1. 문체부 등과 「저작권위원회 조정 회부 시한부 기소중지제도」, ② 2025. 8.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표법위반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청으로 시행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2021	4,636 (7)	5,695 (7)	0 (0)	10,992 (84)	884 (2)	22,207 (100)
2022	4,272 (4)	6,070 (8)	1 (0)	11,471 (70)	761 (0)	22,575 (82)
2023	4,229 (19)	10,133 (7)	0 (0)	11,508 (76)	669 (1)	26,539 (103)
2024	4,363 (6)	15,628 (7)	1 (0)	10,250 (43)	11,895 (1)	42,137 (57)
2025	4,437 (9)	18,499 (15)	0 (0)	9,039 (43)	12,143 (0)	44,118 (67)

※ ( )는 구속 인원

6)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지속적으로 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커다란 사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2022. 7.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2025년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1,094명을 입건하고, 총책 등 444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 1.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되어 활발하게 수사 중이다.

또한,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 액수·고의에 따라 균형에 맞는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아니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다.

아울러, 금융·통신 분야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AI기술 이용 범죄이용전화 선별 등 근본적인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제화된 범죄로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므로,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는 2022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해외 거점국인 필리핀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국제협력체계를 수립 및 강화하고, 해외 도피사범을 집중 추적·검거하는 등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2025년까지 총 39명을 검거하고 24명을 송환하였다.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사례로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200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상품권 업체 직원 및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서울서부지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한 사례(합수단),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약 54억 원을 편취한 조직을 수사하여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한 중계기 무선라우터, 대포유심 등을 공급하는 중계기 유통조직 3개를 적발하는 등 태국·러시아 등 다국적 조직원 53명을 구속기소한 사례(합수단), ▲MZ세대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한 결과, 약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적으로 개설·유통한 조직의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한 사례(합수단),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 중심으로 '몸캠피싱팀', '로맨스스캠팀', '주식팀', '이체팀' 등 역할 나누어 조직적 범행한 기업형 범죄조직 적발, 관리책 등 23명(3명 별건 구속) 구속한 사례(합수단),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범행에 이른 범죄조직 실체를 밝히고, 한국인 조직원 6명, 계좌 제공인 1명 등 총 7명을 직접 구속기소한 사례(대구지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 전원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례(홍성지청),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어 12명을 기소한 사례(의정부지검),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수사하여 캄보디아 포이펫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9.3억 원을 편취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를 적발하고, 한국에서 조직원을 공급하는 '에이전시', 현지 조직원 '관리책', '통역인',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담원' 등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11명을 직구속 기소한 사례(합수단), ▲아파트를 자금세탁 사무실 등으로 개조하여 180개 이상의 대포계좌를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 7명 직구속한 사례(합수부) 등이 있다.

표 2-34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발생건수	31,681	30,982	21,832	18,902	20,839	23,360
검거인원	39,713	26,397	25,030	22,386	21,833	32,370
피해금액(억원)	7,000	7,744	5,438	4,477	8,545	12,578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가) 집행실적

2025년 세입예산액은 1조 3,858억 6,10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95.09%인 1조 3,178억 978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5조 3,447억 7,217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2.19% 증가되었다.

2025년 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36〉과 같다.

나)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5.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표 2-35 2025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산서부지청	춘천지검	영월지청	공주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세입예산액 달성도(2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25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5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564명 중 98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842명 중 750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1,824명 중 435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5년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36,376명 중 26.8%에 해당하는 9,732명에 대해 그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2025년에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800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 포함)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편성하여 시행 중인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직원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일선 청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60개 검찰청(지검 및 지청)에 대한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각 2회 완료하였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46개 지검 및 지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감독 활동을 강화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고검 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 및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5개 고검(수원고검 제외, 관할 단독지청 없음) 인권보호관이 관할 단독지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역할을 분담하였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결과를 해당 청에 송부하여 인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보완 후 조치내역을 대검찰청에 보고토록 하였다.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출석요구 시 인권 개선방안 등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시·지침 등을 반영하고 점검사항을 확대하여 2021년에는 기존 점검사항에 더하여 '반복 출석조사 적정성, 수용자 출석 후 수사과정의 기록, 압수수색 관련 인권보호관 기록 열람 및 의견 제시'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고 2022년에는 '통역인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9. 1.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영장, 출국규제, 기소의 각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025. 4. 1.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권보호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지침·지시를 통합·정비하였고, 인권보호관의 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출국금지 및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점검 범위와 점검 방식을 조정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계에서의 인권보호관 점검 제도(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여부 점검, 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 형집행상황 통지 이행 여부 등)를 신설하였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1. 종전 지시로 시행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사전 영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경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021. 6. 검찰-교정시설 KICS 개선으로, 수용자용 출석요구서를 KICS로 발송,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령상 출석의무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수용자의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3. 10. KICS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 발송'(안내문구 마련)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청에 지시하였고, 2025. 4. 기존 수동방식의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배당, 결정 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되도록 개선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1.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사실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두 외에도 문자메시지로 선정 사실을 알려주도록 일선 청에 전파하였다. 더불어 2024. 1. 경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에게 미리 조사일정을 통지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25. 3.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변호사등록번호 등 활용하여 사건조회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등 선정서류에 변호사등록번호, 사건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선정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경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변호사등록번호를 킥스에 입력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국선변호사의 형사절차 정보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여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5년 피고인 보상은 1,355건에 1,180억 3,918만 원, 무죄비용 보상은 2,534건에 93억 1,86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10건에 9,616만 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6〉과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7〉과 같다.

표 2-36 2025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1,355	290	1,065	2,534	3,889
금액	118,039,184	9,606,300	108,432,884	9,318,602	127,357,786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표 2-37 2025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10	10	-	10	-	10
금액	96,166	96,166	-	96,166	-	96,166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 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으며, 2018. 2.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검찰청법」,「형소소송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 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설치되었던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가 2022. 9. 19.자로 대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되었고, 관련 업무를 과명칭에 반영하고자 2023. 12. 26.자「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사이버수사과에서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 4.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8. 6. 부산고검, 2009. 9. 대구고검, 2010. 4. 광주고검, 2010. 12. 대전고검, 2011. 5. 인천지검, 2012. 6. 수원지검(2019. 3.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2023. 7. 서울동부지검, 2024. 7. 제주지검 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자체의 무결성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공판업무 지원을 위한 공판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참여 증가, 선별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참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청 3곳에 포렌식수사관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3개를 증설하였으며, 2024년 정기직제 증원을 통해 총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11개를 증설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북부지검 및 서울동부지검 각 2명, 수원고검에 1명을 증원하였다.

마약 및 DNA 감정 분야에서 2007. 10.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한 이래로 2009. 2. 국내 최초로 문서감정 분야 인정 획득, 2020. 11. 디지털포렌식과 법화학 규제물질류 분야에서 추가로 인정을 획득하였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공인시험기관 재평가를 통해 인정 갱신을 받음으로써 과학수사부에서 수행되는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2023. 10.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재평가에 통과, 2023. 12. 각 분야에 대한 인정 갱신을 받았다.

2025. 5. 무선음성증폭기를 배정하여 청각 장애인 및 난청 피조사자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인권 보장, 명확한 진술 확보 등 수사업무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2025. 12.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압수수색 집행 시 적법 절차 준수 입증 및 악성 민원인 대응

관련 유사 시 채증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웨어러블카메라, 바디캠을 일선청에 배정하는 등 현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매년 노후장비 교체, 수사관 신체 보호장비, 신종 수사기법 활용장비, 대민원용 장비 위주로 최신 수사장비를 구입·배정하여 일선 청의 현장수사 역량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사장비 적정한 수급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문서감정 분야는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및 문서의 각종 위·변조 식별 여부, 잠재지문 현출과 관련된 감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지질감정, 출력기기 동일여부 감정 등 관련 감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CA훈증챔버(CyanoAcrylate Fuming Chamber, 2021년), 분광비교측정장비(VSC-8000, 2022년) 등 첨단 감정장비도입 및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2023년),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2023년)로 감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첨단화되는 문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5. 4. '비파괴적 특성 분석법을 이용한 문서상의 인주 잉크 식별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문서감정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리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4. 12.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살인, 아동학대 등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고자 임상심리평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지적·성격적 특성,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0. 11. 1:1 전자감독 대상자, 2021. 11. 고위험 피부착자로 PCSOT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프로그램 인증 취득을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인증을 취득하고, 2018. 4. 2.(1차), 2021. 8. 17.(2차), 2023. 5.(3차) 인증을 갱신하였고, 최초 인증 취득 이후 검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 해양경찰, 군 수사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51명의 심리생리검사관을 배출하는 등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5. 9. 국제학술지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에 'Validity of Systematic behavioral analysis in detecting high-stakes deception' 논문을 게재하고,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행동분석 모범진술문'을 개발하는 등 일선청 강력사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다.

2022. 3. 16.「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67호)」을 개정하여 진술분석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상한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진술분석 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2022. 5. 진술분석관 6명, 2023. 5. 4명 총 10명을 증원하였고, 신규 진술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실무에 투입하는 등 분석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진술분석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진술분석기법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및 사례발표 등으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19년 '성폭력 사건 판결문 내용 분석 연구' 결과를 학계 등 외부기관 실무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진술분석세미나를 개최, 발표하고 논의하는 등 국내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2020년 '진술분석기법 강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한 연구', 2021년 '형사사법 내에서 진술분석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22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기법 강화 연구', 2024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성인 진술분석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론적 및 실무적 검토), 2025년 '지적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등 진술분석 기법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심리학·공학·언어학의 융합 연구로 '진술 진위 탐지를 위한 진술분석 준거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동 발달 특성에 최적화된 진술 수집용 챗봇과 국내 최초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진술분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추후 데이터 보강 등을 통한 고도화가 필요하나, 공간·시간 등 물리적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면담 체계와 진술분석의 자동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진술분석 운영체제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 11.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 12.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22. 11. 'AI를 이용한 자동 화자 확인 기법 고도화 연구'를 완료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분석 능력을 확보하였다.

2023. 11.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 위·변조 식별 프로그램의 분석 성능을 강화하였다.

2024. 11. 녹음 품질이 불량한 증거 녹음의 신호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폰 녹음 음성 식별을 위한 오디오 신호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음성신호 개선툴을 개발하였다.

2025. 11.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Ⅱ'를 통해 증거 녹음에 사용한 스마트폰 추정 등 위·변조 식별 성능을 고도화하였고, 2025. 12.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음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2021. 12. 저화질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차량 번호판 분석의 감정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2. 6.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고, 2023. 1. 특허등록되었다. 2024. 12.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를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고해상화된 변조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5. 12.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여, 딥러닝 기반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관련하여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 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21. 12. 소형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에서 사용하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파일이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2. 2. 신속한 속기업무 지원을 위해 표준 규격이 아닌 녹음파일을 일반 재생프로그램에서 재생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3. 8. 사건 관련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e-Pros를 통해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4. 7. 대량의 녹음파일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녹취록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AI 이용 녹취록 초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4. 8. 증거 동영상 중, 특정 구간의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로 추출하는 특정 구간 영상 추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4. 11. 2023년에 개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에 모자이크 영역 반전 기능, 재생 모드 기능, 모자이크 강도 구간별 설정 기능 등을 추가한 개선본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5. 11. 기존 AI 녹취록 초안 작성 프로그램을 전국청 속기사들이 활용 가능한 웹 기반 '검찰 녹음 파일 변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2025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42,213점(전년 대비 2% 감소), DNA감식 12,883점(전년 대비 44% 감소), 심리분석 1,646명(전국, 전년 대비 7% 감소), 진술분석 171명(전년 대비 5% 감소), 문서감정 2,512점(전년 대비 30% 감소), 음성분석 2,928점(전년 대비 6% 증가), 영상분석 3,535점(전년 대비 5% 감소), 멀티미디어복원 5,429점(전년 대비 7% 감소)으로 전년 대비 총 9%가 감소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1.1.2를 운용 중이고, 2012. 11.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 손상파일 복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 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 최종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현장 압수수색 프로그램인 DFT의 성능진단과 시험사용을 계속 진행하고, 관세청, 특허청 등 2025년 한 해 동안 34개 유관기관에 1,279점을 배포하였다.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2021년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설계 및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랩 구축 모델을 개발·공유하는 등 검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기 또는 획득 대상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획득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해시값 생성도구인 해시젠(HashGEN, Hash value GENerator) Ver. 2.1을 2025. 12.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세청 등 27개 유관기관에 총 271점을 배포하였다.

2023년에는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와 협업툴에 대한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 기법 연구,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집 대상과 새로운 운영체제(신규 업데이트 버전) 기반 사용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모바일포렌식 도구(MFA, Mobile Forensics Acquisition&Analysis)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WinTriage(윈도우 아티팩트 획득 도구)와 WinART(윈도우 아티팩트 분석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윈도우 아티팩트에 대한 획득·분석 기능이 특화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2024년에는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 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를 통해 주요 경량 DB 및 직렬화 기술의 데이터 저장구조·동작원리·삭제 데이터 복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다수의 디지털증거 중 이미지 파일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및 교재 개발 연구를 통해 혼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를 식별하고 표준정의를 도출하여 전문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2023년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와 협업툴에 대한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 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 이종 OS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를, 2025년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점으로 한 인스턴트 메신저 등 분석기법 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인스턴트 메신저와 메신저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복호화 로직이 변경된 인스턴트 메신저를 대상으로 분석기법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포렌식 도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분석 기능을 향상시켰다. 2023년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2025년도에는 macOS 환경에서 통합로그데이터(ULD)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macOS 11~14버전부터 macOS 15버전의 특징과 아티팩트, 통합로그데이터(ULD) 분석을 통해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5년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표준 모델 연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 증거 유형분류 개선 및 공개모델 활용 분석기법 연구를 통해 다수·다종의 디지털증거 중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분류 및 내용요약에 공개모델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중 AI 모델 방식을 응용한 음성인식의 실무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AI를 이용한 자동음성 인식 시 환각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중 출처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AI 기반 서식 통합 기술 연구를 통해 다양한 출처의 이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등 AI를 통합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포렌식 기법을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진입하여 분석하는 연구인 자동차 IVI 시스템 접근 및 데이터 획득 기법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제 자동차 데이터 압수·수색 및 분석을 직접 지원하여 자동차 포렌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5년도에는 1,815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9,014건의 증거분석(참관·법원감정·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10,829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 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 2003년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성연쇄살인범의 DNA 신원확인정보가 일치됨을 확인하여 국내 최장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1년 9월에는 2001년 발생된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묻은 수건으로부터 확보된 피의자의 DNA형이 20년 만에 대검 수형인등 DNA-DB 일치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2001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별건으로 수형인등 DNA-DB에 수록되면서 2019년에 검색 일치가 통보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3월에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23년 1월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청에 송치된 '인적사항 불명 성폭력 미제사건' 중 DNA 감정서가 있는 사건에 대해 DB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22개 검찰청으로부터 총 65개의 감정서, 93개의 DNA형을 검토하였고, 그중 2건의 미수록 DNA를 확인하여 수록하도록 국과수에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를 DNA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수형인 일치 1건을 확인하였고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여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수사 재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2024년에는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 DNA검사를 하여 수형인등 DNA DB에 수록된 수형인이 2006년 서울에서 가정집에 침입하여 미성년 여아 2명을 추행한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져 출소 직전에 구속 기소 되었다. 2025년에는 성매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2009년 12월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일어난 2건의 연쇄 성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16년 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 이는 신규로 수록된 수형인의 DNA와 2010년 DNA법 시행 이전의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범죄 현장 DNA DB와의 검색 일치 결과로 확인된 사례이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분 불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확인 검사를 요청받아 NGS를 이용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환각버섯 및 다양한 식물 성분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등의 화학감정을 지원하고, 2016년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5월경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내용으로 총 7회 고소·고발 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압수품에 대한 화학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사건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연구비 187억 원을 받아 진행한 차세대 CO2분리막 개발 사업의 재료비 124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팔라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중금속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을 포함하여, 금세공 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한 순금 함량 측정, 특허출원한 액정보호필름의 특허 등록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점도 측정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폐수 증발 실험 등 과학수사를 통해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합계 276만 톤을 수증기 등 형태로 불법 배출한 사건과 건축 단열재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올 생산업체에서 재생 폴리올이 섞인 혼합 폴리올을 공급하고 순수 폴리올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1월에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약검사는 치료명령이 부과된 정신장애범죄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치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소변 시료에서 항정신성 약물(antipsychotic drug)을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치료 도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흉기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감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년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 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DNA 감정을 통해 피의자(할머니)와 사망한 여아(손녀)의 친모녀 관계를 규명하였고, '제주 조천읍 10대 중학생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15세)를 목졸라 살해한 범행도구인 허리띠에서 피의자 2명의 DNA를 검출해냄으로써 혐의 규명에 기여하였다. 2023년 택시기사 및 前 동거녀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DNA 감정을 통해 이복형제 관계임이 확인되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청구된 건 등 다수의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2024년에는 순천지청 살인미수 사건과 전주지검 호송 경찰관의 구속 피의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감정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75세 피의자가 친족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신 친족확인 시험법을 사용하였다. 2025년에는 1심 무죄 선고된 강간 사건의 증거물을 대검에서 재감정한 결과 피고인 식별 가능한 DNA가 검출되어 항소심 유죄 및 실형선고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목적물에 대한 출입 허락의 양해 범위를 벗어나 성적 목적으로 내연녀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DNA감정결과로 밝혀냈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4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 ~ 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23년도에 종료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형사사법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및 활용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의 도약과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 수사 시 착안사항, 감정관들의 감정 기법 및 최신 수사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수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4.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16.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 대검 예규 제1220호, 2021. 8. 11.대검 예규 제1268호, 2022. 3. 16. 대검 예규 제1325호, 2023. 2. 1.)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4.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1. 12. 개정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유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및 지침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사건, 사건 유형별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사례,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사례를 소개한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청 영상녹화조사 활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 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 대검 예규 제1215호, 2021. 8. 11. 개정, 대검 예규 제1425호 2024. 5. 31.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민사사건과 같이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여성아동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성별·연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휴게실에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5.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을 운용하고 있다.

표 2-38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5년)

(단위 : 실)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2021	-	-	-	-	-	-
2022	9	-	1	8	-	-
2023	4	-	-	-	-	4
2024	-	-	-	-	-	-
2025	-	-	-	-	-	-
계	1,011	21	71	766	77	76

※ 전국 수사검사(930명, 2025. 12. 31. 현재) 대비 97% 설치

※ 설치 누계는 1,011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903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7. 26.부터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5. 12. 31. 기준 총 273,00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272,412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검찰이 관리하는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3,084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2025. 6.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운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이 DNA-DB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12.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 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 2014. 2., 2015. 3., 2016. 7.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 개회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20. 12. COVID-19감염증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6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발표자 6명(폴란드 1명, 네덜란드 1명, 국내 4명) 및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천향대, 중앙대, 국과수, 대검 등 국내·외 약 85명이 참석하였다. 2023. 5. 제7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과 제16회 한국법생물연구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국내·외 연구자 약 120명과 국과수, 관세청,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 회원기관 19개 약 70여 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2019. 4., 9.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연구회를 제13회(2021년 하반기) 및 제14회(2022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연구회로 개최하였고, 2022. 9. 제15회 연구회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의 현장 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생물의 종을 판별하는 DNA바코드 입력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23. 5. 대검찰청 주관으로 제16회 연구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사례 및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중국 의과학 아카데미 지앙 슈(Jiang Xu)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노력이 깃든 참신한 실용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220%, 감정건수 약 370%, 감정장비 약 24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0. 12. 2.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예산(총 사업비 약 3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지하 3층·지상 6층(연면적 12,455㎡) 규모의 증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2021. 12. 설계업체 선정 이후 최적의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2022. 12.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 7. 물가상승 및 기본공사비 증액 사유(총사업비 약 501억 원으로 증액)가 발생하여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후 기재부에서 위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고, 2024. 8.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약 501억 원)에 대해 심의 의결되었다.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총사업비 497억 원, 면적 12,549.7㎡로 조정 된 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29억 원으로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일선청에서 수사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과학수사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은 2006년 수사장비관리시스템 (TAMS)을 개발·구축하여, 수사장비의 대출, 불용 결정 등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은 대검찰청과 일선청의 수사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당 권한(ID, PW)이 부여된 수사장비 관리담당자만이 시스템에 접근해 수사장비 보유현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코드를 이용한 자동 관리를 통해 장비 대출·회수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며 대검찰청 관리자가 전체 수사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2010. 6.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2010. 10. 성능 및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전문업체와 매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전문업체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고검, 수원고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창원지검, 제주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문서파일, 이메일,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경찰과는 네트워크(초고속국가망)를 사용하여, 특사경과는 국가행정망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디지털 증거를 송치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고, 2019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20년부터 빅데이터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3개년 수행)을 착수하여 2025. 12. 기준 23개 유관기관에 디지털증거 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NDFaaS)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공 범위 및 참여기관 확대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17년 KD-NET 구축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 경찰 및 특사경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증거 송치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5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고, 2023. 7. 서울동부지검, 2024. 7. 제주지검 포렌식팀을 설치하여 6개 고검 및 8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 접수실에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개정(2018. 11. 1.)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7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DNA, 법화학, 디지털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 2021년 3,963건, 2022년 3,996건, 2023년 4,482건, 2024년 4,281건, 2025년 4,375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정물 소급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 2021년 제주지검 등 12개청, 2022년 부산고·지검 등 3개청, 2023년 울산지검 등 5개청, 2024년 고양지청 등 4개청 1기록관, 2025년 의정부지검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62개청 1기록관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4년 내에 전국 67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 2021년 서울서부지검 등 8개청, 2022년 군산지청 등 10개청, 2024년 춘천지검 등 8개청, 2025년 부산고·지검 등 7개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대검찰청 1개 청에 대한 IPT 고도화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추진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저장소(1인 20GB)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저장 용량을 1인 40GB로 확대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을 추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 이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수원고검 개청, 2022년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라 전국 67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2019년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검색의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 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을 통해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3년 e-PROS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고, 지원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벗어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와 호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전자문서관리 및 검찰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확장을 위해 2010년 검찰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웹 표준방식의 웹기안기를 도입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를 적용하였다. 실시간으로 직원 간 상호 업무공유 및 각종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하던 검찰 메신저 시스템을 2025년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검찰 소통 문화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안정적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라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확보 등으로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검찰은 전자정부법 등에 의거, 검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및 사용자 조직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여 재구축하였고, 현재 검찰 업무시스템 뿐만 아니라 타기관 제공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검찰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 업무 활용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2022년에는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였고,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개선을 통하여,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웹 표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12년(2014~2025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년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서식 및 신설 제도에 따른 기능을 검찰 KICS에 신속히 반영하였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전자송달기능을 추가하여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하였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대상 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하여 이첩사건, 형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기존 적용 중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28종 외에 추가로 항고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총 44종에 대하여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업무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관련 서식을 KICS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소환장 발송 등 소환절차를 도입하였고, 입국시 통보요청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과금 관리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 발생 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피해자 환부대상사건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압수물관리시스템에 '압수물환부통지서' 및 '압수물본환부통지서' 전자송달 기능을 구축하여 압수물환부 관련 통지 업무를 개선하였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잠정조치 등 검찰·경찰·법원 간 KICS로 연계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국세 등 체납자 감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치 신청 관련 업무를 KICS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토교통부 철도특사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허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연계하여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21년 12월부터 약 33개월 동안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 형사사법 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미래지향 IT구조 개편을 위한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2024년 9월에 차세대 KICS를 개통하였다. 차세대 KICS 구축으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참고인은 원격 화상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편의가 증대되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에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되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현장에서 즉시 업무처리 가능한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이 도입되었다.

2025년에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오픈(2025. 10.)에 맞춰, 형사사법기관 (경찰/해경/

법무부/법원) 간의 형사절차전자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2025. 10. 10.부터 2025. 12. 15.까지 전자화 적용 시범청 운영(서울동부지검 및 서울동부지법) 후 2025. 12. 15.에 전국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6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유용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 e-PROS 게시판 등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자동분석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분석대응시스템(SOAR[1])을 도입하였고, 해킹메일차단시스템의 부족한 사용자 라이선스 증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으며, 침입방지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보안 이슈 제공 등 예방활동 715건, 유해 의심사이트와 유해 의심 IP 차단 등 침해분석/대응활동 11,028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PC 탐지 등 침해탐지활동 324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 보안 운영 자동화 및 대응 플랫폼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통해 경유하거나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101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변조·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1년 허브 전문인력 채용, 허브 로고 제작, 허브 홈페이지 구축, 2022년 허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2023년 허브 홈페이지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2. 11. 1.~4. 캄보디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APC-HUB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25.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12개국을 초청해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 및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2. 10. 11.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유럽평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마침내 2025. 12.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인 '보전요청 제도'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협약 정식 가입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련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첩보 협력은 물론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FBI,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협력관과 주기적인 공조 회의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 및 기술범죄 정보 교류 등 해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미 FBI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플(Ripple)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부함으로써 범죄 척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일반 수사관도 IP주소, 도메인 등 사이버범죄자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수사지원시스템(Cybercrime Investig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일선청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자산 지갑주소 소유 거래소를 식별하는 가상자산주소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1년부터 국내 6개 거래소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외 거래소, 2025년에는 거래내역까지 조회 범위를 확장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수사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시장성장과 기술적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2021~2023년) 사업을 통해 '공개출처정보와 스냅샷 사이의 링크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공개출처정보 포렌식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을 특허등록(2023. 11. 7.)하였고 저작권등록(3건), 기술이전(DFT 1.3.2. 탑재) 등 큰 성과를 내었다.

또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유출 범죄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하였고 산출 도구의 실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한 보강수사와 전문적인 증거분석 및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 일선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2020년 8월 제1기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매년 1회 전문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들 대상 가상자산 추적, 데이터분석, 침해사고 조사 등 각 분야 심화 교육을 통해 최신 수사기법을 습득하여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보 공유, 첩보 수집, 수사결과 정책반영,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하였다.

검찰은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법집행분과(대검, 지식재산처, 관세청, 해양경찰, 경찰청, 국정원)를 주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수사기관', '수사기관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one team)를 구축하였다.

법집행분과 참여기관 외 기술유출 유관기관(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방사청, 지식재산처, KISA)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기부·방사청과는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기술탈취 정보를 일선 검찰청과 연계하여 혐의 입증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식재산처의 전문 인력(특허심사관 등)을 활용하여 유출된 기술에 대한 분석 및 자문을 제공받는 기술자문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공조를 위해 한국의 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지식재산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산업보안국(BIS)·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의 경찰청과 한·미·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각국의 수사사례 공유 및 기관별 협업 가능한 분야를 논의하고, 수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국가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지식재산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도 참석하는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개설, 기술유출 관련법 이해, 기술유출범죄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수사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중요 태양인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지휘·지원을 위해 전략물자 관련 범죄의 전담부서를 형사1과에서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하였다.

정책연구용역 '기술유출범죄 판례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수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주해, 국내 기술유출범죄 관련 판례 동향 조사 및 국내 주요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법원의 증거채택, 선고내용 등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 강화 방안 및 수사·공판기간 단축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핵심·첨단산업 기술유출범죄 등 범죄수사, 증거수집, 공소유지, 수사·공판기간 단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법과학분석과에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이용한 유사 글자 추출 방법 및 장치(2024. 3.)」 등 16건,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검체의 소변 시료 중 항정신병 약물 및 이의 대사체를 분석하는 방법(2025. 2.)」 등 42건, 디지털수사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19. 2.)」 등 12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서 「공개출처정보와 스냅샷 사이의 링크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공개출처정보 포렌식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2023. 11.)」 1건 등 과학수사부에서 총 71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14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5건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2008년 이후 2025년까지 21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최근 5년 간 법화학실은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 메트암페타민의 제조방법을 추정하는 방법(2020. 12.),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2023. 3.) 및 온라인 마이크로고체상추출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이 적용된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방법(2023. 10.), 정신질환 치료명령 약물감정 분석기법(2025. 10.)을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2021. 1.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나 성범죄에 악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대사체 성분에 대해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기간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 3.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소변분석법을 국제학술지 게재하였고, 이어서 2022. 5.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측정값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2022. 6. 마약지문감정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고, 2022. 9. 마약류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미지물질에 대한 신종 마약류 여부를 판별하고 화학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2022. 12. 대마복용 확인을 위한 소변 중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였다. 2023. 10. 암페타민 함량분석의 측정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R프로그램으로 몬테카를로법을 구현하였고, 소변 시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크레아티닌 농도 및 색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2024. 1. 코카인 투약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발 분석법을 개발하여 실무 적용하였다.

대량의 마약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마약원산지 국가의 감정기관들과 마약 포렌식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증가하여, 2024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마약포렌식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급증하는 신규 원료물질을 기반으로 밀조되는 합성마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메트암페타민 시료에 함유된 불순물의 동정 및 원료-제조법 특이 불순물 확인'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후속 과제인 '고성능 분석장비(GC/LC-MS/MS), 계량분석 연계기반 마약지문 감정기법 고도화 및 글로벌 프로파일링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합성마약의 불순물 분석 프로파일 등 마약 포렌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압수한 대량유통 마약범죄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DNA-DB 운영 및 DNA감정 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STR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 (2015. 10.),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 (2014. 6.)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2018. 8.).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

2022년 4월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대마의 식별을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유래 분자마커 및 이의 용도' 1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등 2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캡 탈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핀셋 1건을 특허등록 하였다.

2022년 9월에는 '포렌식 체액식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DNA감정 관련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3건(유전적 거리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및 기준값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을 등록하였고(2023. 8.),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현장감정물 시료의 체액흔 확인을 위한 상용화키트의 유효성 평가'를 게재하였다(2023. 9.).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자체시험연구 관련 저작권은 'seq2pattern(단염기반복서열 패턴추출분류)(2023. 3.) 및 seq2pattern(식투패턴)(버전 2.2.0)(2023. 11.)', seq2pattern(식투패턴)(버전 3.2.0)(2024. 12.), ForensicPro(포렌식프로)(버전 1.1.0)(2024. 12.), G-BLAST(지-블라스트)(버전 1.1.0)(2025. 1.), seq2patternMix(식투패턴믹스)(버전 4.1.1)(2025. 11.)', 6건을 등록하였다. 또한, 법생물 감정 관련 특허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제10-2549585)(2023. 6.)'과 '체액 식별 모델 구축 장치 및 방법과 체액 식별 모델을 이용한 체액 식별 장치 및 방법(제10-2684467)(2024. 7.)'을 등록하였고, '환각선인장 및 근연종 종식별용 프라이머 세트, 이를 포함하는 키트 및 종 식별 방법(제10-2025-0192031)', '균질화 및 토출 일체형 시료 균질기(제10-2025-0191991)'을 2025년 12월에 특허 출원하였다. 사건 감정 관련하여서는 형사사법R&D 연구 결과물[Y 염색체 DNA메틸화를 이용한 남성 나이 추정법의 개발(2024. 1.), 조직 특이적 DNA메틸화를 이용한 장기조직 식별법의 개발(2024. 1.)]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 (2011. 12.),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 『K-디지털포렌식 위크 2025』 행사(2025, 11.)에 위 ASIC 기반 암호해독 전용 칩, 특허문서 등을 타임캡슐에 담아 보관하였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가. 추진배경

2025년 법무·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및 출입국 범죄 엄정 대처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SNS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체류 외국인을 구속기소하는 등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으로 2025년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여 테러위협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고무보트 등을 이용하여 제주도 및 충남 해안으로 밀입국한 외국인 14명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수사

北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를 위해 장비를 군부대 내로 반입한 1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국내 잠입한 北 공작원과 회합하여 지하조직 재건상황을 보고한 4·27시대연구원 1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타국 정보국 소속 조직원과 공모하여 군인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위장기밀을 전달받는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한 1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게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北 해커와 연계하여 도박사이트 제작, 도박공간을 개설한 분양업자 1명 구속기소, CCTV 연결선 절단,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하여 월북을 시도한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응 하여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한 결과 2025년 총 35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기소(구속기소 2명)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 확보 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한편 2024년 1월 개정 국가정보원법 시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국정원에서 장기 내사 진행한 사건을 점검하여, 실질적 수사 활동이 진행된 사건은 입건 후 송치하고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지휘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재심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직권재심 및 기소유예 처분변경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순사건 희생자 1명에 대해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최초로 청구하였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8.~1972.경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6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여 이중 29명이 무죄 선고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37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기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하였다.

제주4·3사건 합동수행단 출범 후 2025. 12. 31.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74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747명 전원 무죄 선고되었고, 일반재판 수형인 48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421명이 무죄 선고되는 등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 또한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

가. 추진배경

2025. 3. 5.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새마을금고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의무위탁하여 실시한 선거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사상 최초로 전국 1,102개 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한 선거였다. 선거인 1,752,072명 중 451,0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25.7%의 투표율 (직선 25.1%, 대의원회 95.1%)을 기록하였고 회원 직접선출 534곳, 총회선출 4곳, 대의원회 563곳 등 전체 1,101개 금고에서 최종 1,540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처음으로 의무위탁하여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금품 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여전히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였다.

2025. 6. 3.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갈등과 혼란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참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9.4%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과 각종 허위 정보, 이에 더하여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선거관리 업무 방해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위협 등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이 크게 늘었고, SNS 등 사이버공간 내 정치활동이 과열화되어, 선거 분위기가 혼탁 양상을 보였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검찰은 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②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③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선거범죄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9. 5. 기준 507명 입건, 225명 기소, 8명을 구속하였다. 당선자는 55명을 입건하여 그중 22명을 기소하였다.

표 2-39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범죄유형별 발생(입건)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차지 비율]

구분	합계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폭력·방해	기타
제1회	507	410 (80.9%)	31 (6.1%)	2 (0.4%)	64 (12.6%)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 기준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10명을 구속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46.2%(2,001명→ 2,925명) 증가, 구속인원은 16.7% (12명→ 10명) 감소하였다.

표 2-40 역대 대통령선거 입건 및 처리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기소율]

구분	입건 (구속)	기소
제21대 대선	2,925 (10)	918 (31.4%)
제20대 대선	2,001 (12)	609 (30.4%)
제19대 대선	878 (16)	512 (58.3%)
제18대 대선	739 (19)	428 (57.9%)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389명, 19.4%→ 1,660명, 56.8%)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20대 대선 대비 위와 같은 선거폭력·방해사범의 비율은 2배 이상 대폭 증가함에 반해(19.4%→ 56.8%),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을 대폭 감소(40.5%→ 11.5%)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 인원은 1,025명(전체 입건자의 65.0%)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1,313명, 전체 입건자의 65.6%) 대비 21.9% 감소하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선거폭력·방해 사범 총 8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검찰은 중요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 2-41 역대 대통령선거 범죄유형별 발생(입건)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차지 비율]

구분	합계	선거폭력·방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기타
제21대	2,925	1,660 (56.8%)	95 (3.3%)	336 (11.5%)	834 (28.4%)
제20대	2,001	389 (19.4%)	101 (5.1%)	810 (40.5%)	701 (35.0%)
제19대	878	273 (31.1%)	68 (7.7%)	164 (18.7%)	373 (42.5%)
제18대	739	107 (14.5%)	66 (8.9%)	230 (31.1%)	336 (45.5%)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5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중대재해 사범을 엄단하여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도모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법무·검찰은 2022년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시행함으로써 요양병원 대표이사가 근로자 109명 14억 6,0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범인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2025년 1~12월, 11명 구속)하고, 소액 임금이라도 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2025년 1~12월, 3,230명)하는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노동청과 협력하여 신속한 초동수사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업체대표 및 현장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2025년 총 97건 208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다. 노동사건 관련 수사역량 강화 노력

노사관계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죄가 선고된 판결 전건을 분석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사안을 선정 재판에서의 쟁점과 핵심적인 판시내용, 수사 시 유의사항 등을 위주로 '노사관계법 쟁점별 주요 사례' 책자를 제작하여 노동사건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각 청에서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초동수사, 효율적 증거수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근로감독관 교육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엄정대응

2025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하여 9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폭력집회·시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향후에도 불법·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집회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표 2-42 최근 5년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입건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입건	처 리			기타
		소 계	기소(기소율)	불기소	
2021	234	161	116(49.6%)	45	98
2022	359	201	140(39.0%)	61	102
2023	335	198	123(36.7%)	75	89
2024	324	224	169(52.2%)	55	89
2025	322	221	178(55.3%)	43	59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보완수사

표 2-43 2025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북한해커 연계하여 도박사이트 제작 및 도박공간 개설 사건	서울중앙지검
	• CCTV 절단 후 월북 시도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건	고양지청
	• 고무보트 등 이용 밀입국 사건	제주지검, 서산지청
선거사범	• 출자금 10만 원이 기장된 계좌를 51명에게 제공하여 금고 회원을 매수한 사건	마산지청
	• 금고 대의원 8명 매수 사건	순천지청
	•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 사건	서울중앙지검
	• 사전투표사무원,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이용한 사위투표 사건	서울북부지검
노동·집단사범	• 요양병원 대표이사 임금 등 체불 사건	부산서부지청
	• 호텔 공사현장 화재 사건	부산동부지청
	•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서울서부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 국제형사과 검사 최선희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오늘날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2024. 7. 24.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2024. 10. 8.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82개국(발효 79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80개국(발효 78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6개국(발효 76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도피국가별 업무협의 등 맞춤 대응, 인터폴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제도 활용 등 실효성 있는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해외도피 범죄인송환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44 범죄인 송환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수	70	85	60	73	70	96	180	274

※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자진입국 포함

3) 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 3. 8.에 제정 및 1991. 4. 8.에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신속, 효율적인 공조를 위하여 국가별·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조 대상국과는 상호 방문하여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담당자들 협의체(PC-OC)」,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 공조 담당자들 간 다자회의를 통해 현안 협의 공조망을 구축하였다.

2025년에는 외국에 총 1,092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총 213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에서 한국 법무부가 '20년부터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코리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동남아 지역 중심의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비공식 사법공조 교류·협력 플랫폼('25. 12. 기준, 동남아시아 국가,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포함 총 22개국 가입)

표 2-45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 요청	320	375	420	741	1,043	1,065	1,117	1092
외국 요청	195	235	202	285	207	206	194	213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5년에는 국내이송 심사대상자 8명 중 7명, 국외이송 심사대상자 15명 중 6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21. 6. 5.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1. 9. 11. 한-키르기즈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3. 1. 13. 한-파키스칸 수형자이송조약이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총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표 2-46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8	2	6
2019	6	3
2020	1	0
2021	1	0
2022	2	1
2023	2	3
2024	2	3
2025	4	1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 체결되어 1967. 2.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였고 2025년 재판권 행사율은 41.7%이다. 한편, 최근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 2025년 524건이다.

표 2-4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계	미군인 미측관할	미군인 공소권 없음	미군인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미군속 등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	254
'22	건	521	509	355	12	153	190	166	132	182
	명	579	567	401	12	178	211	178	144	196
'23	건	599	587	432	12	143	277	167	145	312
	명	626	614	450	12	146	292	176	149	325
'24	건	635	630	453	5	142	306	182	140	322
	명	669	664	479	5	152	322	190	143	333
'25	건	524	514	401	10	106	285	123	119	242
	명	545	535	421	10	112	299	124	123	247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재판권 행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던 것을, 그 대상범죄 확대를 위해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4.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2. 16. 공포되었고, 2026. 6. 17. 시행될 예정이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 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 국회에 이행입법안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개최되는 ICC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등 ICC와 교류하면서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법무부는 2023. 11. 외교부, 대법원과 공동으로 ICC 재판소장, ICC부소추관, 동남아시아 8개 국가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보편성 확대를 논의하는 등 ICC 회원국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10. 11.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 법무부는 비준을 추진하여 2015. 5. 29.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른 '범죄화 및 관할' 분야 이행평가 수검 절차 진행 중으로 2023년에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사무국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 충실히 수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024. 10.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 등을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참여하였고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화 및 법집행' 분야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패예방 및 자산환수'에 대하여 이행평가 수검을 완료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25. 12. UN부패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을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그림 2-62 국제협력성과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2025. 2.)

법무부-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 지식재산권 공동 세미나 개최(2025. 3.)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2025. 4.)

12.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재판기록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 청구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5. 2. 27.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 18. 공포, 9. 19. 시행되었다. 한편,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5. 12. 2.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 23. 공포되어 2026. 6. 24. 시행될 예정이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원칙적 허가하도록 변경되었다. 본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공백이 있거나 법정형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구체적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8. 대검찰청은, 공중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2023. 8. 22. 당정협의회를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협의의 후속조치로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21대 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송석준 의원이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고, 2025. 2. 27. 공중협박죄 신설 개정안이, 2025. 3. 2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개정안이 각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공중협박죄 신설 개정안은 2025. 3. 18.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개정안은 2025. 4. 8.부터 각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상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제거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중안전 위해사범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다중사기 범죄 대응 등을 위한 사기죄 관련 「형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대규모 재산범죄는 피해·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피해자별 피해액 5억 원 이상 要)이 어려워, 법정형의 불균형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23년 4월 '전세사기 특별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유상범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김기표 의원이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고, 2025. 12. 2.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 12. 23.부터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더라도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가능하여 법정형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 중 근친(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형면제 조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시한 : 2025. 12. 31.)을 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박균택 의원이 근친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원친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 개정안이 14건 발의됐고, 2025. 12. 30.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 12. 31.부터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고,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확대 관련 「형법」 개정 추진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어 2023. 3. 22., 6. 28., 9. 12.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2023. 9. 이후에는 추가 논의 없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2024. 6. 21.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비롯하여 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8건 발의되었고, 2024. 11. 13. 법사위 1소위에 15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며, 법원과 법무부과 협의안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되었고, 2025. 12. 3.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 제98조의2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국이나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익 보호를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17.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가. 추진배경

기존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었는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국선변호사 제도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2025. 12. 2.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 23. 공포되어 2026. 6. 24. 시행될 예정이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으로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자들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법률적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가. 추진배경

2021년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이어 2024. 12.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비공개수사가 도입되고,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개정법의 위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하여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4. 11. 14.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비공개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 12. 3. 공포되었다(2025. 6. 5. 시행). 그 후 2025. 10. 1.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신분위장·비공개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위장수사 시 피해자 동의에 관한 사항,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신분위장·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범인을 용이하게 검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가. 추진배경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25. 12. 22. 형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나. 주요내용과 성과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2025. 12. 12. 출범하여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법 대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 5 절 |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동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년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고, 더 나아가 2018년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스토킹 재범 방지 활동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48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 원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47,921	47,730	47,881	49,916	51,038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 안산 등 총 2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7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5년 기준 전국 53개 기관에서 총 293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범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공동출장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치료·재활 중심의 엄중한 관리를 실시하였다.

재범위험이 높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시 또는 불시검사를 확대하여 재범억제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사, 교수, 중독관리센터장 등 중독치료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기소유예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관찰관은 단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전국 확대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 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투약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23종의 진단 시약기로 검사 도구를 확대하였고, 보호직 직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스토킹·방화사범 등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고위험군의 경우 보호관찰 종료 시 인적사항을 경찰에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등급으로 분류하여 밀착 지도감독하고,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표 2-49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범률	7.9	7.8	7.2	7.2	7.3	6.4	6.0	6.7	6.4	6.2

그림 2-63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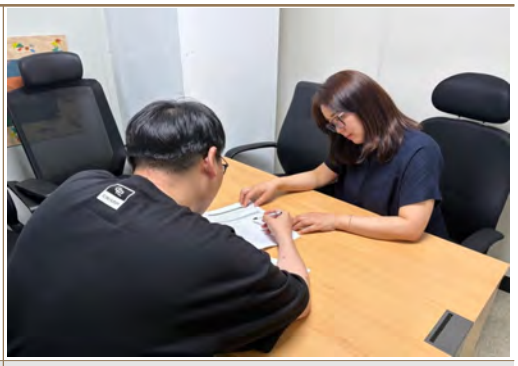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에는 전년보다 0.2%p 낮은 6.2%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개편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 보호관찰과 사무관 배현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2-50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판결전조사	1,901	2,003	2,053	1,797	1,596	1,618	1,273	1,431	1,373	1,122	16,167
법원 결정전조사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0	18,039	16,608	14,692	176,024
검사 결정전조사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682	517	15,536
청구전조사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01	1,162	9,83	15,355
소급청구전조사	79	86	39	52	37	33	18	12	20	5	381
환경조사	1,555	1,920	1,496	1,442	1,356	1,185	1,117	1,511	1,858	2,024	15,464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 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명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송도 아들 총기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시행,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스토킹사범 청구전 조사 시행 등 조사업무 활용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년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문조사관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까지 1,027명의 조사관과 38명의 전문조사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조사관에게는 조사 담당 직원을 수퍼비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향후 조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조사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 보호관찰과 사무관 이상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년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년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10만8천 명, 총 173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년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51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건 수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52,894

표 2-52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연인원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188,214	185,781	145,247	122,914	107,581	1,173,634

표 2-53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건수	1,974	1,667	1,626	1,113	1,330	1,367	1,191	1,200	11,468
연인원	16,591	13,855	13,849	20,304	22,283	14,685	11,529	11,133	124,229

표 2-54 사회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봉사	접수	42,249	40,279	41,943	35,954	33,513	35,843	37,335	37,653
	실시	51,224	49,788	51,448	65,693	62,115	53,702	48,804	46,534
벌금 대체	접수	7,624	7,413	9,097	7,207	5,830	6,589	5,890	5,040
	실시	9,062	8,709	10,561	11,091	7,791	8,217	7,468	6,360
계	접수	49,873	47,692	51,040	43,161	39,343	42,432	43,225	42,693
	실시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52,894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284,448명,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107,581명 등 총 392,029명을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 장애인, 영세 농가 등에 인력을 지원하고, 집중호우, 폭설 재난 피해복구와 농가 주거환경개선 등 농촌지원활동을 지속하면서도 공익과 배상 및 교육의 가치에 부합하고 대상자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림 2-64 사회봉사 집행현장

반려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

저장강박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독거노인·노식인 무료급식 지원 사회봉사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 보호관찰과 사무관 배현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년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판결 선고 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법률의 확대로 수강 분야와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55 수강(이수)명령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수강명령	41,884	42,408	50,357	68,422	72,805	61,040	57,127	54,411	448,454
이수명령	7,999	7,808	8,225	9,200	11,518	13,417	15,223	16,060	89,450
기소유예 등	20,897	19,173	16,139	18,471	22,919	21,522	19,059	20,169	158,349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약물치료 수강명령의 효과성 및 집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 등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심화형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림 2-65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가. 전자감독 고위험사범에 대한 밀착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 강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현옥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 대상이 성폭력사범으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 2023년 스토킹 사범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12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20. 8. 5. 개정「전자장치부착법」시행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해 적용하였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4. 1. 12. 개정「스토킹처벌법」시행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지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2-56 연도말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재원	2,696	2,981	3,126	3,111	4,052	4,316	4,421	4,188	4,474	4,827

2019년 4월「전자장치부착법」개정(일명 조두순법)을 통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일정 기간 1: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고위험 사범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매일 생활 실태 점검 등 강화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밀착 지도·감독 및 경보 상황 대응을 위해 2013년 신설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직 공무원,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은 신설 초기 26개 팀에서 현재는 57개 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제한된 인력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여 관리역량이 우수한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였다.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주거 침입형 범죄자에 대한 주택 밀집 구역 체류 시 선제적 대응, 자체 디지털분석센터 구축을 통한 채팅앱 등 SNS를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7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범자	48	53	58	66	83	55	41	46	24	30	18	23
재범률	2.03	2.00	2.00	2.17	2.53	1.70	1.27	1.40	0.73	0.91	0.57	0.72

나. 수사팀 운영을 통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범죄 신속 엄정 대응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최성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 10. 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수사팀을 신설, 2022년 7월 18개팀으로 수사팀을 확대 운영하여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특사경 업무가 분리되어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위반 시 현장 출동 및 현행범체포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수사팀 도입 후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송치 기간은 1/2 수준,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검거 기간은 1/4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 건수는 월평균 83건 정도 수준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박지훈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전자감독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므로 '전자발찌'라고 칭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방지 등 내구성 강화, 위치측정 기능향상, 측위 방식의 다각화, 충격 및 임의분리 감지 기능 탑재 등 전자장치의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감독대상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훼손이 쉽지 않게 제작하여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현장 검거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훼손 욕구 억제를 위해 장치의 외형에 금속 프레임을 적용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다.

아울러, 기존 보급형 장치보다 크기와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훼손이 어렵도록 절단 저항력을 강화하고 성능이 향상된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다.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므로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외에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자감독 시스템과 지자체 CCTV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2025년 기준 14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용되고 있고, 보호관찰관이 출동 차량 안에서 현장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CCTV 열람용 태블릿 PC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훼손 사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공조 시 기존에는 유선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실시간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찰에게 인상착의, 위치정보 등 대상자를 식별하여 검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가해자의 접근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

2024. 1. 12.부터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4년 12월에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6년 6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피해자보호 방안으로 거리 단위로만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모바일 앱 지도를 통해 실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 치료처우과 사무관 반기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121건으로, 이중 3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90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5년 12월까지 총 105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73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5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11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41명이다.

표 2-58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재원	14	17	23	39	33	40	42	35	44	42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105명을 집행하였고, 재범은 2021년 1명이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림 2-66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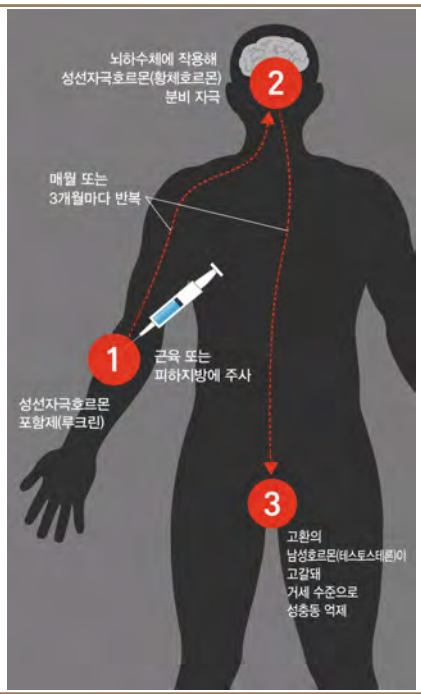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보호사무관 김병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로 운영 주체가 재편되었고 등록 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 집행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139,346건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2015년 대비 3.8배 증가) 중이고, 그 중 5,856건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5,708건이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표 2-59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건수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5	116,434	126,789	134,151	139,346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자(공개·고지)는 신상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보호관찰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잘못된 거주지 정보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히 공개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오(誤)정보가 공개·고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장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에 필요한 표준화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담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배포하였고, 2025년에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고, 2023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등록·관리사건 39,464건을 추가 분석한 「2023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성범죄백서에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여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항상 시키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1. 10. 19.)되고 2025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67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피치료감호자 처우 개선

>>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적 처우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I 기술과 로봇 등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재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이상·공격행동을 자동 감지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2025. 12.)하였고, 고령층 및 경도인지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로봇기반(실봇, SILBOT) 인지재활치료실을 설치(2025. 11.)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바리스타, 정보기기 등)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음악, 미술, 도자기 등)을 실시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국립법무병원에 운영 중인 전 병동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 정신감정을 재시행하고 여성 피치료감호병동을 추가 운영하는 등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병원임에도 격오지 근무, 민간병원 대비 낮은 보수, 범법 정신질환자 진료 부담 등으로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퇴직 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등 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해 의사 6명을 채용하여 정신과 의사 충원율이 전년 대비 20.7%p 증가(45.3% → 66%)하였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2026년 전공의 정원 2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법무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을 통한 의사 보수 인상(기준급 대비 200~350%), 정신의학 국제학회(일본) 참가 지원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직 채용방식의 다양화 및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치료감호 성과 홍보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 피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 치료처우과 사무관 정대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5. 12. 31. 현재 3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그림 2-68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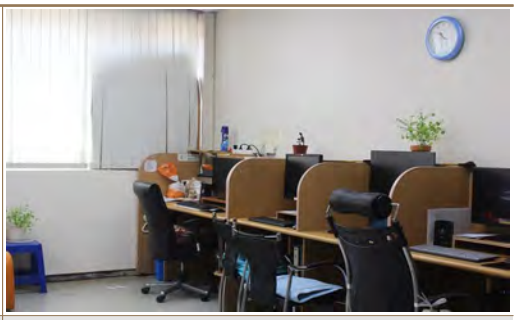

생활관 내 독서실

표 2-60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집행인원	22	31	17	31	30	32	24	19	11	4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 치료처우과 사무관 정대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습득하는 정수기 부품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반기 1회 이상 사회 견학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직접 물품 구입, 키오스크 결제 등 변화된 사회환경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단절되었던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회복, 출소 전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69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위탁 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사회 견학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적응력을 제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치료처우과 사무관 정대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 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60, 5-61, 5-62, 5-63〉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26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가 자연 감소되었고, 법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부과 등 사회 내 통제장치 마련 후 적극적 가출소를 실시하여 2025년에는 3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동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년 12월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 2021년 453명, 2022년 381명, 2023년 427명, 2024년 425명, 2025년 395명 등 총 4,597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2-61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3	2024	2025
집행유예	584	473	338	343	350	320
선고유예	6	0	8	2	1	1
기소유예	160	99	107	82	74	74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년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년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대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중독관리센터 등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45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나. 「소년법」 상 7호 처분자 민간병원 치료 연계

>>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지호

1) 추진배경

「소년법」상 7호 처분으로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이나, 그간 민간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재활소년원이 7호 처분자를 전담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2024년 4월부터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는 법원부터 병원까지 호송을 전담하기로 협의하였다. 2024년 7월 첫 호송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8명의 소년에 대해 민간병원의 치료를 연계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8개인 민간병원 추가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함께 신규 수탁기관을 발굴·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정경아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초기비행예방 전문 교육기관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디지털 성범죄 및 약물·도박 중독 등 범죄유형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행예방교육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생 대상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멘토링·상담기관 연계 등 사회자원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2025년 교육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고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행소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무부 정책연구를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은 도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도박·마약 예방교육을 필수 편성하고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신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2-62 2025년 비행예방교육 및 비행진단 실시 현황

(단위 : 명)

계	청소년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법원 상담조사	심리검사
152,736	7,931	4,151	131,306	3,517	5,831

3)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대상 개별상담 확대 및 정신건강검사 도입 등 비행 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교육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비행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과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비행예방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향후 교육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교권침해·경찰훈방 단계의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고 사회자원을 활용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초기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이경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1989. 7. 1.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후 1997년 1월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성인 강력사범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 소년범죄예방팀이 신설되면서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후 2022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소년범죄예방팀 직제가 반영되어 소년에 특화된 전문 보호관찰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63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1,583	50,594	56,910	60,756	62,646
보호관찰	23,830	23,291	24,484	26,105	26,933
사회봉사	6,785	5,593	5,785	6,436	6,286
수강명령	21,404	12,184	14,489	16,316	18,172
조사	9,564	9,526	12,152	11,899	11,255

2) 추진내용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맞춤형 처우를 위해 2016년 9월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S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2018년 2월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D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2021년 6월에는 기존 정적·동적 평가도구를 하나로 합쳐 「통합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Ⅱ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Ⅱ)」를 개발하여 처우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질적인 처우에 이르기까지 소년 지도감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소년대상자 처우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정확도 및 왜곡 정도 등을 진단·평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원인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2월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소년 상담형 면담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같은 해 11월 KICS의 지도감독 체계를 처우계획 점검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죄원인별 맞춤형 처우계획 수립 및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년 4월 "소년보호관찰 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같은 해 11월 "소년지도감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경험, 지도감독 기법 등의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2024년 3월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 보호관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 대상자의 학습권 및 가족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등 친인권적이면서도 엄정한 집행을 위해 외출제한명령 집행감독 방식을 기존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에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재택 확인'으로 개선하였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 감독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권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23년 11월 스마트워치 장치의 소형화·경량화 등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감독 장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 본소 단위 보호관찰소에 우선 보급하였으며, 2025년에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하여 기존 음성감독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소년사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공감 및 관계회복의 '회복적사법' 이념을 적용하여 2018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 '소년보호관찰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강사 양성을 통해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소년수강명령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에서 회복적사법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2021년 '소년선도위탁 회복적사법 패널회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23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전문성을 강화하여 회복적사법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기존 4회기에서 8회기로 확대하여 운영하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과 담당교사를 1:1로 연계하는 교사멘토링 사업(2007년), 중·고졸 검정고시 학습권 지원(2009년), 농협기부금을 활용한 소년보호관찰 라포 형성 프로그램(2019년)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정신질환 치료·상담 지원, 콜코칭 상담지원, 조혼·미혼모 대상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및 도박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 연계 상담을 강화하였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실시, 눈높이 면담, 상담전문가 연계 등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64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범률	12	12	13.2	12.6	12.3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범위험성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처우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년 보호관찰의 기반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5년에는 스마트워치 도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치료·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향후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청소년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활동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정경아

1)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5호)을 제정하였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마련하고,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으며, 1차 계획 만료 후 2024. 3월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 법무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산림청

** '비행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소년의 재범 방지'를 목표로, 5대 정책과제(조기개입, 교육 전문화, 재범방지, 관리시스템 구축, 비행예방 체계 개선)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의 한계를 보완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행예방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2차 기본계획의 목표인 '비행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소년의 재범 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5년에는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신종 비행에 대한 대책 및 전문 예방교육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9차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 및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거쳐 「2025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5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은 5대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15개 세부과제를 설정·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소년비행 예방의 조기 개입을 강화를 위해 마약류, 도박, 디지털범죄 등 초기개입이 필요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소년 교정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상담·심리치료 연계, 직업훈련·진로체험 실시, 주거·생계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소년비행예방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년비행예방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였다.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2025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 청소년 마약사범 교육 강화 등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의 중기 추진 단계로서 전년도 시행 성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신종 비행 유형에 대한 대응과 조기 개입 중심의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5대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여 소년비행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2026년에는 「2025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 부진 시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함으로써,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소년원생 재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소년보호과 사무관 남영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년원생 중심의 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원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 2-65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5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강화교육(커피바리스타)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광주고룡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전기·신재생에너지) • 인성강화교육(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7·9·10호) •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제과·제빵·뷰티메디컬) • 인성강화교육(예술분장·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여성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춘천신촌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인성강화교육(그래픽디자인·디저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제주지역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생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 최근 직업환경 변화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40개 직종, 61개 과정을 확대 편성·운영하였고, 직업흥미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해 소년원생의 직업탐색 기회와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소년원생이 학업 중단 없이 학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과교육 전담 소년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사 5명(과학, 체육)을 파견받아 소년원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1人 2技' 예·체능 수업 활성화를 통해 소년원생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신체·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편성·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기초학력 증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 소년보호과 사무관 서석교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 ~ 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4년까지 전국 8개 소년원(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전주·대전·부산)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춘천소년원의 교육관 및 부대시설 재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다.

그림 2-70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위탁소년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여성 소년분류심사원 설치를 위해 2025년 (舊)안산소년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안양(女)소년원 재건축 및 대전(女)소년원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71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비행 초기단계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및 교육 강화

>> 소년보호과 사무관 남영일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최근 20년 간 위탁소년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중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 전담 시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역 소년원이 분류심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위탁소년에 대해 진단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22년에는 위기개입 중심의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피해자 공감과 책임 있는 도덕적 인성 함양 등 초기비행단계 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적·개인적 위기를 진단·개입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재범에 유의미한 통계적 예측력을 갖도록 하는 비행원인진단체계를 개발, 적용하여 분류심사 시 재범률 예측을 강화하였다. 2023년에는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촉법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약물남용 선별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도입 등 위탁소년 교육 및 비행예방 기능과 진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학적인 비행원인진단과 전문적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탁소년 전담 시설 확충을 통하여 위탁소년에 대한 위기 조기개입과 비행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 분류심사,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 보호정책과 사무관 손태희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향상 및 신종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2006년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년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와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2022년에 청소년의 초기 비행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해 마약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하고, 마약예방 법교육을 대폭 확대(2023년 2,072건 → 2024년 3,089건)하였다.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을 제공해오고 있고, '이로운법' 법교육 누리집에 최신 범죄예방 콘텐츠를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광주)'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체험·과학수사·모의재판·헌법배움 등의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법페스티벌 개최 및 진로박람회 참여로 지역사회에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1)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법교육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국정과제74-4(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추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128,097명(3,075건)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4종을 제작하고, 포스터 2종은 제작 후 전국 중학교 3,301개 및 청소년 시설 986개소에 배포하였다. 사회초년생 대상 모듈형 강의안 1종을 제작하여 법교육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학생 및 위기청소년 49,223명(928건)을 대상으로 도박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도박예방 법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10종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 및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안내서를 각각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였다.

표 2-66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건	명	건	명	건	명
초·중·고등학교	1,970	108,553	3,045	170,398	3,028	127,693
청소년시설·대안학교	47	417	31	300	45	392
청비센터(소속기관)	55	436	13	81	2	12
총계	2,072	109,406	3,089	170,779	3,075	128,097

2)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헌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국정과제100-1(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초·중등학생 20,377명(913건)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2024년 10건 → 2025년 913건) 실시하였다. 고등용 모듈형 강의안 1종 및 영상콘텐츠(가칭 '헌법채널e', 2026년 상반기 EBS 6회 방송 송출 예정)를 신규 제작하였다.

3) 체험과 참여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교육 지원

법무부는 2019년에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보급하여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0년부터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대상 499개교, 36,056명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법교육',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4) 사회배려계층 대상 법교육 실시

법무부는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2015년 12월부터 '유아 법교육', 2018년에는 유아 법교육과 독서 활동을 접목하여 5~7세 유아에게도 유용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학생 대상 '로티즌 아카데미'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2025년에 북한이탈 청소년, 이민자, 유아 대상('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법교육을 실시하고, '로티즌 아카데미'(방과후 수련시설 청소년 대상), '어린이로스쿨'(체험 활동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강원 태백·정선, 전남 신안·완도·해남 지역 23개교 1,660명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67 2025년 사회배려계층 법교육 실시 현황

구 분	북한이탈 청소년법교육	이민자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로티즌 아카데미	어린이로스쿨
내용	문화차이 이해를 돕는 실생활 중심의 사례별 법교육	기초 생활법률 및 범죄예방 등 법교육	유아(3~5세)의 눈높이에 맞춘 워크북·동화책 활용 법교육	방과후 수련시설 청소년에게 쉽고 재미있는 모듈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활동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적	230건 (1,383명)	259건 (9,337명)	314건 (5,519명)	211건 (3,498명)	505건 (1,457명)

5)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이로운법 누리집 활용한 법교육 프로그램 배포

법무부는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강사를 모집하고, 매년 체계화된 양성과정과 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26명의 전문강사를 신규 위촉하여 현재 213명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교육 콘텐츠 60편(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자막 10편 포함)을 개발하여 법교육 누리집(이로운법)에 게재하였다.

6)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법무부는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국내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대전솔로몬로파크(법연수관, 법체험관)를 설립하였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충청권(대전솔로몬로파크), 영남권(부산솔로몬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개관하여, 법과 인권을 주제로 조성한 법체험관과 최신 시설의 법연수관에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관할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전·부산·광주에서 법페스티벌(총 5회 / 체험객 19,641명)을 개최하였고, 논산·대전·부산 지역 진로박람회(총 3회)에 참여하여 2,356명의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선셋캠크닉(캠핑+피크닉), 학교폭력예방

인형극 등을 개최하여 지역 내에서 법교육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솔로몬로파크에서는 각 지역의 사회배려계층 대상 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을 장기적으로 방문하여 놀이·체험형 중심의 법교육을 제공하고 맞춤형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1박2일 캠프 등을 운영하였다.

그림 2-72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헌법교육을 확대하였다. 마약,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 등 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이민자 등 사회배려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솔로몬로파크 체험객의 만족도와 법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직원 직무연수와 법체험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026년에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운영된 학교 헌법교육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도서·벽지 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에 헌법교육 추가 및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을 활용한 헌법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법무부의 법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문강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 보호정책과 사무관 홍송이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대학생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5년까지 약 3천5백 명 이상의 청년·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시작하였고, 202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협업을 확대해왔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협력지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등 4개소,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1개소,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력지인 경북 안동시 풍산읍 1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5년도에도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새뜰마을사업) 사업지인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등 3개소와 경기도(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지인 경기도 안성시 성남동 1개소에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 주체인 지자체 담당자들과 사업 진행 전에 설명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였고, 사업 종료 후 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다.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18기까지 총 3,573명이 활동하였다.

2025년에는 저스티스 서포터스 35개팀, 161명의 대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8가지 활동 주제로 오프라인 활동 593회, 온라인 활동 2,134회, 총 2,727건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자체 자체 행사 및 청년센터 등과 연계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활동실적이 약 60% 증가하였다.

그림 2-73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마을안전지도 그리기)

2) 생활 속의 범죄예방을 위한 법준수 의식 인식 개선 활동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준수 의식 개선을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 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영상을 송출하였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영상, 2025년 12월에 스토킹 범죄예방 영상을 각각 제작한 후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 옥외 전광판, 904개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송출하였다.

이러한 범죄예방 영상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2-74 2025년 홍보

마약범죄 예방 홍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법질서 실천활동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하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마약범죄·아동학대·디지털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었다. 카드뉴스, 동영상, SNS 등 온라인 활동과 활발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협력지와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및 지방자체단체 협력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딥페이크 및 스토킹 범죄 등 신종범죄 예방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옥외전광판과 빌딩 내 미디어 보드 등에 범죄예방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일상속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튜브,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예방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경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에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부터는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직접사업으로 실시하여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소자 생활관을 전국 2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사례관리팀을 운영하였다.

가정해체 위기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였고, 2020년부터는 전국 26개 기관에서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출소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법무보호사업 추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고, 통신비 지원을 통해 취업 및 생활정보 접근성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별로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가정희망복원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취업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직업상담의 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2025년 11월 취업지원 전문화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5년 12월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을 통해 공단과 교정본부 직원들의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협력을 강화하였다.

출소자 8,468명(전년 대비 424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903명이 수료(4,320명 진행 중), 이 중 2,402명(82.7%)이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2-75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2025년 취업지원 전문화 교육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표 2-68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21	7,019	5,252	3,568	67.9
2022	7,729	5,659	3,821	67.5
2023	7,762	5,690	3,751	65.9
2024	8,044	5,718	3,848	67.3
2025	8,468	2,903	2,402	82.7
계	39,022	25,222	17,390	68.9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및 공단·교정·기업대표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2025년 12월 취업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사회 내 고용협력기업 발굴과 출소자 고용 장려를 위해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97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2023년 4월 출소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가 출범하였다. 2025년에는 25회에 걸쳐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설명회를 추진한 결과, 307개 업체에 출소자 28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2-76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설명회(수도권)

제89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조선비계, 용접, 기계가공), 서울동부(미용, 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2-69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2. ~ 2025.)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동부	902	685	75.9	172	25.1	
인천	1,279	1,072	83.8	452	42.1	
충남	796	747	93.8	203	27.1	
경북	369	264	71.5	34	12.9	
울산	1,375	1,067	77.6	449	42.1	
경남	917	729	75.1	132	18.1	
전북	905	774	85.5	150	19.3	
계	6,543	5,338	81.5	1,592	29.8	

2)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74-1.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추진에 따라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살인,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해 전자감독·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를 도입하였고, 2025년에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생활관을 4개 기관에서 전국 2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1인실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지부와 대구지부 생활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9월부터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을 위해 26개 기관에 집중사례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3)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 등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70 2025년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5.)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누적지원 주택	현 관리주택	누적지원 대상자
1	서울지부	서울(서울동부, 서울북부 관할 제외)	328	105	441
2	서울동부지부	서울 동부(서초, 강동, 성동, 광진)	70	33	98
3	인천지부	인천, 부천, 김포	391	132	518
4	경기지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447	126	587
5	경기남부지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116	51	169
6	경기북부지부	경기 북부	264	93	358
7	강원지부	강원 서부(원주, 춘천)	149	58	202
8	강원동부지부	강원 동부(강릉, 동해)	10	8	17
9	대전지부	대전(세종, 논산, 계룡 포함)	249	60	307
10	충남지부	충남(세종, 논산, 계룡 제외)	48	30	76
11	충북지부	충북	117	42	158
12	대구지부	대구, 경북(경산, 경주, 포항)	306	72	384
13	경북지부	경북(경산, 경주, 포항 제외)	38	21	56
14	부산지부	부산	196	71	268
15	울산지부	울산	157	63	205
16	경남지부	경남(창원, 김해, 통영, 거제, 밀양, 고성, 창녕, 의령, 함안)	178	53	236
17	광주전남지부	광주, 전남	244	53	286
18	전남동부지부	전남(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0	0	0
19	전북지부	전북	144	47	187
20	제주지부	제주	58	33	92
21	서울북부지소	서울 북부(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145	69	202
22	경남서부지소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양, 합천)	15	12	24
합계			3,670	1,232	4,871

2019년부터는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업지원, 접견지원, 긴급지원, 심리상담, 장학금 지원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71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실적

(단위 : 건)

구분	지원실적					
	학업지원	접견지원	긴급지원	심리상담	가족친화	소계
2021년	3,941	408	339	1,599	568	6,855
2022년	2,867	462	261	1,327	873	5,790
2023년	2,968	659	291	997	1,074	5,989
2024년	2,639	761	321	1,229	1,352	6,302
2025년	3,038	842	365	1,384	1,130	6,759
합계	9,776	1,529	891	3,923	2,515	18,634

4) 과학적 분류 처우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적응력 예측검사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사회적응예측, 맞춤형 보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을 예측하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적합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3년간 시범 실시 운영을 통한 실증작업을 거쳐 2024년 '적응력 예측검사'를 정식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적응력 예측검사의 사회적응예측지표는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측정하여 출소자와 법무보호사업을 매칭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공단은 2025년 말 온라인을 통한 적응력예측검사를 도입하여 출소자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맞춤형 법무보호사업 및 복지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해피콜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1월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소자에게 안정적인 연락체계를 제공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해피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준 총 21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호대상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6)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12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법무보호교육원에서 「2025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및 후원금 전달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림 2-77 2025 법무보호복지의 날

2025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아울러, 2013년부터 법무보호사업·기술교육원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는 공단의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보호대상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아름다운 동행」 소식지를 활용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7)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및 내실화

2019년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코레하 아너스클럽,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가정희망복원자문위원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5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80개, 자원봉사자 8,252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직접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 부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체계적인 활동 관리와 성과 축적을 통해 자원봉사자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자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72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교화	여성	사전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80	8	43	28	24	11	21	24	33	188
인원	8,252	37	826	545	471	152	473	708	1,234	3806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법무보호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총 5개의 분야로 정리하였고, 출소자의 개별 욕구를 분석하여 보호사업을 신속·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제공과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5년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121명(신규 79명, 이월 42명)이 입소하여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중 4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25년부터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생활관을 4개 기관에서 전국 2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심리상담과 취업지원 중심의 집중사례관리팀 26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자녀학업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으로 출소자의 수형생활로 인해 불편해진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재적응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법무보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2024년에 도입한 적응력 예측검사는 출소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수준을 파악하여 사례관리 처우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출소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류 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 말부터 온라인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출소자에게 시·공간적 제약없이 필요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연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개월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해피콜 지원 사업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소 초기 취업 활동 및 생활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단 소식지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책 소통과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기사 연재 등을 통해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에 대해서는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 보호정책과 사무관 홍송이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다.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024년에 75.1건(38,471건)으로, 2023년 대비 6.6%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10.1%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림 2-78 강력범죄(흉악) 총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추이

출처: 대검찰청(2025), 2025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79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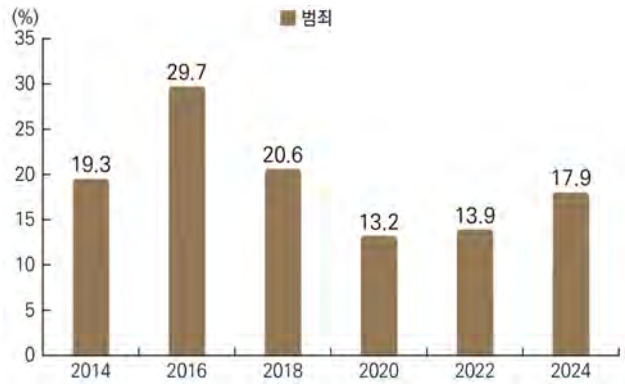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항목	불안함(%)
범죄 발생	**17.9**
경제적 위험	16.5
국가 안보	16.2
환경 오염	10.0
도덕성 부족	9.8
인재	8.0
신종 질병	7.9
자연재해	6.8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6.4
기타	0.4
합계	100.0

출처: 통계청(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기반, 건축공간연구원 작성

범죄로 발생하는 사후적 손실을 줄이고, 범죄 발생 요인들을 제거 및 억제하는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이하 셉테드라 함)은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셉테드 사업들은 행정·재정적인 문제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2년 5월,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셉테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법무부 보호정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팀을 구성하여, 대통령훈령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다(2022. 11.). 또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셉테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학, 범죄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3.).

나. 추진성과

본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기조에 따라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관계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8개 부처에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추진과제 분야 중 'CPTED 사업 관계기관의 협업강화'에 대한 세부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0%를 차지하여 CPTED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80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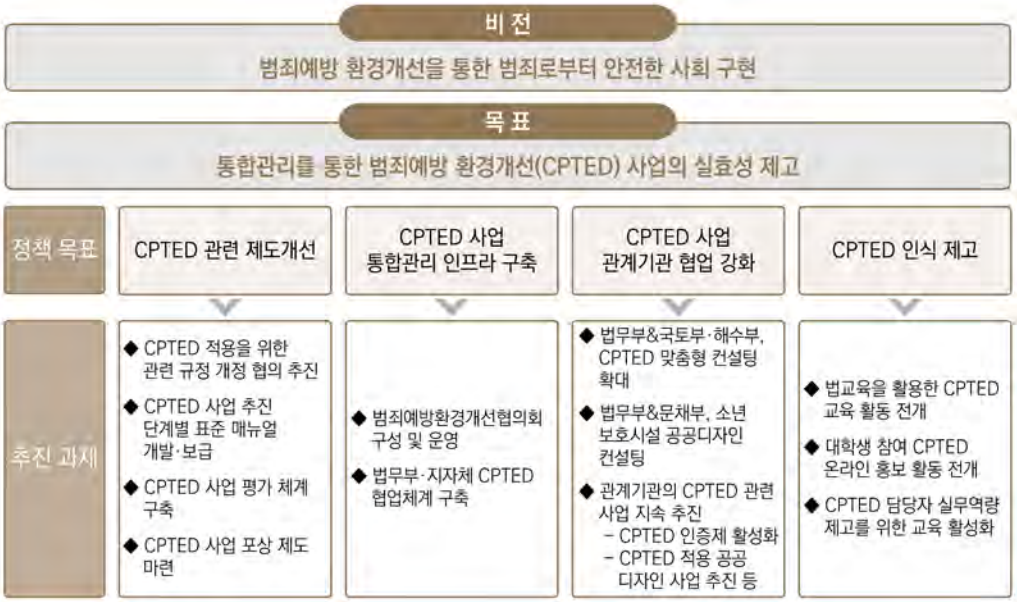

출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본 기본계획의 내용을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셉테드 관련 규정 내용의 상당부분(건축, 개발, 사업 분야 등)이 권장사항에 그친 바,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실제적인 규정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단순 방범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는 지자체 셉테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각 단계별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셉테드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무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셉테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2023~2025년 셉테드 사업에 대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의 포상제도를 마련하였다.

추진전략 2. 셉테드 사업의 통합 관리 기반 구축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의 CPTED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1차 협의회를 개최(2023. 3.)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2024년에는 2차 협의회를 개최(2024. 3.)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5년에는 3차 협의회를 개최(2025. 3.)하여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추진전략 3. 셉테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셉테드 사업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 안전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낙후된 소년보호시설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2025. 3.)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등 8개 부처 19개 세부과제(CPTED 반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CPTED 인증제도 활성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추진, CPTED 적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를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추진전략 4. 셉테드 지자체 담당자 교육

셉테드 사업 지역주민들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 때문에 셉테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측면이 있었다. 셉테드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무부는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관련 교육 활동을 전개, 국민들의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활동 중심의 청소년 셉테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셉테드 교육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셉테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셉테드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지자체 셉테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으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셉테드의 성과는 사업지역의 범죄율 감소 및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제 6 절 |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조성우

가. 개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예방 중심의 감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엄정한 조사·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갑질 등 조직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접근성과 익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감찰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공직윤리 관련 안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윤리 의식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 감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감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하여 감찰업무 전반에 대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 활동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과오다발 분야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수 민원을 유발한 직원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 선제적 감찰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을 병행하여 유사 과오, 비위의 재발 방지와 조직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2)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상시적인 예방 감찰 활동을 기반으로 비위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하였으며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였다.

다. 감찰 활동을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 「부당처우 신고센터(감찰톡)」 운영

2018년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現 부당처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장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처우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2022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감찰톡」을 개설하여 피해 신고의 접근성과 익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안내, 재산등록 안내와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검토, 병역사항 신고 안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 의식이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감찰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실시(2025. 12.)하고,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검찰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실질화

사회 각계 전문가(경영, 심리 등)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연간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감찰 현안 및 처리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으로써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 감사업무

>>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유재륜

가.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

1) 추진개요

법무부 소속 205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교정공제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특정감사',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및 비위 사실, 근무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복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25. 2. 10.부터 2025. 12. 19.까지 6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조금 업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재외공관 사증발급 업무'를 감사하고, '법무시설 공사현장 관리 및 시공실태', '공공기관 등 채용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연말, 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을지연습 기간 등에는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67개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경고 4명, 주의 46명 등 총 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통보·주의·개선·권고·시정 등 36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41,125천 원을 회수 또는 환급 조치하였다.

2) 추진실적

표 2-73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67개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감사 종류별 상이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표 2-74 조치내역

신분상 조치(단위: 명)				행정상 조치(단위: 건)					
징계	경고	주의	계	통보	주의	개선	권고	시정	계
-	4	46	50	251	8	-	-	105*	364

* 재정상 조치 41,125천 원 회수·환급 조치 포함

나. 다각적인 반부패·청렴 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1) 추진개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릴레이 등 조직 특성에 맞춘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의 날 행사, 청렴멤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일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속기관장 및 부서장의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 등을 통해 부처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2) 주요 반부패·청렴 활동

가) 부패방지 교육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부패방지 교육'(2025. 8. 26.)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청렴소양 교육과 부패방지 법령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렴소양 교육 강사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고위공무원 23명을 포함하여 본부 직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 이수를 목표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도권(2025. 6. 12.), 호남권(2025. 6. 17.), 경상권(2025. 6. 19.), 충청권(2025. 6. 20.) 등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별 청렴담당자 263명을 대상으로 1단계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자가 해당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릴레이 방식(2단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외 청렴멤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워크숍' 개최(2025. 5. 22.~23.), 소속기관 대상 청렴 전문강사료 지원(11개 기관), 법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신규·승진자 과정 내 부패방지 교육 교과목 편성(13개 과정, 26회)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 이수율 95%(22,393명)를 달성하였다.

그림 2-81 2025년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부패방지 교육(2025. 8. 26.)

청렴릴레이 교육(2025. 6. 12.~20.)

나) 내부통제 강화

부처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6~7월 소속직원 설문조사(공정한 직무수행, 균형적인 조직관리 등 5개 영역 21개 항목)를 통해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784명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였으며, 피진단자 모두에게 개인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간 반부패·청렴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2024년 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통상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였다.

다) 청렴 문화·홍보 활동

2025년 5월·10월 '법무부 청렴알림e 제9호·제10호'를 각각 발간하였다. '법무부 청렴알림e'는 법무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한 청렴 소식지이다. 특히 '청렴알림e 제10호'는 법무부장관의 여는 글을 시작으로 출입국정책단장의 부패취약분야(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개선 인터뷰, 소속기관 직원들이 기고한 청렴 수필 등을 수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 및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청렴콘텐츠(숏폼)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 직원에게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그림 2-82 2025년 청렴 문화·홍보 활동

청렴알림e 제10호

청렴콘텐츠(숏폼) 공모전 시상식

우수직원 호주 국외출장

제 7 절 |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후속조치 추진

>> 인권정책과 사무관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정부는 2023. 1. 4. 가입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조항별 이행 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계기로 강제실종에 대한 국내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강제실종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해외공관, 학계, 시민단체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하였고,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2025년 3월 회신 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초안에 반영하여 2025년 5월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위원회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강제실종방지협약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워회 등의 이해관계자 보고서 검토를 통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2026년 3월 우리 정부에게 송부할 질의목록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가 송부하는 질의목록에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강제실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을 예정으로 이를 법무부는 국내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되어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민철

1) 개요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4. 3. 26. 수립한·공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의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5월까지 각 부처의 2024년도 이행상황을 취합하고 2025. 5. 30.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가인권정책 실무협의회 서면회의 의결,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서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2025. 9. 23.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2) 주요 내용

제4차 기본계획의 2024년도 기준 이행상황은 총 271개 과제 중 완료(누적) 12개, 추진중 258개, 지연 1건이다.

2024년 완료한 세부과제는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노동부),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복지부),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법무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과기정통부),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과기정통부)이고, 지연 과제는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공정위)이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지연 사유이다.

3) 향후 계획

제4차 기본계획 제3부 '계획의 운영'에 의하면 국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4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2025. 12. 실시한 각 부처 업무보고 중 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을 새로운 정부의 인권 정책 기조에 맞게 현행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추진

>>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민철

1) 개요 및 추진경과

2025. 2.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등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관련하여 2025. 7. 24.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및 파악 개선”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2) 주요 내용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대상으로 생활정보·민원상담을 제공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소통 및 체류 등을 상담하는 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상담기관을 연계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포털에서 비자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때 인권침해 대응 안내문을 출력하고,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인권침해 대응 연락처·안내사항 카드를 배부받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시 인권침해 대응방법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는 등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발급에서 체류까지 여러 단계에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며, 사업장 내 권익보호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언어장벽과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은 총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법무부는 4개의 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소관부처이다. 2025년 법무부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외교부 소관인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타부처 소관 국제인권협약 심의 후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서한, 개인진정 사건 등 유엔 인권기구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공, 제5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제6차 한-EU 인권협의회 참석 등 국제사회와의 정책 교류를 통해 인권 증진을 위한 대응 기반을 확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은 작년에 이어 다수의 국제인권협약의 국가보고절차가 연달아 진행됨으로써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참석, 최종견해에 관한 이행계획 수립·점검 등이 활발히 진행된 해였다. 법무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보고 차원을 넘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2026년 하반기에는 법무부 소관인 사회권규약의 제5차 심의가 예상되는 바, 심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알리는 등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 기구 외에도 헌장 기구인 특별절차 등으로부터 방한, 답변 등 다양한 요청이 접수되어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국내 인권상황을 알리면서 관련 정책·제도·법률 등의 개선 방향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다하고,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핵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권정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구제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메커니즘 워크샵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담당자들의 국가보고절차 등 국제인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도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에서 주최하는 미가입 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인권 과제를 파악하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ECPM,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등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5년에는 기업 활동에서 인권존중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규범, 우수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과 인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인권정책·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워크샵,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바.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인권정책과 서기관 차유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 4. 25.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및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을 상영하여 법무행정 비전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생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강조하며, 법치가 공정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2-83 제62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25년 3월 21일부터는 피해자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 시 유족에게 해당 구조금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가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143건, 75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산정시 적용하는 배수 및 개월 수 상향,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박지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평가, 심리 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010. 7.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표 2-75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서울 (서부) 수원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스마일센터는 2010년 개소 이후 2025년까지 32,032명의 강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633,567건), 임시주거 제공(67,537건), 사회적 지원(42,113건) 및 법률적 지원(54,945건)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76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23	2,566	82,974	61,121	4,284	6,451	11,118	5,970
2024	2,773	80,269	59,392	4,466	6,319	10,092	5,284
2025	3,468	87,917	66,418	4,910	7,279	9,310	6,920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 회복을 이루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주말·야간 상담, 찾아가는 상담 실시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국내 유일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표 2-77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및 평가 내용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412	30.14	10.712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412	14.92	11.307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410	52.82	19.112	• 기준점 22점 • 22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410	24.84	19.802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410	30.39	12.609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410	14.36	11.534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404	25.01	14.064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404	10.63	11.663	

※ 출처 : 2025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2010년 8월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5월 얼굴 공개, 보복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고,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였다.

표 2-78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1~3,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 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5년에도 총 20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고,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등 총 7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89명에게 8억 2천 6백여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하여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년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총 51억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1개 센터는 피해자 상담 93,503건, 경제·의료 지원 17,099건, 신변보호 380건 등 총 126,930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2-79 최근 3년간(2023 ~ 2025)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23	116,958	85,243	16,050	418	15,247
2024	120,472	88,691	16,452	373	14,956
2025	126,930	93,503	17,099	380	15,950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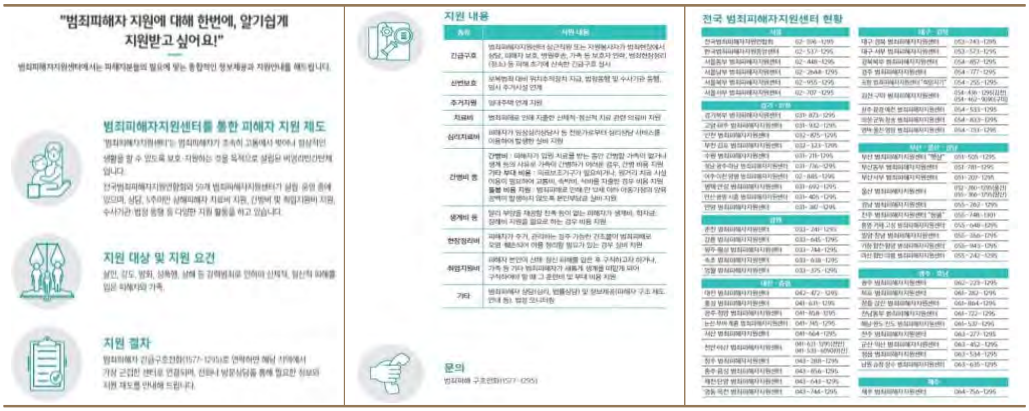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1)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25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열두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였다. 이와 더불어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홍보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5. 5. 31. 서울어린대공원에서 진행한 다링행사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시민 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의 각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85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2)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5. 11. 24.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김태자님을 비롯한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사물놀이와 색소폰 연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인 가수 VOS 공연, 범죄피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을 아름답게 표현한 샌드아트 등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긴급생활안정비' 및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및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림 2-86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3) 홍보 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지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략적 맞춤형·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였다.

그림 2-8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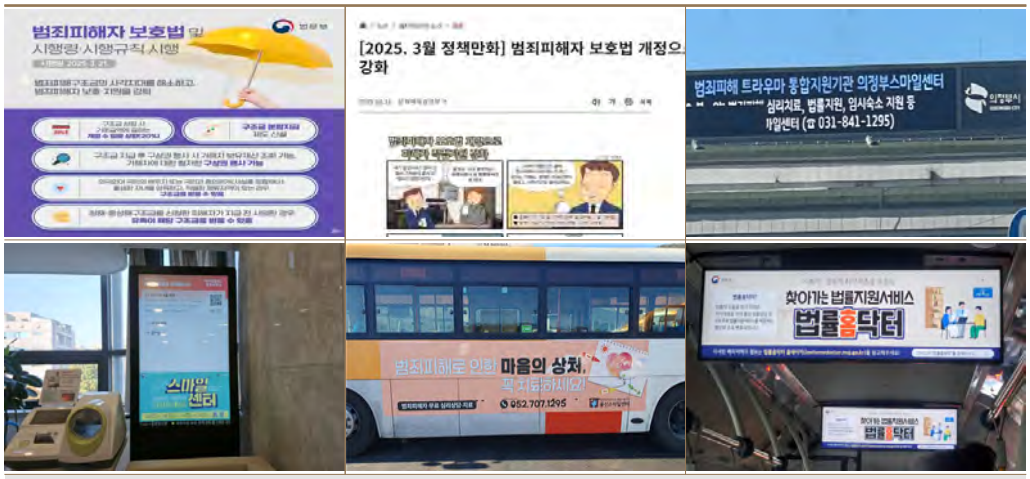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 인권구조과 서기관 서혜주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0. 5.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3.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2015.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1.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2022. 1.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및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80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442	40,005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3,450	
	범죄피해구조금	9,573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5,540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54,540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3,495	
기금 운영비	기금 관리비	48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230	2,23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5	15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48,039	48,039
총 계			144,877

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사무관 여유진

1) 추진배경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유기적 안내·연계 부족 등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맞춤형·통합 지원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 및 성과

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2024. 7. 22.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를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등의 소모가 최소화되었으며, 입주기관간 상시적인 대면 협의·사례관리가 수월해져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설계 및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개소 후 2025. 12. 31.까지 약 1년 5개월간 방문자 1,522명, 전화·공문·이메일

등 4,484건 접수받아 12,194건 지원을 하였다.

나)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피해 유형별 전담기관이 없거나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입어 타 전담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19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 원스톱 지원 업무 전문성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 및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 통합교육(2회)을 실시하여 원스톱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74-2)『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가 비대면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언제·어디서든 피해자지원 신청·접수·처리·경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7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검찰, 경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과 시스템 참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6~2028년까지 총 44.3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3) 평가 및 발전 방향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및 기관, 단체, 관련 전문가를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중대재해 및 대규모 재난·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

>> 인권구조과 서기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규모 재난·사고로 국민 다수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빠른 구제를 위해 상시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 등으로 구성된「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재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적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였고,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지원단(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면·유선 및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사건으로 선정해 무료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상담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2024. 7.)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였고, 최근 3년간 법률지원단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이후 12개(67%) 운영

표 2-81 최근 3년간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내역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22. 9.~)
  - 법률지원단 총 59명 / 법률상담 15,546건, 소송구조 3,922건('26. 1. 20. 기준)
-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22. 11.~)
  - 법률지원단 총 106명 / 법률상담 32건, 소송구조 4건('25. 10. 29. 기준)
-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법률지원('24. 1.~3.)
  - 법률지원단 총 21명 / 법률상담 5건('24. 3. 27. 기준)
-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24. 2.~'25. 10.)
  - 법률지원단 총 105명 / 법률상담 396건('25. 10. 20. 기준)
- 화성 화재사건 피해 법률지원('24. 6.~11.)
  - 법률지원단 총 28명 / 법률상담 15건, 피해자 32명 전원 긴급 생계지원금 6,700만 원 지급('24. 11. 5. 기준)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법률지원('24. 12.~'25. 6.)
  - 법률지원단 총 31명 / 법률상담 81건, 소송구조 4건('25. 6. 30. 기준)
-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25. 3.~8.)
  - 법률지원단 총 64명 / 법률상담 56건, 소송구조 1건('25. 8. 31. 기준)
- 경기·충남·경남·광주전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25. 7.~8.)
  - 법률지원단 총 75명 / 법률상담 41건('25. 8. 31. 기준)

3) 평가 및 발전 방향

향후 법률지원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극적·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 법률구조사업 전자화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 인권구조과 서기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률구조 기구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화상·채팅 상담 등 다양한 전자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가)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6-4) 『A 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2026년 1월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35개 참여기관 연계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One-Stop으로 제공한다. 또한, 노령층, 장애인 등 법률구조 플랫폼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상담 조직인 AI 컨택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 – 가나다순]** ①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②고용노동부, ③국가보훈부, ④근로복지공단, ⑤금융감독원, ⑥금융위원회, ⑦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⑧대한법률구조공단, 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⑩대한변호사협회, ⑪대한상사중재원, ⑫법무부, ⑬법원행정처, ⑭보건복지부, ⑮서민금융진흥원, ⑯서울시복지재단,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⑱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⑲신용회복위원회, ⑳아동권리보장원, ㉑양육비이행관리원, ㉒여성가족부, ㉓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㉔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㉕주택도시보증공사, ㉖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㉗통일부, ㉘한국가정법률상담소, ㉙한국예술인복지재단, ㉚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㉛한국인터넷진흥원, ㉜한국자산관리공사, ㉝한국저작권위원회, ㉞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㉟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5개

나)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및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사업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으로 유입되는 법률상담 요청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도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AI) 기술로 질의·응답 서비스(챗봇·콜봇)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4년까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 2021년 : 음성인식 AI 도입 및 학습 및 녹취 시스템 구축
2022년 :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및 간편 시나리오 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
2023년 : AI 어드바이저 및 간편 콜봇 시스템 구축
2024년 : 대국민 법률정보 질의·응답 시스템(챗봇·콜봇) 및 디지털 셀프서비스 구축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와 더불어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 없이도 어디서든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2023년 5월부터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전자접수시스템 운영 이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2 전자접수시스템 추진 실적

구 분	2023년(5~12월)	2024년	2025년	합계
회원가입(명)	1,500	2,394	2,589	6,483
전자접수(건)	453	906	1,088	2,447

다) 화상·채팅 상담 등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코로나19 이후 방문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다양한 상담수요를 해소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화상

상담 서비스는 2020년 11월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는 202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3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 추진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화상 상담(건)	3,133	16,371	10,110	4,853	2,683	704	37,854
채팅 상담(건)	-	-	-	9,392	12,281	8,299	29,972

또한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1년 11월부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82개국 동포에게 2,404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 방향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 채널 다양화를 넘어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처리 단계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 기구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금융소외자 종합 지원

>>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병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금리상승세에 편승한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가)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자 확대 등 적극적인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 포용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법률구조 사업에 도입하였다.

※ 2020. 1. 공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2023. 12.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공단,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의 지원대상자를 채무자에서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하여도 채무자에 준하는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종 불법대출 피해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연락처가 없는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사건으로 접수하여 능동적인 법률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족, 친구 등)
② 채무자의 친족 (친인척 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직장동료 등)

나)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구조 지원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으로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진행하는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한 반사회적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하여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였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표 2-84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실적

연 도	채무자대리인 선임(건)	소송구조(건)	법률지원(건)	합계(건)
2023년	530	5	0	535
2024년	2,934	162	7	3,103
2025년	10,961	122	1	11,084

3) 평가 및 발전방향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자'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통한 적극적·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범위 확대

>>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병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약 570만명)가 지속되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 및 대출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에 따른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기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법)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2) 추진내용과 성과

소상공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서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를 추가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매년 법률구조 건수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5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현황

연 도	건수(건)	인원(명)	구조금액(억원)
2023년	598	609	87
2024년	648	660	94
2025년	723	784	90

3) 평가 및 발전 방향

기존보다 강화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법률분쟁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다중채무 해소 및 재기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병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에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88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최근 3년간 농어촌 지역 및 읍·면 등 소외지역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6 소외지역 출장상담 현황

연 도	방문지역(곳)	법률상담(건)	구조회부 안내(건)
2023년	25	135	9
2024년	29	155	31
2025년	21	109	18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2,200여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20,543건, 법률구조회부 안내 927건, 강연 360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7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구조회부 안내(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23년	127	774	49	2	120
2024년	107	625	75	1	12
2025년	100	629	57	-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 이동신문고 43회, 법률상담 241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 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2014년 10월경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8월경 이동법률 상담 차량 1대를 교체하여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로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문화교육을 통한 건전한 준법의식 확산

>>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병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제도·문화의 차이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을 위해, 2011년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장년층 및 노인, 자립준비청년, 자활센터수급자, 격오지 군인, 출소예정 재소자, 출소자 등 법률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근로관계, 임대차 등 생활밀착형 법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청소년 법교육 주제 디지털 플랫폼용 유튜브 숏폼 동영상 등

2) 추진내용과 성과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8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명)	3,615	4,619	4,773	4,542	5,427

2025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노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교도소 등을 적극 방문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581회, 13,501명

한편,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업인, 중장년층, 청년, 공무원, 교사 및 복지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 등에게 맞춤형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5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9 2025년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귀농·귀촌인 등 농업인	중장년층	청년 및 일반시민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추진노력 대상	진안군 귀농·귀촌인 등	서초50+센터 등	서초구청 거주민 등	청도교육청 특수교사 등
추진실적	133명	430명	61명	145명

3) 평가 및 발전 방향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법률보호 및 법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준법의식이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등 법률구조의 공익성 및 전문성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병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모두 상속하므로, 부모 사망 시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 제도를 몰라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하여 상속 관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21. 12.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합동 법률지원 체계 발표

2024. 7. 1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으나, 개정 전의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기반하여 등록이 되다보니, 출생신고 미비 시에는 행정복지 서비스 공백부터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 관련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신고 기간 운영('22. 5. 9. ~11. 30., '23. 7. 17.~10. 31.), 공단 연계 법률지원 실시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천광역시와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하여 사망신고 시부터 도움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상속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상속 관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정승인 사건 등 총 87건(111명) 접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표 2-90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추진실적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건)	12	36	10	4	25	87
인원(명)	17	52	14	4	24	111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생신고 미비로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위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출생신고 관련 사건 총 29건(35명) 접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표 2-91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추진실적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건)	13	13	1	2	29
인원(명)	16	14	2	3	35

3) 평가 및 발전 방향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 및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 옹호를 함으로써, 법률구조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영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로 인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 정식 채용을 시작으로,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법률홈닥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시·군·구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2-92 2025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지역	배치기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서울협의회, 중랑구, 광진구, 원스톱 솔루션 센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인천	인천강화군, 인천미추홀구, 인천협의회, 고양덕양구,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시, 하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대전·충청	충주시, 충북협의회, 대전광역시, 대전유성구, 대전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광주·전라	익산시, 전주시, 광주광산구, 광주남구, 광주서구, 순천시
대구·경북	대구달서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중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남구, 부산사상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진주시, 창원시
강원	속초협의회, 삼척시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전담 변호사로서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89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법률홈닥터의 보다 전문적인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법률홈닥터 실무수습 및 직무교육',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적 재난·위기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홈닥터를 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강화하였다.

2025년 법률홈닥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법률지원 유관기관(1,855개)에 포스터·리플릿을 배포하고, 법률홈닥터 탁상 달력을 제작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영동선) 광고와 온라인 (실제 법률홈닥터가 직접 참여한 유튜브 홍보 영상 송출) 광고를 통해 취약계층이 더욱 쉽게 법률홈닥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90 법률홈닥터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탁상달력

2025년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52,349건으로 최근 5년 평균(48,351건) 대비 8.3% 상회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4.91점으로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만족'(80점) 수준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표 2-93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률지원 실적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41,500	47,637	46,296	53,975	52,349

* 법률지원 실적 :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91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고, 2025년에는 6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설치·교체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설치한 2대 외 전국 총 73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2-92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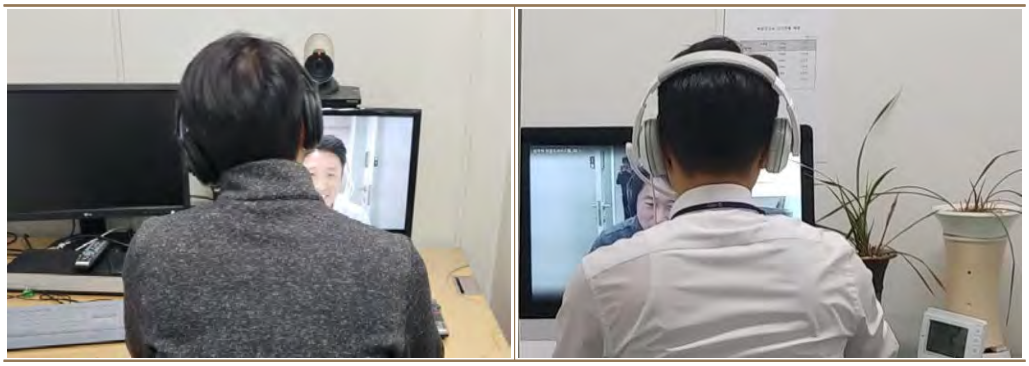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담당 조사관이 화상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수용자를 대면하여 진정 취지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존에 원거리 수용자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출장조사만을 활용하여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되던 점이 개선되어 수용자의 사건처리 만족도가 향상되고, 진정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전진정 제도는, 수용자가 구체적인 진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면전진정 신청서'만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팩스로 제출하여도 신속한 화상조사를

통해 조사관을 대면하여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바, 서면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용자나 원거리 수용자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 화상조사를 통해 조사관의 구두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즉시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해 신속한 진정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94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적	462	602	567	559	918	777	899	1,169	1,233	1,307

2025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총 73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출입국시설 1개소에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화상조사시스템의 노후화를 점검하여 화상조사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5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4,570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4,474건(전화 6건, 우편 3,146건, 인터넷 225건, 팩스 1,093건, 방문 4건), 인지사건은 96건이다. 2025년 처리한 인권침해사건은 총 4,872건(인용 및 구제 103건, 이첩 2,092건, 각하 2,253건, 기각 424건)이다.

CCTV, 가림막 미설치 등 시설 관련, 바디캠 채증자료 등록대장·보호장비 사용심사부 미작성 등 보호장비 기록 관리 관련, 소독약 오사용 등 의약품 관련,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부당한 징계 부과, 폭행 가해자와 미분리 조치, 사건 조사 후 임의 종결처리 등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인권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조치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사후적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심층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원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4년에는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정기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총 35개 구금·보호시설로 확대하였고, 2025년에도 대상기관 수를 유지하여 인권상황을 점검하였다.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수용자 등(보호외국인, 보호소년 포함)을 상대로 설문조사(2,954명), 개별면담(623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점검 결과 및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관 또는 실국본부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중대한 인권보호조치 미흡 사례, 유사·반복되는 주요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그 이행 및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실태조사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표 2-95 2025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14	8	8	5	35

또한, 최근 노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 중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수용자의 안전·편의시설 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외국인 등 특별보호 수용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담 교정시설에 대해 '주제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담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 및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사전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보호 수용자를 위한 시설·처우, 행정상의 인권 취약 요소 등이 확인된 기관을 선별해 총 4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보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환경, 운동, 목욕, 의료, 교육, 작업 등 전반적인 처우 현황을 확인하였고, 폭행 피해 예방 노력 및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등 특별보호 수용자에 대한 친인권적인 처우를 위한 토대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5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훈련,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직렬별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교육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96 2025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기관	인권감수성훈련				맞춤형인권교육		외부인권강사 기관방문교육	기타	합계
	교정	검찰	보호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횟수	9	3	4	3	2	11	35	37	104
인원	229명	64명	98명	72명	12명	124명	1,207명	1,882명	3,688명

마.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년 8월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 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검찰 6명, 교정 4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장관 표창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하였다.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박승혁, 사무관 이우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수사기관·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년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된 이래로, 2025년 12월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되어 2026년 6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수준을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 수준으로 향상하여 처우를 개선하였다.

한편, 진술조력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실습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진술조력인 12명을 신규 양성하고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및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규 배치하는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진술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97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피해자 국선변호사	19,903	22,755	25,487	26,007	38,446	39,161	37,150	37,605	38,507
진술조력인	1,381	1,722	2,226	2,684	4,184	3,822	4,231	4,517	4,715
합계	21,284	24,477	27,713	28,691	42,630	42,983	41,381	42,122	43,222

3)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으로 현실화 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술조력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진술조력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진술조력 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향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배치하는 등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나.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박승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찰수사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역량강화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2-93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으로 '일가족 동반자살'과 같이 다루어지던 사건을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보아 아동의 권익을 보다 면밀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가 공론화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 인권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표 2-9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 11. 11. 공포)
- 학대피해아동의 정서 보호를 위해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을 위탁하는 응급조치 유형 신설에 따라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정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5. 6. 21. 공포)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학대 가해자 엄중 처벌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중심의 법제 개선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의 실시를 통해 아동 권익을 증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22대 국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되어 계류 중이므로,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충실히 정비함으로써,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인차별시정명령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박승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행위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이해당사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행위 실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8 절 | 국제법무업무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추진

>>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국제상사분쟁에 있어 조정을 통해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에 관한 UN 협약(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국제상거래가 빈번한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자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에서 통상 중재가 분쟁 해결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국가 간 중재 역량의 격차, 과다한 시간·비용의 소모 등 한계가 노정되자,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미국, 중국 등 55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정을 통한 화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행법률안 작성을 위하여 학계, 실무가 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법률 제정 T/F를 출범하였다. T/F는 월례 회의를 통해 2025년 8월 입법안 초안을 성안하였고, 2025년 10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안 초안에 대해 유관 학회(조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국제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 향후 업무추진 계획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점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재검토하여 최종 입법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국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행법률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5. 6. 25.~6. 27.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의 주요 협약 이행 현황 및 발전 방안과 국제사법(國際私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다.

* 1893년 국제사법규범의 점진적 통일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함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은 2022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후 2024년에는 개최가 무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법무부, 사법연수원 등이 동 행사를 공동개최한 지 8년 만에 이를 서울에서 재유치하였다. 법무부는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 동 행사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2025년 3월부터 행사일까지 매주 총 12차례의 공동 주최 기간 간 주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일정 및 세션별 연사를 조율하였다. 그 결과 3일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정부 및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첫째 날 가족법 관련, 둘째 날 사법절차 관련, 마지막 날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동 행사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사법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며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보호, 국제 법규의 준수라는 국제사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 국제법무정책과 공익법무관 심규현·실무관 황지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2016. 3. 2. 공포된 뒤, 같은 해 7. 1.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와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3단계 개방은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 2021. 7. 콜롬비아로 확대되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은 254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는 39건에 이른다(표 2-99 참고).

특히 2022년 11월에는 국내 로펌과 영국 로펌 간 최초의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3년 9월에는 한-미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으며 3단계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2016년부터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방문, 관계인 간담회, 외국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분석 등 정보를 수집하며 법률시장 개방 추세에 맞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2023년 11월 개시된 한-영 FTA 개선 협상에서 영국의 법률시장 추가개방과 규제 완화 요구를 계기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5년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10개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산업통상부와 함께 한-영 FTA 협상에 임하여 2025년 12월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였다. 2026년에는 개정위원회를 통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99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뉴질랜드
외국법자문사	185	42	12	11	2	1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7	7	1	4	-	-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6년 마무리될 한-영 FTA 개선협상 및 유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에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된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동향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업무에 대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의석·공익법무관 이동건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4년 9월부터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2020년부터 3년간(제6기~제8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다가 2023년(제9기)부터 다시 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2024년(제10기)에는 청년법조인 국제실무능력 강화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추어 강의 커리큘럼을 기존 16주에서 10주로 단축하였으며, 국제M&A,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등에 더해 국제조세실무, 무역구제와 같은 실무적합적인 강의들로 전면 재편성하고, 각 분야의 업계에서 유망하고 젊은 강사진들을 새롭게 섭외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부터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생 중 우수자원을 해외 로펌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그 자리가 제한적이었고, 코로나19 사태 전후 약 3년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기존 강의 위주의 청년법조인 지원사업을 '실무 파견'을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한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였고, 국제법무 실무연수 자리를 10개국 12개 도시의 엄선된 27개 자리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제1기 글로벌 펠로우십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 면접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청년변호사 15명이 세계 각국의 기관으로 최종 파견되었고, 그중 4명이 파견 국외 로펌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1명이 글로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실무 파견자 중 약 33%). 법무부는 2025년 진행된 제2기 글로벌 펠로우십을 위해 미국, 독일, 브라질, 일본 등 신규 파견 국가를 확보하여 총 14개국 16개 도시 33개 인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4대 로펌 중 하나인 Mori Hamada & Matsumoto와 대형 로펌 City-Yuwa Partners가 실무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프로그램 최초로 미국, 대만, 홍콩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최종 선발된 11명의 청년변호사들은 2025년 3월부터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대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파견되어 국제실무경험을 쌓았다. 2026년 시행될 제3기 글로벌 펠로우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최초로 호주 소재 로펌을 섭외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3기 글로벌 펠로우십을 통해 청년법조인들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활동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글로벌 펠로우십은 해외진출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국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년변호사들의 파견 로펌 최초 정규직 채용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파견을 통한 실무 교육을 체계화하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해 해외로펌 또는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이번 제1기 글로벌 펠로우십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펠로우십이 법무부를 대표하는 청년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에 대한 유·무형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우수한 참가자들에 대해 항공료와 체류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향후 이러한 지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법률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공익법무관 민건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고도화됨에 따라, 해외 투자·수출·현지법인 설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규제·분쟁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률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고 해외사업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약 210여 명)'을 운영하며,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법률 사안과 관련된 전문적 법률자문 무상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법률상담회 개최, 최신 AI·ESG·공정거래 법제 분석 등 업무를 연중 수행하였다.

특히 2023. 8. 부서 신설 이후 법률지원 집계 건수는 370건(2023년) → 423건(2024년)

→ 485건(2025년)으로 급증하여,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다 법률지원 기록을 재차 갱신하였다. 지원 방식 또한 의뢰기업이 자문을 신청하면 담당자(변호사 자격자)가 (1) 직접 자문을 제공하거나 (2)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연계하고, 쟁점 정리·자료 보완·실시간 상담 배석을 하여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부문 '사내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서면 자문 + 실시간 상담'의 종합 법률지원 패키지 형태로 고도화하였다.

아울러 2025년에는 법률 설명회 및 법률 상담회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30건 이상 개최하고, 독일·프랑스·베트남·인도·키르기스스탄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상담회도 적극 운영하였다. 국내 설명회의 경우, 기존 협력기관인 무역협회,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중견기업연합회, 자동차산업부품재단 등 신규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행사·상담 수요 기반을 넓혔다.

또한『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발간 작업에 힘써 2024년에 발간한 독일편에 이어 2025년에는 UAE편, 일본편을 발간하여 해외 법제를 소개하는 책자를 종이책 및 전자책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배포하였다.

2024년에 훈령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장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공동으로 우수 중견기업인 월드클래스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법률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하여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결실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림 2-94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
(2025. 10. 24.)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연말 집중 법률상담회
(2025. 12. 22.)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무료 서면 자문과 실시간(화상) 상담을 결합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설명회 및 1:1 법률상담회를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등 다각화된 채널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률 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특히 실시간 상담 활성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자문 난이도 상향, 재이용 수요 증가 및 긴급 자문 대응 필요성 등으로 법률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가별·산업별(공공조달, 의료기기 수출 등)로 세미나 수요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 등 법률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법제 안내 수요,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양식 제공 수요, 무역사기·해외 기업 도산 등 주제별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국내 권역별 찾아가는 법률상담회 실시 등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변호사 자격자 및 관세·통관 전문가 등 자문위원 추가 위촉을 통한 전문 분야 대응 역량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지역중기청 등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설명회·상담회 개최 기반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및 1:1 상담 사례를 정리한 『법률자문 150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축적된 자문 성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할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 거래처 도산 대응 관련 연구용역 및 매뉴얼 발간, 국제계약 작성 매뉴얼 및 주요 계약 유형별 양식 자료 마련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신흥국·신규 규제환경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실무관 황지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년 WTO 출범을 기념하여 학술지 『통상법률』을 창간하였다. 법무부는 『통상법률』을 연 4회(2, 5, 8, 11월) 발간해 왔고, 『통상법률』은 통상법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국제사법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며 해당 분야 연구를 선도하였다. 2025년 법무부는 『통상법률』 발간 30주년 및 국제법무국 출범을 기념하여 학술지의 명칭을 연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법무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로 변경하였다. 또한,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2025' 행사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제4호(통권 제169호)에는 관련 기획 논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투고량이 약 1.5배 증가(2024년 총 28편 → 2025년 총 36편)하는 등 내실 있게 학술지를 운영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그림 2-95 국제법무연구 제169호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을 창간한 이래로 2025년 12월 현재 통권 48호까지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본 저널은 우리나라 법규, 정책을 영문으로 알리는 정기간행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법 제·개정사항을 토대로 한국법률의 동향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제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판례, 새로운 정부정책 및 출입국소식 등도 다각도로 알려주고 있다. 본지를 통해 주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법무연구』는 '통상'이라는 용어가 가진 특정한 맥락을 넘어서,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국제법 연구를 선도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국제법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영문저널은 2025년부터 구성을 전면 개편해 국제법무국의 정책 및 이슈, 주목할 만한 판례 등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해 독자층을 더 다양화할 예정이다.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BIT·FTA 등 국제협정 성안 및 법률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검찰사무관 박다혜·행정사무관 김의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투자·통상분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8월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서 구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에 흩어져 있던 협정 관련 업무를 신설 국제법무지원과가 통합하여 담당하면서 협정업무의 일원화와 그로 인한 국제규범 선진화의 시너지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대한민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협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총 36회 참여하여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디지털, 분쟁해결 등 6개 유관 분야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체결 협정의 해석 등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타 부처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총 17회 제공하는 등, 명실공히 정부부처의 법률자문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향후에도 법무부는 투자에서 통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법무 분야에 걸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FTA와 BIT 등 협정의 제·개정 협상이 재개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각종 우리 정부의 국제 현안에 기체결 협정의 해석이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등 국제법적 쟁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축적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표 2-100 2025년도 법률자문 및 협상 참석 현황(총 53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2. 28.	한-영국 FTA 제4차 개선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	3. 10. ~ 3. 14.	한-영국 FTA 제4차 개선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	2. 26.	한-태국 EPA 제4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	3. 4. ~ 3. 7.	한-태국 EPA 제4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	3. 18.	한-몽골 EPA 제5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6	3. 25. ~ 3. 28.	한-몽골 EPA 제5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7	3. 18.	한-말레이시아 FTA 비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박다혜
8	3. 19. ~ 3. 21.	한-말레이시아 FTA 비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박다혜
9	3. 18.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8차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박제연
10	4. 2.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11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1	4. 15. ~ 4. 18.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11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2	4. 16.	한-태국 EPA 제5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3	4. 22. ~ 4. 25.	한-태국 EPA 제5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4	5. 28.	한-태국 EPA 제6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5	6. 10. ~ 6. 13.	한-태국 EPA 제6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16	6. 16.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12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17	6. 23. ~ 6. 27.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12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18	6. 30.	한-영국 FTA 제5차 개선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19	7. 7. ~ 7. 11.	한-영국 FTA 제5차 개선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0	7. 2.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9차 협상 참석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21	8. 18.	한-방글라데시 EPA 제1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2	8. 25. ~ 8. 27.	한-방글라데시 EPA 제1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3	9. 2.	한-영국 FTA 회기간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24	9. 8. ~ 9. 12.	한-영국 FTA 회기간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25	10. 27.	한-영국 FTA 제6차 개선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26	11. 10. ~ 11. 14.	한-영국 FTA 제6차 개선협상 참석	산업부	검사 김준성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법무관 이동건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27	11. 24.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8	12. 1. ~ 12. 4.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9	12. 8. ~ 12. 12.	한-영국 FTA 회기간 개선협상 참석	산업부	검사 김준성 법무관 이동건
30	3. 12.	제42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참석	산업부	검사 박제연
31	5. 29.	제44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과장 신동환
32	6. 9.	제45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과장 신동환
33	7. 3.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과장 신동환
34	4. 28.	대미 비관세조치 관련 관계부처회의 참석	산업부	검사 박제연 사무관 김의석
35	11. 17.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검사 김준성
36	12. 10.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과장 최성경 사무관 김의석
		법률자문 내역		
37	3. 14.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8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38	3. 24.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8차 협상 결과 전문 송부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39	4. 25.	한-말레이시아 FTA 투자챕터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박다혜
40	4. 28.	한-말레이시아 FTA 투자챕터 추가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박다혜
41	5. 26.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BIT) 제5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42	6. 23.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9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43	6. 23.	한-중국 FTA 투자챕터 제12차 후속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사무관 박다혜
44	6. 25.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9차 협상 부처간 의견조율 회의 참석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45	7. 15.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BIT) 제9차 협상 대비 추가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46	11. 5. ~ 11. 27.	한-영국 FTA 제6차 개선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박다혜
47	1. 4.	한-말레이시아 FTA 협정문안 관련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8	2. 13.	한-태국 EPA 제4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9	4. 11.	한-태국 EPA 관광 부속서 관련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0	5. 8.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법률검토 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1	7. 2.	한-영 FTA 경쟁챕터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2	8. 14.	한-방글라데시 CEP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3	12. 2.	한-세르비아 EP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교위 정광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국제거래규범 및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법제 개선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제고하며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조정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7월 신생기구인 캄보디아 국가분쟁해결기구(NADR : National Authority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포함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 현지 실사를 통해 캄보디아의 사법체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현황을 파악하였고, 2024년 9월에는 캄보디아 법무차관 등 고위급 초청을 통해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를 합의하였다. 또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 등을 초청하여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을 실시하였다. 2024년 11월에는 NADR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5년 7월 조정법제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법 연구용역을 완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NADR 조정인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양국 연구진 간의 대면 회의 등을 기반으로 2025년 12월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입법안 성안 연구용역을 완수하였고, 2026년 1월 이를 현지에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11월 일본 법무성, JICA 등과의 일본 현지 면담을 통해 對캄보디아 법제정비 사업 관련 한-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96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캄보디아 조정인 초청교육

對캄보디아 법제정비 관련 한-일 협력체계 구축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정법제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캄보디아의 상사분쟁해결 관련 법제정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캄보디아 법무부와 합의했다. 먼저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 Development Bank)와 함께 캄보디아의 상사법원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한국 법무부-캄보디아 법무부-ADB는 3자 회의를 통해 상사법원 설립법을 성안 중이다. 법무부의 법제정비 지원 결과,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해당 국가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편의를 더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를 확대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 국제법무정책과 공익법무관 임진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6년 2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3개국 중 66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6년 2월 현재 총 142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국내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재판예규로 인해 유아인도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6월 미(美) 국무부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설명하였고, 2023년 6월부터 법무부, 외교부, 법원행정처,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구의 삭제, 집행관의 권한 범위 명확화, 집행보조자 참여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예규의 개정만으로는 아동인도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2025년 4월부터 정부(법무부, 법원행정처, 외교부), 학계, 실무계로 구성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개정 TF를 운영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 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이재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국가적 민·상사 규범의 통합에 대한 수요 역시 병행하여 증대하고 있다. 국제거래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국내 법제의 정비와 선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범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일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 민·상사 규범의 성안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ional Law), 국제해사기구(IMO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등 다수의 주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CoE CAI: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OECD GPAI: OECD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등 AI 관련 협의체에도 새롭게 참여하는 동시에 논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5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 회의(9회), IMO(1회), 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1회),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1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제69차 회의(10. 19.~10. 25.)에서는 데이터 제공 계약에 관한 모델 입법 조항 등을 논의하였고, IMO 법률위원회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11. 11.~11. 16.)에서는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트형 AI의 개념적 차이 및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10. 27.~10. 31.)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ADR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ADR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꾸준히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국제 민·상사 규범의 성안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및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더 나아가,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ADR 전문가들의 교류와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26년 법무부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의 완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민·상사 규범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법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촉진, 국내법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 2-101 2026년도 국제 민·상사규범 관련 국제회의 일정 및 안건

기구	회의명	주요 안건	일정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UNCITRAL)	본회의	실무작업반 활동보고 및 연구결과 채택, 향후 연구 주제 논의	(제59차) 6. 22. ~ 7. 10.
	WG1	디지털 결제와 전자무역 관련 법제에 관한 콜로키움	(콜로키움) 1. 19. ~ 1. 22. (콜로키움) 2. 10. ~ 2. 13.
	WG2	전자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33차) 2. 16. ~ 2. 20. (제84차) 9. 23. ~ 10. 2.
	WG4	데이터 제공 계약에 관한 모델 입법 조항	(제70차) 3. 23. ~ 3. 27. (제71차) 10. 5. ~ 10. 9.
	WG5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제정 및 해석 지침 개정	(제68차) 4. 13. ~ 4. 17. (제69차) 11. 16. ~ 11. 20.
	WG6	유통가능한 화물증권 관련 협약 초안 성안	(제48차) 4. 20. ~ 4. 24. (제49차) 11. 9. ~ 11. 13.
유럽평의회 (CoE)	신기술 위원회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협약 및 AI 평가방법론 논의	4. 15. ~ 4. 17.
국제경제기구 AI 글로벌 파트너십 (OECD GPAI)	총회	(미정)	(제5차) 6. 9. ~ 6. 12.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위원회	자율운항선박, 선원의 공정한 대우 등	(제113차) 4. 13. ~ 4. 17.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총회	증권형 크라우딩 펀딩 관련 모델법 개발 등	12월 중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정부 완승 쾌거

>>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행정사무관 박소연

1) '론스타 사건'의 원 중재절차 경과

LSF-KEB v. Republic of Korea, 일명 '론스타 사건'은 2012. 11. 21.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의 8개의 자회사(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하 'BIT')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 사건이다.

청구인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매각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BIT 상 공정·공평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세청이 자의적·차별적으로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혜택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46.8억 달러(한화 약 6.9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부차관)을 구성하고 효율적·체계적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리로펌과의 협의, 서면검토, 증인 등 확보,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 논리 개발 등 사건 대응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론스타 사건은 2016. 6. 2.~6. 3. 진행된 최종 심리기일 등, 총 4회의 심리기일을 거쳐 2022. 6. 29. 절차종료가 선언되었으며, 중재가 제기된 지 약 10년 만인 2022. 8. 31.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관할·금융·조세 3가지 주요쟁점에 관하여 일부 금융 쟁점을 제외한 관할과 조세 쟁점에 대하여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금융 관련 일부 쟁점에 대해 청구인 측이 손해배상을 주장한 금액 약 46.8억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만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95.4%에 해당하는 44.6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승소하였다.

정부는 더 나아가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2. 10. 15. ICSID 협약 상의 판정 정정신청을 제기하였다. 2023. 5. 9. 중재판정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정부의 정정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배상원금을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가 감액되었다.

2) 판정 취소절차 대응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2023. 9.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론스타 측도 2023. 7. 29.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

2024. 4.~12. 진행된 서면 공방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에서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방어와 함께, 특히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원 판정에는 '근본적 절차규칙(Due Process)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2025. 1. 21.~1. 23. 취소절차 구술심리(런던 IDRC)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대표단과 국내외 정부대리로펌은 위 주장을 적극 개진하여 ICSID 취소위원회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고, 이어진 위원회의 후속질의에도 서면 제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림 2-97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 및 대응

정부대리로펌-정부 대표단 최종 현지 전략회의
(2025. 1. 20.)

취소절차 구술심리 법무부 대표단 참석 (런던 IDRC)
(2025. 1. 21.)

3) 판정 취소결정 및 의의 - 4천억 원 배상책임 소멸로 '정부 완승'

2025. 11. 18. ICSID 취소위원회는 위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즉, ICC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한, '대한민국 완승'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 판정은 이러한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에 의존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 즉 원 판정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됨으로써 론스타 측의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저지하고, 약 4,000억 원 상당의 원 판정상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한 것이다.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 사건으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며,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위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

4)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 소송비용 74.7억 원 환수 쾌거

▲론스타 사건 정부 승소 정정결정(2023. 5. 9.)과 함께 정부는 '론스타가 위 정정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상술한 론스타 판정 취소결정이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인바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에 따라,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후속절차 소송비용 상당을 환수하고 론스타 측이 비용지급명령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복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적극적 환수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025. 11. 25. 론스타 측에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을 결정문에 명시된 지급기한 내에 즉시 변제하고, 기한 내 미변제 시 강제집행 착수 예정' 취지의 강력한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2025. 12. 3. 론스타 측으로부터 '기한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USD)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 결과,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약속한 대로 2025. 12. 17.(美 동부시 12. 16.) 미화 총 5,060,222.44달러(약 74억 7,546만 원)를 법무부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국고 환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혈세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한 중요한 결실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 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여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 '엘리엇 ISDS 사건'의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및 1심(환송심) 재판 진행

>>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민경원·공익법무관 권정우

1) '엘리엇 사건'의 경과 및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하 '청구인')은 2018. 7. 12.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화 약 7.7억 달러(약 1조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시 舊 삼성물산의 7.12%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한-미 FTA상 최소기준대우,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舊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2023. 6. 20.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미화 약 4,800만 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정부는 2023. 7. 18. 영국 중재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 8. 1. 한-미 FTA 제11.1조가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예: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를 정하는 제1절(Section A)에 위치하는 반면, 중재합의 관련 조항(제11.16조) 등 ISDS 제기의 절차 관련 규정은 제2절(Section B)에 위치하고 있어, 제11.1조는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 중재합의와 같은 '실체적 관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정부가 취소사유로 주장한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4. 9. 12.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영국 항소법원은 2025. 7. 17. FTA 제11.1조에 관한 1심 법원의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는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FTA를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하여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정부는 비로소 중재판정 취소사유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영국 법원 1심(환송심) 재판 진행

2025. 12. 2.~12. 4.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사흘간의 구술심리를 앞두고 정부는 원 판정이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과 수차례 치밀한 전략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흘간의 구술심리는 정부 주장-엘리엇 주장-정부 반박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정부는 준비한 대로 적극적으로 원 판정에 드러난 취소사유를 주장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였다. 먼저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당사자)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조치)과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① 중재판정부 판단에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는 국민연금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인정한 '당사자' 요건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는 ②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표결을 한 것은 양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한-미 FTA가 정하는 '조치'는 정부적일 것을 요하므로, 원 판정 판단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인정한 '조치' 요건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③ 정부의 행위와 투자자의 투자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원 판정 판단에는 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표결이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관련성' 요건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만일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취소된다면, 원 판정은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판단을 하였을 뿐, 국민연금의 행위를 제외하고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행위만 두고 보더라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 판정의 결론이 유지될 수 없어 원 판정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 판결은 이듬해인 2026년 초 선고가 예상된다.

다.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

>>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민경원·양준열·행정사무관 박소연·김혜연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박제연·행정사무관 박다혜·김의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ISDS 제도개선을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등, ISDS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5년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50차·제51차(후반부)·제52차 공식 회의 등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고, 총 4회의 의제 검토 의견서 및 1회의 국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5. 10. 26.~10. 31. 개최된 서울 ADR 컨퍼런스*에서는 ISDS 절차에서의 규제주권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 및 한국 정부의 ISDS 수행 경험을 발표하는 등 관련 국제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ISDS 제도개선 논의 및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2)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는 상설법원, 상소체제, 절차규칙 개선 등 ISDS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제3실무작업반 공식회의를 비롯하여 회기간 회의, 비공식 회의 등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ISDS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표 2-102 2025년도 회의 참석, 검토의견 제출 및 국제세미나 발표 현황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13.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0차 공식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사무관 김영옥 사무관 심인혜
2	1. 20. ~ 1. 24.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0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교수 이재민
3	2. 17. ~ 2. 19.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1차 전반부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
4	3. 28.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1차 후반부 공삭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박제연 사무관 김영옥 사무관 박소연 사무관 박다혜
5	4. 7. ~ 4. 11.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1차 후반부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박제연
6	9. 1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2차 공식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박제연 사무관 박소연 사무관 박다혜 전문위원 김혜연
7	9. 22. ~ 9. 26.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2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검사 민경원 검사 김준성 사무관 박소연 사무관 박다혜
8	12. 31.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3차 공식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김준성 사무관 박소연 사무관 김혜연 사무관 김의석

라.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국제투자분쟁 예방 적극 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공익법무관 이동건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가 점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ISDS 사건은 일단 제기되면 최대 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보수집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법무지원과는 기존에 교육에 국한되었던 예방업무를 확장하여, ① 정부부처·기관 등 법률지원 ② 협정업무 실질화 ③ 대외협력 강화 ④ 훈령 실질화 등으로 다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정부부처·기관 법률지원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국제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요를 조사하였다.[2] 파악된 사안에 관하여는 사안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4년 발간 『ISDS 진단 및 예방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를 기초로 한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2025년 총 4회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2025년 초부터 ISDS 대응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체크리스트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② 지난 10년 간의 ISDS 피소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는 한편, 위의 법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 쟁점을 ISDS의 근거법령인 BIT, FTA 투자챕터 협상에 활용하여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ISDS 예방과 협정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③ 산업통상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ISDS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④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가능 사안 통보의무"[3]를 각종 세미나에서 적극 홍보하여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인지된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이 분쟁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법무지원과는 최근 UN 등 국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분쟁 예방 및 조기 완화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 한해 ISDS 예방협력 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26년에도 더욱 광범위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ISDS 예방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정업무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ISDS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적인 예방업무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부처·기관별 주요 국제법무 및 국제분쟁(소송·중재 등)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총 63곳 대상으로 발송(10. 4~10. 10.) 및 필요부처에 다수 법률지원 제공

3)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통령 훈령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단장(법무실장)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가. 정부 관련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현안의 법률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1) 업무 개요

최근 우리 정부·지자체·공기업 등과 관련된 각종 국제분쟁이 증가하여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문적 대응·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요구되었다. 이에 2023년 8월, 법무부는 부처·지자체의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기준 총 13건의 주요 국제소송을 자문·수행하고 있다(소가 합계 약 3조 원). 특히 소가 1,0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파급효 높은 주요 국제소송 사건의 경우, 검사·사무관(변호사)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① 국외 증거 수집·제출, ② 서면·PPT자료 작성, ③ 법정 변론 등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추진 성과

대표적인 성과로 2025년 1월,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원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구글, 메타 국내 이용자정보 무단수집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1심 정부 전부승소 판결을 이끈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소송은 구글 및 메타 등 글로벌기업들이 계정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동 관련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이루어지자 기업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이용자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글로벌기업에 전송된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해외유사사례에서의 처분사례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화의 유기적인 협력 하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행정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에서 전부승소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넷플릭스',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국내 조세당국의 과세를 거부한 사건에도 소송수행자로 투입되어 국제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 판결, 사례, 입법례를 분석하며 소송을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직접 소송 수행 중인 13건의 국제소송 이외에도 10여 개 정부 부처 관련 50여 건의 소송 등을 자문 및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된 법률 쟁점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매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유관기관과 화상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소송들의 경우, 국내 및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 전문인력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 법정 변론, 준비서면 작성, 증거수집 및 현출, PPT 시연 등 다양한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각종 국제소송·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각 사건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법무 DB를 강화하여 국제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부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 9 절 |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 복지과 시설사무관 정민수

1) 추진배경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1인당 적정 수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961억 원을 편성하고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 수용 해소에 기여하였다.

표 2-103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현황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5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이전	원주교도소	2014	2026	166,865	51,521	개청 준비
	창원교도소	2018	2029	232,597	2,260	공사
	전주교도소	2012	2030	187,404	2,030	설계
신축	화성여자교도소	2020	2029	90,994	100	설계
	경기북부구치소	2020	2030	178,994	953	설계
	남원교도소	2022	2030	72,376	1,300	설계
	태백교도소	2022	2032	200,127	5,417	설계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5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수용동 증축	제주교도소	2024	2027	9,431	1,025	공사
	여주교도소	2025	2027	9,267	2,172	공사
	인천구치소	2025	2027	23,842	5,078	공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025	2028	22,304	5,520	공사

2025년에는 울산구치소, 진주·군산·순천교도소, 논산지소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357명 신규 수용공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림 2-98 교정시설 조성 현황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25. 12. 준공, 개청 준비 중)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군산교도소 수용동 증축

순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781억 원을 편성하고 교정시설 신설·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규 수용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04 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내역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6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이전	원주교도소	2014	2026	166,865	1	개청 준비
	창원교도소	2018	2029	232,597	36,587	공사
	전주교도소	2012	2030	187,404	342	설계
신축	화성여자교도소	2020	2029	90,994	4,280	설계
	경기북부구치소	2020	2030	178,994	1	설계
	남원교도소	2022	2030	72,376	5,490	설계
	태백교도소	2022	2032	200,127	2,500	설계
수용동 증축	제주교도소	2024	2027	9,431	3,617	공사
	여주교도소	2025	2027	9,267	2,345	공사
	인천구치소	2025	2027	23,842	6,530	공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025	2028	19,876	2,365	공사
	서울구치소	2026	2029	7,133	340	설계
	경북북부제3교도소	2026	2029	8,768	186	설계

나. 가석방 확대 및 심사 내실화

>> 분류심사과 서기관 이민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모범수형자 및 고령자·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감정,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또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가석방 심층면접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범죄내용, 피해회복 노력, 수형생활태도, 가석방 후 생활환경 등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석방 심사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105 가석방 심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출소인원		27,300	26,789	26,453	29,058	30,692
가석방	심사인원	13,085	13,836	14,266	16,471	16,971
	허가인원	9,390	10,310	9,525	11,177	12,265
	월평균 허가인원	783	859	794	931	1,022
	허가율	71.8	74.5	66.8	67.9	72.3
가석방 출소율		34.4	38.5	36.0	38.5	40.0

표 2-106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천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2023년	1,260	518	41.1%
2024년	1,217	541	44.5%
2025년	1,305	573	43.9%

2) 평가 및 발전방향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 복귀를 촉진하였으며 심화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교정본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안전망 확보 범위 내에서 과밀수용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 취약수형자 체육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 교육 실현

>> 사회복귀과 교정관 문우식

1) 추진배경

소년·장애인 등 신체적·정서적 취약수형자의 건강권 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 체육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전문 과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정기획위원회 「고위험 청소년 정책 강화 및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 지원」(2025. 8. 13.)

2) 추진경과

교정본부-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업무협약(2025. 10.)을 통하여 은퇴 선수 및 전문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전문 체육교육 과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먼저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농구교실과 장애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주교도소의 장애인 맞춤형 체육교실을 시범 실시하였다(2025. 8.~12.). 앞으로 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수형자 대상 체육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주요성과

민간 전문가 협업을 통한 질 높은 체육교육을 통하여 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 계층의 교정시설 내 처우를 개선하고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교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 시범운영 소년수형자 20명(총20회), 장애인수형자 13명(총5회) 실시

그림 2-99 교정본부-WKBL 업무협약 (2025. 10. 2.)

정성호법무부장관-WKBL총재 신상훈

업무협약식

소년학교 체육교실

라. 보라미봉사단 지역 맞춤형 수형자 사회봉사 확대

>>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은미

1) 추진배경

기존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2) 추진경과

(5~6월) 전국 5개 기관, 수형자 73명이 보라미봉사단 사회봉사를 통해 봄철 농번기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7~8월) 11개 기관, 수형자 87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 투입되어

침수 주택 토사 제거 등 수해 복구 작업에 집중했으며, (9~11월) 34개 기관 414명이 인근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사과, 배 등 농작물 수확을 지원하는 등 2025년 전국 54개 기관, 2,798명의 수형자가 지역사회 사회봉사에 참여했다.(소망교 포함 2,952명)

3) 주요성과

수해 복구 및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과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수형자의 봉사정신 함양을 통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2-100 농촌일손돕기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2025. 9.)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활동

춘천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활동

2.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APCCA 개최

>> 교정대외협력단 교정관 정진영

1) 추진배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정행정 초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례 국제회의인 제43차 APCCA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교정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성과와 역량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위상 및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1986년 제7차 회의, 2005년 제25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정행정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2) 추진내용

제43차 APCCA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ICRC, UNAFEI, UNODC, ICPA 등 4개 국제기구에서 약 145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교정의 도전과 과제, 자원·예산 및 효율성, 교정에서의 국제협력, 시설 내 약자 문제 해결, 약물·알코올 및 도박 중독 수용자의 재범 방지 등 5가지 핵심 의제로 63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개최국으로서 모든 의제 발표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 교정 담론을 주도하였으며, 모든 발표를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준비·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정정책의 국제적 파급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2-101 교정대외협력단, 제43차 APCCA 개최 (2025.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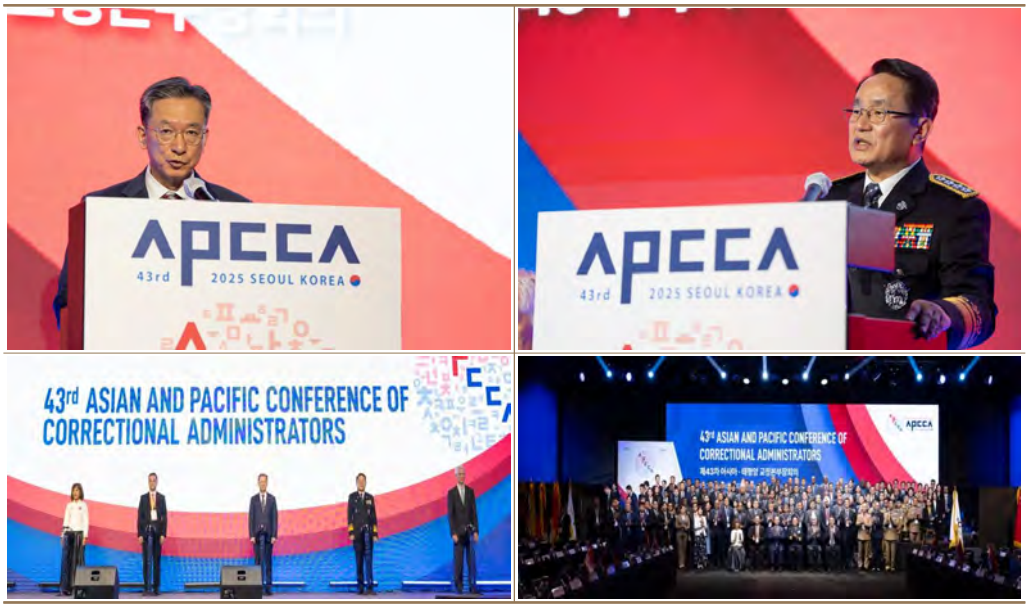

3) 평가 및 향후계획

회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서울관광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화비전 등 민·관·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행사의 품격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교정본부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장비 전시장을 조성하여 첨단 보안 기술을 홍보하고, 국내 교정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회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각국 대표단 의전 업무를 전원 교정공무원으로 고성·운영하고, 개·폐막식에 의장대 및 악대를 활용함으로써 교정본부의 위상과 명예를 제고하는 동시에 직원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대한민국 교정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 확대, 대외 협력 강화 및 국제 인적 교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 교정정보빅데이터팀 교정관 김동욱

1) 추진배경

법무부는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기존 웹 기반에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교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반응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되었다.

2) 주요내용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언제 어디서든 주요 교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서비스는 전국 교정시설 현황, 수용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등 1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연도별 통계와 함께 교정공무원 현황, 수용자 죄명별 인원, 외부 진료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교정본부는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발전시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림 2-102 교정정보 모바일 데이터 시각화 구현 현황

3) 향후 추진계획

교정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연계·운영하고, 공개 가능한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는 북미, 유럽 등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수준으로 교정본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교정정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제공하여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 변호인 접견 제도 개선

>> 보안과 서기관 오원종

1) 추진 배경

2025. 10. 13.부터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실시를 시행하여, 수용자는 각종 소송 서류 작성 및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변호인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변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변호인 접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과 성과

2025. 10. 13.부터 변호인 접견 수요자 가장 많은 1개 호실에서 시범 운영 시행 중이다.

【2025. 12. 31. 기준 실적】
- 등록 건수 : 136건
- 실시 현황 : 299건

3) 향후 추진계획

2026년 상반기에 변호인 접견이 많은 12개* 기관, 총 26개 호실을 증설하고, 2027년에는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구, 수원구, 동부구 등

라. 수용자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의료과 교정관 김재형

1) 추진배경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부 이송진료 등 외부병원 의사에 의한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과다 처방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곧 수용자 건강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및 성과

교정시설 규제약물(오남용 우려 약물) 적정처방과 관련된 법령, 고시·예규 등 관련 절차를 반영하여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제2판」을 발간(2025. 2. 28.)하였고,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2025. 2. 18.) 및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개선 시행(2025. 3. 1.)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의 교정시설 내 반입 제한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협업하여 의약품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2025. 9. 9.)하였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병원협회, 약사회, 협력병원, 유관학회 및 법무부 소속 의무관 대상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정시설 규제약물 교부·심사절차 개선 및 의약품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 확대로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강등원

1) 추진배경

마약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기조로 국내 마약류사범 급증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 또한 139% 폭증(3,111명('20.)→7,429명('25.))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표 2-107 연도별 마약류사범 수용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마약류사범 수용 현황(명)	3,111	3,314	3,738	5,634	6,628	7,429

2) 추진내용

법무부는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중독재활을 위해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기존 4개 기관(광주·화성직업훈련·부산·청주여자교도소)에서 5개 기관(대구교도소 추가)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입소부터 출소 후 사회연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여성 수용자 대상으로 추가(청주여자교도소) 운영하였다.

또한 수용자 스스로 워크북을 작성하며 자기주도적 중독재활 패턴을 체화하여 지속적 단약유지를 도모하는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미결·소년·잔형기가 짧은 마약류사범 등을 대상으로 중독단계 수준별로 1:1 개입하는 개별메타인지상담을 시행하였으며,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이수명령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독재활 프로그램(워크북 : 영문·중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한편 집중인성교육 과정 내 「물질중독예방 교육」을 반영하여 중독예방교육을 필수교육화하고, 매월 중독예방교육 영상강의를 교화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교정시설 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5년 2월부터 출소 후 지속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전국 32개 지역의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고, 출소 1개월 전 모든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1342 중독재활 전화상담을 확대하였으며, 거주지 인근 함께한걸음센터 사전연계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림 2-103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 도입

개별메타인지상담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외국인 중독재활 프로그램

3)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마약류사범 재활전담교정시설 내 신설된 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과)를 중심으로 중독재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회복이음과정과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형기 내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사범의 성별, 중독수준, 재범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중독재활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실질적인 재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독심리사(한국중독심리학회) 양성과정을 법무연수원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는 등 자체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재활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관리 강화를 위한 '다면적 평가 시스템' 도입

>> 분류심사과 교정관 장규순

1) 추진배경

그간 교정본부는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환경, 범죄 기록, 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한 '고위험 범죄 위험성 평가 척도(High-Risk Assessment Scale)'를 통해 '위험관리수준(RM: Risk Management)' 등급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범죄 연령의 하향화와 더불어 마약류 범죄의

급증, 스토킹 및 다중협박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밀한 재범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 단순히 재범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수형자가 향후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범죄유형별 재범 가능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처우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세대 평가 도구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2) 추진성과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정본부는 2025년 4월부터 살인, 폭력, 방화 등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유발요인'을 심층 반영한 '한국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 시스템(KIMAS : Korean Inmat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System)'을 시행하였다. KIMAS는 신종 고위험범죄 수형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범행 동기, 연령 등 다차원적인 변수를 결합하여 재범 위험성을 정밀하게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본 제도의 핵심은 '출소 전 재평가 의무화'를 통해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는데 출소 전 6개월 이내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KIMAS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입소 시점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수용 기간 중 집중개별처우를 통한 재범위험성 완화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등 실효성을 점검·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108 KIMAS 평가서 예시

죄 명	강도상해	범죄 전력	폭행(2), 강제추행(2), 성폭력(2)				
범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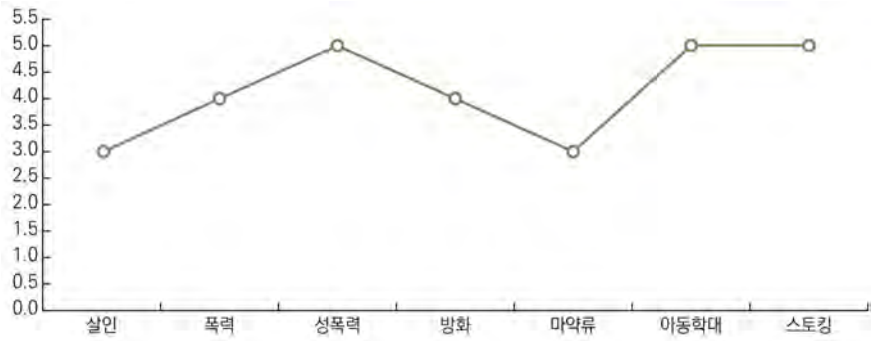						
	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위험수준	보통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높음**	**높음**

3) 평가 및 기대효과

KIMAS의 도입은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단순 수용'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유형 및 수형자 개별 특성에 기반한

집중개별처우를 실현함으로써 수형자의 범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KIMAS 재평가 결과 등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범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심리치료과 교정관 백학훈

1) 추진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영상의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인지왜곡, 성적 대상화 등 해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추진내용

2024년 12월, 심층면담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심리치료 분야에서 치료모델로 검증되어 활용되는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내·외부 전문가의 T/F 자문 등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령 및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 딥페이크와 관련된 왜곡된 생각 수정,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수정, 피해자 고통 이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의 심각성 인식 및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Plug-In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디지털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새롭게 개발한 딥페이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2-109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듈

회기	주제	내 용
1	성폭력 관련 법령 이해 중독에 대한 이해	- 딥페이크 성범죄 적용 법령 교육 - 중독에 대한 이해, 중독 수준 인식
2	중독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계 이해	- 내가 겪은 중독의 피해 - 나의 딥페이크 타임라인
3	생각 바꾸기	- 딥페이크 고정관념 수정
4	성적 대상화와 딥페이크	-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 인식 - 성적 대상화와 딥페이크 간 관계 이해
5	피해자 공감	- 딥페이크 피해자 고통 인식 - 자기 피해자 공감하기

3) 정책성과 및 평가

2025년 12월, 안양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척도 검사의 대부분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딥페이크 인지 왜곡과 성적 대상화 영역에서 상당히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교정본부는 딥페이크 성폭력사범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죄성 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 산업수요와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다양화

>> 직업훈련과 교정관 서호성

1) 추진배경

산업 변화에 따른 기술 인력 수요 대비 및 출소 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직업훈련의 시간·장소적 제약을 극복하고 안전사고 및 외부출장 직업훈련 계호 부담 완화를 위한 첨단 기술장비(VR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 추진경과

2025년 상반기 반도체설비보전·유통관리(원주교, 20명), 정보통신산업기사 (화성직훈교, 37명), EV진단평가사·자동차판금(화성직훈교, 58명) 등 최신 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게차·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운전 훈련과정에 VR 시뮬레이터를 도입(강원북부교 굴착기VR 1대, 천안개방교·군산교 지게차VR 각 1대)하여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반복적인 체험형 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

수용기간 중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통한 기술자격 취득으로 출소 후 취업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다양한 훈련 과정에 새로운 취업 유망 직종 신설 및 최신장비 도입으로 훈련의 질적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앞으로도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 과정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104 산업수요와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다양화

지게차VR시뮬레이터

반도체설비보전

4.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및 시설 개선 추진

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 심리치료과 행정사무관 김지연

1) 추진배경

폐쇄된 근무환경에서 수용자 자살 목격, 폭언·폭행 등 다양한 교정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정서적 소진 및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교정공무원의 정서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탄력성 및 직무자긍심 향상을 통한 교정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및 성과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 등을 위주로 하는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형 집합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표 2-110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외부 전문상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조직 적응, 대인관계 등에 관한 대면, 전화, 온라인(화상) 상담 실시
	긴급 심리지원	수용자 자살 목격, 폭행 피해 등 교정사고 발생 시 전화 스크리닝 후 긴급상담 및 후속 개입 등 트라우마 극복 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全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건강상담, 힐링부스(커피트럭) 운영, 캠페인 등 실시
	정신과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1인 연간 50만 원 한도 진료비 지원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신규교도관, 장기근속자,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등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소진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집합 프로그램(숙박형 또는 재택형)

2025년에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상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회기 확대(10회기→12회기), '찾아가는 심신케어' 운영기간을 확대하였고(대형기관 4일, 중·소형기관 2~3일), 교정사고 발생 직후 심리적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심리지원을 고도화(추수상담 제공)하는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참여 직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기간 및 장소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전 프로그램 1인 1실 숙소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으며 2024년 직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반영한 수면문제 개입 등 특화과정을 도입하였다.

표 2-111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마음나래프로그램	외부 전문상담	217	260	418	478	720	902	893	743	752
	긴급 심리지원	-	-	211	111	16	276	285	323	250
	찾아가는 심신케어	939	1,073	2,151	코로나-19로 미운영	2,774	2,193	4,332	5,514	5,000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270	300	코로나-19로 미운영	785	1,029	1,540	1,818	1,863

3) 향후계획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체 직원 수 대비 상담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2026년부터 정신건강 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받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예방 등을 위한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 교정기획과 교정관 김종원

1) 추진 배경

최근 인터넷·사회 연계망 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주거지 등에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넷'에서 가상화폐 결제로 판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위기가 고조되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학계와 정치권, 언론 등 사회 각계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넘어 마약 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정본부에서는 늘어난 마약재활 수요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개별적 특성별 맞춤형 재활, 유기적 사회재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교정형 마약 재활 재범 기구 신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2) 추진 성과

교정본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사범 급증에 따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사범 재활·치료 업무를 수행할 '마약사범재활과'를 일선 교정기관에 설치하였고, 정원을 증원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마약사범재활과 설치 및 인력증원 현황】

- (전담부서 신설) +4과(화성직업훈련·부산·청주여자·광주교도소)
- (전문인력 증원) +16명(5급4, 6급4, 7급4, 9급4)

3) 향후 계획

교정본부는 마약류 근절·예방에 대해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마약사범재활과 추가 설치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외에 만성적 과밀수용으로 악화된 현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체계 개선 등 교정 현안 대응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다. 교정시설 화재 대응 역량 강화

>> 복지과 교정관 이동근

1) 추진배경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교정시설 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초기 대응 능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산림 인접 교정시설의 경우 화재 확산 방지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였다. 이에 화재로부터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정시설 화재 대응 장비 도입 및 시설 보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보하였다. 첫째, 대형 산불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37억을 투입하여 옥외소화전 설치를 추진하였다. 둘째, 화재 조기 진화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인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73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8개 기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부분 설치된 16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자위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8.9억원을 투입하여 개인소방장비 및 소방차량을 도입하는 등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105 화재 대응 관련 장비

2톤 이동방제차

1톤 이동방제차

거실 내 스프링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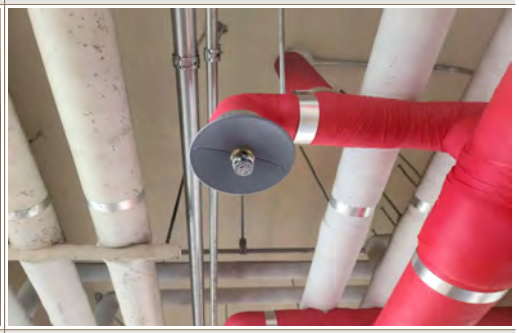

복도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 보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산불진화차 및 개인 소방장비를 활용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강화

>> 직업훈련과 교정관 정세락

1) 추진배경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교정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였다.

2) 추진경과

교정기관별 안전보건책임자를 중심으로 시설, 급양, 의료, 수용, 작업 등 각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통할하는 상설 회의체인 '안전사고방지회의'를 신설하여,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점검 및 안전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안전사고 취약점을 보강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유형 및 기계별 취급 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 근무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 운영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안양교도소 등 작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16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동절기 화재 위험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절별·유형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3)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

2026년도 상·하반기 '교도작업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법무연수원, 연100명)을 신설하여 교도작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 과정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 전담 강사를 양성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여 지속 가능한 교정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106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특별 안전점검 강화

교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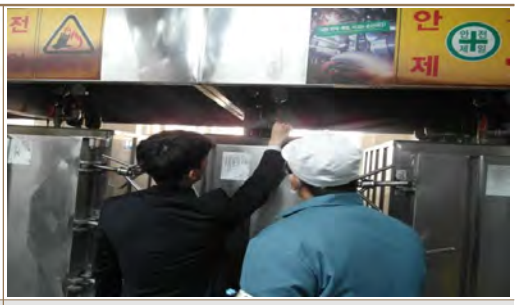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마. 교정경찰 우수 수사 사례집 발간

>> 특별점검팀 교정관 우치동

1) 추진배경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 수사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함으로써 수사기법의 표준화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수사 품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지능범죄, 강력범죄,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전파함으로써, 교정경찰의 실무 능력 향상과 함께 동일·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 추진내용

교정본부는 2024년부터 교정경찰 우수 수사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각 기관에서 제출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외부전문가(대검찰청 검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수사사례를 발굴하였으며, 교정시설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2025. 10. '교정경찰 우수 수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그림 2-107 교정경찰 우수 수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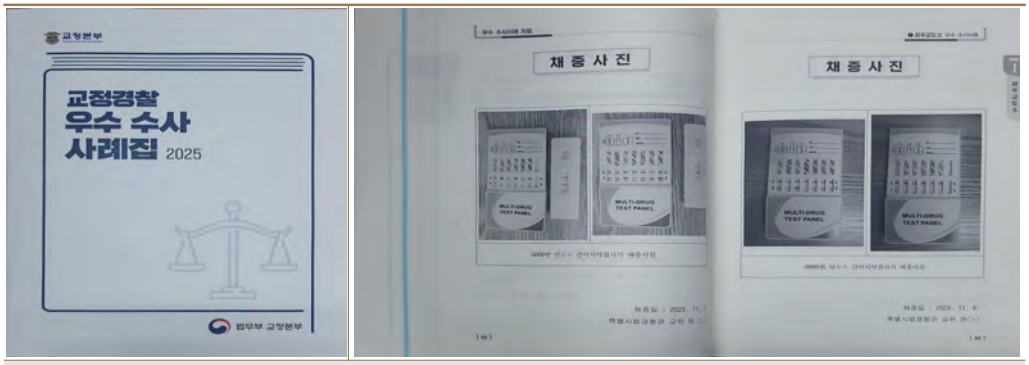

우수 수사사례 자료(2025년 10월 법무부 교정본부)

3) 향후계획

교정본부는 2026년에도 교정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사례 경진대회 및 내·외부 수사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시험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교정시설 내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발생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다하는 등 교정경찰의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 10 절 |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5년 9월 법무부는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시행하였다.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입국 전에 명단을 전송받아 입국규제자 등 고위험군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 여부를 점검하고,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리하였다.

아울러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분기별 평균 이탈률을 기존 5%에서 2%로 강화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 9. 29.부터 시행 중인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로서 2026. 6. 30. 종료를 앞두고 있다.

※ 입국자 수 : 21,806명(2025. 9. 29.~12. 31.)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 국민 여론, 관광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제도의 운영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5년 2월 법무부는 공항 혼잡도 개선, 입국 대기 시간 단축 등 입국 외국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전자적)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을 신설하여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입국 외국인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종이 입국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서식1의2)]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도 국내 공항 도착 시 전자입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공항(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입국장에 전자입국 신고용 태블릿(58대)을 설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표 2-112 전자입국신고 현황

(기간 : '25. 2. 24.~12. 31. 단위 : 명, %)

구분	총합계	종이입국신고	전자입국신고
2025년	11,749,655	7,198,256	4,551,399
월 평균 이용률	100%	61.3%	38.7%

* '25. 12. 전자입국신고 이용률은 44.1%

전자입국신고제 도입 이후, 총 입국신고서 제출자 1,174만 명 중 455만 명(38.7%)이 전자입국신고서를 이용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이용률이 44.1%로 상승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5. 2~3.) 30.2% → ('25. 6.) 37.8% → ('25. 9.) 41.8% → ('25. 12.) 44.1%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입국심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국가 비상시 관계기관과 전자화된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정보의 사후 분석 등을 통해 출입국 정책 및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전자입국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시행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유심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5년 8월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관계에서,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제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외국 기업 소속의 대상자가 우대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항 내 지정된 입국심사 부스 및 우대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입국심사를 제공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부터 정식운영으로 전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표 2-113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주요 내용

참여 경제단체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 및 외국 기업을 대표하는 국내 주재 각국 상공회의소 중 시범적으로 6개 단체 선정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인협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우대심사 신청 절차	(우대심사 대상선정) 경제단체 별 내부 검증을 통해 추천 쿼터 내에서 외국 기업 소속의 대상자 선정 (우대심사 대상통보) 경제단체는 우대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인데 대한 정보를 우리부에 공문으로 통보 (우대심사 대상등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담당자가 시스템 등재 (우대심사대 운영) 기존 우대심사대 및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운영(인천공항 입국장 내 5곳)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제도는 정식 운영 이후 초기 단계로, 제도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 대상이 한정(월 300개 기업소속 임원 등)되어있고, 시행 기간이 짧았던 만큼 제도 시범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정량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장과 신청자의 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용상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라. 자동심사 이용국가 확대 시행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유심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5년 12월 법무부는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과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 자동심사 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다. 기존 외국인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는 상호이용 MOU 체결 국가 국민과 등록외국인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교류 증대와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인해 MOU 미체결 국가 국민도 이용 가능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가 입국심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주의 원칙 및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안정성과 현장 운영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표 2-114 입국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현황

(기간 : '25. 12. 1. ~ '26. 1. 31.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총계	단기 외국인 총계	자동 허용국 소계	홍콩	대만	마카오	독일	일본	싱가폴	유럽	기타
입국자	1,988,628	1,156,427	784,310	89,485	155,378	7,819	13,601	346,978	63,242	46,767	61,027
자동심사 이용자	533,539	397,590	413,949	40,933	82,463	3,979	6,956	215,588	25,109	20,561	19,116
이용률	26.8%	34.4%	52.8%	45.7%	53.1%	50.9%	51.1%	62.1%	39.7%	44.0%	31.3%

공항 입국장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동심사 전용구역을 지정하여 입국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고 긍정적인 첫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무부는 자동심사 이용 실적과 현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 가능 공항 확대 및 대상국가 추가 확대 등 외국인 입국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정도산

1)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크루즈 기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단시간에 대규모 외국인 승객이 입·출국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출입국심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한 출입국관리 체계를 해양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안전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였다.

2) 추진성과

가.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자동심사대를 설치하여, 여권 판독·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공항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심사 시스템을 항만으로 확장함으로써, 해상 교통수단 이용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대규모 승객이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장 혼잡을 완화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우리부는 제주 크루즈 자동심사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타 항만으로의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심사 대상 확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해상·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스마트 출입국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2-115 크루즈 자동 심사대 도입현황

(기준 : 2025.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설치 대수	38대	입국장	7	입국장	21
		출국장	3	출국장	7

바. 출국금지 대상 확대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상배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24. 9. 26. 유죄가 확정된 명단공개 체불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5. 10. 2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었다.

2) 평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대상을 명단공개 기준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명단공개 기준일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로 한정하여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준수하였다.

사. 출입국자 현황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2025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91,222,927명 보다 7.8% 증가한 98,327,286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9,282,389명으로 전년도 57,567,576명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39,044,897명으로 전년도 33,655,351명에 비해 16.0% 증가하였다.

그림 2-108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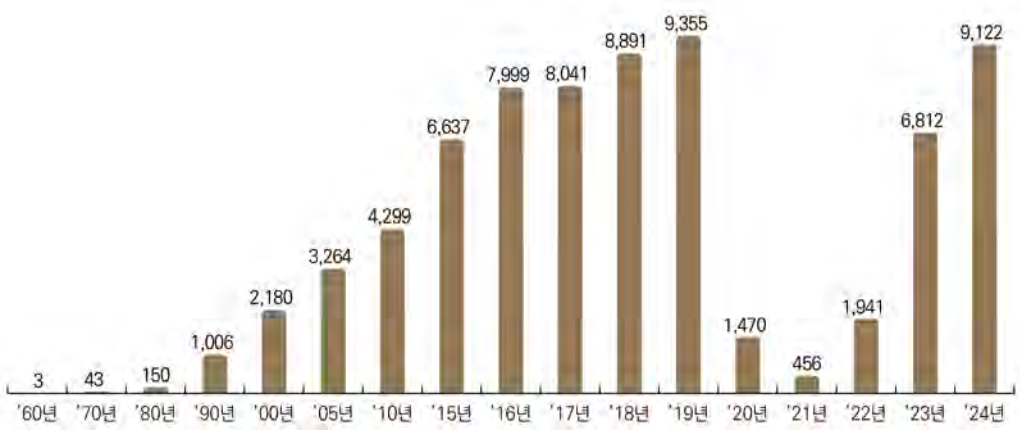

1) 외국인 입국자

2025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9,584,714명으로 전년도 16,968,203명에 비해 15.4%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약 578만 명(29.5%), 일본 약 369만 명(18.8%), 대만 약 191만 명 (9.8%), 미국 약 157만 명(8.0%)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약 1,277만 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51.5만 명(2.6%), 유학 약 41.1만 명(2.1%), 영주 21.9만 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9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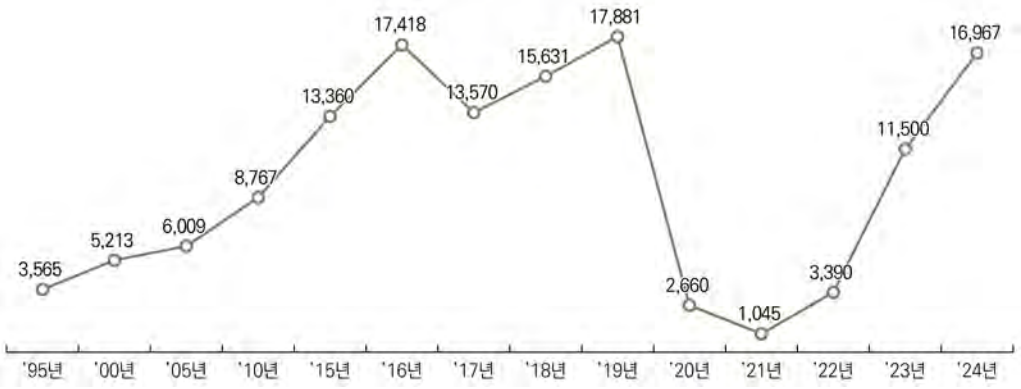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9,575,501명으로 전년도 28,720,773명 대비 3.0%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출국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905,763명) 대비 회복률 102.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 2-110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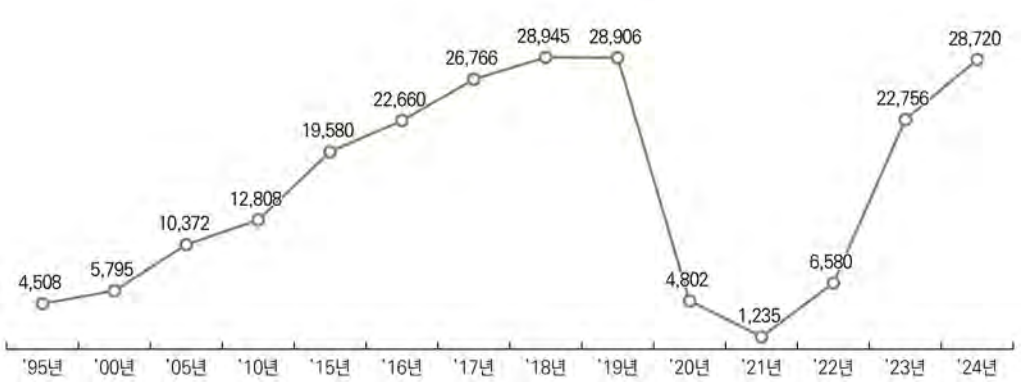

2.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과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가. 국정과제에 발맞춰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승

1) 추진배경

전 세계적으로 AI·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국가재정으로 양성한 고급 연구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비자 제도 마련이 요구되었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시행

법무부는 2025. 4.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신설·시행하였다.

톱티어 비자는 최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으로 동반가족(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뿐 아니라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전자적 방식의 원스톱 민원처리, 공항·만 출입국 편의지원을 위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고급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나) 「K-STAR 비자트랙」 확대·개편

「K-STAR 비자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지원 제도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5개교를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7개 일반대학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총 32개 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림 2-111 정부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K-STAR비자트랙」 사업설명회 개최

정부혁신 우수사례

「K-STAR비자트랙」 사업설명회 개최

3)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25년 비자 도입 이후, 총 17명의 최우수 인재 및 15명의 동반 가족에게 톱티어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톱티어 비자 발급 분야와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K-STAR 비자트랙」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개최와 성과 점검 체계 구축 등 외국인 우수 인재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요자 맞춤형 비자 개선 체계 구축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진겸

1)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계·지자체의 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프로세스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5년에는 3월과 9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25건을 상정하여 12개 제안을 수용하였다.

협의회 심의 시에는 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정합성,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외국인 정착·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였다.

표 2-116 2025년 비자·체류정책 제안 수용 안건

소관부처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업 용접공 일반기능인력(E-7-3) 경력요건 면제 • 자동차 부품제조원 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보건복지부	• 입양목적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신설
국토교통부	• 판금·도장 정비원 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해양수산부	• 외국인 해기사 전문직업(E-5) 직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인력 경력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 일반기능인력(E-7-3) 건설기계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D-2) 인턴십 허용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 특정활동(E-7) 특례 개선 및 중기부 고용추천 권한 추가
해양수산부	• 일반기능인력(E-7-3) 양식기술자 도입범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 기술창업(D-8-4) 점수제 면제 특례 개선

2)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도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 구인난 심화 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전문기능인력(E-7) 비자제도 개선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진겸

1) 추진배경

법무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E-7) 내 직종을 신설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 검토 후 해기사(E-5), 자동차부품 제조원(E-7-3), 자동차 정비원(판금·도장 분야, E-7-3) 등 직종을 신설하여 전문·기능인력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및 조선업 용접공 등 직종은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량 검증 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민간의 외국인 도입을 위한 비자 개선 수요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활력을 제고하는 비자·체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대폭 확대

>> 체류관리과 사무관 홍인표

1) 추진배경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을 갖춘 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비자 발급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되고 전자사증 신청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의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 1회 개최하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적 요건으로 외국인환자 비자 발급 실적과 의료기관의 유치(진료)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유치사업자(비의료기관)의 유치실적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3) 추진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2024년 39개에서 2025년 90개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진료부터 숙박·교통·쇼핑·문화까지 이어지는 고소비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여 'K-의료 수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 성장기반이 국내에서 형성된 외국인청소년의 자립 지원 제도 도입

>> 체류관리과 사무관 안재필

1) 추진배경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 또한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이들의 자립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장기반이 국내에서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에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국내성장기반 외국인청소년 체류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2-112 이주배경 학생 교육 현장 방문

- 2025. 3. 21.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이주배경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 제도 지원 약속

2) 주요 추진내용

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자립 지원 정책 시행

국내에서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인구감소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성장 요건을 갖춘 외국인 청소년에게 구직 및 취업 특례를 적용하여, 취업 준비 중이면 최대 3년까지 구직(D-10-1)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취업 시에는 경력·학력 등의 요건을 면제하고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우리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정책 홍보 강화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외국인 청소년이 동 제도를 알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 학교와 다문화 네트워크, 또래집단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3)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바. 글로벌 유망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체류관리과 사무관 안재필

1) 추진배경

국내 대학의 유학생 증가와 글로벌 인재 확보 각축전 상황에서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면서, 선제적으로 해외 유망인재를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바탕이 되고자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가)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도입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현지 대학생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유망인재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유망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나) 해외 유망인재 유치를 위한 구직(D-10) 개선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 9개 국가에 대해서는 QS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을 포함) 졸업자, 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에게는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내 구직·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실제 인재 수요에 부응하였다.

아울러, 기존 구직(D-10)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하였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 기간 또한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직(D-10)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3) 추진성과

법무부는 유학비자가 불법취업의 우회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학생에 대한 입국 및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대학 유학생 출신 인재의 취업 연계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우수 유학생 유치와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인재 확보 등 수요자 중심의 인재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안내 체계 구축

>> 체류관리과 사무관 홍인표

1) 추진배경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주요 추진 내용

가) 범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원스톱 연계

2025년 9월부터 외국인 민원 전담 창구인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로, 외국인 피해자 연계 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3자 통역을 지원하여 인권침해 외국인의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정보 제공

입국 전 사증발급 단계부터 국내 체류 전반의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정보를 제공하였다.

우선,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시 '인권보호 안내문'을 동시에 출력하게 하여 비자와 함께 배부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 공항만 입국심사 및 최초 외국인등록 시 인권침해 대응 연락처 및 안내사항이 기재된 '인권침해 대응 안내카드'를 배부하였다. 또한, 고용주 48,826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2-113 인권침해 대응 카드 배포

인권침해 대응 카드 배포

3)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25년 9월 외국인 피해자 통역 지원 체계를 구축한 이후 12월까지 총 9명의 피해자(총 22회 연계, 3자 통역 15회)를 연계하였으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 상담원을 증원하여 피해 외국인은 신속하게 구제하고, 모든 외국인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 국가적 재난 피해지역 체류 외국인 지원

>> 체류관리과 사무관 홍인표

1) 추진배경

2025. 3. 영남권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시, 충남 서산시 등 3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서, 재난으로 인해 민원 신청이 곤란한 체류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적 외국인 민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주요 추진 내용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민원 관련 각종 허가 및 국적업무 신청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기한 내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면제하여 피해지역 외국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고용·취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중인 농가 피해로 계속 취업이 곤란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타 농가로의 근무처변경을 우선 허가하고, 피해지역에는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사회 피해 회복을 지원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난 상황에서 체류·국적 민원과 관련한 비용 부담 및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와 행정 접근성을 높인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등 현장 수요 중심의 조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고용 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 업무 체계 개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2년 코로나19 종료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자,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년)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불법체류 인원이 약 43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25년 12월 현재 35만 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에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년)」 3년차를 맞아 정부합동 단속, 테마별 기획 단속·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특히, 법무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 감축 대책 전반을 논의하였으며, 5개 관계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한 정부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고용주들을 상대로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2차례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례가 증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체류 유발 요인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마다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142,265명 가운데, 강제퇴거 33,892명(23.8%), 출국명령 43,361명(30.5%), 출국권고 1,676명(1.2%) 등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78,929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809명(1.3%), 그 밖에 통고처분(과태료) 후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61,527명(43.2%)이었다.

표 2-117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2024	139,727	35,124	44,151	1,931	1,737	56,784
2025	142,265	33,892	43,361	1,676	1,809	61,527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택균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여 2025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 48,458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업종·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등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058명, 불법고용주 4,064명,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51명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표 2-118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9	2022	2023	2024	2025
기 간	• 매 짝수달 각 4주	• 10.10. ~ 12.10.	• 3.2. ~ 4.30. • 6.12. ~ 7.31. • 10.10. ~ 12.9.	• 4.15. ~ 6.30. • 9.30. ~ 11.30.	• 4.14. ~ 6.29. • 9.29. ~ 12.5.
참 여 인 원	899	830	530	650	668
불법체류 외국인	2,806	3,865	20,947	19,232	20,058
불 법 고 용 주	495	483	4,687	3,761	4,064

※ 2019년 실적산정 방식 변경(전 기관 실적 인정에서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으로 실적 감소
※ 2020~2021년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합동단속 잠정 중단 후 2022년 10월 재개

또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2회(2025. 1. 1.~1. 31., 2025. 12. 1.~2026. 2. 28.)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119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진출국자	55,260	32,867	32,026	43,133	46,299	42,675

※ 특별자진출국 운영기간(2025. 1. 1.~2. 29., 2025. 9. 30.~12. 31.)동안 23,441명 자진출국

이와 같이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등 다각적으로 불법체류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2025년 3월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2028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보장하였고, 언어·문화적 동질성으로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동포 1,554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한 불법체류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조사과 사무관 이성용

2)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 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2025년에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국인 마약 범죄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정원, 경찰,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57명의 외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필로폰 등)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국정원, 부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함으로써 마약류 밀반입 조직원 외국인 9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SNS 등을 이용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단체를 찬양·추종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12명(전원 불법체류자)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교통법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운 무면허·대포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 38명, 대포 차량 6대를 적발하였고, 택배, 배달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등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168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는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계절근로자 외국인력 도입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였고,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2-120 기획조사 추진 실적

구분 / 연도	계		허위서류 제출		허위초청		불법취업		유흥업소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4년	794	5,267	131	356	66	123	263	2,545	72	853	262	1,390
2025년	719	4,946	96	408	51	73	225	2,287	84	614	263	1,564
전년대비(%)	90.6	93.9	73.3	114.6	77.3	59.3	85.6	89.9	116.7	72.0	100.4	112.5

>> 이민조사과 사무관 최연준

3)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 규정 신설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출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과잉금지의원칙·적법절차원칙 위배)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독립적 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5. 6. 1.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정하되, 중대범죄자나 강제퇴거명령 이후 난민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최대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호 관련 절차 진행 시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보호 심사 청구 및 기간 연장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2025. 6. 1. 공식 출범하였다. 보호 해제 및 계속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결정권이 있는 보호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민조사과 사무관 최연준, 이성용

4)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권익구제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시행(2025. 11. 6.)하였다.

또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 청주, 여수, 울산, 인천)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상담, 조사 등을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2025. 12. 29. 시행)

4.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가.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사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회통합정책 필요성도 커지자, 법무부는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를 열어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며, 안건으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 방안과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 지원 방안을 포함해,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114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2025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2025. 9. 30.)

나.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협의회는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다도협') 업무협약(2019. 7. 22.)에 따라 구성된 법무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로 양 기관이 협업과제를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개최발굴·추진하며, 회의는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6월)에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제12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11월)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김포시) 주관으로 김포시청 대강당에서 제13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협의회는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정례적 협의체로서 외국인정책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발굴·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외국인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법무부는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사회통합 기반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115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12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5. 6. 17.)

제13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5. 11 .6.)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 교육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10년 23억 원에서 2025년 136억 원으로 약 6배 증가하였으나, 국가 예산으로 전액 무상 운영되어 예산 증액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되어 왔다. 한편, 무료 운영 방식은 일부 교육 참여자의 학습 동기 저하, 반복 수강 등 교육 참여의 성실성 문제도 야기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유료화 도입의 타당성과 적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23. 12.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2024. 9. 30.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법무부 고시 2024-434호)」를 제정하였고 2025년부터 유료화를 시행하였다.

2025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단계별 10만 원 교육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전면 면제 혜택이 제공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유료화 시행 첫해에 약 48억 원의 교육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는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 136억 원 대비 3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가 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강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참여자들이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출석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수업 참여도와 출석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교육수수료를 산정하고 출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라. 조기적응프로그램 기반 외국인 안전교육 강화

>>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5년 2월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교육과 범죄예방교육을 신설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입국 초기 외국인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국내 법령 이해 부족으로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신설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를 하반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여 전국적 의무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개편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안전교육 신설은 외국인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에는 조선업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교육을 개발하는 등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마.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박창현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5. 5. 2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유공자 포상·문화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외교사절, 이주민,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전·후로 청소년 공연, 글로벌 문화공연, 합창 등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취지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확산하였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이번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과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 기여에 대한 공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형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현장의 헌신과 노력을 조명하고, 문화공연과 전시를 연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향후에는 외교사절·민간단체·청년 및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세계인의 날을 사회통합 대표 기념행사로 발전시키는 한편, 이민정책 성과와 사회통합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116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5. 5. 20.)

유공자 포상

단체사진

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웅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 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공유,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가정폭력

방지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관을 통해 교육 과정의 효율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교육 참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청취·수렴하여 결혼이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소득기준 등 결혼이민(F-6)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체류 가이드북과 각 국가별 책자 16,000권을 발행하여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배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 가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 대상자 등 현장 중심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여 운영 과정의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검증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사.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의 명확화 등 정비 추진

>>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웅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폭넓은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 출생자녀에 대해 전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체류자격을 정비하는 한편,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해야 하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26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 기준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제결혼을 둘러싼 혼인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가정 형성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인도적·현실적 고려를 반영하였다. 향후에도 연구용역 의뢰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약 216만 명 중 40%(약 86만 명)을 차지하는 재외동포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동포가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한민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5년 5월, 취업이 제한되었던 동포의 배우자에게 농·축산업, 임업 및 간병,가사,육아 분야 등 일부 단순노무 업종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허용하여 동포 가족이 국내에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독립 유공자의 유족(가족)에 대해 세대 제한없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등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2022년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조치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2025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입국한 무국적 동포들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활동을 허가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체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12월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본국 복귀가 어려운 동포와 그 가족, 무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류 지원을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내년에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포 비자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여 동포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운영

>>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법무부는 2008년부터 경기도 안산, 광주 광산구 등 동포 집중거주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왔다. 그동안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내 조기 정착지원,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존 16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2025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공공성,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7월, 23개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확대 지정하였다. 2025년 7월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들로부터 동포 정책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 말에는 2026년도 추진 예정인 동포 정책과 2026년에 배정된 예산 활용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간담회를 통해 동포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동포 사회의 고충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동포와 그 가족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117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 및 간담회(2025. 7. 29.)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가.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적과 사무관 김준철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2018. 12. 20. 시행된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5년 15,381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2025년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7인의 후손 27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윈켈 글렌 칼라니(독립유공자 신을노 선생 후손) 씨는 "대한민국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외조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텐 헤교니(36세, 정갑이 선생 후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면서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7년을 맞이하였고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적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118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5. 8. 1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기념촬영

나.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사익 조화

>> 국적과 사무관 김준철,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확보하기 위해 2011. 1. 1.(2010. 5. 4.「국적법」 개정)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국적심의위원회는 2022. 10. 1.(2022. 9. 15.「국적법」 개정)부터 관련 부처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되었고, 종전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외에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등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2025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총 3회(분과위원회 6회) 개최하여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76건, 예외적 국적이탈 140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174건 등 총 390건을 심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의 우수인재 51명에 대해 연구실적 및 국익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귀화(회복)를 허가하였으며,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대한민국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없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78명의 국적이탈을 허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된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며,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홍보 강화

>>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적은 업무 특성상 동포, 병역,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2025년 법무부는 병무청,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국적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법무부는 주상하이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중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국적·병역 설명회를 개최(2025. 11.) 하였고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캐나다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국적설명회를 개최(2025. 11.)하여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림 2-119 해외 거주 동포 대상 국적설명회(2025. 11.)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재외동포청의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화상 상담회(2025. 1. 21, 일본, 2025. 10. 29. 미국 등)에 참여하여 재외공관 직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국적이탈 및 상실·회복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였고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여 한인회장 및 대륙별 연합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회복·복수국적 등의 제도취지 및 실무례를 설명하였다(2025. 9. 30.).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해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 정착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병역의무와 출생경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제한되기도 한다.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신고 등을 마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적은 개인과 국가의 법적 유대이자,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는 시발점이므로, 국민과 재외동포 모두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 등 국적법령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및 재외동포들이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6.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균형잡힌 난민정책 추진

가. 추진배경

2025년 6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전 세계 난민 현황(Global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실향민(난민, 국내실향민, 망명신청자)의 수가 2023년 말보다 530만 명 증가해 약 1억 2,260만 명에 달하며, 글로벌 난민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 중심의 이민·난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등 국제 난민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정책 환경도 복잡하여 난민심사 절차 보장과 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난민면접 영상 공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난민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난민심사 거점기관 및 화상면접 운영 확대, 난민전문통역인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난민심사가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난민제도 운영 30년 간의 종합통계를 공개하여 난민정책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시민단체·학계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요인을 관리하였다. 또한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재정착난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제기구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표 2-121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난민신청		2,341	11,539	18,837	18,335	14,626
대기	1차	7,651	11,069	20,251	27,706	29,078
	이의신청	4,525	4,887	6,490	8,138	10,030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1) 2025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1994년 난민 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5년까지 총 136,720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35,018건을 제외한 총 62,594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679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727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여, 총 4,406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5년 난민신청 건수는 14,626건으로 전년 18,335건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난민심사 완료 건수 대비 난민신청 접수 건수가 많아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9,078건으로 전년 27,710건 대비 5% 증가하였다.

2025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6,041건으로 전년도 5,083건 대비 18.8% 증가하였고, 난민인정은 135건으로 전년도 105건 대비 28.6% 증가한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는 41건으로 전년 97건 대비 57.7% 감소하였다.

>>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 「난민법」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현행 「난민법」에는 국내에서 테러에 가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난민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최민수

3) 난민심사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의 정황 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 제도 개선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수도권에 집중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난민신청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난민심사 거점기관을 확대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보호 중 난민신청자가 신속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면접 운영기관을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심사에 적극 회부토록 하였고 최신 판례 등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등 난민심사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난민심사관을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난민면접 기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난민 보호 기준 및 사례, 국내외 난민소송의 판례 및 동향 등 전문교육(총 6회) 과정을 실시하였고, 최근 난민 정책 환경 변화와 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한 난민법령 개정 사항(2024. 12.)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표 2-122 2025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2.27.~ 2.28.)	45명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정황, 난민통역의 이해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협약 국제 보호 이해 • 난민면접 시 유의사항	법무부
2차 (상반기 거점자체교육)	93명	• 난민법 및 난민심사실무 • 중동 국가 정황 및 이슬람 문화의 이해 • 난민심사 과정 AI 적용 가능성	법무부
3차 (6.12. ~6.13.)	38명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인정 해외판례 및 동향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내 난민소송 판례 및 중요 쟁점 • 심사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법무부
4차 (9.4.~9.5.)	47명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국제적 난민 보호 기준과 사례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소송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난민 접수 실무	법무부
5차 (하반기 거점자체교육)	75명	• 난민면접 진술 분석 기법 • 국가정황 • 난민심사관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6차 (12.11.~12.12.)	38명	• 신빙성·위험 평가 기반 난민심사 • 면접기법 향상 및 심사보고서 작성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정황 분석,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4)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법무부는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다양한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5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140개국으로 국적과 구사 언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를 시행하여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받은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등급별 맞춤형 교육과 인증시험을 통해 26개 언어 152명을 신규 선발하였다.

또한 난민면접 통역 품질 검증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5년에도 148명을 대상으로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난민통역 윤리·난민통역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9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이 10명 이상 위촉되어 있는 9개 언어에 대하여는 난민전문통역인 '역량 순번제'를 도입함으로써 통역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2025년 5월 우수한 통역인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훈령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훈령은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위촉·해촉, 통역인의 의무, 교육, 통역능력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2-120 2025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5. 12. 15.)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민수

5)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지속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최장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적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 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허가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5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6억 5천만 원 상당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3 2025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2025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4,626명 중 482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6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나아가, 생계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도적 고려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하였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문'을 전국 출입국관서에 배포하는 등 생계비 지급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민수

6) 재정착난민 제도 운영

2015년 최초 도입 이후 2023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규 사업으로 전환된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정착하고 있는 난민 가운데 우리나라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86명,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도시 난민 164명, 2025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순연된 2개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56명 등 총 306명(96가구)을 수용하였다.

표 2-124 재정착난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인원 (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10(4)	7(3)	56(21)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25년 12월, 재정착난민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재정착난민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재정착난민 100여 명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정착난민을

지원해 온 자원봉사자·멘토단과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한적십자사와 (재)한국이민재단 관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2-121 법무부차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참석(2025. 12. 30.)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행사 단체사진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행사

>>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민수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숙식·교육·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13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총 1,045명 입소하였으며, 2025년 신규 입소자는 총 97명이다.

지원센터는 수준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입소자와 강사가 함께 숏 폼(Shorts Form)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된 영상을 수업에 사용하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퇴소 후 국내 정착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민수

8) 글로벌 난민문제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2025년 2월, 국적·통합정책단장(現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보호국장을 만나, 난민의 보호 확대와 난민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5년 10월, 법무부장관은 UNHCR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25년 10월 법무부는 제76차 UNHCR 집행이사회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122 국적·통합정책단장,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보호국장 면담(2025. 2. 26.)

그림 2-123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면담(2025. 10. 17.)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면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예방 기념 촬영

>>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민수

9) 난민인식 및 처우 개선

2025년 4월,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에 재정착난민 25명과 함께 피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재정착난민과 지역주민이 소통·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7월, 난민처우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고 정책 고객별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난민정책 뉴스레터(RPN : Refugee Policy Newsletter)'를 분기별로 총 4회 발간·배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6년에는 난민의 해외 이수 학력 인정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신청 증가에 따른 심사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난민심사 제도개선과 난민심사역량을 집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난민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전담공무원 관련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최신 판례, 국가 정황 등을 반영한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하던 학생난민 제도 정규화, 재정착난민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 국격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및 국제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지역의 분쟁 지속 등 2025년에도 세계 각지에서 인도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14,626건으로 전년(18,336건)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1차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5,802건으로 2020년 5,95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3~2024년 연간 18,000건을 상회한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처리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누적 효과로 분석된다.

난민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정책환경에서, 2025년 난민심의과는 난민위원회 총 9회, 난민분과위원회 총 32회(대면 분과위원회 4회 포함)를 개최하여 3,387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였다.

특히 기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이의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124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표 2-125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 결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의신청	3,110	4,067	5,954	4,718	3,748	5,247	5,153	5,802
심사결정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3,002	3,387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경희

1) 난민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난민 이의신청은 난민법령에 따라 난민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있어 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나 그간 난민위원회가 연 6회 내외로 개최됨에 따라 개최 일정에 맞추어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의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난민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부는 2025. 4. 9.「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 제1575호)을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분과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난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 10~12회 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처리량이 증대되었고, 이의신청 심사 기간 소요 또한 1개월 이상 줄어들어 이의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였다.

2)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인 행정적·법적 절차와는 달리 증거 제시에 한계가 있는 난민 심사에서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신빙성 평가는 심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빙성 평가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난민지위 심사 안내서를 발간하여 난민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발간에 앞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제법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1차 심사기관 난민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1차 심사기관 난민 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2년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두 차례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정황조사관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러시아 지역 전문가 및 진술 분석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난민 심사를 위한 최신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난민 신청 사례에 대해 이론적·실무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재정착 난민 현지 면접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난민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에 힘썼다.

3)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우리부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총 21개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 왔다. 2025년에는 기존의 책자 배포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게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다국어 안내서 E-book 링크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접근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는 별도의 검색 없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자국어 안내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절차적 편의성이 극대화되었다.

또한 의견진술 청취 대상자 선정회의 및 대면 분과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필요시 사실조사 및 추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 권리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 난민심의과 사무관 배창준

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다양화 및 신청 사유 다변화로 인하여 국가정황정보(COI : County of Origin Information)*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2021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2025년 본격 추진되었으며, 2025년 12월 웹크롤링·기계번역 기능 등이 탑재된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가정황정보 수집 시 해외 웹사이트를 개별적으로 검색·번역하고 중복 조사해야 했던 업무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정황정보 지식 및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1차 심사기관 난민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 등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번역·감수하는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사업' 추진, 주제별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발간 등 교육·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체계, 주요 사건 등을 의미하며 난민 심사 시 핵심 판단자료임

다. 향후 추진계획

2026년에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320호)을 개정하여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통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가정황정보와 난민신청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난민조사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 간 국가정황정보 공동 조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및 공동성명서 교환 등을 추진하여 향후 역내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난민 이의신청인의 권리보장 강화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지속 발간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정례화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

8.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가.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4]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으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거쳐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림 2-125 외국인정책위원회

4)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상 한계가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함

2) 주요 내용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에 따른 5개 정책목표(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를 중심으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504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967억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경제·산업계 등 민간 및 관계부처의 비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및 제도화
-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Top-Tier 비자」 신설 및 이공계 우수인재 정착 확대
-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체류' 정책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광역 비자」 시범운영 실시
- 외국인정책 심의·조정 과정에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 대표가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나)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 안전 위협 분야 집중단속 실시 등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등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 보안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전국항만 합동 보안 세미나 개최 및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 통계 시스템 개선, 비상시스템 구축,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참여자의 학습 의욕과 교육효과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 유료화 시행
- 지역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이민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 신설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 해소, 방문취업 신규 부여 중단 등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 마련

라)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및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 심사 절차 개선, 난민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균형잡힌 난민정책 추진
-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및 독립적 보호 통제 기구(외국인 보호위원회) 설치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온라인 기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재구축하는 이민행정민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자료 제공

표 2-126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5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504	696,663	157	366,715	1,347	329,948
1. 개방	235	280,098	53	221,580	182	58,518
2. 통합	43	17,483	29	16,632	14	851
3. 안전	1,037	328,381	35	103,050	1,002	225,331
4. 인권	127	60,369	21	19,063	106	41,306
5. 협력/인프라	62	10,332	19	6,390	43	3,942

나.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외국인을 직접 마주하는 지자체(기초포함) 공무원들은 출입국심사·비자·체류업무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부족으로 관련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을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2) 추진경과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목적으로 최초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는 기초지자체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횟수를 늘렸으며(연 1회에서 연 5회), 20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바, 2024년 총 6회 개최하며 609명의 지자체공무원 등이 교육에 참가하였고, 2025년에는 총 5회 개최하여 738명이 참가하였다.

3)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호 협조 의무가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이민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법무부, 행안부) 및 광역지자체들의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와 기초 지자체 우수 외국인정책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하여 참석자들 간 토론 하여 논의된 내용은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안건 등으로 상정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26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025년 제1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025년 제4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다. 「2025년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발표회」 개최

>>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정책발표회를 2025년부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지난 18년(총 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는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되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 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을 활용해 아바타 형식의 발표,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콘텐츠 발표 등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본선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과 문제점 분석 능력,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발표의 준비도와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 전문가 뿐만 아니라 AI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심사관의 개별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국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승객의 심층 인터뷰를 지원하고 패턴을 분석·학습하여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 개선안을 제시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민정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두달여 간 예선과 본선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민정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출입국관리직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상한 10개의 제안 방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구소멸 위기,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127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발표회(2025. 11. 28.)

라. 2025년 미래정책포럼 개최

>>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 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의 직원들도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여 2022년 5월부터는 운영방식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 포럼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5년 미래정책포럼은 총 8회 개최되었다. 해외 이민국 직원과 대학교수, AI기술 및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ICE 업무소개 및 한국 이민당국과의 협력 방안” (크리스토퍼 갈베즈, 주중국미국대사관 ICE 주재관), “경기도 체류외국인 인구 구성의 동적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신선호,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I툴 사용법 및 출입국업무 활용 방안 제안”(황태연, 경기연구원 박사), “다민족 국가인 네팔에서 국내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수잔 샤키아, 영주권자), “외국인 유입이 소비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김준호, KIET 산업연구원 박사)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연구기관, 정책담당자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였다

미래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2-128 2025년도 미래정책포럼

가. 국제협력 강화

>> 출입국기획과 이주호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작년 한 해 우리 부의 국제협력은 단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글로벌 이동성 확대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심화되는 초국경 범죄, 불법 이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주노동 관리의 제도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주요 협력국 및 관계기관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예방 및 보호외국인 국외 송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한 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와 체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2025년에는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 등과의 이민당국 고위급 협의를 통해 온라인 스캠, 마약 등 초국경 범죄와 불법 이주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방문 과정에서의 범죄 피해 예방과 신속한 공동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지역 총괄국장,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국토안보부 부지부장, 주한 미국 CBP 주재관과 주중 미국 대사관 ICE 주재관 등과도 접촉하여 출입국 이민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양국 이민 당국 간 정기 협의체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주노동 분야에서는 2025년 3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2025년 9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2025년 11월 베트남 내무부 차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투명한 인력 이동 촉진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인력 송출·체류 과정에서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더해, 2025년 8월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2025년 12월 11개 주한 공관 초청 간담회에서 주한 공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교민과 기업인의 출입국·체류 애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림 2-129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한-필리핀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

우즈베키스탄 외교 차관 면담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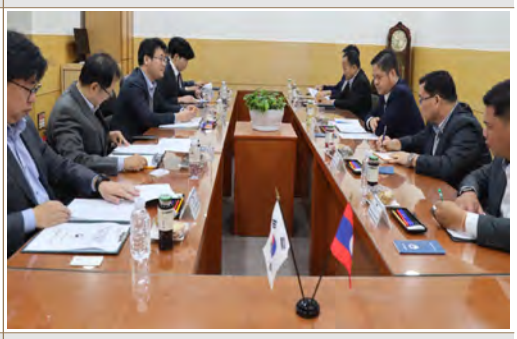

라오스 이민국장 면담

나)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제4차 아세안+한·중·일 이민청장회의, 제5차 도쿄 출입국 포럼, 제9차 ANDEX 회의, 제20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RIP 심포지엄, 제53차 OECD 이주정책작업반 정례회의, 제76차 UNHCR 집행이사회,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세계적·지역적 이주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9월 중국에서 개최된 이민관리 협력 서브 포럼에 참석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입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 이민당국의 역할과 국가 간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참석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자간 국제회의 참석 계기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 정부대표단들과도 만나 이주 분야 관심사와 최근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였다.

그림 2-130 국제회의 참석

제4차 APT 이민청장 회의

제8차 ANDEX 회의

제76차 UNHCR 집행이사회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9.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추진

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행

>>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디지털 신원 증명 기술 여건이 성숙된 환경에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모바일 국가신분증 도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법무부도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와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을 2024년도에 구축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25. 1. 10.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의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 기준 36,384건을 발급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2-127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구 분	발급방법
전자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①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② 전자칩 외국인등록증 인식(비밀번호) → ③ 안면인증(본인확인) → ④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큐알 코드 방식	①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② 출입국관서 창구 큐알 촬영 → ③ 안면인증(본인확인) → ④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아울러, 2025년 3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내 6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여 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개선하였다.

※ (민간앱) 네이버, 삼성월렛, 토스, KB스타뱅킹, NH월원뱅크)

3) 평가 및 발전방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체류 외국인이 디지털

기반의 생활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이민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나. 하이코리아 개인 맞춤형 비자·체류 정보제공

>> 이민정보과 사무관 권심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학생, 숙련 인력 등 국내 취업·정착이 가능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출입국·이민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어 '개인 맞춤형 비자·체류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2025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하이코리아 회원을 대상으로 취업, 구직, 창업 등 체류 유형에 맞는 추천 체류자격, 세부 요건, 구비 서류 등에 관한 맞춤형 정보의 조회가 가능한 비자내비게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을 통해 체류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만료일 전 1, 2, 4개월 전 총 3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31 하이코리아 및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화면

비자내비게이터(맞춤형 체류가이드)

체류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3) 평가 및 발전방향

하이코리아에 구축된 비자내비게이터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우수 외국 인재가 출입국·이민행정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앱을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약 1만 5천건의 체류만료일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등 등록외국인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다. 전국 소속기관 노후 네트워크 정비사업 추진

>>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 및 잦은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시대에 따른 출입국·이민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최신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고 도입한 장비를 통합관리솔루션에 연동하는 등 안정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및 추진 경과

우선 전국 45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전체 네트워크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교체가 시급한 22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5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장비 교체를 추진하였다. 또한 기 운영중인 네트워크 통합관리솔루션에 장비를 연동시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128 출입국·외국인관서 장비 교체 현황(22개소)

지역구분	L2 스위치(대)		광모듈(대)	
	전원이중	단일	멀티	싱글
서울/경기/인천	30	67	50	0
강원/충청/전라	9	34	0	16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중	40	43	24	2
소계	79	144	74	18
합계	223		92	

* 전국 22개 기관 L2 보안스위치 223대(전원 이중화 79대), 광모듈 92대(멀티74, 싱글 18) 교체

3) 평가 및 발전방향

노후 네트워크 정비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 요소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고 추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한 네트워크 통합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부는 2026년에도 소속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 이민정보과 사무관 권심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3년 9월 시행한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가 제1금융권(은행권)에만 적용되어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제공 대상 확대를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림 2-132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제1·2금융권 24개 금융기관에 약 869만 여건의 조회결과를 제공하는 등 등록외국인이 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웹/앱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추후 서비스 수요 및 제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방안 개선

>>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외국인이 무사증입국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 등 지역에서 여권 등을 분실한 경우 국내 항공권 발급과 탑승 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외국인이 입국 시 제공한 얼굴사진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발급하여 국내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여권 등 신분증 재발급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법무부 제도개선, 202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제도 개선 계획」에 채택

2) 주요 추진내용 및 추진경과

외국인이 여권 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지문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 1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된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부처마다 인적정보를 다르게 표기하여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 영문 성명 등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그림 2-133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2023. 4. 17.~5. 30.)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 8. 22.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무부는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 노력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12. 20. 공포되어 2025. 6. 21.부로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제78조의 2), ▲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제78조의3) 마련을 골자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의 정보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 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제78조의3(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으로 규정되었으며 2025. 6. 21.부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신청 서식, 정보시스템의 운영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자체 서식을 통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수집·관리하여 임의기재 또는 입력오류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행정기관 등에서 외국인 기록을 최초 생성하는 시점에 법무부 기본인적정보가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연계된 모든 기관 간에 동일한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범법 외국인 동일인 확인, 조세 체납자 확인 등 행정업무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규정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을 위해서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연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134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에 따른 개선 효과

나.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운영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 보유자료, 관계기관 간 공유데이터 등 외국인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유롭게 분석·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였다.

2023. 11. 구축 완료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2024.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였고, 2024. 10.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총 26개 기초지자체) 소속 지자체 중 플랫폼 이용을 희망한 2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2025. 3.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및 지역특화비자 대상 107개 기초지자체까지 플랫폼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동 단위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연령별 외국인 시각화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35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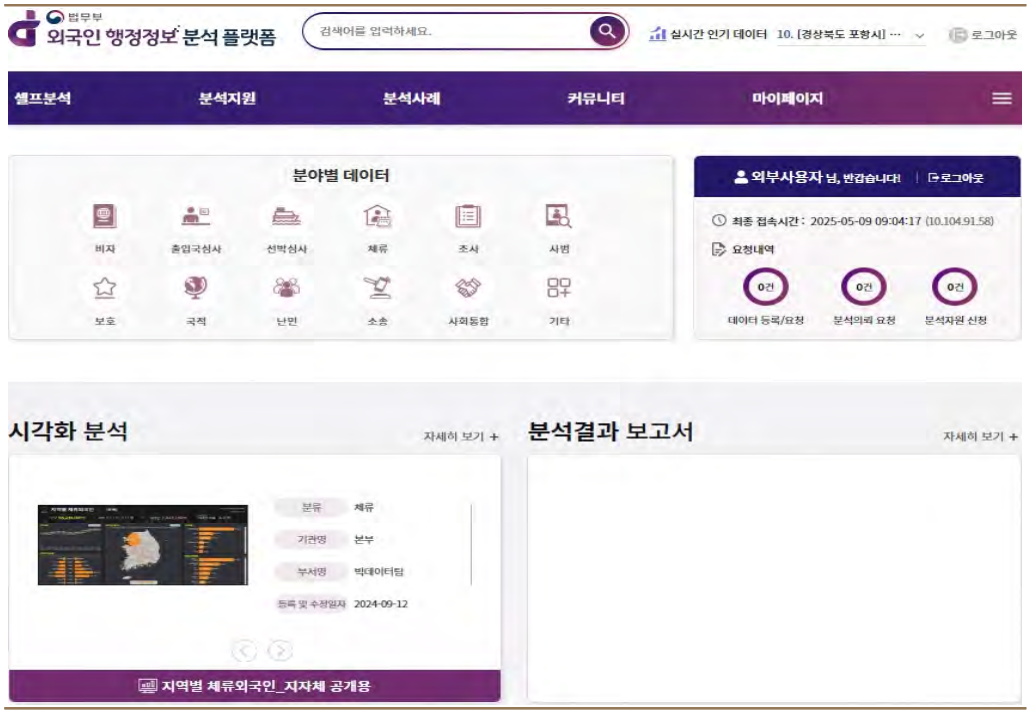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으로 분산된 외국인 행정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데이터 기반 이민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 사용자는 스스로 외국인 행정 데이터 조회, 가공, 결합, 시각화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에 분석 의뢰를 할 수 있다. 2025년 데이터 분석요청 처리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9 2025년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지원 현황

합계	체류	출입국심사	조사·사범·보호	난민	국적	기타
443	221	65	54	13	34	56

추후 본 플랫폼을 외국인담당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로까지 확대 개방하고, 이용자들이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데이터셋을 신설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자료 공개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5종*의 데이터 자료를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2024. 3. 11.부터 공개하였다. 이후 2025. 5. 제4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시각화 자료를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에 추가 공개하여 각 지자체별 최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전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자료

해당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36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공개된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화면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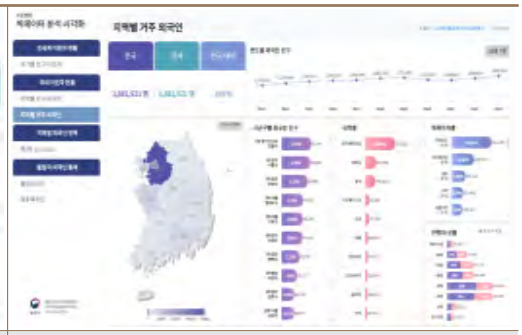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이중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자료는 시각화하여 매월 14일경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고용 현황' 등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지역 상황을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서와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와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지역별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를 정책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표 2-130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요청·처리 실적

연도	분석 대상 지자체
2022년	•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 전라남도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군, 보령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북도 영천시, 영주시, 고령군, 의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경상북도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등
2023년	•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 경상북도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충청북도 제천시
2024년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등
2025년	•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 충청북도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기도 가평군 등
총계	68개 지자체

마. 소속 직원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강화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신규 구축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 3. 6.~ 3. 7. 2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실무」 과정을·운영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2024년에 신설되었으며, 2025년 2차년도 운영을 맞아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소속 직원 총 3명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분석·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셋 만들기' 등의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2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직접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등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2025. 4. 14.부터 5일 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뢰하여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에 총 1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131 2025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및 저장
2일차	Tableau 활용 교육(1)	• 사례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이해 • Tableau 설치 및 기능 익히기 • 등록 외국인 현황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3일차	Tableau 활용 교육(2)	• 공공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ChatGPT 연계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4일차	R 활용교육(1) :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방법 • 데이터 구조 이해, 전처리 과정 실습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5일차	R 활용교육(2) :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의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법무부 가상데이터 기반)

1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가 상존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다.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2023, 서울대 산학협력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2024, 이민정책연구원)"

2025년에는 추가 정책 연구를 통해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및 범죄 등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제도 정식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림 2-137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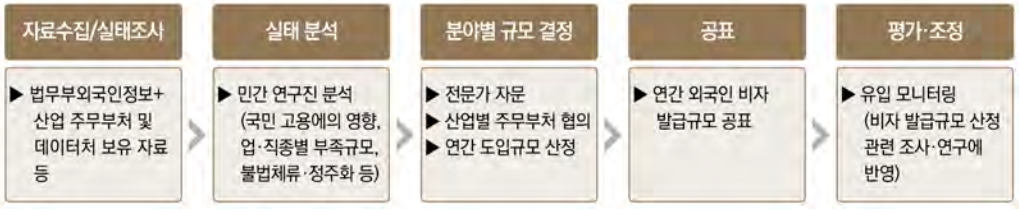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민 고용과 임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농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E-8) 수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부족 수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 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각 산업별-비자종류별 인력부족 수준을 각 권역별(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구분·산출하여 지역별로 예상되는 상이한 노동부족 패턴을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분야별 노동부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고안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공유하고, 2026년 비자 발급규모, 전문·기능인력 도입 필요 분야, 외국인력 도입 조정 필요 분야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어 각 산업 주무 부처와의 논의, 비자별 협의체 논의 결과, 2025년 비자 발급 현황,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주요 비자별 발급규모를 산정하였다.

우선, 전문·기능인력 비자(교수(E-1)~특정활동(E-7))의 경우 그간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에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상한을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2-132 2026년 주요 비자별 발급규모

구 분			업종	'25년 발급량[1] (발급 상한)	'26년 발급 상한	비 고
전문·기능인력	신규 도입 (예정)	금형원(E-7-3)	뿌리산업 (금형업)	-	추후 확정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해 도입 방식 확정 예정
	신규 도입[2]	자동차부품 제조원(E-7-3)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00명	'25년 10월 신규도입
		자동차 판금·도장원(E-7-3)	자동차 종합수리업	-	330명	'25년 12월 신규도입
		도축원(E-7-3)	도축업	-	150명	'25년 12월 신규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조업, 건설업 등	**13,830** (35,000)	**33,000** ('25년 대비 2,000명↓)	E-7-4 쿼터 소진율, 전환 대상자 규모 등 고려
비전문인력	계절근로(E-8)		농·어업	**70,964** (95,700)	상반기 기준 **109,100** ('25년 대비[3] 13,400명↑)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 결정('25.11.27.)
	고용허가제(E-9)		제조업, 건설업 등	**51,670** (130,000)	**80,000** ('25년 대비 50,000명↓)	제48차 "외국인력정책 위원회" 결정('25.12.22.)
	선원(E-10)		어업 등	**21,262**[4] (23,300)	**23,300** ('25년과 동일)	총 체류인원 한도 내 발급

1) 2025. 12. 31. 기준 비자 발급량임

2) '24년 시범도입된 3개 직종은 현행 발급상한 유지 (요양보호사 400명 / 송전전기원, 항공기부품제조원 300명)

3) '25년 전체 배정인원(상반기+하반기)과 '26년 상반기 기준 배정인원을 비교한 수치

4) 21,262명은 2025. 12. 31. 기준 총 체류 인원을 의미하며, 비자 발급 건수를 의미하지 않음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계획

법무부는 취업비자에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분석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비자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가 실효적인 외국인 총 유입규모 관리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림 2-138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서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

연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2025. 8. 27.)

나.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지역체류지원과 사무관 박정석

1) 정책환경

농어촌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년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수립,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발전 등은 향후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표 2-133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단위 : 명)

구분	'15~'16 시범 운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운영 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50 (해외입국자 559 +국내체류자 1,291)	12,027 (해외입국자 10,630 +국내체류자 1,397)	32,837 (해외입국자 32,489 +국내체류자 348)	57,269 (해외입국자 57,247 +국내체류자 22)	84,836 (해외입국자 84,819 +국내체류자 17)

2) 추진경과

'25년에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5년 1월 계절근로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다. '25년 7월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근거를 기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를 신설·공포하여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3) 추진성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고용주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 계절근로제도 배정인원을 전년 대비 41% 증가한 95,596명으로 결정함으로써 농·어촌에 필요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불법 중개인 처벌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공포하였으며,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다변화하였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강화

폭염·폭우 시 행동요령 및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안전 근로 계약서를 개발·보급 등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제 11 절 |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가. 개요

과거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사검증 담당기관을 다원화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중요한 검증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 6. 7.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운영하였다.

나. 운영 현황

1) 구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및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였다.

2) 인사검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 공직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증 업무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증 내용은 보고받지 않고 있고,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했으며, 인사정보관리단과 여타 부서 간의 정보교류도 철저히 차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5. 6. 10. 활동 종료되었다.

다. 활동 종료

2025. 6. 10. 인사혁신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근거 조항 삭제로 인사정보관리단 활동이 종료되었다.

3 법무연감

Justice 1st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1 절 |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 정				개 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부령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
2018	58	1	-	1	-	57	19	23	15	-	-
2019	51	2	-	1	1	48	9	24	15	1	-
2020	71	2	-	1	1	69	27	25	17	-	-
2021	86	9	2	3	4	76	27	24	25	1	1
2022	60	1	-	-	1	58	18	18	22	1	1
2023	54	-	-	-	-	54	17	15	22	-	-
2024	56	2	-	2	-	54	17	16	21	-	-
2025	50	-	-	-	-	50	25	10	15	-	-

제 2 절 | 법률

Ⅰ. 개정법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12. 1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공포
2025. 6. 4. 시행

다. 주요내용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제3조제2항)

2. 국가배상법

가. 추진배경

○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판례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종래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이 법령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일체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위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3. 10. 25.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6. 19. 신장식 국회의원, 2024. 6. 25. 엄태영 국회의원, 2024. 11. 27. 김민석 국회의원 제안
2024. 12. 1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 7. 법률 제2063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민사집행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나, 실무상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각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짐
-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카드 대금,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일정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9. 23. 오기형 국회의원 제안
2025. 1. 8. 국회 의결(수정 가결)
2025. 1. 31. 법률 제20733호로 공포
2026. 2. 1.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고, 예치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함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범위,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조회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포괄적인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6. 24. 홍기원 국회의원안 발의
2025. 1. 8. 국회 의결
2025. 1. 31. 법률 제2073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종전의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개정함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7. 22. 박균택 국회의원, 2024. 8. 14. 김주영 국회의원,
2024. 9. 26. 장동혁 국회의원, 2024. 11. 1. 이수진 국회의원 제안
2025. 2. 27. 국회의결(원안 가결)
2025. 3. 18. 법률 제2079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규정함

6. 출입국관리법(1)

가. 추진배경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과정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인 보호제도의 미비점 보완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10. 7.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2. 27. 국회 의결
2025. 3. 18. 법률 제20794호로 공포
2025. 6. 1. 시행

다.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함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 설정(제63조)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제63조의3 신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66조의3 신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7. 형법(1)

가. 추진배경

-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추진경과

2025. 2. 27.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3. 18. 법률 제2079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함(제116조의2 신설)

8. 형사소송법(1)

가. 추진배경

○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나. 추진경과

2025. 2. 27.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3. 18. 법률 제20796호로 공포
2025. 9. 19. 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94조의4 신설)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하게 됨

나. 추진경과

2025. 3. 20.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5. 4. 8. 법률 제209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함(제6조제7항)

10. 형법(2)

가. 추진배경

-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추진경과

2025. 3. 2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4. 8. 법률 제2090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의3 신설)

11. 검사징계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나. 추진경과

2025. 2. 26. 김용민 국회의원 등 23인 제안
2025. 6. 5. 국회 의결(원안 가결)
2025. 6. 10. 법률 제2098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함
○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12. 상법(1)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 기업기배구조상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현행 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2023년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주주총회 내실화 및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상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하는 여러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법무부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나. 추진경과

2024. 6. 27.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7. 3.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표발의
2025. 7. 3. 국회 의결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공포
2025. 7. 23. 시행 (단, 일부 규정은 별도의 시행일 존재)

다. 주요내용

-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와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 신설
- 상장회사 한정 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의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 아닌 이사 외에 독립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감사위원인 독립이사를 해임할 때에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

13. 출입국관리법(2)

가. 추진배경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11. 21. 유상범 국회의원안 발의
2025. 4. 1. 임미애 국회의원안 발의
2025. 7. 3. 국회 의결
2025. 7. 22. 법률 제20992호로 공포
2026. 1. 23.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의5 신설)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4. 상법(2)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 상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대다수 상장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의 수가 최소 1명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1명만 분리하여 선출
-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 존재

나. 추진경과

2024. 11. 1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5. 8. 25. 국회 의결(수정 가결)
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공포
2026. 9. 10. 시행(예정) (단, 일부 규정은 별도의 시행일 존재)

다. 주요내용

-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 개정으로도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가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설정 가능)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 제한(연 5%)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6. 17. 이학영 국회의원 제안
2025. 5. 21. 고동진 국회의원 제안
2025. 7. 18. 오세희 국회의원 제안
2025. 10. 26. 국회의결
2025. 11. 12. 법률 제21083호로 공포
2026. 5. 12.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임차인이 약정에 의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그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8. 28. 권칠승 국회의원 제안
2024. 9. 9. 박은정 국회의원 제안
2025. 9. 24.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5. 11. 11. 법률 제210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배상명령의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추가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추진경과

2024. 11. 4. 전용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5. 10. 26.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5. 11. 11. 법률 제21085호로 공포
2026. 2. 12.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임시조치 불응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還付)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 완화

나. 추진경과

2025. 11. 27. 국회 의결
2025. 12. 16. 법률 제21200호로 공포
2026. 6. 17.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
○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특정사기범죄',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이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검사의 필요한 조치 가능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고조되는바, 피부착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추진경과

2025. 9. 24. 김기표 국회의원 제안
2025. 12. 2. 국회의결
2025. 12. 23. 법률 제21229호로 공포
2026. 6. 24.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피부착자·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에게 실제 위치정보 제공 가능
○ 피부착자 등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받은 사람이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나. 추진경과

2025. 12. 2.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2. 23. 법률 제21230호로 공포
2026. 6. 24.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21. 형법(3)

가. 추진배경

-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는 등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추진경과

2025. 12. 2.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48조제1항)

22. 형사소송법(2)

가. 추진배경

◦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12. 2.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2. 23. 법률 제21232호로 공포
2026. 6. 24.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신설)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4. 6. 20. 민홍철 국회의원 제안
2024. 8. 26. 한정애 국회의원 제안
2025. 12. 2. 국회 의결
2025. 12. 23. 법률 제21233호로 공포
2026. 12. 24.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함

○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

24. 형사소송법(3)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12. 12.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2. 23. 법률 제21241호로 공포
2026. 7. 1. 시행(제215조의2)(예정)
2027. 12. 31. 시행(제59조의3)(예정)

다. 주요내용

-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제215조의2 신설)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59조의3)

25. 형법(4)

가. 추진배경

-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12. 3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법」 제328조제1항(근친, 필요적 형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제328조제2항(원친, 친고죄)에 대한 합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
-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제328조, 제365조)

제 3 절 |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개정]

1.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남양주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검사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이체

나. 추진경과

2025. 2. 25. 대통령령 제352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 검사 2명)의 검사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6명), 인천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전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청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구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창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전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및 제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으로 각각 이체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과·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

나. 추진경과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1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 및 필요 인력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무국과 총무과·사건과를 신설하고, 정원 3명(4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 274명(7급 92명, 9급 18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2명, 8급 182명)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24. 9. 20. 공포되어 ’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나. 추진경과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1호로 공포
2025. 3. 21. 시행

다. 주요내용

○ 구조금 기준 개월 수 상향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및 그 상한을 일괄 20% 상향

○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시기 명시
- UN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날(1985. 11. 29.)을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정함

○ 구조금 분할지급 사유·방법 명시
-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최대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하되, 이자 적용 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함

○ 가해자 재산자료·금융정보 제공요청 절차 명시
-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 필요시 검찰청에 판결문, 확정된 약식명령문, 가해자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가능
-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분의 3만큼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00분의 3만큼 인상·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하여 그 임용 자격으로 교정직렬 공무원과 달리 신장, 체중 등 일정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교정직렬 공무원에게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을 제외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게 그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함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9호로 공포
2025. 6. 4. 시행

다. 주요내용

○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 신설)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제2조의4 신설)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지정(제2조의7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해당 피해자를 인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6개 시설로 정함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와 결정 절차,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및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0호로 공포
2025. 6. 1. 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69조 및 제70조)
-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등이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의견이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78조)
-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보내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보호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제 조건을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제79조의2 신설)

-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제80조의2 신설)

-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명령서 발급 등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도록 함
-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8까지 신설)

- 법무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함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및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3개 이내로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4. 1. 5.),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6. 2. 대통령령 제3555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익법무관의 보수내용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시행령 별표)
○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시행령 부칙 제2조)

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6. 2. 대통령령 제355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시행령 부칙 제2조)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연고자 등의 정의 및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그 인도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나. 추진경과

2025. 6. 20. 대통령령 제35596호로 공포
2025. 6.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제4조)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취소 등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

○ 학대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제5조의2, 제5조의3)
- 아동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의 의미 구체화 및 학대피해아동 인도 전 연고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마련하여 응급조치의 실효성 제고

제 4 절 |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개정]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에 따라 출입국 심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294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정원 136명(6급 11명, 7급 23명, 8급 35명, 9급 67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3명, 7급 35명, 8급 67명)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2. 25. 법무부령 제109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5년도 정기직제 반영
- 기구 신설 : 1과(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 인력 증원 : 13명(본부 3명, 소속기관 10명)
- 직급 상향 : 139명(교정기관 책임행정 강화, 업무집중 여건 조성)

○ 수시직제 반영
-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하는 한시정원(6급 1명)의 상시정원 전환
- 법무실 송무심의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및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평가기간 1년 연장

2.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가. 추진배경

○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2. 24. 법무부령 제109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제2조제3항)
○ 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 시 송부자료 확대(제5조제2항제4호)
○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제14조제1항)
○ 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약 12년동안 동결되었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에 따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 제공 기관에 2024년 7월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추가하는 등 지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5. 3. 21. 법무부령 제109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선변호사 해촉 사유 추가(제7조의4)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 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제11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추가함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24. 9. 20. 공포되어 '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나. 추진경과

2025. 3. 18. 법무부령 제1093호로 공포
2025. 3. 21. 시행

다. 주요내용

○ 구조금 지급대상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자격
- 결혼이민자가 장기체류자격[동반(F-3)제외] 보유 시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구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비
- 구조금 신청서에 '분할지급 신청 사유' 기재란 추가, 피해자 편의·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청서 항목 정비 및 간소화
-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신청서 신설
- 결혼이민자 관련 첨부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추가

5. 교도관직무규칙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경과

2025. 4. 22. 법무부령 제109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비상상황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4급 1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08호, 2025. 5. 20.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5. 21. 법무부령 제1095호로 공포
2025. 6. 1.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증원
- 기구 신설 : 4기구(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 조사과)
- 인력 증원 : 27명(소속기관)
- 인력 재배치 : 5명

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중 신체조건 자격을 삭제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5. 5. 27. 법무부령 제109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으로 신장, 체중, 시력 등의 신체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5. 30. 법무부령 제1097호로 공포
2025. 6. 1.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와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함
○ 대법원장 등이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와 서식을 정함

9.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6. 4. 법무부령 제109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신청서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정함

○ 인용 조문의 오기 정정 등 일부 미비점 보완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6. 10. 법무부령 제109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및 이에 따른 인력 감축
- 기구 폐지 : 3기구(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 인력 감축 : 20명(본부)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연고자 등의 정의 및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그 인도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나. 추진경과

2025. 6. 20. 법무부령 제1100호로 공포
2025. 6. 21.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정비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취소 등을 위한 서식 정비(제7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 학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시 작성할 서식 정비(제4조)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 등 8개 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7급 9명, 8급 9명)은 보호관찰소 정원(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7. 1. 법무부령 제110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5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반영
- 본부 : 소년범죄예방팀 존속기한 2년 연장(2025. 6. 30. → 2027. 6. 30.)
- 소속기관 :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9개 신설, 18명 직급상향(9급→7급9, 9급→8급9)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일반직 전환 : 4명(소속기관)

○ 일반임기제 임용 가능 공무원 정원 확대 : 국립법무병원 약무직 3명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 조정 : 복수직렬 확대 2명, 직렬전환 1명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업무 관련 법령 개정, 업무 이관 등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일부 분장사무 조정 등)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0호, 2025. 9.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자여행허가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의 교과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무 분야를 직업훈련 담당에서 교과교육 담당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9. 23. 법무부령 제110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5년도 정기직제 잔여배정
- 인력 증원 : 49명(소속기관)

○ 수시직제 반영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평가기간 2년 연장
-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 1명(직무분야 전환)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소속기관에 설치한 신속수사팀(9개)과 출국대기실 운영팀(2개)의 보임규정 보완 등)

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우려 등으로 신고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5. 11. 6. 법무부령 제110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 신설)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6)

가. 추진배경

○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6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그 안산지원에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신설하는 대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5. 12. 31. 법무부령 제1104호로 공포
2026. 1. 1. 시행 (단, 일부 규정은 별도의 시행일 존재)

다. 주요내용

◦ 기구신설,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 기구 : 5과(지역체류지원과1, 마약사범재활과4), 1지원(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 인력 : 147명(본부 8명, 소속기관 139명)

- 직급조정(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4급 → 4.5급)

○ 평가대상 추가
- 기구 : 5과(지역체류지원과1, 마약사범재활과4)
- 인력 : 114명(소속기관)

○ 평가결과 반영
- 평가대상 제외 : 240명(소속기관)
- 1~2년 연장 : 321명(본부 1명, 소속기관 320명)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군 전환 및 직무 변경
- 관리운영직군 전환 3명, 과학기술직군 전환 1명, 전문경력관 직무변경 1명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보호관찰소 관할구역 조정 등)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 2건

2025

법무연감

4 법무연감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 1 절 |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송신애

2025년도에는 총 10회(421~430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하에 주요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등의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 4-1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21회	'25. 1. 17. ~ '25. 2. 2. (17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긴급현안질문('25. 1. 23.) –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 통과법안('25. 1. 17.)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제422회	'25. 2. 3. ~ '25. 3. 4. (30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개회식('25. 2. 3.)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5. 2. 1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5. 2. 11.)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5. 2. 12.)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5. 2. 13.)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5. 2. 14.) • 통과법안('25. 2. 27.)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2)
제423회	'25. 3. 5. ~ '25. 4. 3.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긴급현안질문('25. 4. 2.) –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 통과법안('25. 3. 13.) – 「상법」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5. 3. 20.) – 「형법」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7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1, 제2소위 1)
제424회	'25. 4. 4. ~ '25. 5. 3. (30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5. 4. 14.)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5. 4. 15.)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5. 4. 16.) • 통과법안('25. 4. 17.)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25. 4. 17.)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5. 4. 17.)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5. 4.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5. 4. 17.)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425회	'25. 5. 4. ~ '25. 6. 2. (30일간)	【본회의】미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26회	'25. 6. 5. ~ '25. 7. 4.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 6. 26.) • 통과법안('25. 6. 5.) –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5. 7. 3.)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j –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제427회	'25. 7. 7. ~ '25. 8. 5. (30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8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3)
제428회	'25. 8. 6. ~ '25. 8. 31. (26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통과법안('25. 8. 25.) –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1소위 2)
제429회	'25. 9. 1. ~ '25. 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6차례 개의 •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25. 9. 1.)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5. 9. 9.)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5. 9. 10.)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25. 9. 15.)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5. 9. 16.)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5. 9. 17.)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5. 9. 18.)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 11. 4.) • 통과법안('25. 9. 11.)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5. 10. 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5. 11. 27.)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5. 12. 2.)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31차례 개회(전체회의 16, 제1소위 10, 예결소위 3, 안조위 2) • 국정감사('25. 10. 13. ~ 10. 31.) – 법무부('25. 10. 14.), 대검찰청('25. 10. 27.), 종합감사('25. 10. 30.) 실시
제430회	'25. 12. 10. ~ '26. 1. 8. (30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통과법안('25. 12. 1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5. 12. 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 통과법안('25. 12. 3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1소위 2)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보이스피싱 대응, 경제형벌합리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표 4-2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고위 당정 협의	'25. 9. 7.	•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 **〈당 측〉** -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 **〈대통령실 측〉** -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등
당정 협의	'25. 9. 25.	• 입법 및 정책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 〈당 측〉 -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과기부, 금융위 등 국장급
당정 협의	'25. 9. 30.	•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당정 협의	'25. 11. 18.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각 부처 입안 중인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쟁점 등 보고	• **〈당 측〉** -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국무조정실, 법무부, 과기부, 금융위, 대검찰청 등 실무자급
당정 협의	'25. 12. 30.	• 8. 28.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추진성과 및 진행 상황	• **〈당 측〉** -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국무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법무부, 과기부, 금융위 등 차관급
당정 협의	'25. 12. 30.	•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 〈당 측〉 -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등 • 〈정부 측〉 -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등

2025

법무연감

5 법무연감

Justice 1st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국제법무업무 통계

제6절 교정업무 통계

제7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 1 절 |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표 5-1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4,946	6,085	6,671	7,328	6,857	7,497	5,675	7,482	7,720	7,959
기획재정부	169	174	314	285	150	106	127	187	183	165
교육부	287	303	234	262	389	401	397	254	413	314
미래창조과학부	78	92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99	-	-	-	-	-	-	-	1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48	228	231	218	165	251	133	80
외교부	32	33	18	40	42	28	28	30	22	30
통일부	44	41	57	65	68	67	43	42	-	
법무부	272	570	710	1,008	896	892	754	1,136	1,147	1135
국방부	101	142	118	130	126	180	112	154	186	233
행정자치부	418	247	-	-	-	-	-	-	-	
안전행정부	-	187	-	-	-	-	-	-	-	
행정안전부	-	187	509	605	672	842	576	487	717	446
문화체육관광부	210	240	249	345	332	364	288	245	241	318
농림축산식품부	310	279	309	308	319	352	358	355	402	386
산업통상자원부	370	248	314	379	246	225	140	367	419	368
보건복지부	469	609	530	567	541	795	499	586	554	673
기후에너지환경부	220	250	310	344	316	349	290	327	379	390
고용노동부	200	261	229	273	170	318	214	251	222	205
성평등가족부	77	108	122	114	146	151	104	116	114	117
국토교통부	559	687	706	720	744	897	498	809	737	814
해양수산부	179	176	203	293	212	269	228	244	198	261
중소벤처기업부	-	-	156	190	157	140	132	191	169	196
국민안전처	139	103	-	-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0	67	91	82	75	107	69	89	81	113
국무조정실	25	31	28	29	32	50	25	30	14	25
공정거래위원회	74	132	88	141	76	62	33	110	126	127
금융위원회	198	186	231	274	188	151	99	210	241	235
국민권익위원회	11	25	26	23	50	59	29	29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3	25	20	17	25	
국가보훈부	66	86	81	72	108	122	69	73	116	130
인사혁신처	57	65	91	85	99	109	76	111	94	114
법제처	8	11	12	9	18	16	16	32	44	33
식품의약품안전처	103	106	131	119	131	137	172	128	130	146
기타	200	340	456	338	320	65	114	621	578	730

표 5-2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88	171	178	204	171	251	224	167	142	70
기획재정부	2	-	1	2	2	5	-	6	2	
교육부	1	2	-	-	-	2	11	1	1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	3	4	1	3	1		
외교부	2	4	1	1	4	3	2	-	-	1
통일부	-	-	-	-	-	-	-	3		1
법무부	17	12	10	13	11	15	8	9	10	4
국방부	2	1	3	-	2	-	-	1	1	1
행정자치부	6	2	-	-	-	-	-	-	-	
행정안전부	-	-	9	6	12	27	4	4	2	
문화체육관광부	-	-	1	3	-	1	2	-	3	2
농림축산식품부	-	1	-	-	-	2	1	-	-	1
산업통상자원부	1	1	-	1	1	3	2	-	1	
보건복지부	2	2	2	1	1	6	3	4	1	
환경부	-	1	-	3	1	2	-	-	-	
고용노동부	-	1	2	3	3	1	2	8	1	1
여성가족부	1	-	-	1	2	1	1	-	1	3
국토교통부	7	4	5	9	5	9	5	2	5	1
해양수산부	-	1	4	-	-	1	-	3		1
중소벤처기업부	-	-	-	-	-	1	-	1		2
국민안전처	1	4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1	-	1	1	-	1	1	
국무조정실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1	1	-	-	-	-	1	
금융위원회	1	1	3	1	-	1	1	-	-	
국민권익위원회	3	-	-	1	-	1	2	2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2	-	-	
국가보훈부	4	-	-	-	-	-	-	-	-	
인사혁신처	-	1	-	1	-	-	-	-	-	
법제처	-	-	-	-	1	3	2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	-	-	1	1	-	-	
기타	138	133	130	154	121	164	172	121	112	51

표 5-3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 류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7	66	55	48	73	52	52	44	46	25
제 정	소 계	5	2	1	2	8	7	2	-	2	-
	법 률	3	-	-	-	-	2	-	-	-	-
	대통령령	1	2	1	1	5	2	-	-	2	-
	총리·부령	1	-	-	1	3	3	2	-	-	-
개 정	소 계	62	64	52	45	65	44	49	44	44	25
	법 률	18	15	5	5	15	3	9	10	10	1
	대통령령	20	20	18	21	27	17	15	11	13	9
	총리·부령	24	29	29	19	23	24	25	23	21	15
폐 지	법 령	-	-	2	1	-	1	1	-	-	-

2. 변호사·공증

표 5-4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인원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31,281	32,981	34,672	36,821	37,981
개 업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26,181	27,741	29,247	30,525	31,874
비 개 업	3,469	3,833	4,263	4,551	4,802	5,100	5,292	5,425	6,296	6,107

표 5-5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임명공증인		77	75	78	81	83	82	83	83	84	82
법 무 법 인	사무소	241	239	238	234	227	225	225	225	227	230
	구성원	1,000	981	946	918	882	865	874	879	919	870
합 동 법 률 사무소	사무소	25	23	20	20	19	17	16	15	14	12
	구성원	93	86	85	60	55	57	45	47	40	32
대 행 청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표 5-6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사건처리건수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2021	2,529,558
2022	2,368,621
2023	2,105,575
2024	2,004,956
2025	1,961,745

3. 국가소송

표 5-7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12,466	14,843
	신 규	4,513	4,676	4,821	4,924	4,873	4,940	4,895	5,015	7,387	6,919
	이 월	5,595	4,968	5,038	5,226	5,822	6.236	6,154	4,583	5,079	7,924
확정	계	5,265	4,515	4,515	4,267	4,396	4,390	4,600	4,958	4,570	5,892
	승 소	1,810	1,744	1,799	1,586	1,664	1,736	1,750	1,919	1,798	1,776
	패 소	565	545	488	473	508	465	450	459	419	505
	취 하 등	2,890	2,226	2,228	2,208	2,224	2,189	2,400	2,580	2,353	3,611
계속중		4,843	5,129	5,344	5,883	6,299	6,786	6,449	4,640	7,896	8,951

표 5-8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12,466	14,843
국가원고	계	2,268	2,127	2,105	1,973	2,356	2,698	2,721	2,575	3,617	3,844
	부 동 산	331	400	350	376	434	618	693	644	668	812
	손해배상	17	15	14	7	6	5	6	2	4	0
	기 타	1,920	1,712	1,741	1,590	1,916	2,075	2,022	1,929	2,945	3,032
국가피고	계	7,828	7,502	7,736	8,164	8,328	8,463	8,317	7,001	8,833	10,982
	부 동 산	2,607	2,591	2,594	2,738	2,662	2,621	2,545	1,998	1,858	1,828
	손해배상	1,943	1,701	1,682	1,905	1,995	2,274	2,238	2,146	4,069	6,171
	기 타	3,278	3,210	3,460	3,521	3,671	3,568	3,534	2,857	2,906	2,983
국가참가	계	12	15	18	13	11	15	11	22	16	17
	부 동 산	0	2	3	3	3	6	0	0	0	2
	손해배상	3	3	2	0	1	1	0	0	1	0
	기 타	9	10	13	10	7	8	11	22	15	15

4. 행정소송

표 5-9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46,083	43,312
	이월	20,784	19,145	19,871	20,088	21,677	20,768	24,635	27,202	27,175	26,076
	신규	15,138	16,943	16,362	16,856	16,802	20,222	18,101	18,819	18,908	17,236
확정	계	18,250	17,662	17,606	15,839	18,260	16,387	15,561	18,922	20,109	16,712
	승소	9,731	10,124	9,826	9,018	10,431	9,302	8,478	11,223	13,348	9,875
	패소	2,043	1,726	1,719	1,649	1,769	1,719	1,752	1,692	1,887	2,065
	취하 등	6,476	5,812	6,061	5,172	6,060	5,366	5,331	6,007	5,874	4,772
계속중		17,672	18,426	18,627	21,105	20,219	24,591	27,175	27,099	25,974	26,600

표 5-10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46,083	43,312
조세관계	6,142	5,136	4,910	5,433	5,188	4,831	5,402	6,101	6,179	5,923
공무원신분	1,547	1,642	1,606	1,779	1,957	1,978	2,018	2,027	2,079	2,085
국토도시계획	1,594	1,505	1,708	1,890	2,025	2,978	3,781	4,545	4,071	3,190
영업허가취소·정지	2,242	2,329	2,411	2,194	1,773	1,358	1,174	741	616	512
자격·면허·등록·인가	1,877	2,029	2,776	2,794	3,245	2,921	2,968	3,327	2,959	2,672
기타	22,520	23,447	22,822	22,854	24,291	26,912	27,393	29,280	30,179	28,930

5.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표 5-11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4,738	4,558	6,064	5,860	7,371	7,394	7,132	8,590	9,970	9,949
	구 수	1,059	1,140	1,629	2,001	2,408	3,603	4,166	4,232	4,542	4,248
	신 수	3,679	3,418	4,435	3,859	4,963	3,791	2,966	4,358	5,428	5,701
처리	계	3,598	2,921	4,054	3,452	3,768	3,228	2,899	4,048	4,269	4,207
	인 용	1,154	801	1,129	895	1,109	779	691	1,079	1,369	954
	기 각	2,249	2,008	2,777	2,357	2,456	2,253	2,126	2,876	2,718	3,080
	기 타	195	112	148	200	203	196	82	93	182	173
미 제		1,140	1,637	2.010	2,408	3,603	4,166	4,233	4,542	5,701	5,742

표 5-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196	175	185	204	150	145	141	162	146	130
	구 수	50	70	58	97	63	63	92	63	80	64
	신 수	146	105	127	107	87	82	49	99	66	66
처리	계	126	109	88	141	87	53	78	82	83	51
	인 용	112	101	78	119	74	43	65	72	73	38
	기 각	14	7	9	14	11	9	8	9	9	9
	기 타	-	1	1	8	2	1	5	1	1	4
미 제		70	66	97	63	63	92	63	80	63	79

6.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표 5-13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상결정	판결	소송비용확정액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2020	763 / 72,781	94 / 210	258 / 62,530	411 / 10,041
2021	765 / 223,742	60 / 83	275 / 215,908	430 / 7,751
2022	882 / 148,368	57 / 87	293 / 140,810	532 / 7,471
2023	767 / 99,398	75 / 170	316 / 93,217	376 / 6,011
2024	1,279 / 106,700	81 / 246	444 / 96,285	754 / 10,169
2025	2,082 / 436,364	39 / 68	1,274 / 426,973	769 / 9,323

7. 헌법재판 현황

표 5-14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6	계	1,951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20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	1	–	–	–	–	–	–	–	–	–	1	–
	권한쟁의	9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1,921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2,626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35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	1	1	–	–	–	1	–	–	–	–	–	–
	권한쟁의	2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2,589	2,411	41	3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2,427	2,447	119	8	–	59	52	379	108	–	271	2,171	902
	위헌법률	1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2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2,408	2,403	93	–	–	41	52	369	98	–	271	2,163	854
2019	계	2,730	2,519	49	8	–	7	34	218	11	–	207	2,121	1,113
	위헌법률	31	18	6	5	–	1	–	12	11	–	1	–	51
	권한쟁의	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2,693	2,496	41	3	–	6	32	204	–	–	204	2,120	1,051
2020	계	3,241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20	20	11	7	–	4	–	8	8	–	–	1	51
	권한쟁의	5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3,216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연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21	계	2,827	2,621	65	15	–	4	46	343	126	–	217	2,213	1,518
	위헌법률	38	19	8	6	–	2	–	9	9	–	–	2	70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2	1	–	–	–	–	–	1	–	–	1	–	6
	헌법소원	2,786	2,600	57	9	–	2	46	333	117	–	216	2,210	1,442
2022	계	2,829	2,675	86	26	–	30	30	309	113	–	196	2,280	1,672
	위헌법률	43	37	25	17	–	8	–	7	7	–	–	5	76
	권한쟁의	5	4	1	–	–	–	1	1	–	–	1	2	7
	헌법소원	2,781	2,634	60	9	–	22	29	301	106	–	195	2,273	1,589
2023	계	2,591	2,659	102	38	–	14	50	473	220	–	253	2,084	1,604
	위헌법률	25	48	32	25	–	7	–	11	11	–	–	5	53
	탄핵	4	1	–	–	–	–	–	1	–	–	1	–	3
	권한쟁의	10	8	2	–	–	–	2	2	–	–	2	4	9
	헌법소원	2,552	2,602	68	13	–	7	48	459	209	–	250	2,075	1,539
2024	계	2,522	2,725	106	47	–	15	44	556	217	–	339	2,063	1,401
	위헌법률	18	28	19	14	–	5	–	7	7	–	–	2	43
	탄핵	9	2	–	–	–	–	–	2	–	–	2	–	10
	권한쟁의	9	3	1	–	–	–	1	–	–	–	–	2	15
	헌법소원	2,486	2,692	86	33	–	10	43	547	210	–	337	2,059	1,333
2025	계	3,092	3,148	46	–	–	4	43	479	161	–	318	2,623	1,438
	위헌법률	20	16	–	–	–	1	–	15	15	–	–	1	46
	탄핵	–	10	2	–	–	–	2	8	–	–	8	–	–
	정당해산	–	–	–	–	–	–	–	–	–	–	–	–	–
	권한쟁의	6	11	2	–	–	–	2	–	–	–	–	9	10
	헌법소원	3,066	3,111	42	–	–	3	39	456	146	–	310	2,613	1,382

8. 제1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원서 접수 현황

표 5-15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2015	2,704	1,567	1,137
2016	3,115	1,816	1,299
2017	3,306	1,839	1,467
2018	3,490	1,985	1,505
2019	3,617	2,038	1,579
2020	3,592	1,986	1,606
2021	3,497	1,966	1,531
2022	3,528	1,967	1,561
2023	3,644	1,968	1,676
2024	3,736	2,036	1,700
2025	3,763	1,957	1,806

표 5-16 연령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	55 (1.46)	1,781 (47.33)	1,308 (34.76)	422 (11.21)	141 (3.75)	42 (1.12)	14 (0.37)

나. 합격자 현황

표 5-17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5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3,110	1,600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1.89
2020	3,316	1,768	53.31	1,809	972	53.73	1,507	796	52.82
2021	3,156	1,706	54.06	1,766	985	55.77	1,390	721	51.87
2022	3,197	1,712	53.55	1,766	951	53.85	1,431	761	53.18
2023	3,255	1,725	53.00	1,731	921	53.21	1,524	804	52.76
2024	3,290	1,745	53.04	1,771	984	55.56	1,519	761	50.10
2025	3,336	1,744	52.28	1,702	920	54.05	1,634	824	50.43

제 2 절 |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표 5-18 전체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2,154,158	2,164,845	2,280,314	2,592,375	2,587,532
	구 수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181,786	61,141	88,009	100,405	113,303
	신 수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2,491,970	2,474,229
처리	계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2,084,164	2,074,336	2,177,050	2,473,924	2,427,328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소 계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576,547	608,836	640,075	653,916	605,964
			구 공 판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193,457	190,586	206,498	207,157	193,314
			구 약 식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383,090	418,250	433,577	446,759	412,650
		불기소	소 계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477,541	498,582	507,028	539,701	495,528
			무 혐 의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85,493	79,957	86,707	91,972	96,126
			기소유예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197,405	220,235	203,312	190,777	173,507
			기소중지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77,564	83,471	80,866	79,294	72,981
			참고인중지		10,008	8,411	7,150	6,836	7,153	1,016	700	630	547	459
			각 하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40,109	39,543	52,654	71,623	59,306
			기 타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75,954	74,676	82,859	105,488	93,149
		보완수사요구			-	-	-	-	-	199,901	157,801	149,025	160,194	157,637
		이송	소년보호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20,998	24,342	28,204	26,998	26,947
			가정보호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22,852	22,208	21,195	17,737	19,629
			타 관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177,082	143,701	148,978	191,357	185,896
			성매매보호		1,338	956	465	249	212	170	142	158	123	205
			아동보호		-	2,564	2,757	3,873	4,678	8,261	7,865	8,261	7,633	8,717
	불제사건	기록반환			-	-	-	-	-	477,186	491,696	555,347	729,845	766,036
		재수사요청			-	-	-	-	-	21,030	21,863	18,355	21,147	18,071
	중제사건	기록반환			-	-	-	-	-	98,861	94,514	98,034	122,954	140,821
		시정조치요구			-	-	-	-	-	3,735	2,786	2,390	2,319	1,877
미 제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69,994	90,509	103,264	118,451	160,204

나. 청별 사건

표 5-19 청별 사건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2,491,970	2,474,229
서울중앙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150,857	163,017	170,714	187,272	183,855
서울동부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57,559	63,472	64,879	72,539	77,291
서울남부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80,725	84,956	86,293	96,881	97,490
서울북부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67,668	74,777	74,151	78,740	81,749
서울서부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51,086	57,401	59,988	62,491	63,738
의정부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72,933	50,739	45,683	53,915	54,935
고양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49,303	52,696	57,363	61,752	65,694
남양주	-	-	-	-	-	-	27,377	32,446	38,206	39,811
인천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113,911	123,911	129,435	155,510	152,380
부천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48,897	52,664	54,294	65,679	60,524
수원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116,510	124,405	128,755	148,045	149,069
성남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55,355	55,442	63,060	73,101	75,349
여주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18,553	19,825	19,737	22,243	24,251
평택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37,191	39,102	43,309	50,999	44,259
안산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62,129	62,782	65,865	74,639	73,511
안양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31,245	32,113	34,192	37,275	38,208
춘천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15,227	16,643	17,793	18,797	18,749
강릉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12,525	14,365	15,966	25,758	22,638
원주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15,184	17,418	16,963	18,491	19,856
속초	7,362	7,423	6,798	7,132	6,670	6,384	6,635	6,732	7,846	7,487
영월	8,745	7,315	6,916	7,488	6,740	6,214	6,542	7,174	8,412	7,080
대전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63,022	69,321	74,618	78,628	81,261
홍성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11,810	13,607	13,371	13,878	14,427
공주	5,806	5,473	5,994	5,926	5,920	5,212	5,279	5,473	5,876	5,718
논산	8,193	8,146	7,770	7,702	7,895	6,465	6,859	7,442	8,657	8,369
서산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16,192	16,505	19,317	19,938	20,287
천안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35,269	37,667	43,547	49,041	50,113
청주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39,726	42,830	42,291	46,512	46,763
충주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12,214	13,352	12,393	13,758	13,972
제천	6,787	6,390	5,986	5,903	5,649	5,577	5,440	5,695	6,499	6,036

검찰청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영 동	3,259	3,020	2,673	3,323	3,249	2,930	2,799	3,069	3,192	3,444
대 구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72,927	74,028	83,642	93,946	91,776
안 동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10,161	9,916	9,390	12,165	12,284
경 주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9,325	9,390	9,777	10,528	10,876
포 항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16,882	17,130	18,666	20,207	19,137
김 천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19,046	20,030	19,852	24,141	24,513
상 주	7,277	7,139	7,576	7,807	7,417	6,773	7,472	6,901	8,738	9,479
의 성	4,415	3,944	4,058	4,492	4,065	4,240	3,956	4,172	5,248	4,638
영 덕	4,244	4,376	4,313	4,062	4,319	3,902	3,929	4,705	4,267	4,911
대 구 서 부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38,438	37,554	38,314	43,758	46,330
부 산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63,992	66,505	72,650	77,387	76,514
부 산 동 부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35,074	37,882	40,895	45,762	48,946
부 산 서 부	-	37,240	42,841	45,057	42,435	36,954	38,161	39,908	48,841	46,475
울 산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54,598	54,181	55,949	60,800	60,623
창 원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41,694	42,759	43,230	50,153	53,379
진 주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23,584	37,792	21,279	22,467	23,199
통 영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16,665	18,161	23,160	19,214	20,638
밀 양	6,918	6,836	6,478	8,029	6,975	6,733	6,114	6,679	7,613	7,492
거 창	5,610	4,901	4,432	4,811	4,560	4,287	4,389	4,625	4,889	4,895
마 산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14,717	15,336	16,358	18,624	18,058
광 주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66,839	70,508	75,938	91,344	91,217
목 포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19,985	21,034	21,726	32,113	24,445
장 흥	3,502	3,264	3,179	3,245	3,154	2,947	2,964	3,451	3,063	2,979
순 천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31,781	33,249	34,056	37,567	34,319
해 남	7,081	6,992	6,490	6,483	6,218	5,945	7,234	7,118	8,412	8,320
전 주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31,567	35,255	35,821	43,697	43,436
군 산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20,603	21,077	21,662	28,534	24,458
정 읍	8,865	9,267	8,242	8,646	8,227	8,243	8,432	8,155	8,413	7,712
남 원	4,737	4,893	4,027	4,261	4,112	4,075	4,105	4,394	5,139	4,119
제 주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32,522	35,220	37,824	50,370	40,747

※ 2021년부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 포함

다. 고소·고발 사건

표 5-20 고소·고발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522,368	494,753	524,600	617,527	590,710
	구수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116,196	30,816	43,369	49,550	54,736
	신수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406,172	463,937	481,231	567,977	535,974
처리	계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491,624	451,462	474,989	562,853	518,611
	기소	소계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110,220	115,851	130,809	143,081	132,056
		구공판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40,001	39,411	49,675	54,781	50,463
		구약식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70,219	76,440	81,134	88,300	81,593
	불기소	소계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165,338	173,066	185,046	216,055	197,066
		무혐의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54,534	53,597	58,567	63,464	66,113
		기소유예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29,287	39,240	32,255	31,713	30,613
		기소중지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21,090	20,604	19,883	20,079	17,954
		기타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60,427	59,625	74,341	100,799	82,386
	보완수사요구		-	-	-	-	-	99,634	79,307	75,876	83,080	84,779
	이송	소년보호	1,614	2,040	2,354	2,705	2,706	2,554	2,910	3,008	3,432	3,951
		가정보호	909	895	995	839	712	812	755	716	737	717
		타관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112,526	79,138	79,060	115,976	99,505
		성매매보호	2	3	1	-	5	2	1	-	4	2
		아동보호	-	376	379	502	578	538	434	474	488	535
미제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30,744	43,291	49,611	54,674	72,099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표 5-21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19,397	11,352	8,392	7,605	5,343	2,609	4,902	8,583	10,079	9,270
	구 수	76	80	78	114	135	124	49	232	155	166
	신 수	19,321	11,272	8,314	7,491	5,208	2,485	4,853	8,351	9,924	9,104
처리	계	19,318	11,272	8,274	7,516	5,221	2,565	4,691	8,439	9,923	9,010
	기소 소계	13,852	7,680	5,201	4,469	2,676	1,130	2,603	5,247	6,337	5,784
	기소 구공판	1,623	1,293	963	801	816	655	739	1,287	1,080	937
	기소 구약식	12,229	6,387	4,238	3,668	1,860	475	1,864	3,960	5,257	4,847
	불기소 소계	5,091	3,348	2,785	2,783	2,275	598	1,248	2,319	2,619	2,194
	불기소 무혐의	407	242	277	251	205	86	66	63	73	98
	불기소 기소유예	1,026	969	1,190	1,343	464	280	977	2,026	1,952	1,857
	불기소 기소중지	2,591	1,240	828	752	1,189	15	8	15	13	67
	불기소 기타	1,067	897	490	437	417	217	197	215	581	172
	보완수사요구	-	-	-	-	-	645	595	572	507	453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이송 타관	375	244	288	264	270	192	245	301	460	579
	이송 성매매보호	-	-	-	-	-	-	-	-	-	-
미제		79	80	118	89	122	44	211	144	156	260

표 5-22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83,911	76,933	92,496	115,203	117,138
	구 수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21,063	8,338	11,601	14,096	15,193
	신 수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62,848	68,595	80,895	101,107	101,945
처리	계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75,724	65,566	78,938	100,405	98,418
	기소 소계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17,954	17,794	22,921	24,740	22,465
	기소 구공판	9,114	8,897	8,667	8,492	8,519	7,028	7,091	9,604	10,723	10,465
	기소 구약식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10,926	10,703	13,317	14,017	12,000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불기소	소계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23,302	22,451	25,747	35,644	36,959
		무혐의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7,582	6,270	7,234	8,427	10,263
		기소유예	12,547	11,420	9,204	8,134	8,555	7,346	7,423	9,208	13,636	14,001
		기소중지	6,835	6,570	7,270	8,300	7,638	2,400	2,441	2,872	2,734	2,396
		기타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5,974	6,317	6,433	10,847	10,299
	보완수사요구		-	-	-	-	-	14,108	11,948	13,377	14,770	14,833
	이송	소년보호	664	534	454	488	616	664	998	1,289	1,086	1,235
		가정보호	-	1	-	-	-	-	-	1	1	-
		타관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19,696	12,375	15,603	24,164	22,926
		성매매	-	-	-	-	-	-	-	-	-	-
미제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8,187	11,367	13,558	14,798	18,720

표 5-23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245,030	258,900	258,864	241,904	231,579
	구수		6,754	7,481	8,272	9,469	10,762	16,312	6,388	9,842	10,924	10,846
	신수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228,718	252,512	249,022	230,980	220,733
처리	계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238,674	249,414	248,365	231,403	216,570
	기소	소계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82,432	90,316	92,264	87,691	77,145
		구공판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24,324	25,818	26,659	24,226	20,435
		구약식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58,108	64,498	65,605	63,465	56,710
	불기소	소계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94,898	103,055	98,687	93,933	88,823
		무혐의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9,003	8,357	9,483	10,242	10,204
		기소유예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23,864	23,672	21,254	17,183	14,726
		기소중지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25,252	31,521	29,066	27,693	24,721
		기타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36,779	39,505	38,884	38,815	39,172
	보완수사요구		-	-	-	-	-	22,098	19,050	18,693	15,079	14,028
	이송	소년보호	6,329	7,291	6,914	6,807	5,930	5,247	6,562	6,940	7,304	7,397
		가정보호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21,008	20,422	19,421	16,216	17,945
		타관	8,832	9,471	8,756	9,385	8,780	12,724	9,752	12,057	10,848	10,844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256	251	347	313	267	257	303	332	388
미제			7,272	8,060	9,115	11,881	15,999	6,356	9,486	10,499	10,501	15,009

표 5-24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6,091	8,618	9,198	8,133	12,007
	구 수		838	1,299	1,213	1,277	1,551	868	346	451	465	451
	신 수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5,223	8,272	8,747	7,668	11,556
처리	계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5,782	8,150	8,750	7,683	11,294
	기소	소 계	5,260	4,671	4,787	4,665	2,173	1,812	2,070	2,147	2,047	1,900
		구 공 판	4,810	4,382	4,514	4,504	2,135	1,790	2,042	2,105	2,016	1,875
		구 약 식	450	289	273	161	38	22	28	42	31	25
	불기소	소 계	7,694	10,335	9,630	8,892	5,264	1,842	3,528	2,622	1,741	2,531
		무 혐 의	3,866	3,964	4,094	4,362	1,073	379	506	455	421	422
		기소유예	978	785	682	667	376	290	278	378	274	216
		기소중지	1,234	1,246	1,116	1,093	143	96	79	68	83	50
		기 타	1,616	4,340	3,738	2,770	3,672	1,077	2,665	1,721	963	1,843
	보완수사요구		-	-	-	-	-	550	413	413	389	344
	이송	소년보호	384	347	284	312	167	117	110	133	101	109
		가정보호	29	26	33	19	5	4	4	3	1	2
		타 관	1,359	1,066	1,224	1,331	451	1,451	2,021	3,432	3,398	6,402
		성 매 매	-	-	-	-	-	-	-	-	-	-
		아동보호	-	4	7	5	1	6	4	-	6	6
미 제			1,315	1,264	1,306	2,625	743	309	468	448	450	713

※ 검찰통계사무규정 개정(2020. 5. 8.)에 따라 흉악사범에서 강력사범으로 변경

표 5-25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258,499	271,877	268,075	264,376	240,155
	구 수		2,456	2,941	3,317	3,234	3,630	8,108	2,862	4,461	4,652	4,742
	신 수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250,391	269,015	263,614	259,724	235,413
처리	계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255,697	267,571	263,600	259,775	232,463
	기소	소 계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183,680	198,247	197,181	195,792	174,035
		구 공 판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49,717	47,183	43,169	40,604	35,144
		구 약 식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133,963	151,064	154,012	155,188	138,891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불기소	소 계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45,514	42,945	40,995	40,909	36,060
		무 혐 의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5,486	4,898	4,579	4,322	3,960
		기소유예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22,612	21,580	20,576	18,610	16,044
		기소중지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8,026	9,162	8,623	8,512	7,794
		기 타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9,390	7,305	7,217	9,465	8,262
	보완수사요구		-	-	-	-	-	16,117	14,816	13,052	11,586	11,446
	이송	소년보호	4,901	5,073	4,231	4,535	5,496	4,702	5,338	6,359	5,544	4,824
		가정보호	1	1	-	-	1	-	0	1	0	1
		타 관	7,743	7,638	6,935	6,572	6,397	5,684	6,225	6,012	5,944	6,097
		성 매 매	-	-	-	-	-	-	0	0	0	0
미 제			2,801	3,219	3,170	3,545	8,053	2,802	4,306	4,475	4,601	7,692

마. 주요신분별 사건

표 5-26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88,226	85,178	76,642	76,871	74,422	57,247	62,646	68,629	65,110	66,484
	구 수		823	1,062	1,276	1,690	1,817	3,101	1,393	1,837	2,118	2,210
	신 수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54,146	61,987	67,511	62,992	64,274
처리	계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55,854	61,542	67,201	62,885	63,128
	기소	소 계	6,238	5,648	5,945	6,155	6,847	5,224	5,563	5,660	5,002	4,594
		구공판	4,010	3,531	3,944	4,255	4,949	3,692	3,945	4,110	3,466	3,052
		구약식	2,228	2,117	2,001	1,900	1,898	1,532	1,618	1,550	1,536	1,542
	불기소	소 계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18,365	21,223	22,250	20,871	20,605
		무 혐 의	5,964	5,532	5,280	5,522	5,395	724	800	921	854	1,047
		기소유예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13,420	15,439	15,895	14,791	14,037
		기소중지	6,707	6,566	5,031	4,889	3,081	2,948	3,598	4,074	3,773	3,816
		기 타	8,489	8,652	7,325	6,931	5,903	1,273	1,386	1,360	1,453	1,705
	보완수사요구		-	-	-	-	-	4,709	3,780	3,680	3,406	3,891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송	소년보호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20,998	24,342	28,204	26,998	26,947
	가정보호	180	183	169	212	233	405	348	373	355	488
	아동보호	0	0	9	6	9	5	5	1	6	9
	타 관	7,972	7,067	7,666	7,926	9,054	6,148	6,281	7,033	6,247	6,594
	성매매	10	27	10	6	1	0	0	0	0	0
미제		949	1,152	1,492	1,677	2,086	1,393	1,838	2,147	2,225	3,356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표 5-27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2,972	2,264	1,061	1,360	3,082	4,731	6,067	8,060	8,865	8,212
	구수	35	17	27	39	35	153	117	180	181	389
	신수	2,937	2,247	1,034	1,321	3,047	4,578	5,950	7,880	8,684	7,823
처리	계	2,957	2,242	1,024	1,329	2,954	4,583	5,853	7,825	8,451	7,645
기소	소계	244	148	40	27	147	298	302	397	621	870
	구공판	85	86	16	9	84	102	123	193	295	396
	구약식	159	62	24	18	63	196	179	204	326	474
불기소	소계	1,809	1,417	534	676	1,358	1,719	2,385	3,039	3,118	2,586
	무혐의	247	163	55	95	257	75	87	136	149	188
	기소유예	1,007	863	288	343	716	1,231	1,759	2,120	2,172	1,733
	기소중지	211	210	90	103	138	353	442	667	664	559
	기타	344	181	101	135	247	60	97	116	133	106
보완수사요구		-	-	-	-	-	335	447	511	645	557
이송	소년보호	670	495	336	448	1,121	1,628	2,219	3,141	3,283	2,865
	가정보호	4	2	3	5	10	41	32	37	40	56
	아동보호	0	0	0	0	0	0	1	0	1	3
	타 관	229	180	111	173	318	562	467	700	743	707
	성매매	1	0	0	0	0	0	0	0	0	1
미제		15	22	37	31	128	148	214	235	414	567

표 5-28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17,707	27,263	20,349	23,557	20,202
	구수		960	1,233	1,634	1,677	2,057	2,850	1,049	891	896	890
	신수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14,857	26,214	19,458	22,661	19,312
처리	계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16,850	26,354	19,451	22,711	19,322
	기소	소계	303	345	190	180	128	104	76	86	141	233
		구공판	274	301	147	148	111	97	61	75	125	218
		구약식	29	44	43	32	17	7	15	11	16	15
	불기소	소계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11,482	11,681	12,800	12,760	9,778
		무혐의	2,481	2,894	2,920	2,988	3,102	1,601	1,533	1,490	1,143	1,218
		기소유예	104	171	95	80	60	68	24	20	38	41
		기소중지	45	79	74	65	78	26	22	14	3	5
		기타	5,201	8,013	13,138	13,896	14,970	9,787	10,102	11,276	11,576	8,514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419	539	666	488	532	4,794	14,143	6,019	9,484	8,964
		성매매	-	-	-	-	-	-	-	-	-	-
	보완수사		-	-	-	-	-	470	454	546	326	347
미제			927	1,425	1,375	1,786	2,752	857	909	898	846	880

표 5-29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36,375	38,718	41,437	43,928	44,999
	구수		1,049	1,257	1,145	1,486	1,785	2,581	1,253	1,850	1,849	2,216
	신수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33,794	37,465	39,587	42,079	42,783
처리	계		53,001	45,867	43,671	48,927	48,182	35,128	36,873	39,577	41,727	41,699
	기소	소계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13,753	14,975	16,042	17,381	17,529
		구공판	3,985	3,974	4,162	4,927	5,221	5,028	5,353	5,605	5,990	6,316
		구약식	14,347	10,970	9,627	9,884	9,700	8,725	9,622	10,437	11,391	11,213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불기소	소 계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13,312	14,147	15,888	16,374	15,488
		무 혐 의	6,832	5,840	5,175	5,649	5,930	1,414	1,275	1,520	1,706	2,051
		기소유예	11,788	9,960	9,130	10,599	9,169	7,406	8,384	9,355	9,148	8,190
		기소중지	5,863	5,325	5,385	5,851	6,204	2,141	2,405	2,586	2,549	2,551
		기 타	7,126	7,048	7,407	8,075	7,854	2,351	2,083	2,427	2,971	2,696
	보완수사요구		-	-	-	-	-	4,350	3,851	3,671	3,594	3,427
	이송	소년보호	48	57	61	86	164	125	179	272	303	334
		가정보호	350	303	365	480	388	478	524	465	390	466
		타 관	2,649	2,386	2,353	3,373	3,550	3,105	3,195	3,235	3,680	4,449
		성 매 매	13	4	6	3	2	5	2	4	5	6
미 제			1,199	1,061	1,397	1,940	1,322	1,247	1,845	1,860	2,201	3,300

2. 구속영장 발부 등

표 5-30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보호사건송치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0	36	0	30	3	3	-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0	17	1	14	1	1	-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6	88	4	8	30	46	-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0	10	0	5	1	4	-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6	78	4	3	29	42	-
'21	계	28,201	6,174	3,895	18,064	-	20,973	20,897	20,861	36	3	45	0	4	21	20	28
	검사	1,217	-	330	886	-	2,323	2,320	2,302	18	0	3	0	2	1	0	0
	사경	26,984	6,174	3,565	17,178	-	18,650	18,577	18,559	18	3	42	0	2	20	20	28
'22	계	29,000	6,389	4,187	18,352	-	21,555	21,463	21,445	18	4	64	2	7	16	39	24
	검사	1,434	-	385	1,038	-	2,286	2,279	2,270	9	0	6	0	3	1	2	1
	사경	27,566	6,389	3,802	17,314	-	19,269	19,184	19,175	9	4	58	2	4	15	37	23
'23	계	34,434	8,140	5,346	20,882	-	25,467	25,365	25,328	37	6	71	3	6	17	45	25
	검사	1,906	-	517	1,388	-	3,068	3,065	3,051	14	0	3	1	1	0	1	0
	사경	32,528	8,140	4,829	19,494	-	22,399	22,300	22,277	23	6	68	2	5	17	44	25
'24	계	36,626	8,630	6,401	21,469	-	26,093	25,982	25,946	36	3	78	1	6	20	51	30
	검사	1,717	-	515	1,195	-	2,664	2,657	2,641	16	0	7	0	3	0	4	0
	사경	34,909	8,630	5,886	20,274	-	23,429	23,325	23,305	20	3	71	1	3	20	47	30
'25	계	37,669	9,732	5,887	21,862	-	26,292	26,193	26,175	18	6	62	0	2	23	37	31
	검사	1,293	-	334	953	-	2,195	2,193	2,185	8	0	2	0	2	0	0	0
	사경	36,376	9,732	5,553	20,909	-	24,097	24,000	23,990	10	6	60	0	0	23	37	31

3. 구속적부심사

표 5-3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2,006	1,961	2031
	구 수	-	-	-	1	-	-	-	-	-	-
	신 수	2,353	2,125	1,994	1,928	1,815	1,542	1,956	2,006	1,961	2031
처리	계	2,353	2,125	1,993	1,929	1,813	1,542	1,956	2,006	1,961	2031
	석 방	355	301	240	197	118	92	131	157	157	138
	기 각	1,972	1,795	1,730	1,691	1,667	1,428	1,785	1,830	1,776	1869
	취 하	26	29	23	41	28	22	40	19	28	24
심사중		-	-	1	-	-	-	-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표 5-32 항 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44,057	33,589	51,563	69,736	40,927
	구 수	4,505	4,825	5,435	7,936	7,651	7,738	3,231	3,421	4,008	3,733
	신 수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36,319	30,358	48,142	65,728	37,194
처리	계	48,341	51,866	57,524	72,539	72,879	40,826	30,171	47,552	65,992	37,194
	기소명령	117	85	50	60	28	17	13	25	50	36
	재기수사명령	3,067	3,646	4,402	4,695	4,706	3,017	1,925	2,244	2,103	1,520
	주문변경명령	255	240	140	135	44	39	39	77	33	31
	항고기각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35,484	27,099	40,477	50,830	32,788
	각 하	4,597	5,648	9,304	15,198	10,521	2,269	1,095	4,729	12,976	2,819
미제		4,827	5,440	7,932	7,656	7,748	3,231	3,418	4,011	3,744	3,733

표 5-33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계	2,669	3,754	4,300	7,312	6,447	4,616	4,408	4,255	4,479	4,338
	구 수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1,320	1,579
	신 수	2,321	3,289	3,777	6,404	4,968	3,432	3,716	2,764	3,159	2,759
처리	계	2,204	3,231	3,392	5,833	5,263	3,924	2,917	2,935	2,900	3,296
	기 소 명 령	-	-	-	-	-	-	-	1	-	-
	재기수사명령	59	61	56	104	142	74	54	52	28	23
	주문변경명령	-	-	-	-	-	-	-	-	-	2
	항 고 기 각	1,655	2,170	2,247	3,717	4,550	3,059	2,084	1,887	1,519	2,189
	각 하	490	1,000	1,089	2,012	571	791	779	995	1,353	1,082
미 제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1,320	1,579	1,042

표 5-34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심 사 중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41,370	44,074	48,101	46,937	49,164
접수	계	19,393	21,285	24,212	34,758	29,744	17,156	13,825	19,889	24,520	17,469
	공소제기명령	-	-	-	-	1	-	-	2	-	-
	고 법 송 부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17,155	13,822	19,887	24,520	17,469
	신 청 취 소	-	-	3	2	1	1	3	-	-	-
처리	계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17,790	11,118	15,860	25,684	15,242
	신 청 기 각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17,571	10,939	15,602	25,486	15,132
	공소제기결정	86	171	106	97	161	111	77	117	119	64
	신 청 취 소	127	204	172	187	160	108	102	141	79	46

5. 형의 집행

표 5-35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2007	2008	2009 ~ 2025
집 행 인 원	23	23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	2	5	2	-	4	-	6	-

표 5-36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2021	37,716,213,301	1,194,457,327	3,941,826,907	157,795,659	5,294,079,893	32,422,133,408
2022	38,197,346,186	1,193,344,535	3,856,611,451	97,944,158	5,147,900,144	33,049,446,042
2023	39,124,329,114	1,368,269,581	3,767,269,629	119,999,207	5,255,538,417	33,868,790,697
2024	39,856,221,527	1,396,505,733	3,725,365,129	145,506,434	5,267,377,296	34,588,844,231
2025	40,032,702,443	1,317,809,784	3,266,749,064	103,371,423	4,687,930,271	35,344,772,172

※ 조정금액은 당해 연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표 5-37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19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19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19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19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19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19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19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 (국가유공자등)
19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19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19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1990. 4. 12.	-	1	-	-	-	-	-	김현희
19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1991. 5. 25.	-	-	-	30 (9)	-	-	-	-
1991. 12. 24.	-	1	-	-	-	1	-	-
1992. 12. 24.	-	9	-	1	-	12	2	-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19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19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19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19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19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19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19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19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19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19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19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19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20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20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20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20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 (공안사범 사면)
20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20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 경축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20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 경축 (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20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2008. 1. 1.	-	8	-	14	-	18	35	-
20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20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20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2009. 12. 31.	-	1	-	-	-	-	-	-
20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2012. 1. 12.	-	595	-	185	-	-	165	-
2013. 1. 31.	-	16	-	3	-	18	18	-
20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20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2016. 8. 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20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20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021. 12. 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2022. 1. 26.	-	-	-	-	-	2	-	2022년 신년 후속조치
2022. 8. 15.	-	495	-	87	-	7	1104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592,03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593,509명)
2022. 12. 28.	-	9	-	2	-	1342 (4)	20 (1)	2023년 신년
2023. 8. 15.	-	2,062	-	82	-	26 (4)	- (2)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808,016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811,978명)
2024. 2. 7.	-	147	-	26	-	20 (2)	787 (1)	2024년 설 명절 (징계사면 75,08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363,68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380,312명)
2024. 8. 15.	-	199	-	57	-	53	910 (1)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416,84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417,260명)
2025. 8. 15.	-	296	-	56	-	80	1,756 (2)	2025년 광복절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5-38

(단위 : 천원, 명)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2,000,000
보상인원	8,713	7,374	5,073	4,257	4,380	3,414	2,983	2,956	3,505	3,899
지급금액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44,386,945	42,323,047	56,851,494	77,218,583	127,454,953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5-39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마약보상금
2022	120,000 (8)
2023	110,000 (12)
2024	110,000 (16)
2025	242,680 (8)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표 5-40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6	50	25	2	5	2	3	3	1	-	2	1	-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	1	-	1	1	-	1	1	1	-	-	-	-
2008	55	21	4	5	2	3	4	2	1	4	2	-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1	-	-	3	-	1	-	-	-	-	1	-	-
2021	58	41	4	2	1	2	-	3	-	4	-	-	-	-	1	-	-	-	-	-	-	-	-	-
2022	57	42	3	1	2	2	-	1	-	1	-	-	-	-	1	2	1	-	-	-	-	1	-	-
2023	56	41	3	1	1	1	-	1	-	3	1	1	-	-	2	-	-	-	-	-	-	1	-	-
2024	52	31	4	2	1	2	-	1	-	3	1	1	-	-	4	-	1	-	-	-	-	1	-	-
2025	55	39	3	-	2	1	-	2	-	4	1	1	-	-	2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표 5-41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베트남
2005	4	1	1	-	-	-	-	-	-	1	1	-	-	-	-
2006	4	1	-	-	-	-	1	2	-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
2009	5	2	1	-	-	-	1	1	-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
2012	5	3	-	-	-	-	1	1	-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
2014	7	3	-	-	1	-	2	1	-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
2016	4	3	-	-	-	-	-	1	-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1
2019	3	2	1	-	-	-	-	-	-	-	-	-	-	-	-
2020	4	2	-	-	1	-	-	1	-	-	-	-	-	-	-
2021	3	1	1	-	1	-	-	-	-	-	-	-	-	-	-
2022	4	1	1	-	-	1	-	-	-	1	-	-	-	-	-
2023	5	2	2	-	-	-	-	-	1	-	-	-	-	-	-
2024	3	2	-	-	-	-	-	1	-	-	-	-	-	-	-
2025	5	3	-	-	-	-	-	1	-	-	-	-	-	-	1

※ 타부처 주관 포함

제 3 절 |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피보호감호자 수용

표 5-42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강 도	18	8	5	12	13	9	10	8	7	3
절 도	10	3	3	9	9	8	3	4	2	1
폭 력	-	-	1	2	-	1	1	-	-	-
성 폭 력	32	20	8	8	8	14	9	6	2	-
기 타	2	-	-	-	-	-	1	1	-	-

표 5-43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도 / 전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초 범	3	3	-	1	3	2	-	-	-	-
2 ~ 3 범	11	5	4	7	3	3	3	2	3	2
4 ~ 5 범	20	10	4	8	10	5	3	3	2	-
6 ~ 7 범	20	7	6	8	3	10	10	5	4	-
8 ~ 9 범	4	3	2	5	8	8	5	5	1	1
10범 이상	4	3	1	2	3	4	3	4	1	1

표 5-44 동기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동기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원한·분노	-	-	-	-	-	-	-	-	-	-
취 중	-	-	-	-	-	-	-	-	-	-
우 연	-	-	-	-	-	-	-	-	-	-
기 타	-	-	-	-	-	-	-	-	-	-

표 5-45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무 학	14	-	-	3	2	3	3	1	-	3
초 졸	14	7	8	11	6	6	1	3	3	-
중 졸	12	11	2	8	15	11	6	3	3	-
고 졸	22	13	7	9	7	12	13	11	5	1
대 졸	-	-	-	-	-	-	1	1	-	-

표 5-46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노 동	12	1	3	5	3	1	2	3	2	-
종 업 원	6	1	1	2	1	2	2	3	1	1
농 업	-	-	-	-	-	-	-	1	-	-
상 업	8	3	1	2	2	1	1	3	1	-
기 타	36	26	12	22	24	28	19	9	7	3

표 5-47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 집행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2	31	17	31	30	32	24	19	11	4
1년 미만	7	3	3	2	-	3	1	-	1	1
1년 이상~2년 미만	7	4	7	5	3	2	2	2	1	-
2년 이상~3년 미만	10	7	1	4	3	1	3	1	1	1
3년 이상~4년 미만	22	7	1	2	6	5	1	2	-	1
4년 이상	16	10	5	18	18	21	17	14	8	1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

표 5-48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 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살 인	343	338	328	336	321	310	287	285	281	274
상해(폭행)치사	34	38	30	30	28	22	22	22	20	20
폭 력	137	156	149	140	171	141	139	148	156	144
절 도	60	59	58	62	58	51	41	40	44	41
방 화	75	80	76	74	64	49	44	44	45	49
강 도	52	48	48	44	44	31	25	26	21	24
성 폭 력	272	242	208	184	184	144	133	118	108	107
기 타	120	135	141	142	146	115	107	108	122	144

표 5-49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초범	728	721	671	657	663	577	537	537	544	522
2범	133	129	126	132	135	97	84	74	73	81
3범	61	65	57	60	61	57	51	56	51	55
4범	45	35	38	37	35	31	26	22	21	25
5범 이상	126	146	146	126	122	101	100	102	108	120

표 5-50 병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병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조현병	507	519	528	543	575	509	471	467	477	483
지적장애	97	93	84	77	84	62	56	50	51	54
양극성·우울장애	85	84	71	76	79	68	63	76	79	71
인격장애	27	27	23	13	10	5	5	9	9	6
뇌전증	12	10	10	9	10	6	4	4	3	2
약물중독	130	117	118	98	80	64	65	60	57	62
기타	235	246	204	196	178	149	134	125	121	125

표 5-51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무학력등	44	73	70	54	53	47	40	36	49	76
초졸	139	189	163	153	153	125	109	98	92	82
중졸	202	186	173	156	161	141	134	142	132	127
고졸	475	478	475	499	378	321	368	365	368	357
대졸	233	170	157	150	271	229	147	150	156	161

표 5-52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노 동	85	94	93	81	89	73	63	53	43	39
종 업 원	53	46	40	30	33	26	25	21	17	17
농 업	27	27	31	28	25	21	19	17	17	13
상 업	40	22	17	4	3	1	1	3	4	4
무 직	695	693	658	664	692	599	551	554	573	587
기 타	193	214	199	205	174	143	139	143	143	143

표 5-53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집행기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798	791	797	803
1년 미만	283	220	195	210	193	108	121	149	141	160
1년 이상~2년 미만	181	230	167	136	153	147	85	94	117	115
2년 이상~3년 미만	133	156	178	123	112	126	116	76	78	94
3년 이상~4년 미만	115	103	116	144	103	81	102	96	65	63
4년 이상	381	387	382	399	455	401	374	376	396	371

표 5-54 학력 취득 및 직업훈련 수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78	208	193	81	176	215	259	237	223	234
검정고시등	소계	6	-	2	-	-	6	2	1	9	7
	초등	-	-	-	-	-	-	-	-	-	-
	중등	-	-	-	-	-	3	-	-	5	-
	고등	-	-	-	-	-	3	2	1	4	6
	독학사	6	-	2	-	-	-	-	-	-	1
직업훈련	소계	172	208	191	81	176	209	257	236	214	227
	PC정비	24	16	21	8	21	19	20	16	16	25
	정보기기	22	32	29	11	24	25	20	18	10	12
	제과제빵	13	48	45	26	38	32	45	51	29	39
	데코레이션	16	28	30	16	24	48	84	70	64	39
	바리스타	-	-	-	-	-	41	33	19	36	38
	정보화	45	48	45	20	59	25	33	40	33	50
	실내건축	-	-	-	-	10	19	22	22	26	24
	건축도장	27	20	10	-	-	-	-	-	-	-
	건축시공	25	16	11	-	-	-	-	-	-	-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표 5-55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9	53	31	22	34	16	8	9	6	3
가출소	53	43	23	11	15	15	7	8	4	3
가출소취소	6	10	8	11	19	1	1	1	2	-
집행면제	-	-	-	-	-	-	-	-	-	-

표 5-56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456	320	326	269	243	299	215	150	145	143
종 료	2	3	-	-	-	3	-	3	5	5
가 종 료	394	226	246	208	186	270	186	132	120	115
가종료취소	60	91	80	61	57	26	29	15	20	23

라. 보호감호 가출소

표 5-57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3	43	26	11	15	15	7	8	4	3
3년 미만	3	1	8	6	3	3	3	2	1	1
3년이상~4년 미만	6	6	6	-	3	4	-	3	1	-
4년이상~5년 미만	12	23	6	2	2	1	-	2	-	1
5년 이상	32	13	6	3	7	7	4	1	2	1

표 5-58 죄명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3	43	26	11	15	15	7	8	4	3
절 도	10	12	3	2	5	7	-	2	-	1
강 도	20	11	10	4	8	4	3	4	3	2
폭력행위등	4	1	-	1	-	-	-	-	-	-
성 폭 력	19	17	13	4	2	4	4	1	1	-
기 타	-	2	-	-	-	-	-	1	-	-

표 5-59 전과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3	43	26	11	15	15	7	8	4	3
초 범	4	2	-	-	1	2	-	-	-	-
2 ~ 3 범	9	8	-	4	2	-	1	-	1	2
4 ~ 5 범	14	13	6	1	6	3	-	2	-	-
6 ~ 7 범	17	14	10	5	3	3	4	1	1	1
8 ~ 9 범	5	3	4	-	2	5	2	3	1	-
10범 이상	4	3	6	1	1	2	-	2	1	-

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표 5-60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4	126
1년 미만	1	68	-	11	-	40	-	55	-	53	1	8	-	22	3	18	1	23	-	9
1년 이상 2년 미만	-	80	2	51	-	39	-	30	-	11	1	40	-	24	-	13	2	19	2	24
2년 이상 3년 미만	-	62	1	26	-	41	-	33	-	19	-	28	-	26	-	12	-	10	1	15
3년 이상	1	183	-	138	-	132	-	117	-	105	-	187	-	118	-	94	-	70	1	78

표 5-61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4	126
살 인	-	77	-	48	-	35	-	23	-	48	-	43	-	47	-	22	-	22	1	30
상해(폭행)치사	-	10	-	2	-	8	-	3	-	4	-	6	-	3	-	3	-	1	-	5
폭력행위 등	-	78	2	26	-	38	-	45	-	17	-	55	-	26	3	26	-	27	1	33
강 간	1	50	-	56	-	54	-	50	-	23	-	46	-	26	-	24	1	28	1	16
강 도	1	17	-	12	-	7	-	9	-	6	-	15	-	7	-	3	1	2	-	1
절 도	-	26	-	16	-	19	-	17	-	15	-	17	-	16	-	12	-	8	-	7
방화, 실화	-	32	-	11	-	19	-	16	-	17	-	16	-	11	-	7	-	8	-	5
기 타	-	103	1	55	-	72	-	72	-	58	2	65	-	54	-	40	1	26	1	29

표 5-62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4	126
초범	-	209	-	124	-	131	-	116	-	87	-	138	-	99	1	65	1	63	3	89
2범	1	43	3	25	-	29	-	25	-	26	-	48	-	17	2	17	-	15	1	9
3범	1	31	-	13	-	20	-	17	-	13	-	18	-	14	-	9	-	14		5
4범	-	10	-	15	-	12	-	9	-	14	1	10	-	16	-	6	-	7		3
5범 이상	-	100	-	49	-	60	-	68	-	48	1	49	-	44	-	40	2	23		20

표 5-63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4	126
조현병	1	139	2	80	-	84	-	63	-	64	1	121	-	90	2	61	-	47	2	56
정신지체	-	27	-	19	-	16	-	16	-	17	-	23	-	13	-	8	-	9	-	7
양극성장애	-	24	-	14	-	23	-	16	-	10	-	21	-	20	1	8	-	10	2	15
성격(인격)장애	1	8	1	1	-	5	-	8	-	5	-	5	-	3	-	5	-	1	-	11
뇌전증	-	4	-	2	-	-	-	1	-	1	-	4	-	2	-	1	-	2	-	1
약물중독	-	138	-	37	-	35	-	41	-	41	-	20	-	38	-	20	-	19	-	23
기타	-	53	-	73	-	89	-	90	-	50	1	69	-	24	-	34	3	34	-	13

2. 보호관찰

표 5-64 2025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단위 : 명)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수 원
계	15,148	3,668	2,246	2,207	2,186	2,010	2,831
가 석 방 (보 호 관 찰)	11,519	2,916	1,811	1,465	1,658	1,600	2,069
임 시 퇴 원	1,585	228	128	213	341	170	505
기 타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임시해제)	2,044	524	307	529	187	240	257

표 5-65 2025년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대상 \ 구분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접 수		
계	224,835	80,360	144,475	147,675	77,160
선 고 유 예	36	15	21	17	19
집 행 유 예	120,500	45,268	75,232	77,989	42,511
보 호 처 분	32,196	13,390	18,806	19,070	13,126
가 석 방	17,152	4,429	12,723	11,940	5,212
임 시 퇴 원	1,443	520	923	934	509
가 출 소	27	18	9	12	15
가 종 료	555	401	154	226	329
치 료 명 령	1,033	646	387	365	668
치료감호기간만료	32	17	15	16	16
가 정 보 호	8,728	2,621	6,107	6,398	2,330
성 매 매	222	49	173	173	49
아 동 학 대	3,289	1,105	2,184	2,391	898
기 소 유 예	9,726	2,860	6,866	7,218	2,508
성구매자 교육	2,524	721	1,803	1,880	644
전 자 장 치 부 착	4,952	3,513	1,439	1,226	3,726
벌 금 미 납	6,360	1,320	5,040	5,434	926
이 수 명 령	16,060	3,467	12,593	12,386	3,674

표 5-66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153,723	153,745
형법	소계	76,366	81,808	76,817	78,079	85,589	79,301	75,611	71,926	72,686	71,306
	선고유예	23	16	22	11	17	23	8	11	13	14
	집행유예	70,670	74,996	69,647	69,627	77,744	69,625	64,498	61,893	61,055	58,557
	가석방	5,673	6,796	7,148	8,441	7,828	9,653	11,105	10,022	11,618	12,735
소년법	소계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19,435	19,729	22,756	24,877	25,810
	단기보호관찰	11,240	11,815	11,319	9,281	9,419	7,870	8,494	9,415	9,349	9,377
	장기보호관찰	9,538	9,594	9,224	8,619	8,437	7,381	7,646	8,550	9,537	9,540
	단독명령	2,707	2,910	3,133	2,954	3,803	3,240	2,666	3,797	4,626	5,339
	임시퇴원	1,233	1,192	1,296	1,058	962	944	923	994	1,365	1,554
치료감호법	소계	690	986	1,097	1,118	885	882	690	627	611	608
	가출소	87	78	64	34	24	24	17	17	8	9
	가종료	603	434	435	308	227	372	282	214	179	154
	치료명령	-	474	581	745	620	468	379	391	416	430
	치료감호기간만료	-	-	17	31	14	18	12	5	8	15
성폭력처벌법	소계	5,533	10,957	12,230	11,962	12,414	12,810	14,328	14,318	14,153	13,347
	선고유예	11	16	6	4	2	1	2	1	6	8
	이수명령	-	5,074	6,303	6,044	6,231	6,361	7,279	7,185	6,901	6,481
	집행유예	5,522	5,867	5,921	5,914	6,181	6,448	7,047	7,132	7,246	6,858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8,608	9,126	7,854	9,384	7,940	6,782	8,529	7,942	8,053	6,835
	보호처분	8,608	9,126	7,854	9,384	7,940	6,771	8,363	7,621	7,379	6,110
	이수명령	-	-	-	-	-	-	106	249	301	180
	집행유예	-	-	-	-	-	11	60	72	373	545
성매매처벌법	소계	2,274	2,835	1,274	879	840	561	463	361	343	354
	보호처분	1,050	1,443	521	243	204	133	137	137	132	173
	집행유예	1,224	1,392	753	636	636	428	326	224	211	181
기소유예	소계	14,859	13,126	10,292	11,082	8,378	7,849	10,323	8,969	7,409	10,137
	1급	103	96	148	106	52	49	48	54	61	36
	2급	3,810	3,553	2,165	1,835	1,123	908	847	923	881	753
	선도교육	10,946	9,477	7,979	9,141	7,203	6,892	9,428	7,992	6,467	9,348
성구매자교육	소계	11,763	5,817	3,239	2,457	1,430	1,468	2,160	1,736	1,723	1,803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870	795	891	793	822	822	841	832	783	834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	444	414	458	529	603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8,530	8,282	7,624	7,413	9,097	7,207	5,830	6,589	5,890	5,040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4,444	1,609	1,491	1,270	1,242	2,214	2,312	2,497	2,974	2,921
	선고유예	1	1	-	-	-	-	-	-	-	-
	이수명령	3,219	257	272	251	258	390	274	248	292	296
	집행유예	1,224	1,351	1,219	1,019	984	1,824	2,038	2,249	2,682	2,625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981	1508	1,501	1,705	2,052	2,657	3,876	3,465	3,799	3,379
	이수명령	20	31	-	103	158	-	337	462	564	600
	보호처분	839	1235	1,256	1,364	1,591	2,174	2,958	2,408	2,657	2,184
	집행유예	122	242	245	238	303	483	581	595	578	595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	-	-	1	26	51	48	35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	105	1,947	2,828	4,268	4,054
스토킹처벌법	소계	-	-	-	-	-	-	1,182	3,018	5,571	6,679
동물보호법	소계	-	-	-	-	-	-	-	5	6	14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표 5-67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단위 : 건)

기관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153,723	150,834
서울	8,645	8,438	7,153	7,113	6,959	6,597	6,750	6,525	6,840	6,670
서울동부	3,964	3,718	3,397	3,579	3,732	3,526	3,697	3,755	3,790	3,623
서울남부	5,436	5,880	5,361	5,455	5,170	5,012	5,115	4,977	5,113	5,551
서울북부	3,152	3,014	3,328	4,076	4,019	3,570	3,457	3,672	3,387	3,417
서울서부	3,330	3,247	3,132	3,195	3,235	2,963	2,895	2,970	2,767	2,786
의정부	6,561	6,175	6,050	5,850	6,531	5,825	4,915	3,730	3,779	3,837
인천	7,633	7,895	6,856	6,295	5,975	6,093	6,064	7,112	6,800	7,497
수원	8,784	8,857	7,992	7,992	8,589	8,009	8,509	8,071	9,047	8,827
춘천	1,478	1,717	1,596	1,447	1,374	1,291	1,401	1,272	1,210	1,204
대전	4,895	5,753	5,804	5,541	6,251	5,608	5,353	5,000	5,957	5,718
청주	2,654	3,155	3,346	3,270	2,897	3,258	3,517	3,386	3,299	3,238
대구	6,351	5,843	5,204	5,637	5,700	5,488	5,695	5,332	5,775	5,984
부산	7,460	6,634	4,479	3,424	3,478	3,219	3,384	3,448	3,601	3,599
울산	3,178	4,964	4,097	4,738	5,508	4,224	4,305	4,598	4,346	4,167
창원	4,843	4,961	3,976	4,650	5,825	5,375	5,895	5,586	5,165	4,652
광주	5,355	7,899	6,872	5,608	5,982	4,692	4,871	5,399	6,207	5,663
전주	2,888	3,191	3,005	2,667	3,153	2,731	2,371	2,779	2,903	2,780
제주	2,493	3,103	2,839	2,851	2,722	2,040	2,771	2,577	2,655	1,918
고양	4,401	4,155	3,539	3,522	4,247	3,834	4,241	4,268	4,290	4,554
남양주	-	-	-	-	-	-	2,878	2,692	2,655	2,948
인천서부	3,057	3,417	2,850	2,689	2,510	2,639	2,725	3,129	3,070	3,330
성남	4,440	4,676	4,026	3,710	3,672	3,887	3,889	3,659	3,799	3,907
부천	3,548	4,351	4,172	4,117	3,656	3,470	3,596	3,884	3,551	3,487
여주	1,422	1,588	1,321	1,255	1,414	1,412	1,428	1,327	1,266	1,447
안산	6,515	5,177	4,856	4,493	4,203	4,336	5,112	4,437	4,802	4,373
평택	3,063	2,580	2,128	2,664	2,897	2,782	3,088	2,986	3,281	3,404
안양	2,606	2,378	2,305	2,308	2,121	2,143	1,914	1,819	2,471	2,182
강릉	1,366	1,355	1,209	1,401	1,192	1,307	1,204	833	910	1,357
원주	1,780	1,561	1,499	1,530	1,432	1,207	1,607	1,370	1,328	1,158
속초	630	396	497	505	560	625	476	780	557	492

기관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월	487	489	433	597	620	433	522	426	521	375
홍성	992	900	943	754	959	792	947	985	1,026	1,000
공주	547	505	478	387	466	531	433	371	445	472
논산	891	890	657	805	717	548	539	535	785	712
서산	1,079	988	926	1,082	1,443	1,449	1,408	1,603	1,710	1,794
천안	3,304	3,059	2,784	3,173	3,153	2,824	2,801	3,393	3,935	3,732
충주	1,182	1,130	915	886	962	744	883	1,081	1,236	1,135
제천	629	623	506	547	519	493	466	456	494	465
영동	251	218	243	283	294	308	304	242	178	292
대구서부	3,790	3,011	3,023	3,044	2,868	3,260	3,399	3,126	3,252	2,946
안동	1,296	958	1031	839	773	737	875	997	819	779
경주	789	724	621	587	786	837	734	735	882	835
포항	2,178	2,317	1,754	1,706	2,000	1,535	1,655	1,742	1,875	1,866
구미	1,974	1,978	1,913	2,199	2,550	1,903	1,798	1,691	1,997	1,914
상주	612	657	470	643	579	517	501	448	441	435
영덕	388	336	298	332	521	400	399	363	378	255
부산동부	4,196	3,708	3,436	3,359	3,269	3,073	3,535	3,423	3,311	3,125
부산서부	-	-	3,580	2,883	3,160	2,470	2,739	2,851	2,949	2,951
진주	1,478	1,659	1,595	1,562	2,309	1,964	1,837	1,981	1,639	1,638
통영	2,015	2,025	1,627	1,720	1,305	1,541	1,502	2,035	2,232	1,915
밀양	544	464	473	470	592	503	462	420	481	486
거창	503	448	440	472	509	361	327	375	481	412
목포	1,932	2,366	1,772	1,311	1,294	1,868	1,537	1,530	1,398	1,436
순천	2,955	3,319	2,848	2,831	3,014	2,645	2,173	2,505	2,869	2,785
해남	788	866	851	692	581	711	672	622	735	647
군산	1,778	1,469	1,612	2,016	1,864	1,642	1,604	1,979	1,978	1,777
정읍	782	851	839	893	772	776	753	715	658	562
남원	348	324	325	399	427	510	333	375	397	323

※ 부산서부지소 : '18. 4. 9, 남양주지소 : '22. 7. 25. 개청

표 5-68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260,933	265,792	244,451	236,642	235,112
소년	계			38,546	36,338	38,856	42,129	43,344
	형법	소계		746	761	711	656	667
		선고유예		1	-	1	4	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71	669	460	557	566
			단독명령	64	74	228	56	53
		가석방		10	18	22	39	42
	소년법	소계		36,027	33,639	36,395	40,016	41,201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4,508	13,855	15,193	15,686	15,406
			장기보호관찰	14,756	14,338	14,969	16,204	16,585
			단독명령	5,272	4,003	4,729	6,130	6,853
		임시퇴원		1,491	1,443	1,504	1,996	2,357
	치료감호법	소계		4	1	1	2	3
	성폭력처벌법	소계		126	142	137	125	117
		선고유예		-	1	1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6	79	81	74	79
			단독명령	50	62	55	51	38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2	99	86	74	93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5	63	16	53	69
			단독명령	27	36	70	21	24
	성매매처벌법	소계		2	2	-	-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2	2	-	-	-
			단독명령	-	-	-	-	-
		소계		6	3	1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	3	1	-	-
			단독명령	-	-	-	-	-
	기소유예	소계		1,294	1,384	1,264	979	1,033
	성구매자교육	소계		3	3	2	5	3
	벌금미납	소계		22	23	31	23	23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252	279	219	231	204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48	-	117	121	107
			단독명령	100	153	102	108	97
		이수명령		4	126	1	2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	-	-	1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	-	1	-
			단독명령	1	-	-	-	-
		소계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	-	-
		이수명령		-	-	-	-	-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1	2	3	-	-
	마약류관리법	소계		-	-	3	14	10
	스토킹법	소계		-	-	2	3	8
성인	계			222,387	229,454	205,595	194,513	191,768
	형법	소계		152,800	150,134	125,305	113,734	109,621
		선고유예		38	24	16	19	2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5,154	60,049	43,275	47,963	44,299
			단독명령	76,082	76,028	68,448	50,694	48,167
		가석방		11,526	14,033	13,566	15,058	17,134
	치료감호법	소계		2,555	2,213	1,918	1,818	1,693
		가출소		64	56	51	37	27
		가종료		934	893	779	708	555
		치료명령		1,496	1,212	1,053	1,043	1,079
		치료감호기간만료		61	52	35	30	32
	성폭력처벌법	소계		20,126	22,648	11,926	20,245	19,036
		선고유예		2	1	1	7	1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761	4,007	3,869	3,951	3,710
			단독명령	7,974	9,187	8,056	7,301	6,936
		이수명령		8,389	9,453	9,527	8,986	8,377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0,091	11,366	11,258	10,309	8,62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5,859	6,835	2,771	6,228	5,210
			단독명령	4,232	4,531	8,487	4,081	3,419
		소계		11	70	130	399	31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1	70	101	279	288
			단독명령	-	-	29	120	30
		이수명령		8	110	300	437	662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매매처벌법	소 계		241	212	196	171	220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38	82	26	86	64
			단독명령	103	130	170	85	156
		소 계		1,032	841	557	395	309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97	497	276	216	152
			단독명령	435	344	281	179	157
	기소유예	소 계		10,932	13,918	11,901	9,529	14,048
	성구매자교육	소 계		2,371	3,384	3,006	2,331	3,384
	전자장치부착법	소 계		3,467	3,635	3,728	3,788	3,925
	형사소송법(보석)	소 계		537	637	706	843	1,025
	벌금미납	소 계		11,069	7,768	8,186	7,445	7,768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3,037	3,706	3,427	4,055	4,271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04	869	998	1,262	1,445
			단독명령	1,830	2,439	2,429	2,415	2,441
		이수명령		503	398	346	378	385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2,996	4,183	3,819	3,742	3,28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937	2,617	692	2,352	2,044
			단독명령	1,059	1,566	3,127	1,390	1,245
		소 계		712	955	982	981	1,00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49	487	509	516	538
			단독명령	363	468	473	465	465
		이수명령		296	429	574	701	783
	산업안전보건법	소 계		1	27	63	74	54
	마약류관리법	소 계		105	2,036	4,178	6,591	7,085
	스토킹처벌법	소 계		-	1,182	3,557	6,917	4,645
	동물보호법	소 계		-	-	5	8	5

표 5-6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260,933	265,792	244,451	236,642	242,771
보호관찰	계			93,654	94,375	93,366	96,668	98,220
	형법	소계		53,340	52,415	48,743	48,743	49,047
		선고유예		39	24	17	23	27
		집행유예		41,765	38,340	35,138	33,623	31,844
		가석방		11,536	14,051	13,588	15,097	17,176
	소년법	소계		22,505	22,114	23,361	25,174	25,993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9,960	9,718	10,479	10,735	10,574
			장기보호관찰	11,054	10,953	11,378	12,443	13,062
		임시퇴원		1,491	1,443	1,504	1,996	2,357
	치료감호법	소계		2,490	2,173	1,890	1,794	1,649
		가출소		64	56	51	37	27
		가종료		934	893	779	708	555
		치료명령		1,431	1,172	1,025	1,019	1,035
		치료감호기간만료		61	52	35	30	32
	성폭력처벌법	소계		2,254	2,263	2,342	2,474	2,421
		선고유예		2	2	2	7	13
		집행유예		2,252	2,261	2,340	2,467	2,408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4,663	5,594	5,919	5,198	4,483
		보호처분		4,652	5,524	5,789	5,007	4,213
		집행유예		11	70	130	191	270
	성매매처벌법	소계		524	403	278	235	180
		보호처분		105	64	37	55	50
		집행유예		419	339	241	180	130
	기소유예	소계		1,502	1,357	1,400	1,428	1,261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3,467	3,635	3,728	3,788	3,925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538	639	709	843	1,025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498	571	663	809	943
		선고유예		-	-	-	-	1
		집행유예		498	571	663	809	942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835	2,497	2,389	2,351	2,104
		보호처분		1,623	2,221	2,064	2,014	1,755
		집행유예		212	276	325	337	349
	마약류관리법	소계		38	597	1,408	2,614	3,327
	스토킹	소계		-	117	535	1,214	1,510
	동물보호법	소계		-	-	1	3	5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봉사명령	계		65,693	62,115	53,702	48,804	52,894
	형법	소계	54,778	51,798	43,272	37,858	35,966
		보호관찰부	14,079	13,158	10,820	9,003	7,637
		단독명령	40,699	38,640	32,452	28,855	28,329
	소년법	소계	6,301	5,137	5,441	6,109	6,037
		단기보호관찰	1,914	1,565	1,684	1,872	1,926
		장기보호관찰	2,117	1,898	1,947	2,042	1,813
		단독명령	2,270	1,674	1,810	2,195	2,298
	치료감호법		69	41	29	26	47
	성폭력처벌법	소계	2,442	2,795	2,404	2,088	1,903
		보호관찰부	468	541	527	422	381
		단독명령	1,974	2,254	1,877	1,666	1,522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26	571	620	596	554
		보호관찰부	222	177	185	197	222
		단독명령	404	394	435	399	332
	성매매처벌법	소계	492	414	302	181	140
		보호관찰부	164	149	84	38	23
		단독명령	328	265	218	143	117
	기소유예		225	141	64	64	16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32	732	759	778	704
		보호관찰부	98	126	141	158	179
		단독명령	434	606	618	620	525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217	254	263	216	217
		보호관찰부	59	60	70	52	69
		단독명령	158	194	193	164	148
	마약류관리법	소계	11	213	402	609	613
	스토킹	소계	-	19	143	276	333
	동물보호법	소계	-	-	3	3	4
수강명령	계		68,422	72,805	61,040	57,127	54,396
	형법	소계	45,428	46,685	34,001	27,789	25,275
		보호관찰부	9,981	9,223	7,087	5,894	5,384
		단독명령	35,447	37,462	26,914	21,895	19,891
	소년법	소계	7,221	6,388	7,593	8,733	9,171
		단기보호관찰	2,634	2,572	3,030	3,079	2,906
		장기보호관찰	1,585	1,487	1,644	1,719	1,710
		단독명령	3,002	2,329	2,919	3,935	4,555
	성폭력처벌법	소계	7,167	8,278	7,317	6,822	6,435
		보호관찰부	1,117	1,284	1,171	1,136	999
		단독명령	6,050	6,994	6,146	5,686	5,436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4,875	5,370	4,934	4,988	4,146
		보호관찰부	1,020	1,197	1,088	1,165	1,005
		단독명령	3,855	4,173	3,846	3,823	3,141
	성매매처벌법	소 계	265	241	174	150	209
		보호관찰부	55	32	23	29	13
		단독명령	210	209	151	121	196
	기소유예		-	-	-	-	-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1,752	2,284	2,224	2,319	2,445
		보호관찰부	256	325	332	416	432
		단독명령	1,496	1,959	1,892	1,903	2,013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1,657	2,387	2,149	2,157	1,977
		보호관찰부	392	547	421	466	411
		단독명령	1,265	1,840	1,728	1,691	1,566
	산업안전보건법	소 계	1	23	47	66	50
	마약류관리법	소 계	56	992	1,852	2,769	2,932
	스토킹	소 계	-	157	748	1,332	1,578
	동물보호법	소 계	-	-	1	2	6
성구매자교육			2,374	3,384	3,008	2,336	2,524
벌금미납사회봉사			11,091	7,791	8,217	7,468	6,360
이수명령			9,200	11,518	13,417	15,223	16,076
기소유예			10,499	13,804	11,701	9,016	12,301

표 5-70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21	527	497	-	-	3	27
2022	603	515	-	-	4	84
2023	447	420	-	-	-	27
2024	859	846	-	1	3	9
2025	886	852	-	-	2	32

표 5-71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21	807	7	705	27,472	541	909	77	20	34	36	123
2022	752	8	668	28,427	510	885	64	64	260	39	147
2023	901	10	852	30,590	560	1,217	84	44	116	26	169
2024	1,134	7	1,087	29,259	573	1,395	155	78	81	37	178
2025	1,188	6	1,151	28,811	546	1,272	198	107	87	47	167

표 5-72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 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21	7	90	1,296	12	1,284	805	572	79	14	9	708	705	3	129	465	-	80
2022	8	53	1,246	8	1,238	737	494	65	12	7	658	656	4	126	401	1	80
2023	10	82	1,359	21	1,338	901	453	43	20	7	852	852	3	148	551	3	91
2024	7	76	1,602	21	1,581	1,132	432	27	10	10	1.088	1,087	3	144	686	1	169
2025	6	90	1,578	17	1,561	1,188	403	34	8	8	1,152	1,151	3	150	759	1	216

표 5-73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21	65,693	36,995	31,831	830	3,283	1,051
2022	62,115	44,152	38,720	918	3,358	1,156
2023	53,702	42,258	38,303	760	2,330	865
2024	48,804	39,879	36,681	707	1,882	609
2025	46,534	38,096	35,467	492	1,658	47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표 5-74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1	65,693	35,954	54,778	29,349	6,301	3,774	69	16	2,442	1,406	626	453
2022	62,115	33,513	51,798	26,924	5,137	3,496	41	14	2,795	1,498	571	419
2023	53,702	35,843	43,272	28,264	5,441	4,219	29	15	2,404	1,487	620	508
2024	48,804	37,335	37,858	28,795	6,109	4,795	26	17	2,088	1,558	596	517
2025	46,534	37,653	35,966	29,077	6,037	4,925	47	42	1,903	1,528	554	475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1	492	245	225	187	532	360	217	153	11	11	-	-	-	-
2022	414	199	141	106	732	435	254	198	213	205	19	19	-	-
2023	302	184	64	49	759	501	263	203	402	281	143	129	3	3
2024	181	143	64	56	778	591	216	178	609	453	276	229	3	3
2025	140	119	16	14	704	586	217	181	613	436	333	267	4	3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표 5-75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2022	62,115	17,730	44,385	5,570	3,675	1,895	56,545	14,055	42,490
2023	53,702	15,497	38,205	5,754	3,820	1,934	47,948	11,677	36,271
2024	48,804	14,714	34,090	6,413	4,077	2,336	42,391	10,637	31,754
2025	46,534	13,247	33,287	6,269	3,884	2,385	40,265	9,363	30,902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표 5-76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21	32,661	10,690	21,971	135	10,031	2,906	7,444	1,455
2022	39,638	10,453	29,185	19	14,095	3,566	9,996	1,509
2023	39,060	7,606	31,454	4	18,260	1,256	11,917	17
2024	37,386	4,850	32,536	8	21,095	1,141	10,248	44
2025	35,955	3,337	32,618	1	22,262	1,336	9,014	5

표 5-77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21	68,422	37,351	33,012	326	2,578	1,435
2022	72,805	51,927	46,649	318	3,231	1,729
2023	61,040	45,394	41,340	431	2,158	1,465
2024	57,127	42,145	38,381	472	2,003	1,289
2025	54,411	41,721	38,357	424	1,740	1,200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표 5-78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1	68,422	40,453	45,428	25,836	7,221	4,412	7,167	4,311	4,875	3,152
2022	72,805	41,857	46,685	24,570	6,388	4,334	8,278	4,699	5,370	3,871
2023	61,040	40,305	34,001	21,234	7,593	5,665	7,317	4,805	4,934	3,493
2024	57,127	41,537	27,789	20,251	8,733	6,048	6,822	4,798	4,988	3,851
2025	54,411	39,402	25,275	18,469	9,171	6,774	6,451	4,555	4,317	3,245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1	265	125	1,752	1,283	1,657	1,277	1	1	56	56	-	-	-	-
2022	241	128	2,284	1,374	2,387	1,761	23	22	992	941	157	157	-	-
2023	174	90	2,224	1,483	2,149	1,552	47	37	1,852	1,276	748	669	1	1
2024	150	111	2,319	1,737	2,157	1,670	66	43	2,769	1,956	1.332	1,071	2	1
2025	209	168	2,445	1,683	1,977	1,474	50	29	2,932	1,827	1,578	1,172	6	6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표 5-79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21	68,422	17,097	51,325	7,488	4,333	3,155	60,934	12,764	48,170
2022	72,805	16,667	56,138	6,705	4,185	2,520	66,100	12,482	53,618
2023	61,040	14,796	46,244	7,840	4,774	3,066	53,200	10,022	43,178
2024	57,127	18,073	39,054	8,980	4.905	4,075	48,147	13,168	34,979
2025	54,411	17,427	36,984	9,409	4,716	4,693	45,002	12,711	32,291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표 5-80 수강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21	33,338	31,483	1,855	4	1,035	50	125	201	440
2022	46,967	41,232	5,735	17	4,258	20	175	790	475
2023	41,771	41,115	656	13	13	1	154	207	268
2024	38,853	37,952	901	85	45	11	131	404	225
2025	38,781	38,131	650	163	1	2	62	346	76

표 5-81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환경조사	소 계	1,555	1,920	1,496	1,442	1,365	1,185	1,117	1,511	1,858	2,024
	소 년 원	1,419	1,693	1,373	1,343	1,297	1,084	1,032	1,397	1,764	1,947
	교 도 소	60	167	104	93	62	100	84	113	94	77
	법무병원	76	60	19	6	6	1	1	1	-	-
환 경 개 선		-	-	1	6	1	4	9	3	8	-

표 5-82 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판 결 전 조 사	1,901	2,003	2,053	1,797	1,596	1,442	1,075	1,209	1,147	1,122
결 정 전 조 사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4	18,039	16,608	14,693
검사결정전조사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682	517
청 구 전 조 사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13	1,162	983
소급청구전조사	79	86	39	52	37	33	18	12	20	5
사 실 조 회	-	-	-	-	-	176	198	221	226	146

표 5-83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21	1,743	1,273	829	444	707	539	442	97	1,036	734	387	347
2022	1,606	1,155	748	407	618	485	398	87	988	670	350	320
2023	2,646	1,892	1,315	577	1,671	1,264	914	350	975	628	401	227
2024	1,800	1,402	1,043	359	833	740	651	89	967	662	392	270
2025	1,794	1,460	1,118	342	907	854	769	85	887	606	349	257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표 5-84 보호관찰 사안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 수	7,895	8,821	9,434	11,571	11,973	13,077	13,872	14,182	15,011	15,977

표 5-85 보호관찰 불요결정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 수	7,221	8,248	8,575	8,268	8,271	9,395	10,292	9,515	10,977	12,120
불 요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456	520	601

3. 갱생 보호

표 5-86 갱생보호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77,473	1,520	5,119	8,579	7	566	14,122	32,602	36,242	12,993	16,879	48,844

표 5-8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68,199	1,120	4,953	8,468	1	563	13,917	32,110	33,248	10,279	16,126	47,414

표 5-88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9,274	400	166	111	6	3	205	492	2,994	2,714	753	1,430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표 5-89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입·출원	성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원	계	남	2,763	2,974	2,770	2,392	2,036	1,777	1,766	2,190	2,536	2,634
		여	476	510	539	565	504	451	449	556	780	850
	전년도 이월	남	928	858	924	695	693	707	533	519	674	706
		여	215	176	186	185	210	160	161	135	212	246
	송치	남	1,754	2,022	1,729	1,607	1,279	1,017	1,191	1,614	1,755	1,799
		여	241	308	333	349	272	264	263	391	509	537
	임시퇴원 취소	남	81	94	117	90	64	53	42	57	107	129
		여	20	26	20	31	22	27	25	30	59	67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1,900	2,029	2,064	1,700	1,330	1,244	1,272	1,516	1,831	1,899
		여	316	320	352	358	345	280	316	356	542	605
	퇴원	남	1,045	1,135	1,049	877	555	462	540	698	771	755
		여	147	194	210	183	134	99	110	144	195	211
	임시퇴원	남	788	832	946	747	687	692	632	713	946	1,050
		여	158	114	123	137	170	143	178	178	311	353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41	36	50	58	56	64	47	72	90	72
		여	10	8	18	35	37	37	28	27	34	39
	사망	남	-	-	-	-	1	-	-	-	-	
		여	-	-	-	-	-	-	-	-	-	
	이탈	남	-	-	-	-	-	-	-	-	-	
		여	-	-	-	-	-	-	-	-	-	
	기타	남	26	26	19	18	31	26	53	33	24	22
		여	1	4	1	3	4	1	0	7	2	2

※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표 5-90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남	932	981	869	738	737	627	552	635	766	807
	여	199	185	209	208	190	155	148	171	250	277
서 울	남	234	246	204	172	206	170	135	99	140	177
	여	-	-	-	-	-	-	-	-	-	-
부 산	남	138	124	111	86	86	14	9	74	108	115
	여	1	1	-	-	-	-	-	-	-	1
대 구	남	141	137	114	94	86	89	87	91	109	113
	여	-	-	-	-	-	-	-	-	-	-
광 주	남	104	134	107	95	104	99	82	97	113	117
	여	-	-	-	-	-	-	-	-	-	1
전 주	남	92	81	91	102	103	97	97	117	129	114
	여	-	-	-	-	-	-	-	-	-	-
대 전	남	92	109	106	64	48	47	43	46	47	45
	여	6	12	15	20	21	19	18	17	17	32
청 주	남	-	-	-	-	-	-	-	-	-	-
	여	45	45	85	85	66	58	59	71	97	116
안 양	남	-	-	-	-	-	-	-	-	-	-
	여	147	127	109	103	103	78	71	83	136	127
춘 천	남	89	107	103	92	79	86	74	87	96	100
	여	-	-	-	-	-	-	-	-	-	-
제 주	남	42	43	33	33	25	25	25	24	24	26
	여	-	-	-	-	-	-	-	-	-	-

표 5-91 기관별 신수용 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남	1,835	2,116	1,846	1,697	1,343	1,070	1,232	1,671	1,862	1,928
	여	261	334	353	380	294	291	288	421	568	604
서 울	남	442	524	482	474	453	297	281	436	608	570
	여	-	-	-	-	-	-	-	-	-	-
부 산	남	213	265	208	198	158	79	95	191	211	249
	여	54	48	38	43	51	39	41	60	74	86
대 구	남	176	162	78	73	75	142	137	91	107	141
	여	16	13	5	6	1	-	1	1	4	11
광 주	남	90	137	139	147	131	114	137	167	137	162
	여	9	28	20	39	29	22	29	37	50	45
전 주	남	-	5	3	385	350	284	401	571	585	575
	여	-	-	-	-	-	-	-	-	-	-
대 전	남	849	943	876	362	152	118	104	151	161	166
	여	15	21	8	30	11	26	13	9	38	147
청 주	남	-	-	-	-	-	-	-	-	-	-
	여	71	102	31	105	82	77	103	132	151	90
안 양	남	-	-	-	-	-	-	-	-	-	-
	여	87	114	233	150	116	123	85	174	249	221
춘 천	남	38	39	30	41	4	12	44	34	35	42
	여	3	1	9	3	-	1	10	3	-	-
제 주	남	27	41	30	17	20	24	33	30	18	23
	여	6	7	9	4	4	3	6	5	2	4

표 5-92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138	2,275	2,328	1,943	1,546	1,396	1,494	1,733	2,224	2,369
1월 미만	773	902	830	710	405	332	498	660	695	713
3월 미만	62	47	64	47	29	30	26	32	87	101
6월 미만	676	777	773	499	465	424	515	617	913	937
6월 이상	126	115	131	240	203	163	128	130	167	118
7월 이상	13	8	12	5	4	2	6	4	1	3
8월 이상	13	20	8	11	7	7	5	0	4	4
9월 이상	14	16	25	18	11	10	2	5	5	6
10월 이상	11	12	18	9	10	9	7	3	11	16
11월 이상	12	8	20	17	18	17	12	15	44	69
12월 이상	47	19	49	64	70	48	54	68	118	162
13월 이상	71	46	85	94	81	60	46	40	64	89
14월 이상	83	90	99	78	75	108	70	48	43	47
15월 이상	75	71	87	51	73	60	48	38	28	33
16월 이상	73	59	53	32	33	56	32	21	19	30
17월 이상	37	49	37	21	18	32	13	26	12	13
18월 이상	21	23	24	15	12	11	6	11	9	9
19월 이상	11	10	7	13	7	9	14	8	3	8
20월 이상	20	3	6	19	25	18	12	7	1	11
평균수용기간(월)	6.56	5.8	6.36	5.63	6.73	7.2	5.7	4.96	4.93	5.33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표 5-93 처우과정 분류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2,092	2,430	2,532
7호	소계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114	140
	기타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114	140
8호	소계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691	693
	기타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691	693
9호	소계	713	857	741	716	622	584	619	902	1,125	1,087
	교과	161	95	87	97	127	123	113	189	334	297
	직업	72	243	219	236	180	106	99	36	25	9
	특성화	136	132	74	78	64	133	135	126	129	147
	기타	344	387	361	305	251	222	272	551	637	634
10호	소계	538	581	516	538	471	328	323	422	500	612
	교과	31	45	34	64	69	56	62	88	135	199
	직업	332	374	314	349	288	147	150	139	110	92
	특성화	12	8	1	-	-	-	-	-	-	-
	기타	163	154	167	125	114	125	111	195	255	321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표 5-94 교과교육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4	187	208	253	300	329	367	417	719	784
초등학교	-	-	-	-	-	-	1	1	5	-
중 학 교	25	26	18	95	90	79	91	128	292	271
고등학교	129	161	190	158	210	250	276	288	422	513

표 5-95 검정고시 합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76	617	447	420	409	303	253	285	310	285
초졸	-	-	-	-	-	-	2	2	-	1
중졸	152	141	76	65	45	39	22	38	45	35
고졸	524	476	371	355	364	264	231	245	265	249

표 5-96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직 업 훈 련	640	552	633	532	458	354	245	232	268	261

표 5-97 기능자격 취득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681	4,710	4,762	4,188	3,025	2,741	2,937	3,352	3,842	4,447
일 반 기 능	1,238	1,524	1,634	1,478	838	723	830	852	1,108	1,312
컴퓨터관련	1,415	1,524	1,341	1,181	793	608	821	1,218	1,361	1,726
외국어관련	-	-	-	-	-	-	-	-	-	-
기 타	1,028	1,662	1,787	1,529	1,394	1,410	1,286	1,282	1,373	1,409

표 5-98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5,556	-	1,466	70	4,020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2021	-	-	-	-	-	-	-	-
2022	32	-	-	14	18	-	-	-
2023	176	-	18	-	158	-	-	-
2024	226	-	53	-	173	-	-	-
2025	493	-	156	18	319	-	-	-

표 5-99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취 업 인 원	423	417	352	303	187	208	134	69	76	83

표 5-100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9	167	165	104	130	148	121	114	151	160
대 학 교	93	88	86	55	64	71	68	66	41	39
고등학교	66	79	79	49	66	77	53	48	110	121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표 5-101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원	계	남	4,778	4,931	4,745	4,055	3,534	3,028	3,315	3,651	3,807	3,891
		여	1,051	1,372	1,398	1,305	1,122	1,069	1,097	1,356	1,558	1,691
	이월인원	남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299	304
		여	73	61	102	98	83	45	70	78	91	140
	신수용인원	남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3,508	3,587
		여	978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1,467	1,551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4,446	4,593	4,439	3,778	3,358	2,855	3,051	3,352	3,582	3,884
		여	992	1,270	1,300	1,223	1,077	999	1,019	1,265	1,502	1,609
	보호자위탁	남	16	14	19	11	9	3	8	21	10	11
		여	-	6	10	5	10	3	8	17	10	6
	보호시설위탁	남	430	456	438	454	481	467	417	463	483	594
		여	201	241	281	249	262	259	247	259	275	284
	소년원송치	남	1,507	1,689	1,455	1,227	1,128	806	869	1,101	1,244	1,355
		여	243	288	305	285	229	232	196	316	432	463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121	2,138	2,139	1,789	1,408	1,303	1,530	1,586	1,599	1,618
		여	461	630	591	589	462	417	484	572	648	703
	위탁변경	남	92	72	65	38	101	156	102	55	73	95
		여	18	17	14	12	43	53	36	40	58	48
	심리불개시	남	-	-	-	-	2	1	-	-	-	-
		여	-	-	-	-	1	-	-	-	-	-
	불처분	남	8	5	8	11	3	12	11	6	6	4
		여	2	1	-	2	2	1	2	1	2	2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72	219	315	248	226	107	114	120	167	207
		여	67	87	99	81	68	34	54	60	77	103
연말현재인원		남	333	338	307	276	176	173	264	299	304	298
		여	61	101	98	83	45	70	78	91	140	142

표 5-102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남	327	348	334	300	254	209	248	282	305	324
	여	71	95	97	96	79	75	81	104	125	134
부 산	남	70	70	66	63	45	44	57	61	51	52
	여	17	18	16	19	17	17	20	24	23	24
대 구	남	32	30	25	25	16	15	18	21	23	29
	여	6	6	6	6	5	6	6	9	12	11
광 주	남	35	43	36	27	25	20	19	29	25	22
	여	6	10	9	6	4	5	5	9	10	8
대 전	남	35	28	33	28	28	18	24	27	26	33
	여	7	11	11	9	7	6	8	8	12	15
춘 천	남	9	15	11	12	8	8	8	7	7	8
	여	1	2	2	4	3	3	3	2	4	9
제 주	남	2	2	3	4	3	4	3	4	4	2
	여	1	1	-	1	1	1	-	1	1	-
서울심	남	144	160	160	141	129	100	119	133	169	178
	여	34	47	53	51	42	37	39	51	63	67

표 5-103 기관별 위탁 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남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3,587	3,878
	여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1,551	1,611
부 산	남	893	901	771	670	567	562	624	664	601	621
	여	211	249	186	205	218	216	228	275	267	275
대 구	남	395	344	297	278	198	195	235	258	268	371
	여	73	75	71	66	59	72	81	108	139	147
광 주	남	413	513	452	348	322	237	244	372	311	305
	여	73	110	120	73	55	60	53	120	134	109
대 전	남	450	363	422	356	328	232	314	324	305	396
	여	102	150	140	107	93	80	102	96	146	179
춘 천	남	144	215	182	169	88	94	92	78	92	94
	여	19	34	31	51	37	40	32	24	50	106
제 주	남	27	26	36	40	48	49	37	47	49	33
	여	8	11	7	16	12	10	7	15	12	5
서울심	남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1,596	1,644	1,961	2,058
	여	493	682	741	689	565	546	524	640	803	790

표 5-104 위탁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출원 인원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4,617	5,083	5,493
10일 미만	106	124	144	70	67	151	155	95	146	137
10 ~ 20일	679	562	616	371	393	444	306	318	444	519
21 ~ 30일	3,326	3,851	3,573	3,134	2,862	2,413	2,347	2,508	2,438	2,546
31 ~ 40일	1,018	1,032	1,001	907	812	622	810	1,116	1,309	1,480
41 ~ 50일	250	238	291	400	242	199	370	488	627	622
51 일 이상	58	56	114	118	59	25	82	92	119	171

표 5-105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분 류 심 사	5,116	5,614	5,385	4,755	4,266	3,620	3,661	4,210	4,744	5,113
상 담 조 사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3,512	3,761	3,208	3,517
검사결정전조사	25	-	-	-	-	-	-	-	-	-

제 4 절 | 인권업무 통계

표 5-106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2021	131,602	208	131,394	11,253	1,184,692
2022	101,887	92	101,795	13,095	1,107,880
2023	107,696	65	107,631	14,133	1,015,122
2024	117,182	65	117,117	16,031	958,659
2025	130,638	105	130,533	17,519	910,164

표 5-107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2021	195,747	144,416	18,476	604	32,251
2022	215,902	156,309	16,403	435	42,755
2023	205,062	146,364	16,050	418	42,230
2024	201,894	147,966	16,252	531	37,145
2025	219,175	159,921	17,099	380	41,775

표 5-108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11,520,000	10,423,000	9,870,000	9,870,000	9,428,000
보상인원	279	264	248	305	206	191	189	148	155	143
지급금액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9,792,147	9,502,935	8,989,710	7,910,382	7,551,505

표 5-109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연도 \ 구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2,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2021	4,062	26	3,748	101	80	107
2022	4,002	53	3,525	69	120	235
2023	4,395	39	3,934	62	129	231
2024	4,520	29	4,133	79	185	94
2025	4,570	26	4,187	92	156	109

표 5-110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연도 \ 구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2021	4,030	1,973	1,557	416	84(2.1%)
2022	3,783	1,916	1,461	320	86(2.3%)
2023	3,953	2,327	1,271	264	91(2.1%)
2024	4,223	2,080	1,642	405	96(2.3%)
2025	4,872	2,253	2,092	424	103(2.1%)

제 5 절 | 국제법무업무 통계

표 5-111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횟 수	14	9	14	16	13	31	30	28	32	33

표 5-112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횟 수	12	7	9	4	1	2	-	8	18	10

표 5-113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횟 수	29	11	18	27	53	37	39	28	44	23
인 원	55	42	20	38	47	117	104	44	72	63

제 6 절 |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표 5-114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용정원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49,922	50,250	50,614
1일평균수용인원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61,366	63,680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33,381	36,620	40,035	42,032
		수형자	33,791	35,382	34,377	33,813	33,392	33,548	32,610	35,007	38,473	40,564
		노역수	1,827	1,624	1,500	1,468	1,397	711	771	1,613	1,562	1,468
	미결구금자	소 계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17,736	19,957	21,331	21,648
		피의자	864	753	640	632	558	496	526	627	658	685
		피고인	20,013	19,539	18,227	18,711	18,526	17,613	17,210	19,330	20,673	20,963

표 5-115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2021	51,638,809	52,368	0.101	16,652	3.1
2022	51,439,038	51,117	0.099	16,668	3.1
2023	51,325,329	56,577	0.110	16,776	3.4
2024	51,217,221	61,366	0.120	16,579	3.7
2025	51,117,378	63,680	0.125	16,377	3.9

표 5-116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52,130	52,940	59,088	62,981	64,626
수형자	소 계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남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31,651	31,870	35,054	37,536	39,448
	여	2,198	2,262	2,339	2,313	2,345	2,436	2,605	2,991	3,418	3,626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6.0	6.3	6.6	6.7	6.7	7.1	7.6	7.9	8.3	8.4
미결수용자	소 계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22,027	21,552
	남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16,436	16,798	19,088	19,959	19,700
	여	1,708	1,511	1,558	1,539	1,627	1,607	1,667	1,955	2,068	1,852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8.1	7.9	8.2	7.9	8.5	8.9	9.0	9.3	9.4	8.6

표 5-117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16세 미만	2	4	1	4	1	3	1	6	6	5
18세 미만	46	45	35	41	45	63	56	56	74	61
20세 미만	290	244	248	231	233	224	200	264	252	241
25세 미만	2,642	2,484	2,335	2,255	2,378	2,441	2,504	2,678	2,631	2,479
25세 이상	2,450	2,562	2,779	2,860	3,058	3,264	3,479	4,078	4,506	4,718
30세 이상	7,678	7,543	7,059	6,834	6,488	6,166	6,245	7,057	8,031	9,007
40세 이상	10,275	9,712	9,307	8,637	8,427	7,962	7,807	8,400	8,956	9,366
50세 이상	9,255	9,330	9,067	9,033	8,941	8,673	8,413	9,002	9,350	9,408
60세 이상	3,841	4,243	4,440	4,802	5,178	5,291	5,770	6,504	7,148	7,789

표 5-118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997	2,096	2,079	2,315	2,451	2,377	2,644	3,035	3,427	3,522
소계	기 결	1,232	1,320	1,338	1,416	1,445	1,386	1,657	1,871	2,039	2,151
	미 결	765	776	741	899	1,006	991	987	1,164	1,388	1,371
중국	기 결	852	903	805	730	700	628	747	835	883	873
	미 결	477	431	343	426	432	464	421	533	621	591
일본	기 결	8	8	7	7	6	6	5	4	5	5
	미 결	1	4	4	2	1	-	1	-	5	3
미국	기 결	37	35	37	40	34	28	31	33	34	37
	미 결	28	26	28	17	15	16	20	17	20	16
기타	기 결	335	374	489	639	705	724	874	999	1,117	1,236
	미 결	259	315	366	454	558	511	545	614	742	761

표 5-119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절 도	4,061	3,858	3,681	3,549	3,254	2,744	2,667	2,767	2,792	2,727
폭력행위등 처벌법	2,815	2,624	2,544	2,509	2,330	2,325	2,373	2,720	2,653	2,557
사기 및 횡령	7,699	7,630	8,028	8,024	8,330	8,323	8,272	9,338	10,051	10,493
성 폭 력	5,953	5,480	5,713	5,717	5,652	5,572	5,720	5,862	6,076	6,021
마 약 류	1,890	2,133	1,329	1,996	1,595	1,849	2,169	2,492	3,477	4,188
과 실 범	1,691	1,722	1,894	1,851	2,474	2,590	2,448	3,167	3,445	3,302
강 도	2,552	2,333	2,036	1,919	1,803	1,683	1,519	1,522	1,486	1,440
살 인	3,584	3,484	3,291	3,228	3,170	3,063	3,028	3,002	3,083	3,063
기 타	6,234	6,903	6,755	5,904	6,141	5,938	6,279	7,175	7,891	9,283

표 5-120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징역	소 계	34,991	34,679	33,790	33,232	33,287	32,643	33,026	36,597	39,484	41,591
	1년 미만	6,362	6,050	6,173	5,599	4,401	3,978	4,574	5,633	5,375	5,418
	1년 이상	13,010	13,208	12,587	12,819	14,053	13,826	13,376	15,093	16,251	16715
	3년 이상	6,747	6,727	6,587	6,340	6,428	6,532	6,651	7,078	8,072	8878
	5년 이상	5,195	5,029	4,888	4,902	4,902	4,894	5,023	5,329	6,099	6781
	10년 이상	3,127	3,071	2,927	2,903	2,784	2,643	2,580	2,532	2,593	2637
	20년 이상	550	594	628	669	719	770	822	878	936	991
금고	소 계	86	73	81	66	86	67	81	85	97	106
	1년 미만	47	32	30	32	27	27	27	39	39	44
	1년 이상	28	28	41	25	45	30	46	40	51	51
	3년이상	11	13	10	9	14	10	8	6	7	11
무기징역		1,345	1,358	1,343	1,343	1,320	1,322	1,313	1,308	1,320	1,324
사 형		57	57	57	56	56	55	55	55	53	53

※ 수형자 입소일과 형기 등 데이터 반영일 간 시차에 따라 각 항목과 총합 사이에 불일치 발생 가능

표 5-121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무경험자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18,988	19,482	21,899	23,245	24,054
유경력자	소 계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5,099	14,993	16,146	17,709	19,020
	1 회	6,437	6,979	6,741	6,474	6,265	6,329	5,974	6,532	7,529	8,264
	2 회	2,665	2,728	2,668	2,847	2,822	2,802	2,832	3,019	3,183	3,475
	3 회	1,685	1,615	1,623	1,638	1,654	1,609	1,668	1,782	1,911	2,052
	4회이상	5,043	4,790	4,681	4,783	4,629	4,359	4,519	4,813	5,086	5,229

표 5-122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소자	계	64,541	62,624	57,742	56,420	51,874	35,342	36,970	52,120	54,502	53,122
	직 입 소	28,330	24,851	22,429	21,827	18,609	4,243	5,609	18,227	17,991	16,298
	형 확 정	30,269	31,500	29,638	29,225	28,204	26,590	26,381	28,330	31,080	31,577
	기 타	5,942	6,273	5,675	5,368	5,061	4,509	4,980	5,563	5,431	5,247
출소자	계	62,979	62,819	58,450	56,900	51,817	35,844	36,547	48,576	51,610	50,977
	형기종료	21,357	23,324	21,821	21,092	19,737	17,910	16,479	16,928	17,881	18,427
	가 석 방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11,177	12,263
	사 면	479	309	-	561	206	110	65	24	41	41
	기 타	14,184	12,559	11,089	10,177	8,588	3,695	4,637	9,169	8,739	7,971
	노역종료	19,802	18,352	16,847	16,896	15,375	4,739	5,056	12,930	13,772	12,275
연도말 인원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43,074

나. 미결구금자

표 5-123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40,057	41,058	47,063	48,761	47,993
신 입 소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34,571	35,128	40,690	40,561	39,714
기 타 (보석취소 등)	5,835	5,887	5,525	5,461	5,304	5,486	5,930	6,373	8,200	8,279

표 5-124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41,315	40,606	44,235	47,671	48,379
구 속 취 소	2,452	2,761	2,538	2,474	2,200	1,775	1,618	1,666	1,809	1762
벌 금	1,310	1,218	976	775	684	541	507	571	587	627
집 행 유 예	12,447	11,227	8,985	8,831	7,536	6,823	6,604	8,043	7,960	8043
보 석	2,678	2,555	2,127	2,105	2,165	2,015	1,650	1,869	1,926	1911
형 확 정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25,770	25,648	27,399	30,117	30737
기 타	5,564	5,956	5,071	4,836	4,301	4,391	4,579	4,687	5,272	5299
연도말인원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22,027	21,552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 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표 5-126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0	130	105	116	115	142	133	160	165	156
절 도	23	27	17	10	21	26	23	41	34	28
사기·횡령	2	9	12	9	8	6	6	3	4	-
폭력·상해	27	5	3	11	13	7	10	8	16	10
강 간 등	35	44	24	26	21	31	36	29	25	38
강 도 등	19	11	5	14	13	11	9	26	16	6
살 인	5	5	4	3	1	1	1	1	5	4
과 실 범	2	-	1	4	1	2	-	2	1	4
기 타	37	29	39	39	37	58	48	50	64	66

표 5-126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0	130	105	116	115	142	133	160	165	156
징역형	무 기	-	-	-	-	-	-	-	-	-	
	20년 이상	-	-	1	-	-	-	-	-	1	2
	10년 이상	2	1	-	1	-	2	1	2	6	4
	5년 이상	13	9	13	21	15	22	25	27	43	31
	3년 이상	56	46	33	45	41	47	62	59	50	51
	1년 이상	69	67	55	45	55	65	40	63	56	62
	1년 미만	8	7	2	4	2	4	3	5	6	6
	6월 미만	1	-	1	-	2	2	2	3	3	-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1	-	-
	1년 미만	1	-	-	-	-	-	-	-	-	-

표 5-127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97	113	99	97	81	42	33	52	53	52
가석방	31	28	26	35	35	11	7	12	17	14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기종료	53	64	38	43	37	27	24	34	31	37
기타	13	21	35	19	9	4	2	6	5	1

라. 외부교통권

표 5-128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 수	263,35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331,625	585,958	742,084	877,996	962,388

표 5-129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 수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039,125	4,670,826	3,301,665	2,970,645

표 5-130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 수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1,111,366	1,411,367	1,815,581	2,189,406	2,353,662

표 5-131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 수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779,681	822,051	1,067,401	1,304,638	1,384,491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표 5-132 2021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2021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6,363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50	0.2
6월 이내	249	0.9
1년 이내	964	3.7
2년 이내	2,497	9.5
3년 이내	1,840	7.0

※ 조사대상인원 : 26,363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표 5-133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6,363	2,090	5,600	211	50	1	249	5	964	32	2,497	83	1,840	90
형기종료	16,870	900	5,022	177	40	1	242	5	917	30	2,252	66	1,571	75
가석방	9,374	1,173	555	33	10	0	7	0	44	2	231	16	263	15
감호기간종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14	0	8	0	0	0	0	0	1	0	5	0	2	0
사 면	105	17	15	1	0	0	0	0	2	0	9	1	4	0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29.8%, 가석방 5.9%,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57.1%, 사면 14.3%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2%, 6월 이내 1.1%, 1년 이내 4.8%, 2년 이내 14.3%, 3년 이내 21.2%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50명(0.2%), 3월이상 6월이내 249명(0.9%), 6월이상 1년이내 964명(3.7%), 1년이상 2년이내 2,497명(9.5%), 2년이상 3년이내 1,840(7.0%)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2.2%, 여자 10.1%

표 5-134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 계	출소인원	26,363	15,324	4,590	2,082	1,188	3,179
	재복역인원	5,600	1,420	996	767	543	1,874
	재복역률	21.2	9.3	21.7	36.8	45.7	58.9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70	7,448	3,178	1,923	1,160	3,161
	재복역인원	5,022	1,035	841	740	539	1,867
	재복역률	29.8	13.9	26.5	38.5	46.5	59.1
가석방	출소인원	9,374	7,779	1,406	158	24	7
	재복역인원	555	371	154	27	3	0
	재복역률	5.9	4.8	11.0	17.1	12.5	0.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4	2	0	0	3	9
	재복역인원	8	1	0	0	1	6
	재복역률	57.1	50.0	0	0	33.3	66.7
사 면	출소인원	105	95	6	1	1	2
	재복역인원	15	13	1	0	0	1
	재복역률	14.3	13.7	16.7	0	0	50.0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9.3%, 2범 21.7%, 3범 36.8%, 4범 45.7%, 5범 이상 58.9%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9.1%), 가출소(66.7%), 사면(50.0%)에서 5범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35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6,363	121	4,172	5,051	6,047	6,876	4,096
	재복역인원	5,600	43	1,082	1,057	1,236	1,466	716
	재복역률	21.2	35.5	25.9	20.9	20.4	21.3	17.5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70	81	2,694	3,185	3,806	4,497	2,607
	재복역인원	5,022	33	896	933	1,134	1,354	672
	재복역률	29.8	40.7	33.3	29.3	29.8	30.1	25.8
가석방	출소인원	9,374	32	1,453	1,851	2,217	2,350	1,471
	재복역인원	555	5	180	124	99	106	41
	재복역률	5.9	15.6	12.4	6.7	4.5	4.5	2.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4	0	0	0	3	7	4
	재복역인원	8	0	0	0	2	5	1
	재복역률	57.1	0	0	0	66.7	71.4	25.0
사면	출소인원	105	8	25	15	21	22	14
	재복역인원	15	5	6	0	1	1	2
	재복역률	14.3	62.5	24.0	0	4.8	4.5	14.3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35.5%, 20대 25.9%, 30대 20.9%, 40대 20.4%, 50대 21.3%, 60대 이상 17.5%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0.7%), 가석방(15.6%)과 사면(62.5%)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36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 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6,363	594	320	2,355	3,680	2,676	9,045	1,386	3,332	2,975
	재복역인원	5,600	38	78	326	980	1,316	1,246	415	603	598
	재복역률	21.2	6.4	24.4	13.8	26.6	49.2	13.8	29.9	18.1	20.1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70	163	195	2,337	2,725	2,317	4,078	1,372	1,594	2,089
	재복역인원	5,022	22	66	322	882	1,242	1,034	413	487	554
	재복역률	29.8	13.5	33.8	13.8	32.4	53.6	25.4	30.1	30.6	26.5
가석방	출소인원	9,374	431	120	14	941	333	4,909	14	1,734	878
	재복역인원	555	16	10	1	95	64	210	2	115	42
	재복역률	5.9	3.7	8.3	7.1	10.1	19.2	4.3	14.3	6.6	4.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4	0	5	3	0	6	0	0	0	0
	재복역인원	8	0	2	2	0	4	0	0	0	0
	재복역률	57.1	0	40.0	66.7	0	66.7	0	0	0	0
사 면	출소인원	105	0	0	1	14	20	58	0	4	8
	재복역인원	15	0	0	1	3	6	2	0	1	2
	재복역률	14.3	0	0	100.0	21.4	30.0	3.4	0	25.0	25.0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6.4%), 강도(24.4%), 성폭력(13.8%), 폭력(26.6%), 절도(49.2%), 사기·횡령(13.8%), 마약류(29.9%), 과실범(18.1%)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3.6%), 가석방(19.2%), 가출소(66.7%)는 절도에서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37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6,363	1,588	4,886	15,167	3,054	875	396	257	102	38
	재복역인원	5,600	348	1,003	3,560	490	112	52	24	7	4
	재복역률	21.2	21.9	20.5	23.5	16.0	12.8	13.1	9.3	6.9	10.5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70	1,374	3,583	9,023	1,823	584	268	153	50	12
	재복역인원	5,022	338	922	3,145	443	102	43	22	5	2
	재복역률	29.8	24.6	25.7	34.9	24.3	17.5	16.0	14.4	10.0	16.7
가석방	출소인원	9,374	211	1,281	6,067	1,229	291	119	102	51	23
	재복역인원	555	9	79	403	47	10	2	2	2	1
	재복역률	5.9	4.3	6.2	6.6	3.8	3.4	1.7	2.0	3.9	4.3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4	0	0	0	0	0	9	2	1	2
	재복역인원	8	0	0	0	0	0	7	0	0	1
	재복역률	57.1	0	0	0	0	0	77.8	0	0	50.0
사면	출소인원	105	3	22	77	2	0	0	0	0	1
	재복역인원	15	1	2	12	0	0	0	0	0	0
	재복역률	14.3	33.3	9.1	15.6	0	0	0	0	0	0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미만(21.9%), 6월이상 1년미만(20.5%), 1년이상 3년미만(23.5%), 3년이상 5년미만(16.0%), 5년이상 7년미만(12.8%), 7년이상 10년미만(13.1%), 10년이상 15년미만(9.3%), 15년이상 20년미만(6.9%), 20년이상(10.5%)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4.9%)와 가석방(6.6%)은 1년이상 3년미만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38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11,177	12,265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표 5-139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56	616	639	655	650	647	573	621	559	483
고졸 검정	411	444	473	498	517	523	462	523	457	408
중졸 검정	126	150	155	144	123	114	101	90	88	67
초졸 검정	19	22	11	13	10	10	10	8	14	8

표 5-140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33	508	492	502	508	542	441	467	493	500
고졸 검정	383	371	364	379	425	461	359	404	416	437
중졸 검정	133	125	120	113	76	75	76	59	64	58
초졸 검정	17	12	8	10	7	6	6	4	13	5

표 5-14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교육인원	30	21	22	17	20	8	4	4	6	2
	졸업인원	6	5	7	6	8	2	-	2	-	-
김천	교육인원	30	21	22	17	20	8	4	4	6	2
	졸업인원	6	5	7	6	8	2	-	2	-	-

표 5-142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 시 횟 수	1,285	1,428	1,322	917	361	425	729	678	766	677
실 시 인 원	61,110	63,670	50,873	43,018	8,983	3,836	14,464	20,619	28,712	26,539

표 5-143 일반수형자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2021 (집중인성)	2022 (집중인성)	2023	2024	2025
실 시 인 원	10,066	10,525	9,909	11,566	4,917	7,187	5,720	6,955	7,426	7,430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표 5-144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 원	1,084	1,142	1,198	1,193	75	52	1,097	1,057	1,397	1,528

표 5-14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 원	4,991	5,080	4,850	4,859	134	-	11	305	896	3,474

표 5-146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 원	1,431	1,583	1,913	1,908	27	-	5	895	1,662	1,609

다. 교정위원 활동

표 5-147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4,765	4,830	4,777	4,592	4,495	4,410	4,368	4,982	5,222	5,406
교화위원	1,790	1,845	1,812	1,702	1,647	1,651	1,628	2,000	2,142	2,276
종교위원	1,931	1,910	1,891	1,864	1,835	1,775	1,778	1,926	1,975	2,009
교육위원	315	329	328	333	335	316	319	360	402	408
의료위원	98	97	91	84	77	72	68	74	74	70
취업위원	631	649	655	609	601	596	575	622	629	643

표 5-148 교화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2,276	94	43	97	1,547	44	451

표 5-149 종교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독교	불 교	천주교	기 타
인 원	2,009	917	695	364	33

표 5-150 교육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408	71	12	34	14	227

표 5-151 의료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70	58	2	1	2	7

표 5-152 취업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43	448	16	63	32	84

표 5-153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 담 (명)	1,734	1,704	1,334	2,371	219	4	112	545	719	507
교화강연(회)	15	5	3	14	-	-	-	7	11	9
자매결연(명)	341	204	306	1,101	10	33	21	42	677	749
수 용 생 활 지 원 (명)	6,726	4,434	5,363	6,068	8,491	5,130	4,446	4,112	3.322	3,051

표 5-154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교리지도(명)	36,876	33,215	37,085	35,670	99	4	7,496	21,403	25,650	29,796
자매결연(명)	3,333	7,158	11,641	12,360	356	161	3,041	6,732	8,273	8,776
수 용 생 활 지 원 (명)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13,350	18,739	30,147	32,971	34,920
교 화 도 서 기 증 (권)	3,441	164	3,809	1,013	151	8	4,642	145	750	848

표 5-155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훈련지도(명)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890	4,110	4,921	6,418	6,391
자매결연(명)	13	44	-	-	-	6	10	-	90	1
수용생활지원(명)	187	67	93	20	103	94	341	96	604	689
교화도서기증(권)	43	249	-	230	400	-	189	10,050	50	500

표 5-156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의료지원(명)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9,752	9,741	9,665	7,964	8,261
자매결연(명)	3	-	-	-	-	-	-	-	-	-
수용생활지원(명)	115	68	120	380	676	884	592	467	480	536
교화도서기증(권)	-	-	100	-	-	-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표 5-157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형자 총인원		36,082	35,990	34,633	34,604	34,621	33,892	33,809	37,145	40,486	41,916
취업 불가능인원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12,924	13,436	16,742	19,768	20,369
취업가능인원	계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20,968	20,373	20,403	20,718	21,547
	취업인원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19,534	19,165	19,135	19,463	20.146
	비율(%)	92	91	92	94	93	93	94	94	94	93
	불취업인원	1,828	2,112	1,772	1,380	1,432	1,434	1,208	1,268	1,255	1,401

※ 감호작업은 제외

표 5-158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61,603	61,564	62,480	63,006	64,325
실적	62,239	66,127	65,732	62,704	62,849	65,555	63,366	69,869	71,398	71,128
실적/계획(%)	112.1	115.9	109.5	103.0	102.4	106.4	102.9	111.8	113.3	110.6
실적 증가율(%)	11.6	6.2	△0.6	△0.5	△0.6	4.3	△3.3	10.3	2.2	△2.7

표 5-159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실 적	62,239	66,127	65,732	62,704	62,849	65,555	63,366	69,869	71,398	71,128
직영작업	실 적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38,413	38,946	41,393	43,967	44,012
	구성비 (%)	56.2	57.7	57.7	54.7	59.0	58.6	61.5	59.2	61.6	61.9
위탁작업	실 적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16,996	17,284	18,364	18,941	18,589
	구성비 (%)	30.1	29.2	30.2	32.2	29.1	25.9	27.3	26.3	26.5	26.1
외통·개방	실 적	8,330	8,456	7,807	8,114	7,357	7,489	6,815	7,800	8,373	8,324
	구성비 (%)	13.4	12.8	11.9	12.9	11.7	11.4	10.8	11.2	11.7	11.7
기타	실 적	148	218	134	106	132	2,657	321	2,312	117	203
	구성비 (%)	0.2	0.3	0.2	0.2	0.2	4.1	0.5	3.3	0.2	0.3

표 5-160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총액		62,239	66,127	65,732	62,704	62,849	65,555	63,366	69,869	71,398	71,128
관수용품	계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33,912	38,946	41,394	43,967	44,012
	교 정 기 관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31,257	35,303	36,250	38,474	36,963
	법무부산하	994	74	99	1,162	211	123	155	138	117	150
	부 외 처	3,250	4,209	3,569	1,863	1,507	2,532	3,488	5,006	5,377	6,898

표 5-161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액 (천 원)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20,621,076	22,659,230	22,600,238	24,725,915	26,779,775	27,447,168
지 급 연인원 (명)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4,870,453	3,738,721	3,901,691	4,994,150	5,572,184
1인당 1일평균 (원)	3,713	3,854	4,443	4,458	4,013	4,652	6,045	6,337	5,362	4,926

표 5-162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인원	5 (2)	2	5 (2)	2	4 (1)	3	1	2	-	3 (1)
지 급 액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41,820	19,588	13,924	-	53,267 (52,156)

※ ( )는 조위금

표 5-163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 급 액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52,594	53,078	39,205	37,484	30,844
지급인원	64	32	16	21	18	13	13	7	4	4
1인당 평균 지 급 액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18,558	19,127	26,688	28,397	32,129

표 5-164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21	114,370	106,756	7,614	-
2022	118,026	109,684	8,342	-
2023	124,207	113,046	11,161	-
2024	131,264	118,297	12,967	
2025	134,667	120,368	14,300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표 5-165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210,330	209,451	879

표 5-166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 종목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작업			시설보수, 구매 (취사)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지급액	17,000	14,000	12,000	9,500 (60%)	8,500 (60%)	7,500 (60%)	4,500 (60%)	4,500 (55%)	3,500 (50%)	1,600	1,500	1,400	3,700 (4,500)	3,200 (4,000)	2,700 (3,500)	1,000

표 5-167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취업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1,832	1,773	1,896	2,153

나. 직업훈련

표 5-168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644	6,727	6,939	6,433	5,942	5,417	5,635	5,624	5,897	6,023
양성·향상 훈 련	3,913	3,719	4,313	4,276	4,397	4,200	4,865	5,030	4,532	4,603
숙 련 훈 련	364	457	608	637	777	720	521	382	168	109
일 반 훈 련	2,367	2,551	2,018	1,520	768	497	249	212	1,197	1,311

표 5-169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316	3,443	3,424	3,338	3,128	3,070	2,740	3,237	3515	3,532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4	-	-	2	-	-	2	-	1	1
기 사	1	-	1	-	5	7	4	-	-	-
산업기사	56	92	87	60	100	85	91	68	141	135
기 능 사	3,255	3,351	3,336	3,276	3,023	2,978	2,643	3,169	3,373	3,396

표 5-170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6	77	98	99	94	78	81	70	81	83
지방대회	64	63	76	76	73	58	56	50	58	65
전국대회	12	14	22	23	21	20	25	20	23	18

제 7 절 |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표 5-171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계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승 객	73,916,823	75,134,915	83,558,252	87,822,137	12,777,578
	승무원	6,071,151	5,272,787	5,350,168	5,725,956	1,924,253
국민	소 계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승 객	42,197,580	50,130,062	54,321,526	54,198,298	7,957,472
	승무원	3,116,318	3,314,968	3,538,144	3,597,091	1,214,009
외국인	소 계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승 객	31,719,243	25,004,853	29,236,726	33,623,839	4,820,106
	승무원	2,954,833	1,957,819	1,812,024	2,128,865	710,244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계	4,559,693	19,414,228	68,121,657	91,222,927	98,327,286
	승 객	2,859,950	17,108,919	63,741,554	85,493,051	92,102,791
	승무원	1,699,743	2,305,309	4,380,103	5,729,876	6,224,495
국민	소 계	2,432,517	12,889,166	45,423,313	57,567,576	59,282,389
	승 객	1,593,633	11,586,942	42,468,079	53,958,806	55,506,793
	승무원	838,884	1,302,224	2,955,234	3,608,770	3,775,596
외국인	소 계	2,127,176	6,525,062	22,698,344	33,655,351	39,044,897
	승 객	1,266,317	5,521,977	21,273,475	31,534,245	36,595,998
	승무원	860,859	1,003,085	1,424,869	2,121,106	2,448,899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5-172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중 국	8,268,262	4,393,936	5,032,906	6,284,486	740,039
일 본	2,321,842	2,337,588	2,976,444	3,303,088	438,708
미 국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265,134
타 이 완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171,943
홍 콩	651,639	659,182	679,942	685,569	87,118
필 리 핀	566,693	459,588	471,532	516,503	120,171
태 국	474,262	503,777	565,784	580,191	78,878
말 레 이 시 아	311,686	308,152	383,467	409,254	48,741
베 트 남	299,084	380,929	519,448	624,640	112,938
인 도 네 시 아	296,377	231,908	250,249	280,146	67,301
러 시 아	238,171	275,779	308,665	350,093	75,117
싱 가 포 르	221,844	216,574	232,359	246,736	18,136
인 도	196,773	124,458	120,975	144,758	34,299
캐 나 다	178,023	178,761	196,859	208,280	35,437
오스트레일리아	153,125	151,583	154,390	174,681	23,559
영 국	136,900	128,046	133,149	146,132	21,124
독 일	111,413	111,077	117,173	121,989	24,543
프 랑 스	93,039	94,013	101,854	112,588	19,891
몽 골	82,780	108,139	118,783	118,977	22,535
우 즈 베 키 스 탄	71,299	81,711	89,391	95,634	17,570
뉴 질 랜 드	32,038	33,526	34,652	39,504	6,772
기 타	886,426	863,669	928,112	1,007,421	229,891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19,584,714
중 국	187,908	250,876	2,212,966	4,883,269	5,787,045
일 본	18,025	309,460	2,345,679	3,258,742	3,691,782
미 국	251,203	610,103	1,172,266	1,416,233	1,577,117
타 이 완	5,779	77,707	978,311	1,496,000	1,914,732
홍 콩	1,381	60,220	400,305	567,638	620,521
필 리 핀	117,316	206,529	356,046	531,099	629,772
태 국	9,351	185,409	391,285	338,713	350,693
말 레 이 시 아	4,596	70,988	261,103	302,409	331,058
베 트 남	25,359	239,269	504,347	596,462	630,493
인 도 네 시 아	46,998	108,178	252,473	339,037	368,863
러 시 아	35,235	63,810	165,217	204,581	232,193
싱 가 포 르	7,625	165,713	348,736	376,489	400,915
인 도	31,633	66,018	124,736	179,119	201,962
캐 나 다	30,201	94,589	205,369	258,571	287,417
오스트레일리아	3,717	66,404	200,619	246,479	269,487
영 국	9,337	46,414	124,415	150,966	175,923
독 일	20,381	66,002	134,506	159,263	178,048
프 랑 스	16,195	63,984	135,850	167,430	183,363
몽 골	6,511	67,146	141,638	150,201	176,080
우 즈 베 키 스 탄	16,177	42,314	60,170	67,259	75,883
뉴 질 랜 드	1,732	15,997	40,641	42,941	45,556
기 타	197,885	512,879	944,205	1,235,302	1,455,811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5-173

항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인천공항	10,010,952	9,288,559	10,789,900	11,983,837	1,899,649
제주공항	1,327,513	555,387	839,775	1,220,957	117,997
김해공항	1,059,397	1,062,683	1,279,277	1,375,031	154,778
김포공항	1,029,912	922,837	1,084,115	1,165,403	148,795
부산항	850,990	412,465	380,537	450,491	82,576
인천항	621,693	332,305	410,667	510,530	34,139
청주공항	237,282	61,021	68,166	89,695	5,756
평택항	179,051	211,138	210,495	296,933	26,151
대구공항	103,339	68,730	107,407	204,324	19,520
군산항	65,265	76,979	109,649	169,779	13,632
감천항	57,818	57,964	56,697	60,005	26,365
울산항	48,071	46,328	43,955	43,266	26,247
광양항	44,614	38,986	35,377	34,642	18,956
오산공항	34,994	32,599	32,306	28,809	27,188
무안공항	34,295	4,074	7,717	20,770	1,275
양양공항	34,202	2,446	13,699	12,113	4,724
동해항	27,978	31,066	28,465	28,423	6,757
여수항	26,904	26,031	31,798	59,960	18,417
창원항	13,191	13,034	13,071	13,389	7,715
서산항	6,590	7,782	8,527	8,425	2,904
속초항	1,101	11,858	4,969	5,938	516
기타	1,603,155	305,237	73,953	97,783	15,788

항구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19,584,714
인천공항	721,864	2,807,636	8,464,171	11,496,187	12,911,514
제주공항	23	35,660	522,730	1,127,658	1,384,380
김해공항	4,429	109,871	793,108	1,222,275	1,623,703
김포공항	539	73,398	811,996	1,070,897	1,242,535
부산항	94,296	101,116	351,402	389,311	513,226
인천항	14,216	17,254	50,832	197,355	248,849
청주공항	12	40	12,218	63,528	111,715
평택항	13,771	14,934	29,820	100,026	143,000
대구공항	4	7,155	93,521	121,583	122,377
군산항	8,034	9,900	12,285	40,866	36,664
감천항	20,529	21,692	42,123	47,007	50,868
울산항	38,141	37,361	19,754	30,391	37,982
광양항	34,385	32,519	14,960	23,089	26,371
오산공항	22,331	27,072	26,719	26,474	19,858
무안공항	-	216	5,104	2,883	-
양양공항	3	5,670	8,842	1,975	1,131
동해항	6,141	11,646	31,460	26,831	20,712
여수항	37,312	43,297	18,921	19,317	28,483
창원항	9,507	10,792	8,588	12,046	13,204
서산항	3,497	4,868	3,711	6,975	8,757
속초항	-	127	8,035	8,167	7,139
기타	15,511	17,785	170,583	933,362	1,032,246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5-174

체류자격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사증면제(B-1)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222,306
관광통과(B-2)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939,748
단기방문(C-3)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503,028
유 학(D-2)	169,715	212,295	248,472	291,007	89,414
기술연수(D-3)	1,678	1,723	1,449	1,103	321
일반연수(D-4)	81,033	90,357	83,538	84,653	29,048
종 교(D-6)	2,348	2,428	2,313	2,398	647
주 재(D-7)	9,160	8,548	8,460	9,072	2,045
기업투자(D-8)	42,007	41,984	41,886	42,442	9,252
무역경영(D-9)	26,302	18,288	9,705	8,669	3,169
교 수(E-1)	7,550	7,491	7,160	6,904	2,061
회화지도(E-2)	32,158	30,922	27,291	29,115	11,326
연 구(E-3)	9,494	9,618	9,508	9,212	2,569
예술흥행(E-6)	3,996	3,765	4,570	5,436	1,790
특정활동(E-7)	46,324	47,528	46,661	46,475	12,398
비전문취업(E-9)	134,764	140,072	145,174	151,116	41,992
선원취업(E-10)	9,877	10,720	11,737	11,634	6,325
방문동거(F-1)	69,742	82,857	88,747	97,159	32,329
거 주(F-2)	43,041	48,924	53,672	58,425	13,330
동 반(F-3)	43,684	40,048	38,402	40,284	13,651
재외동포(F-4)	468,336	515,587	565,636	579,522	112,752
영 주(F-5)	134,138	151,115	162,760	177,531	34,140
기 타	3,666,764	1,881,740	1,659,120	1,832,218	576,204

체류자격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19,584,714
사증면제(B-1)	19,938	663,699	1,689,221	1,936,862	2,215,696
관광통과(B-2)	115,029	945,123	5,121,560	7,546,051	8,772,845
단기방문(C-3)	89,288	439,865	1,919,908	3,340,109	4,006,708
유 학(D-2)	53,366	111,101	247,596	348,096	411,687
기술연수(D-3)	389	397	636	719	503
일반연수(D-4)	26,718	41,094	66,384	87,033	93,723
종 교(D-6)	625	1,239	1,883	2,252	2,298
주 재(D-7)	1,044	2,539	5,145	5,847	5,936
기업투자(D-8)	4,574	13,009	28,760	36,010	39,533
무역경영(D-9)	2,562	3,418	5,792	6,920	8,481
교 수(E-1)	964	2,460	4,114	4,544	4,554
회화지도(E-2)	5,376	11,868	20,998	21,031	20,745
연 구(E-3)	1,618	4,346	6,945	7,282	7,819
예술흥행(E-6)	1,934	3,816	7,807	9,169	10,716
특정활동(E-7)	5,827	20,099	49,101	68,829	88,065
비전문취업(E-9)	16,732	135,167	168,755	178,173	192,044
선원취업(E-10)	4,895	9,329	11,344	10,556	10,715
방문동거(F-1)	11,306	46,485	84,677	93,663	75,400
거 주(F-2)	3,637	12,238	45,436	66,941	79,729
동 반(F-3)	9,254	21,388	34,935	41,731	24,066
재외동포(F-4)	64,246	123,610	389,703	495,456	515,731
영 주(F-5)	11,644	24,322	136,492	189,786	219,644
기 타	593,579	753,397	1,453,691	2,471,143	2,778,076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5-175

국가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2,783,247
중 국	840,193	849,804	942,395	958,959	980,670
베 트 남	208,740	235,007	271,712	305,936	337,183
미 국	140,672	156,562	161,895	170,251	180,230
태 국	171,800	201,681	202,121	188,770	169,848
필 리 핀	46,871	57,452	64,055	70,392	74,125
우즈베키스탄	66,677	79,136	87,698	94,893	102,804
일 본	28,093	46,741	58,438	65,216	70,375
인 도 네 시 아	34,188	50,841	63,226	73,180	77,015
캄 보 디 아	41,525	49,240	57,018	63,681	67,985
몽 골	37,012	53,038	54,846	57,093	60,008
네 팔	36,903	47,865	63,369	74,641	91,895
타 이 완	18,554	25,417	33,225	35,838	41,651
러 시 아	48,680	56,995	68,075	69,252	66,705
스 리 랑 카	20,291	24,912	30,370	35,792	38,697
캐 나 다	22,830	27,705	27,607	28,604	29,354
미 얀 마	26,096	33,275	42,438	53,914	59,999
방 글 라 데 시	16,426	21,928	26,636	31,220	35,913
오스트레일리아	7,591	17,819	18,326	19,430	20,441
파 키 스 탄	12,410	14,460	16,295	18,355	19,841
인 도	11,542	14,419	15,789	16,851	18,593
영 국	6,435	8,149	8,499	8,697	9,045
기 타	113,252	173,466	193,551	209,818	230,870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5-176

체류자격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2,783,247
사증면제(B-1)	165,869	224,817	223,851	206,546	192,126
관광통과(B-2)	43,673	100,793	137,116	153,101	174,726
단기방문(C-3)	97,225	137,642	176,235	162,719	173,498
단기취업(C-4)	1,691	1,985	2,196	2,848	2,469
유 학(D-2)	111,178	134,062	152,094	178,519	219,571
기술연수(D-3)	1,654	1,719	1,828	1,808	1,577
일반연수(D-4)	53,870	65,204	76,644	87,887	92,657
종 교(D-6)	1,378	1,471	1,530	1,773	1,849
상사주재(D-7)	1,028	1,148	1,128	1,053	1,108
기업투자(D-8)	5,955	6,822	7,565	8,376	8,558
무역경영(D-9)	2,053	2,148	2,512	2,526	2,680
교 수(E-1)	2,017	2,012	1,897	1,802	1,734
회화지도(E-2)	13,403	14,251	14,005	13,443	12,947
연 구(E-3)	3,638	4,009	3,916	3,426	3,398
예술흥행(E-6)	3,285	3,989	4,711	4,406	4,430
특정활동(E-7)	20,675	24,083	44,993	63,580	82,226
비전문취업(E-9)	217,729	268,413	310,825	337,279	344,403
선원취업(E-10)	17,921	19,874	21,476	21,922	21,262
방문동거(F-1)	96,015	105,293	112,260	99,051	75,593
거 주(F-2)	42,367	44,561	53,325	61,292	68,096
동 반(F-3)	21,237	24,917	30,613	52,651	75,684
재외동포(F-4)	478,442	502,451	536,374	555,968	556,288
영 주(F-5)	168,118	176,107	185,441	202,968	221,021
방문취업(H-2)	125,493	105,567	103,981	93,302	82,418
기 타	260,867	272,574	301,068	332,537	362,928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5-177

사무소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1,604,920
서 울	96,888	95,824	102,630	108,389	114,780
서 울 남 부	95,393	91,451	94,731	97,551	101,105
부 산	45,022	48,978	56,035	63,989	70,422
인 천	107,902	115,876	130,029	144,041	153,125
수 원	113,145	114,327	129,229	143,652	152,166
제 주	20,717	21,592	25,456	27,990	28,508
대 구	48,331	53,518	62,278	70,616	79,809
대 전	37,309	43,699	50,954	57,678	63,001
여 수	7,349	8,197	9,211	10,362	11,127
양 주	35,822	40,382	44,893	50,486	53,842
광 주	30,501	34,394	39,175	42,657	47,527
창 원	25,985	28,986	35,065	38,564	42,241
춘 천	11,045	13,044	14,463	16,076	18,184
청 주	34,564	39,543	46,873	53,996	59,773
전 주	24,509	28,138	31,772	34,448	39,167
울 산	26,427	28,326	34,665	40,461	45,796
안 산	78,935	97,165	104,590	110,521	113,239
세 종 로 (출)	60,393	69,019	74,343	79,679	84,906
구 미 (출)	12,127	13,942	16,592	18,916	21,378
포 항 (출)	8,268	9,216	10,415	11,127	11,229
천 안 (출)	36,321	40,448	47,675	53,698	59,078
서 산 (출)	7,513	8,862	10,440	11,957	13,036
고 양 (출)	21,244	23,751	26,477	29,366	30,859
목 포 (출)	14,245	17,603	23,968	28,497	33,103
거 제 (출)	5,404	5,861	11,773	14,969	16,506
군 산 (출)	5,822	6,803	8,443	9,347	9,910
평 택 (출)	43,229	45,911	52,141	58,005	63,061
김 해 (출)	18,524	20,930	25,651	29,645	33,021
기 타	20,957	23,799	28,659	31,670	35,021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5-178

지역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1,604,920
경 기	360,412	382,865	425,629	467,398	492,819
서 울	226,569	239,297	252,765	265,544	279,629
경 남	63,148	70,390	89,312	102,333	113,189
충 남	67,462	76,495	91,001	102,869	113,320
인 천	66,364	71,849	81,016	89,129	95,046
경 북	51,100	57,055	67,025	76,768	88,013
부 산	39,420	42,863	49,090	55,805	60,929
충 북	36,045	41,270	48,866	56,301	62,213
전 남	32,656	38,988	49,110	57,189	65,698
전 북	30,331	34,941	40,215	43,795	49,077
대 구	27,230	29,568	33,305	36,710	40,024
울 산	16,827	18,379	23,620	27,642	30,175
광 주	20,934	22,967	25,348	26,557	28,421
제 주	20,717	21,592	25,456	27,990	28,508
대 전	17,292	20,594	23,384	26,249	28,364
강 원	17,384	20,472	23,484	26,074	29,495

※ 충남은 세종시(6,571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표 5-179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778,670	804,976	848,724	864,245	860,081
중 국	628,491	626,729	656,142	668,126	664,441
미 국	43,212	45,752	48,837	52,303	54,504
캐 나 다	16,731	17,899	17,923	18,183	18,253
우즈베키스탄	32,216	40,706	43,320	42,543	41,144
러 시 아	27,488	34,220	38,369	38,135	37,217
오스트레일리아	4,232	4,925	5,465	5,750	5,992
뉴 질 랜 드	2,279	2,512	2,661	2,781	2,832
카 자 흐 스 탄	13,993	19,614	22,426	4,151	21,790
독 일	812	874	889	941	949
일 본	706	755	873	939	974
기 타	8,510	10,990	11,819	30,393	11,985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5-180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63,699	197,234	226,507	263,775	308,838
유 학(D-2)	111,178	134,062	152,094	178,519	219,571
한국어연수(D-41)	52,506	63,146	74,361	85,173	88,661
외국어연수(D-47)	15	26	52	83	606
증 감 률 (전년대비, %)	(6.7%)	(20.5%)	(14.8%)	(16.5%)	(17.1%)

국가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63,699	197,234	226,507	263,775	308,838
중 국	49,033	59,905	70,888	75,149	78,799
베 트 남	63,492	71,038	80,343	96,957	116,005
몽 골	8,838	11,431	13,802	16,655	18,957
우즈베키스탄	9,504	11,555	12,530	15,352	20,185
일 본	3,876	5,105	4,544	4,203	4,157
인도네시아	1,561	2,339	2,511	2,680	2,576
파 키 스 탄	1,392	1,603	1,690	1,934	2,308
인 도	1,412	1,802	1,916	2,025	2,166
말레이시아	897	1,124	1,139	1,183	1,224
미 국	1,285	1,676	1,633	2,012	2,115
(타 이 완)	960	1,383	1,538	1,497	1,535
방글라데시	1,278	1,569	2,058	2,977	4,381
러 시 아	1,303	1,740	2,142	2,403	2,670
네 팔	2,772	2,746	4,543	9,229	16,608
필 리 핀	475	694	806	789	805
기 타	15,621	21,524	24,424	28,730	34,347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5-181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 원	168,611	169,633	174,895	181,436	188,105
증감률 (전년대비, %)	(0.01%)	(0.6%)	(3.1%)	(3.7%)	(3.7%)

국가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168,611	169,633	174,895	181,436	188,105
중 국	59,770	59,499	60,048	60,681	60,893
베 트 남	41,447	39,136	39,956	41,779	43,847
일 본	15,074	15,366	15,662	16,214	17,055
필 리 핀	12,041	12,253	12,557	12,794	12,996
캄 보 디 아	4,565	4,641	4,794	4,897	4,919
미 국	4,538	4,801	5,093	5,308	5,660
태 국	6,558	7,506	8,669	9,751	10,552
몽 골	2,502	2,528	2,583	2,706	2,766
우즈베키스탄	2,709	2,738	2,792	2,868	2,885
캐 나 다	1,426	1,470	1,491	1,518	1,543
러 시 아	2,041	2,224	2,408	2,609	2,810
네 팔	834	852	871	866	856
파 키 스 탄	989	1,003	1,015	1,039	1,052
타 이 완	1,596	1,730	1,806	1,857	1,909
영 국	1,200	1,280	1,344	1,431	1,526
인도네시아	1,073	1,205	1,331	1,474	1,669
방글라데시	376	385	396	404	404
기 타	9,872	11,016	12,079	13,240	14,763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표 5-182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귀화	10,895	10,248	10,346	11,008	11,344
	회복	2,742	3,043	4,203	3,607	4,037
중 국	귀화	5,145	4,480	4,904	6,249	6,420
	회복	185	114	98	92	101
베 트 남	귀화	4,225	4,431	3,807	2,951	2,658
	회복	14	18	23	20	33
필 리 핀	귀화	241	203	243	284	357
	회복	25	11	14	9	13
몽 골	귀화	103	60	126	81	111
	회복	3	6	8	7	3
우즈베키스탄	귀화	97	119	113	107	135
	회복	12	10	13	8	11
일 본	귀화	20	30	29	24	40
	회복	86	94	120	113	131
태 국	귀화	78	89	110	148	248
	회복	6	7	9	4	2
파 키 스 탄	귀화	34	26	13	21	39
	회복	0	0	0	0	0
기 타	귀화	952	810	1,001	1,143	1,336
	회복	2,411	2,783	3,918	3,354	3,743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표 5-183

구분 \ 연도		총계	'94 ~ '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청	1차	136,720	32,733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5	14,626
	이의 신청	54,360	16,566	3,110	4,066	5,954	4,718	3,744	5,248	5,152	5,802
심사결정	소계	113,956	35,592	6,879	9,305	11,894	10,979	8,538	10,230	9,748	10,791
	1차	72,625	21,676	4,295	5,874	8,102	5,982	5,459	7,087	6,746	7,404
	이의 신청	41,331	13,916	2,584	3,431	3,792	4,997	3,079	3,143	3,002	3,387
철회*	소계	38,017	4,064	2,412	4,264	6,230	4,002	2,966	3,069	4,636	6,373
	1차	35,018	3,739	2,305	4,138	5,929	3,692	2,659	2,567	4,134	5,854
	이의 신청	2,999	325	107	126	301	310	307	502	502	519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표 5-184

구분 \ 연도		총계	'94 ~ '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심사완료		62,594	19,037	3,954	5,060	6,237	6,842	4,890	5,450	5,083	6,041
난민인정(보호)	소계 (보호율, %)	4,406 (7.0)	2,275 (12.0)	651 (16.5)	308 (6.1)	223 (3.6)	121 (1.8)	230 (4.7)	220 (4.1)	202 (4.0)	176 (2.9)
	인정 (인정률, %)	1,679 (2.7)	799 (4.2)	144 (3.6)	79 (1.6)	69 (1.1)	72 (1.1)	175 (3.6)	101 (1.9)	105 (2.1)	135 (2.2)
	인도적 체류	2,727	1,476	507	229	154	49	55	119	97	41
불인정		58,188	16,762	3,303	4,752	6,014	6,721	4,660	5,230	4,881	5,865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8건 및 철회 4건 포함

6 법무연감

Justice 1st

자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 1 절 | 직제

1. 직제 연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법무부직제 개정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법무부직제 개정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법무부직제 개정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 → 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2001. 4.24.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2001.10.10.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2002. 3.30.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1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 폐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7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 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 → 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 → 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 (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 →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 →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5 → 4·5급 1명, 7 → 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4 → 3·4급 1명, 5 → 4·5급 4명, 6 → 5급 13명, 7 → 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 → 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 → 13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 → 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 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 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2016.12.30.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2017. 5.24.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7	2018. 5. 8. 2018. 5.10.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 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 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163	2020.12.29. 2020.12.30.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 → 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 → 비행예방교육과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6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사무 기타 → 사무와 그 밖의 - 수발 → 접수·발송 - 피복 및 급양 → 의복 및 음식 - 제증명 → 각종 증명 - 기타 형사정책 → 그 밖에 형사정책 - 수용관리·교정·교화·교화 기타 → 수용관리·교정·교화나 그 밖의
165	2021. 2.25. 2021. 3. 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등 본부 인력 5명 증원 • 전자감독 전담인력 등 196명 증원, 대전소년원 직급상향(5급2→4.5급2) • 치료감호소 하부 조직 명칭 변경 특수치료과 → 정신재활치료과 • 전자감독 대응 인력 101명 등 평가대상 정원 201명 추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신설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 평가대상에서 제외
166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사항 신설 • 벤처형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벤처형조직 소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데이터과 • 공업직 정원 조정 및 전환 배치
167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령 제10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교육사설 운영·관리 인력 등 본부 정원 4명 증원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교대인력 135명 등 소속기관 정원 137명 증원 • 검찰공무원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이체 • 교도소 등 교대근무인력 관련 평가대상 정원 156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정규직화 • 대전소년원 하부 조직 명칭 변경 교무과 → 의료재활과
168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법무부령 제10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데이터분석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 조정 •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 본부 인력 2명 증원 • 법무부 본부 평가대상 조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연장(2021. 12. 31. → 2023. 12. 31.) 등 • 소년수용자 관리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소년보호관찰 관련 평가대상 정원 99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공업직 전환 배치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69	2022. 2.2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인력 등 3명 증원 • 수용자 처우개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인력 등 168명 증원 • 법무부 정원 8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정원 이체 • 일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관성의 구역과 위치를 현행화 등 반영
170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조직의 성과평가결과의 평가기간란 삭제
171	2022. 5.31.	법무부령 제102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등 반영
172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8호 법무부령 제10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 증원
173	2022. 6.27.	대통령령 제32718호 법무부령 제10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 5명) 증원 •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174	2022. 8. 4.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직급을 조정하여 배정 등 반영 • 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조사과 미설치 기관 업무분장 기준 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 조정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기관 확대 (6개→18개)
175	2022. 9.30.	법무부령 제103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9월 30까지 2년 연장 반영
176	2022.11. 1.	대통령령 제32969호 법무부령 제10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거창구치소 신설 및 제주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인력 103명 증원 반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77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5호 법무부령 제10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과 법무부의 정원 7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 등 각각 감축 반영 • 평가대상 정원 평가기간 연장 체류외국인 관리 등 154명→1년 연장 성인보호관찰 52명→1년 연장 소년수용자 관리 42명→2년 연장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1년 연장 항만 국경관리 33명→2년 연장
178	2023. 4.11.	대통령령 제33385호 법무부령 제10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 인력 1명, 사할린동포 국적 판정 심사 업무 수행 필요 인력(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 증원 •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한 인력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 인력 4명 증원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 • 평가대상 조직인 법무실 송무심의관·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폐지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179	2023. 6. 8.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 법무부(4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사범재활팀·특별점검팀,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소속기관(17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각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4개, 주요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11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 2개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조정 - 법무부 : 16명 - 교정기관 : 11명 - 출입기관 : 11명 • 관리운영직군 전환 - 교정기관 관리운영직군 4명 → 기술직군 - 소년보호기관 관리운영직군 2명 → 기술직군 - 출입기관 : 관리운영직군 1명 → 행정직군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0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 법무부령 제10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기록관 운영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간호인력 12명 증원 • 국제법무국 신설 - 기구 신설 :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지원과 - 인력 증원 : 8명 - 명칭 변경 : 국제법무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분쟁대응과→국제투자분쟁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지원 사무 분장 조정 - 인권정책과장 → 통일법무과장
181	2023. 8.30.	대통령령 제33687호 법무부령 제10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 특례규정 삭제하고,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함 • 과장급 개방형직위 개수 15개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추가 • 의무직렬 정원 전체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 • 본문 직급 순서를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에서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변경
182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보호관찰기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제 및 관리·감독 필요 인력 20명, 교정기관에 증축 수용동 교대근무 인력 23명, 출입기관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필요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 증원 • 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 법무연수원 정원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 • 법무부 총액인건비제 기구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 • 평가대상 기구·인력 평가대상 연장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평가기간 1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8개 분야 514명 평가기간 1년 연장 - 체류외국인 관리 90명 평가대상에서 제외(정규화)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변경 – 명칭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할구역 변경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특별자치도 편입 • 분장사무 용어 정비 : 영치금품 → 보관금품 등
183	2024. 3.26.	대통령령 제34331호 법무부령 제10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 확대 •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 증원 •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
184	2024. 6.25.	대통령령 제34593호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증원 •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
185	2024. 9.26.	대통령령 제34918호 법무부령 제10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직렬조정 1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6	2024.12.30.	대통령령 제35114호 법무부령 제10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정원 평가결과 반영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5개 분야 182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 7개 분야 538명 평가기간 연장 •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2명 • 대전소년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1명(약무주사보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187	2025. 2.25.	대통령령 제35249호 법무부령 제10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에 따라 출입국 심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 증원 •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청주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증원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실 1개 정책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 •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정원 136명(6급 11명, 7급 23명, 8급 35명, 9급 67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3명, 7급 35명, 8급 67명)
188	2025. 5.21.	대통령령 제35508호 법무부령 제109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 •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을 증원 •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법무부의 정원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4명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재배치
189	2025. 6.10.	대통령령 제35592호 법무부령 제10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을 감축
190	2025. 7. 1.	법무부령 제11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 등 8개 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7급 9명, 8급 9명)은 보호관찰소 정원(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 •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191	2025. 9.23.	대통령령 제35760호 법무부령 제11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 증원 •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증원 • 평가대상 조직 평가결과 반영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평가기간 2년 연장 • 소년원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무 분야를 직업훈련 담당에서 교과교육 담당으로 전환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92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6호 법무부령 제11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 •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 법무부에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 증원 •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 증원 •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 • 평가대상 정원 평가결과 반영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 5개 분야 240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사범 관리 1개 분야 55명 평가기간 2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2개 분야 266명 1년 평가기간 1년 연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그 안산지원에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신설하는 대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 •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

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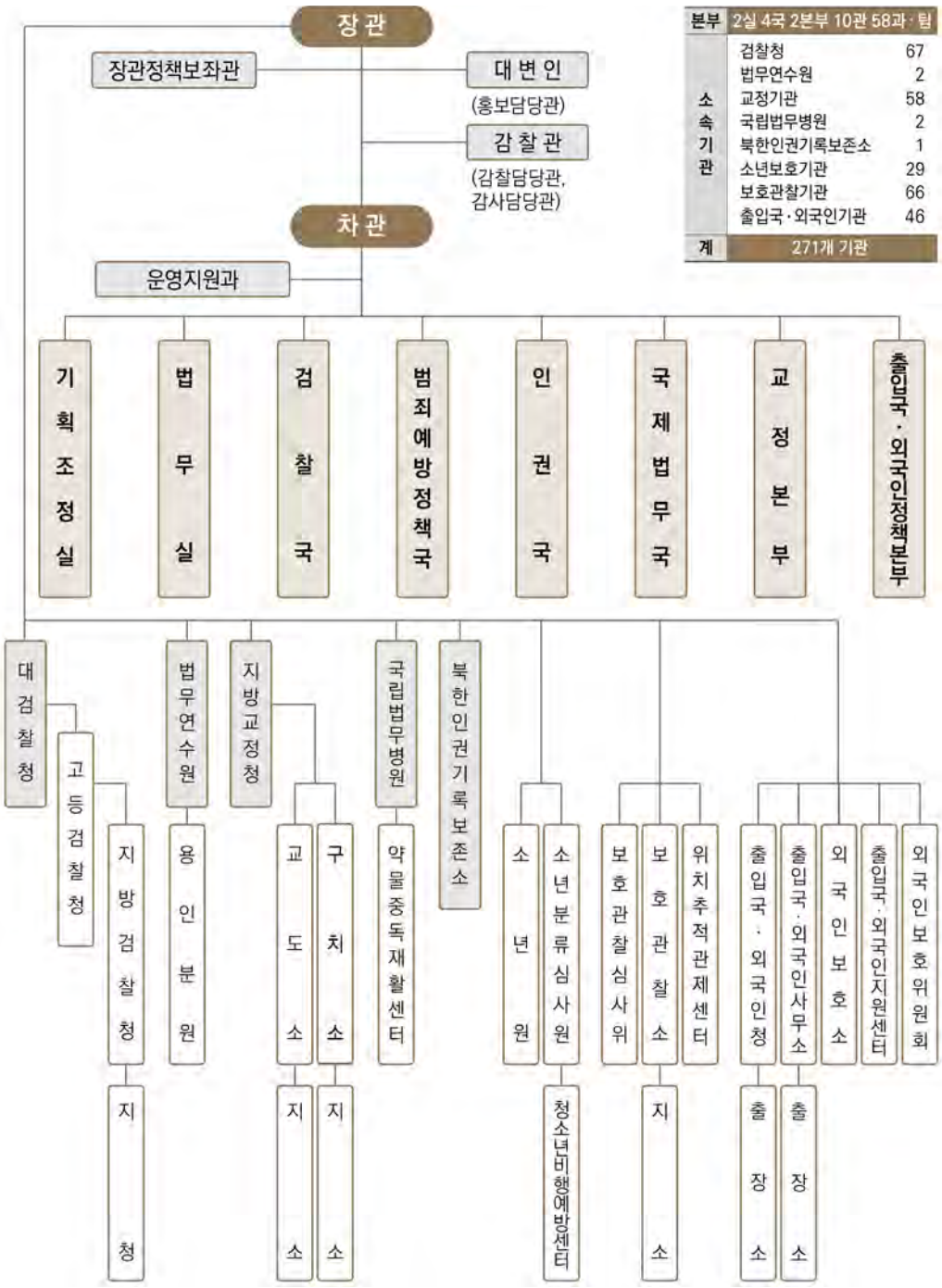

본부	2실 4국 2본부 10관 58과·팀	
소속기관	검찰청	67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8
	국립법무병원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6
	출입국·외국인기관	46
계	271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138	138	138	138	138	138

조선형 무관학교 / 형무관학교 / 교도관학교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 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 무 연 수 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34,133 (+392)	34,427 (+294)	34,402 (−25)	34,291 (−111)	34,367 (+76)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763 (+11)	772 (+9)	781 (+9)	789 (+8)	771 (−18)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2,292	2,292	2,292	2,292	2,292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8,480 (−2)	8,453 (−27)	8,391 (−62)	8,358 (−33)	8,365 (+7)
교 도 소 (구치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16,504 (+166)	16,668 (+164)	16,638 (−30)	16,579 (−59)	16,625 (+46)
소 년 원 (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1,425 (+8)	1,437 (+12)	1,438 (+1)	1,425 (−13)	1,428 (+3)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위원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2,568 (+17)	2,576 (+8)	2,632 (+56)	2,630 (−2)	2,668 (+38)
법 무 연 수 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134 (+4)	138 (+4)	135 (−3)	134 (−1)	134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1,955 (+188)	2,079 (+124)	2,083 (+4)	2,072 (−11)	2,07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제 2 절 |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54	1. 2.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으로 제명 변경 • 지급품 용어에 대한 구분 및 정의 • 지급품 운영방안 유연성 도모 및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지급품 등에 대한 용어 정비 • 대여품 관리 및 반납기준 마련	복 지 과
1556	1. 1.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회수·반납된 외국인등록증 보관·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 관련 규정 개정	이 민 정 보 과
1560	1. 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 • 운영기간 연장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국립법무병원 별도정원 2명 증원(20명→22명)	혁신행정 담당관실
1561	1. 6.	보호소년 처우지침	• 여성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교육 기관 변경, 징계대상행위 중 모욕·명예훼손의 대상 세분화, 교육성과 가점 자격 종류 현행화 등을 반영	소 년 보 호 과
1562	1. 6.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 형사입건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절차 간소화, 징계대상행위 중 모욕·명예훼손의 대상 세분화 등을 반영	소 년 보 호 과
1563	1. 6.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교정 종합상황실 용어 및 적용범위 명시 • 상황관리 업무와 실시간 관제 업무의 명확화 • 교정 종합상황실 주요 업무 처리기준 문서요지 붙임	보 안 과
1564	1.20.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필수적 고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 마련	이 민 조 사 과
1565	1.17.	보호소년 교육지침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2024. 9.)에 따른 장·단기 직업훈련 구분 및 체험형 직업교육 편성·운영 등 개편사항을 반영	소 년 보 호 과
1566	1.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회복무요원 준수사항(도박 금지, 폭력 및 가혹행위 금지, 정보 열람 금지 등)을 반영	소 년 보 호 과
1567	1.23.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보 안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68	2.10.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용어 및 서식 정비, 사회통합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이민통합과
1569	2.17.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전문조사관에 대한 단계별 평가체계 도입, 전문조사관 면접평가위원의 자격·인권 변경 및 평가기준 제시 등	보호관찰과
1570	2.20.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360° 역량진단'을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로 명칭 변경 • 4급 이하 승진심사에 적용되는 직급별 BSC 개인성과평가점수 반영기간 단축	범죄예방기획과
1571	2.24.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2024년도 인사혁신처 전문직위 협의결과 반영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등 상위 규정 및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574	4. 1.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 수개 → 여러개, 감안하여 → 고려하여 등 규정 내 어려운 용어 정비 • 결정전 조사서 서식 정비 • 재검토 기한 변경	소년범죄예방팀
1575	4. 9.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신설 및 서면심의 대상자 구체화 •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제도 신설	난민심의과
1577	4.29.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지침 내 세부 내용 보완 등 현실화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추진 근거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를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황관리'로 변경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1579	5.20.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난민전문통역인 등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난민정책과
1582	6.25.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정대외협력단 설치를 위한 전반적인 근거 마련 및 운영 필요사항 규정	교정대외협력단
1583	6.18.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신설, 명칭변경 등 개편된 직제와 상위법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겸직 제한사항 반영	운영지원과
1584	7.31.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 위·해촉 기준 개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	소년보호과
1586	8. 8.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전자정부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및 대·내외 정보화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과 현행 지침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1587	8.19.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상위 법령의 다수 개정됨에 따른 용어 추가 및 조문 내용의 상세화와 구체화를 반영한 지침의 현행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88	8.19.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 단장 부재 시 회의 주재자 변경(연장자→지명 위원) • 회의 참석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개정 • 유연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간사 범위 조정 • 공무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의 료 과
1590	9.15.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 의류 중 속옷의 모양, 침구 중 매트리스 커버의 색상 및 재질, 생활용품 중 휴지의 지급기준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	치 료 처 우 과
1591	9.15.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 직원 지급품 지급기준표를 현행에 맞게 정비	치 료 처 우 과
1592	9.15.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출소대상자 중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감호집행기간이 15년에 이르렀으나 기간이 연장된 피감호자는 제외 • 감정의뢰가 서면 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	치 료 처 우 과
1593	10. 1.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가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검 찰 과
1594	10.30.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안 마련이므로 이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로 변경 •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안 마련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고, 신속한 개정 추진을 위해 개정안 마련과 검토 및 의결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위원회를 신설	형 사 법 제 과
1595	11. 4.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직무내용 및 임기, 위촉 절차 등을 규정 •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관장사무 등을 규정	보 호 관 찰 과
1596	12. 3.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분할복무제도 도입(대체복무요원의 질병치료를 위해 1개월 이상의 복무중단이 필요할 때)	교 정 기 획 과
1597	12.25.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정대외협력단 연장을 위한 전반적인 근거 마련 및 운영 필요사항 규정	교 정 대 외 협 력 단
1601	12.30.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로조건과 효율적 공무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현행화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50	1. 2.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예규명 및 용어 변경 • 별표 2의 호송용 승합차량의 표지 내용 및 양식 등 수정	복 지 과
1355	1. 2.	보관금품 관리지침	• 보관금 접수 방법 개선 • 보관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증액 •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보관품 허가기준 개정 • 보관금 입금 결산 제한시간 조정에 따른 민원 편의 도모 • 용어 정비(관구교감을 수용관리팀장으로 정비)	복 지 과
1356	1. 2.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 운용에 관한 지침	• 피복류 착용 시기 개정 • 규격 외 피복류 사이즈 제작 근거 마련 • 피복·침구류 운영방안 개선 • 수용자 피복류 용어 표준화 및 호수별 규격 정비	복 지 과
1357	1. 6.	가석방 업무지침	• 정기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확대 • 제한사범으로 분류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위 명확화 • 가석방 예비회의 개최시기 근거 마련 • 분류심사 제외자에 대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근거 마련 • 가석방심사의 형평성 제고 방안 명시 •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고지 시점 및 가석방 관련 제도 안내 개선 • 정보보고 사항 추가 및 보고 절차 신설 • 심층면접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분 류 심 사 과
1358	1.16.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표현 수정 • '세입예산서' 표현 수정 • '세입결산서' 표현 수정 • '운영경비 지급신청서' 표현 수정	분 류 심 사 과
1359	3. 1.	국적업무처리지침	• 지침을 주요 업무 유형별로 장·절 단위로 구분 및 조문 배열 정비 • 국적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일반 준칙 규정 등 마련 • 다른 지침과 중복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의 삭제	국 적 과
1360	2.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처리지침	• 한자어인 '모사전송'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팩스'로 변경 •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1일로 개정	국 가 소 송 과
1361	2. 5.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 지시공문 내용 반영(매월 15일 '취업정보 점검의 날' 지정) • 준용 규정 오류 수정 • 용어 정비 및 어문 규범 준수	직 업 훈 련 과
1362	2. 5.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 임용 자격요건 명확화 • 용어 정비 및 어문 규범 준수	직 업 훈 련 과
1363	2.19.	국가 및 행형법상 업무처리 지침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은 일용노임의 20일분으로 하고, 일용근로자의 휴업배상은 일용노임 합계에 20/3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개정 • 병역미필자의 배상액 산정기준 삭제 •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 •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1일로 개정	국 가 소 송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64	3.12.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추가 품목 선택 시 운영기관에 자율성 부여 • 효율적인 중간처우 운영을 위해 희망센터 중간처우자의 부상 발생 시 외부진료 근거 마련	사 회 복 귀 과
1365	2.27.	분류처우 업무지침	• 거부자였던 고위험군수형자의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 의뢰 근거 마련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평가항목 점수 등 조정 •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항목 점수 조정 • 기본수용급 'M급' 관련 표현 수정 • 소득점수 평가 관련 규정 개정	분 류 심 사 과
1366	4. 1.	심리치료 업무지침	• 수용자 심리상담 체계 개편에 따른 심리적 위기 진단 도입,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 등 신설 •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미결수용자 참여 가능 근거 신설 •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근거 조항 마련 • 이수명령 집행 관련 규정 정비 등	심 리 치 료 과
1367	3.25.	분류센터 운영지침	• '다면적 평가' 도입을 위한 평가내용 규정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수형자 다면적 평가 도구' 규정 •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 운영 근거 마련 • 정밀분류심사 거부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방안 마련 • 경비처우급 결정·조정 시 처우등급 고지 방법 개선	분 류 심 사 과
1368	5.27.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국민과 주요기관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17개 기관 공동예규)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실
1369	5.29.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 위촉 위원을 교수,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국 제 법 무 정 책 과
1370	6.11.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의 사용자계정 정보 확인·점검 횟수 확대 • 문서 시스템의 권한 추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별표 현행화 •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개편에 따른 사용자계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정 보 화 데 이 터 담 당 관 실
1371	7. 1.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인권 교육 강화 • 용어 수정 및 서식 정비	특 별 점 검 팀
1372	6.26.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지침 '정의' 규정에 자체직업훈련, 작업연계직업훈련, 취업연계직업훈련, 학점은행제 등 주요 추진사항 및 실무 반영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확대 및 직업훈련 선발기준 일원화 • 자체, 작업연계직업훈련 등 근거 규정 신설 • 숙련직업훈련 과정 내 특정 목표를 가진 훈변반 운영 • 학점은행제 운영 근거 규정 신설 • 기능경기대회 관련 규정 정비 •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화 구현 • 용어 정비 및 어문 규범 준수	직 업 훈 련 과
1373	9. 1.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외부위원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운 영 지 원 과
1374	9.15.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함)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치 료 처 우 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 8.	2025년 교도작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 알림	•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교도작업 내실화 및 운영계획 다각화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1.20.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제18회 세계인의 날(2025. 5.20.) 기본계획 시달 및 관서별 자체 행사 계획 보고 지시	출입국· 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1.21.	교정시설 외부 전문 소독업체 방역 소독 계획 시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전문 소독업체 소독 실시 지시	무	의 료 과
2. 7.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 국적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일반 준칙 규정 등 마련 • 국적증서 수여식 관련 규정 및 준용 규정 신설	출입국· 외국인기관	국 적 과
2.11.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선정 계획(안) 알림	•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추천	무	직 업 훈 련 과
2.18.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	• 교정시설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기준 마련 • 규제약물 비급여처방 금지 및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 처방 준수 • 중추신경억제제 4종 이상 지속 처방 시 소견서 제출 •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 처방 시 소견서 제출	무	의 료 과
2.28.	교정시설 규제약물 가이드라인 제2판 발간 안내	• 규제약물 가이드라인 초판 발행 이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법무부 의료과의 정책변화 및 그 외 업무에 참고할만한 관련 지식 공유	무	의 료 과
3. 2.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시행 알림	• 수용자 미성년 자녀 조사 관련 유의사항 시달 • 수용자 미성년 자녀 조사 설문지 배부	무	사 회 복 귀 과
3. 5.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시달	•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실효성 있는 교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VR을 활용한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의 폭력성 개선	무	심 리 치 료 과
3. 6.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거실 내 수용자 계호 방법 개선(안) 시달	• 전자영상계호 실시 세부기준 개정 • 전자영상계호 실시 및 중단 절차 표준화	무	보 안 과
3.11.	2025년도 기능경기대회 일정 및 참가 관련 준비(지원) 사항 안내	• 기능경기대회 참가 관련 대회 준비 철저	무	직 업 훈 련 과
3.12.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시	•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항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3.27.	외곽정비반 적극 활용 재강조	• 산불 등 재난 대비와 사후 복구, 외곽 철조망 주변 정리 등에 외곽정비반 적극 활용	무	직 업 훈 련 과
3.28.	연기 흡입 환자 발생 시 의료처우 안내	• 경북지역 산불 발생으로 연기흡입 환자에 대한 처치, 교육사항 등 안내	무	의 료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4. 1.	집중인성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시행 시달	• 타교육 프로그램 이수시간 집중인성교육 시간의 일부로 인정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양식 간소화 및 교육종료 후 수료보고 폐지 등	무	사 회 복 귀 과
4. 4.	공항만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매뉴얼 배포	• 공항만에서 직무상 발견한 복수국적자의 기관 통보 관련,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출입국· 외국인기관	국 적 과
4. 7.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기강 엄정 확립,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시설물 경계 근무 및 안전관리 철저	무	교 정 기 획 과
4. 7.	외부의료시설 근무 개선방안 시달	• 모바일과 연계한 외부의료시설 입원 근무교대 실시 • 교정기관 상황실장 근무요령 변경 • 현장 중심의 소속기관 직무감독 활동 강화	무	보 안 과
4.17.	2024년도 교도작업 경영평가 결과 알림	•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교도작업 활성의 동기 부여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무	직 업 훈 련 과
4.21.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지시사항 시달	• 금지물품 취약개소 특별점검 실시 • 금지물품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직원 휴대품 관리 강화	무	보 안 과
4.22.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근절,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무	교 정 기 획 과
4.22.	2025년도 지방교정청 주관 '구인구직 만남의날' 개최 계획(안) 시달	• 지방교정청 주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관련 주요 세부 계획	무	직 업 훈 련 과
4.25.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경진대회 계획 알림	•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달성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5. 8.	202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계획(안) 알림	• 202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및 수료자 환소 등 관련 사항 이행	무	직 업 훈 련 과
5.19.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추진(안) 알림	• 교정작품전시회를 통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와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교정정책의 대외 홍보 강화	교정기획과 사회복귀과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5.26.	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회의 결과 시달	• 외부의료시설 근무 시 수용자 계호 강화 •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을 위한 검사 강화 • 폭행피해 등 수용자 대상 신고환경 개선	무	보 안 과
6.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처우 지시사항	•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따른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시,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 시달	무	의 료 과
6. 5.	2025년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계획 시달	• 외부 전문 건강검진 업체 선정하여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 실시 계획 시달	무	의 료 과
6.11.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음주운절 근절, 복무규율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	무	교 정 기 획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6.23.	2025년 교정시설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 시달	• 폭염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수용관리 방안 •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 관리 강화 • 집중호우, 화재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 철저	무	보 안 과
7. 7.	작업장려금 압류·추심관련 조치사항 알림	•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 시 조치사항 시달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7.14.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음주운전 근절,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복무관리 철저 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7.23.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입국한 무국적 동포 방문동거(F-1)자격 변경 등 지시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활동 허가	출입국· 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7.28.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적극 활용 재강조 지시	•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적극 활용 재강조	교정본부 각과 무	직 업 훈 련 과
8. 4.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음주운절 근절, 복무규율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	무	교 정 기 획 과
8. 8.	교정시설 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안) 시달	•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및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한 적극 심사 등을 통한 가석방 확대	무	분 류 심 사 과
8.11.	소년·장애인 등 취약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 계획 시달	• 교정본부-한국여자농구연맹 업무협약 •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및 여주교도소 장애인수형자 시범운영	무	사 회 복 귀 과
8.12.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 관리 철저 지시	•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엄정히 확립, 복무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무	교 정 기 획 과
8.27.	심리적 위기 수용자 자살 예방 강화 방안 시달	• 수용자 자살 사례 분석을 통한 심리상담의 실효성 제고 및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자살 위기 대응력 강화 • 유관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 강화	무	심 리 치 료 과
8.28.	농촌일손 돕기 보라미봉사단 운영 계획 시달	• 농협중앙회와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확대 • (4~6월) : 지역 농협 연계 모내기, 비닐하우스 정비 등 영농 지원 • (7~8월) : 집중호우 피해 농가 등 재해 복구 지원 • (9~11월) : 농산물 수확 및 기타 농작업 지원	무	사 회 복 귀 과
9. 8.	정신질환 수형자 맞춤형 직업재활(동료지원인) 훈련 추진 계획(안) 시달	• 정신질환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직업재활 훈련 운영 계획	교정본부 각과 법무연수원 무	직 업 훈 련 과
9. 9.	성인수형자 대상 피해자 공감교육 확대 계획 시달	• 성인수형자 대상 피해자공감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대전교, 충주구, 청주여교 3개 기관 시범운영	무	사 회 복 귀 과
9. 9.	수용자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련 홍보자료(리플릿) 배포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협업하여 의약품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한 리플릿 제작 • 각 수용거실 및 기관실정에 맞는 장소에 비치·활용	무	의 료 과
9.15.	2026년도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계획 제출 지시	•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직업훈련 운영계획 수립	무	직 업 훈 련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9.24.	전국 교정기관 독거수용 실태 특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시달	• 독거수용 관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무	보 안 과
10. 2.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시범운영 실시 계획(안) 시달	• 동부(구) 시범운영('25. 10. 10. ~ '25. 12. 14.) • KICS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자적 업무처리 실시 (수용기록, 교정경찰, 출정 등) • 전자영장 제도 도입	무	보 안 과
10.16.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알림	•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10.21.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기강 강화 철저 지시	•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복무관리 및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0.23.	검찰 발송 형집행관련 문서 KICS 교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유통 지시	• KICS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전자적 발송 • 대상문서 : 형집행순서변경건의, 형(노역)집행정지건의, 신원인수(포기)송부서	무	보 안 과
10.24.	법무부-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계획 시달	• 유관기관 간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 계획 시달	무	의 료 과
10.27.	전국 교정기관 폭행사고 실태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시달	•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 폭염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수용관리 방안 •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 관리 강화 • 집중호우, 화재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 철저	무	보 안 과
11. 1.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활동 재강조 지시	• 취업실적 개선을 위한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활동 재강조	무	직 업 훈 련 과
11. 4.	혈액투석 간호사 전문교육 시행 계획 시달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혈액투석실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후임 간호사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 • 1개월간 기관별로 지정된 병원에서 현장교육 실시	혈액투석실 운영 기관	의 료 과
11. 5.	빈 일자리 업종(간병인) 작업연계 직업훈련과정 신설 계획(안) 시달	• 교정시설 내 돌봄을 위해 간병인 양성 직업훈련 과정 운영 계획	교정본부 각과 법무연수원 무	직 업 훈 련 과
11.10.	2026년 교도작업 신규 및 재계약 기준(안) 알림	• 2026년도 교도작업 신규 및 재계약 기준 시달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11.11.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근절,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무	교 정 기 획 과
11.14.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기강 강화 철저 지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갑질, 성비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공직기강 해이 근절	무	교 정 기 획 과
11.20.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 방향 시달	• 정당한 직무집행 교도관에 대한 보호정책 추진 • 전문적 소송 대응체계 구축 • 엄정한 법 집행 기반 마련 등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1.21.	2025년 교정·공단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일정 및 참석 안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행사 소속기관 담당자 참석	무	직 업 훈 련 과
11.26.	2025년 교정시설 동절기 수용관리 대책 시달	• 동절기 취약 환자 관리 철저 • 폭설 등 동절기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 강화	무	보 안 과
11.27.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상황관리 개선(안) 시달	• 교정본부(지방교정청) 상황관리관 재택근무 변경 • 소속기관 당직간부 상황실장 업무 수행	무	교정대외 협 력 단
12. 1.	2026년 가석방 확대(안) 시달	• 가석방 심사 대상 확대와 엄정한 심사를 통한 점진적 가석방 확대 추진	무	분 류 심 사 과
12. 4.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음주운전 근절,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복무관리 철저 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12. 5.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안내	• 전쟁, 내전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본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해 인도적 특별 체류허가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12.11.	형사전자소송 긴급문건(구속집행정지건의서) 처리방법 시달	• 전자사건의 경우, 구속집행정지건의서(피고인)를 KICS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전자적 발송 • 전자적 제출 후 법원 당직실에 유선 연락	무	보 안 과
12.11.	공무용 차량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철저 등 지시	• 소속기관별 안전교육을 통한 공무용 차량 사고 방지, 차량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12.12.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전국 확대 실시 알림	• 타 형사사법기관과 전자문서 송·수신을 통해 입출소 및 형확정 관련 업무처리(수용기록) • 사건송치·영장신청 등 형사사법업무를 KIC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교정경찰) • 소환 관련 전자문서 접수 및 처리(출정) • 전자영장을 수신·출력하여 집행 및 전자적 반환	무	보 안 과
12.23.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한 피의자 구속집행정지건의서 전자적 유통 지시	• 구속집행정지건의서(피의자) KICS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전자적 발송	무	보 안 과
12.23.	2026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알림	• 수형자 직업훈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시달	무	직 업 훈 련 과
12.24.	딥페이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시행 계획(안) 시달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전 교정기관에서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	무	심 리 치 료 과
12.30.	2025년 교도작업·직업훈련 지도점검 결과 알림	• 현장 확인을 통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등의 발전방안 모색 및 업무 미숙지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12.31.	2026년 교도작업 생산목표 알림	• 2026년도 교도작업 기관별, 공별 생산목표 알림	무 소망교도소	직 업 훈 련 과

제 3 절 | 장관 연설문

▣ 2025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설현황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1. 2.	• 2025년 법무부 시무식(신년사)	장관직무대행
3. 7.	• 홍천 희망센터 개관식	장관직무대행
4. 25.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5. 7.	• 신임검사 임관식	
5. 20.	•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5. 27.	•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6. 5.	• 제70대 법무부장관 이임식	
6. 25.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개회식	장관직무대행
7. 21.	• 제71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7. 24.	•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7. 29.	• 제37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12.	•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10. 28.	•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0. 29.	•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식	
11. 10.	•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개회식	
11. 24.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2. 9.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2025년 법무부 시무식(신년사)

Ⅰ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새 달력의 첫장을 여는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은 새로운 '기대' 속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들 역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 발생한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놀라고 눈물짓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지원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무·검찰·범죄예방·인권·국제법무·교정·출입국 등 각 법무행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며, 범죄예방을 위해 대상자들을 성심껏 지도하고,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등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절차 전면 전자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였고, 중소기업과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법무 업무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무가족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맡은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부의 모든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거나 불편하시지 않도록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굳건히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따뜻'한 열정으로 하나하나의 업무를 조화롭게 처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공정'한 원칙에 의하지 않는 '따뜻'한 업무 처리는 '감정'적인 업무 처리가 될 뿐이고,

'따뜻'한 열정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는 '냉정'한 업무 처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공직'은 단순한 직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만나는 '최일선'에 해당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늘 끊임 없는 성찰과 고민 속에 찾으려는 자세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Ⅳ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 석 우

•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홍천군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계곡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청정 지역으로,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 무궁화 묘목을 전국에 보급하면서 나라꽃 사랑 운동이 시작된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귀한 문화 정신이 어우러진 이곳 홍천에서, '희망센터' 개관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개관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유상범 의원님과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신영재 홍천군수님, 박영록 홍천군 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외 모든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선뜻 참여하여 홍천희망센터 설립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승용 세준에프앤비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희망센터를 개관하기 때문으로, 홍천 희망센터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홍천 희망센터는 단순히 시설 내 구금 및 형 집행의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함으로써,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Ⅲ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밀양희망센터를 시작으로, 아산, 평택지역에 희망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개방 처우를 추진함으로써,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42명의 중간 처우자를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1.6%인데 반해 희망센터를 거쳐 간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3.3%의 매우 낮은 수치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때의 잘못으로 수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냉대와 차별이 아닌, 격려와 애정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 전체는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희망센터의 추진 성과가 계속 이어져 지역사회 내 모범적인 중간처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희망센터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Ⅳ

끝으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중간 처우자 선발, 희망센터 개설 준비, 그리고 오늘 개관식 행사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춘천교도소 직원들과 세준에프앤비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 석 우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의 날 유공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이 자리는 법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회복지원,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작은 보답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강력범죄나 전세사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도록 세심하게 개선하는 한편,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도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Ⅲ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입니다.

따라서,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가 공정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Ⅳ

법무부는 오늘 제6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실질적 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법무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 새출발을 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내일이 마침 어버이날인데, 훌륭하게 키운 자녀들이 검사로 임용되는 오늘 이 자리는 부모님과 가족분들에게 큰 효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Ⅱ

여러분들의 법조생활은 오늘의 검사 임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겁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어떤 시각과 방향을 설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가족분들이 진정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검사 임용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 각자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아갈지 차분히 생각해 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34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검사로 임관해서 26년간 검사로 일하다 퇴직하고, 7년간 변호사로서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그간의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우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라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업무의 기본원칙으로 삼기 바랍니다.

검사제도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면서 적법절차를 감독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 역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잔인하고 굴욕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금지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실체 진실의 발견'이나 '정의 실현'의 가치를 소홀히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의 실현은 인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 보장이 정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기 바랍니다.

둘째, 검사로서 '실력'을 갖추는 한편,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검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맡은 사건을 실체에 부합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매월 100건 이상의 사건을 배당받고,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형식적 사건처리에 그치는지, 혹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기울여 숨겨진 사정까지 살피는지에 따라 그 실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사건 모두를 정성을 다해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쌓인 실력을 통해 억울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 검사의 업무를 통해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신'과 '용기'를 갖되, 그것이 '독선'과 '아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검사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당당한 자세와 옳은 일의 대가로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져도 감내하겠다는 담담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에게 요구되는 '소신'과 '용기'는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이나 스스로 돋보이려는 영웅심이 결코 아닙니다.

검사의 '소신'과 '용기'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소신이 독선이나 아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나만 옳다'는 폐쇄적 소신을 스스로 경계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으로 상급자, 동료, 사건관계인들의 주장을 진심으로 듣기 바랍니다.

'검사하여 살핀다'는 '검찰(檢察)'의 의미처럼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바른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은 스스로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서도, 소중한 인격체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충만하다면, 결코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이 하찮은 잘못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바른 검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Ⅳ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을 믿고 묵묵히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난은 행운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영국속담에 "거친 바다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다(Rough seas make better sailors)"는 말이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와 풍랑을 헤쳐나간 항해사처럼,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단련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 한층 더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검사라는 직책에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검사 생활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18회 세계인 날 기념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각국 대사님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제기구 한국 대표 그리고 오늘 기념식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재한외국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된 이래 제18회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식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시는 '마리안나' 수녀님을 비롯하여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수상자는 아니시지만 지역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이민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작년 9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교하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시스템 도입, 지자체와 경제계의 수요를 반영한 비자제도 개선 등 개방과 균형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수급 전망, 외국인근로자 유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간 비자발급 규모를 산정하고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계의 비자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시행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민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계절근로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소재 기업에 숙련기능 외국인력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사회통합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이민통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자격과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원화된 동포들의 체류자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포간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통해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후 제공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사회통합교육을, 입국 전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거주·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과 정주를 허용하고,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맞춤형 멘토링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이민자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민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공존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민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국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Ⅰ

안녕하십니까, 교정대상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에게 교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수상자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대상 시상식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님과, KBS한국방송공사 박장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정의 목적이,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굽은 나무를 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 사람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하듯이 교정은 범죄자를 치료하고 재활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신성한 기관입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 교정은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약 수용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법무 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 마약 재범 방지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수용자들의 반복되는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 학과 교육을 통한 내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중간 처우 시설인 희망센터를 확대하여, 출소와 동시에 취업으로 건전한 시민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내 재범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시급한 현안인 과밀 수용과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여섯 곳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홉 곳을 증축·개축 중에 있습니다. 교정시설 신축 등을 통해 직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복지 효율화를 이뤄내고 수용자는 보다 넓은 수용공간에서 교정·교화 될 수 있도록 수용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Ⅳ

저는 작년 2월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해야 함을 각인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법집행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정 조직이 보여준 공정하고 절제된 법집행을 기반으로, 강한 역동성과 안정적인 교정 정책을 추진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교정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신뢰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늘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뜻깊게 기념하며,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1만 7천여 명의 교정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5천 3백여 명의 교정위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사회 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법무부는 교정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6만 3천여 명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확립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Ⅴ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주신, 이태희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70대 법무부장관 이임식

Ⅰ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 준 법무부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법무부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 가족 여러분 !

저는 지난 1년 3개월여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검찰·범정·교정이 힘을 합하여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범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선도 정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로 맞춤형 피해자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습·먹튀공탁'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과 경제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한 '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탑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자체,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외국인 청소년에게 취업·정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등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체계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제소송·분쟁에서 '정부의 로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률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는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입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전·신축과 함께, 과밀화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처우개선 등 전문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검찰 결정문 작성 실무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일상에 깊이 침투한 마약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나, 시간적, 상황적 한계로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법무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 적용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Ⅳ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작년 2월 20일, 저는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에 저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곳 법무부에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법무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개회식

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김석우입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국제사법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Ⅱ

오늘날 국제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협력 체계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힘의 논리가 아닌,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통한 국가 간의 연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사법이 지닌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는, 국제가족법에서부터, 민사절차법, 디지털토큰 및 탄소시장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심도있게 아우르는 훌륭한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Ⅲ

대한민국은 국제사법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협약, 아동탈취협약, 송달협약 등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여러 핵심 협약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법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규범 성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사법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Ⅳ

국제사법은 국가들이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법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 석 우

• 제71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Ⅰ

법무 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장관 공백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법무부를 지켜준 법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법무 가족 여러분을 뵈니 든든한 마음과 함께, 제 평소 소신과 같이 오직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Ⅱ

법무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복원, 권력기관 정상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등 시대적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의 지향점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입니다.

법무행정의 모든 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Ⅲ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조직화·국제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은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근절해야 합니다.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냅시다.

더 나아가 신뢰 사회 구축에 일조해야 합니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종범죄 수법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재활,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교화와 출입국·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AI를 도입하고 'AI 법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 예정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범죄피해자 및 법률구조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 상처 입은 분들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과밀수용 해소, 교정·교화 실효성 제고,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아내어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 검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에 힘씁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경제·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송무·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국제 법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보호합시다.

Ⅳ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입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연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장관에 취임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법무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밝혔던 만큼 앞으로도, 범죄 단속과 예방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범죄예방활동에 매진해 주신 여러분을 뵈니 든든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든든한 국가의 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전국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각 지역연합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예로운 상을 받는 수상자를 축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신정택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II

여러분은 지난 1년 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고, 우리나라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바둑프로기사, 바둑학교 교사를 연계하여 바둑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남동부지역협의회, 대전시축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축구 교실을 개설한 대전지역협의회, 범죄의 심각성과 인권을 생각할 기회를 주는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서산지역협의회 등 전국 각지의 지역협의회는 다양한 체험과 준법교육이 연계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의성지역협의회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도와 불에 탄 주택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피해 복구 작업을 해 주셨고, 안동지역협의회에서는 화재를 피해 다급히 대피한 환자들이 다시 안심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요양시설의 그을음과 분진을 닦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지역협의회에서는 멀리 떨어진 의성·안동지역협의회까지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마음과 성금을 전달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님들이 국 각지에서 전개해주신 범죄예방활동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작년의 소년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6.7% 감소한 사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러분!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도의 10대 마약사범은 전년도에 비해 207%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과 일상적인 SNS의 사용으로 해 청소년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Ⅳ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범죄로부터 피해당하지 않을 국민의 권리는 범죄예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하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범죄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아, 여러분의 활동과 보폭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보람차게 범죄예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37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I

제37기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예비법조인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가운데 지난 두 달간 군사 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느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법무부와 법조계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II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법무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국가의 발전과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따듯하고 실력 있는 법률가가 되기 바랍니다.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특히 경제적 빈곤이나 장애 등으로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법률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연민과 동정에 그치지 말고 법률가로서 치밀하게 탐구하여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둘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 정체되는 대신 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다운 자세'를 견지해 주십시오

또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법무부 역시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리터러시' 즉, 인공지능 활용역량이 어느 누구보다 높은 세대로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십시오.

이는 '혁신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법률가로서 자기 계발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정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 또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실력이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법률가로서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국가정책 수립, 국가송무와 국제분쟁 분야에 투입하여 국익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Ⅲ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

1995년 도입된 공익법무관 제도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2,500명의 공익법무관들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회의 법률 복지와 법무행정 발전에 헌신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며 법치주의 확립의 초석이 되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임용을 축하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법조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 새출발을 하는, 마흔 아홉명의 신임검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관식입니다.

신임검사 여러분들의 패기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검찰과 국가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검사 선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공무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펜과 업무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초선'은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할 수 있듯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검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검사의 직에 나서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Ⅲ

우선, '인권보호'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검찰제도 역시 기소와 재판을 함께 담당하였던 규문주의 사법제도 하에서 벌어진 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기소,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균형잡힌 검찰권 행사를 통해 준사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절로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국민들 앞에 더욱 당당한 검사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마약범죄, 산업재해범죄 등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뢰 사회 구축에도 일조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잡·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설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이 기대하는 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생각하면서, 검사는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 한 명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 하나가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검사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검사에게는 한 건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사건관계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켜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사건관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사건관계인, 상급자, 동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야말로 검찰을 국민과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Ⅳ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임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검사 임관을 축하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Ⅰ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 김 미 백범 김구 기념관 관장님을 비롯한 외빈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장소에서 이런 영예로운 행사를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생전에 독립된 조국의 문화 융성을 소원하셨지요. 경제와 문화의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하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도 활짝 웃으며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Ⅱ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상해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신 '박찬익' 선생을 비롯하여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이명순' 선생, '이여일' 선생, '허주경' 선생, '이여송' 선생

목숨을 걸고 일제에 무장 투쟁했던 '차도선' 선생, '최문무' 선생, '최찬식' 선생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항일사상을 고취했던 '전일' 선생, '박진성' 선생, '박용식' 선생, '윤낙세' 선생, '신홍균' 선생, '강대년' 선생, '정갑이' 선생

멀리 미국과 쿠바에서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신을노' 선생, '이승준' 선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Ⅲ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의 후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일제에 맞서 광복을 이루어 냈고, 이후 80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의 강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Ⅳ

법무부는 지금까지 1,394(천 삼백 아흔 네)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 영웅들의 후손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을 찾아내어 선열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발전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Ⅰ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그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Ⅱ

교정가족 여러분!

80년 교정의 역사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며 수용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 속에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성장하였고, 사회 안전망의 최일선에서 수용자 재사회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정행정은 국민의 신뢰 속에 한 걸음씩 발전해 왔고,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교정환경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정기법으로 미래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과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공동체 회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새 정부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정의와 신뢰가 회복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교정,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범방지책 등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선진 교정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Ⅲ

전국의 교도관 여러분!

저는 법조계와 국회에서 일하면서 교정행정의 중요성, 교도관들의 노고와 애환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관들의 처우개선, 그에 걸맞는 예우 등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해 여러분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교정 정책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약사범, 정신질환, 이상동기범죄와 같이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하여 확대하고, AI 등 기술을 접목한 체계적인 수용관리로 보다 실효적인 교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안정화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 적응 기능을 증진하고 사회봉사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 신뢰 교정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Ⅳ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곧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80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내일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며, 그 길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한곳으로 모으고, 함께 소통하며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정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또한 K-교정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80주년 교정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을 깨우며 현장을 지키는 교정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식

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과 단풍이 어우러진 10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운시트럴(UNCITRAL)과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아이씨씨(ICC)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국제중재는 지난 수십 년간 중립성, 신속성, 효율성을 앞세워 전통적인 소송 절차를 대체하는 국제상사 분쟁의 주된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중재 절차가 미래에도 주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중재 본연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중재기구인 ICC에 따르면, 국제중재의 평균 소요 기간이 약 22개월에 이르는 등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중재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질적 성장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중재의 우수성 구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요 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며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모색하는 가운데, 오늘의 논의가 “중재의 우수성”을 널리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Ⅲ

법무부는 AI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중재 및 ODR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중재 제도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중재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자 하며, ADR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엔(UN)에서 조정에 대해 채택된 유일한 협약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관련 법률안이 조만간 완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아시아 대륙법 써밋(Summit)의

개최를 지원하며 역내 협력 기반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재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중재의 위상과 역할도 시대적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중재가 산업별·분야별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첨단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교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거듭날 수 있는 원칙과 가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도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개회식

Ⅰ

친애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과, 아·태 지역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오늘날 세계는 복합적 갈등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분쟁, 사회적 분열,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각국의 사회 안정과 치안, 그리고 교정행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국가적 범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위협이며, 이에 따라 교정행정의 역할은 단순한 수용과 관리에서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 사회적 회복'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국제 이송과 재사회화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교정행정은 단순한 수용과 처벌을 넘어, 재범을 예방하며, '회복과 연결'을 통해 수용자가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공공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Ⅲ

호주는 혁신적인 회복 중심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로키어 벨리 교정기관은 교육과 직업훈련, 정신 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재활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원주민 남성을 위한 문화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 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교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옐로리본 프로젝트는 출소자의 재취업과 사회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일본의 경우 교도소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활용하는 '집행 유예형 형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동시에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은 회복과 연결 중심의 접근이 현대 교정행정의 핵심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Ⅳ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회복 중심의 교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 학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출소자에게는 취업·주거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재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처우와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화·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교정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에게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 중심의 회복과 사회 복귀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 등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계호 취약 수용자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교정 공무원이 교화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Ⅴ

그러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과 인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제43차 회의는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교정행정이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교정행정이 한층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Ⅵ

친애하는 대표단 여러분, 아·태 회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교정행정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협력의 플랫폼입니다.

이번 제43차 회의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국의 경험과 통찰을 모아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의 개회를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범죄피해자분들과 가족 여러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포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올해로 어느덧 열여덟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인권대회는 처음으로 신설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에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법률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전국 1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치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등 다양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건에서도 우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이를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활약과 노력 덕분에,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한 많은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Ⅲ

법무부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 예산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야간·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범죄피해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과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Ⅳ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주무부처로서 자국민 범죄피해자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법무부와 함께 지금처럼 변함없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과 함께 축사를 맡아주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고, 국민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국면도 다양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법부가 기울여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Ⅲ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사법 참여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오늘부터 논의될 주제들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루어지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여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Ⅳ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제 4 절 |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熙)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7.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8.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 2021. 1. 27.	
68 대	박범계(朴範界)	2021. 1. 28. ~ 2022. 5. 9.	
69 대	한동훈(韓東勳)	2022. 5. 17. ~ 2023. 12. 20.	
70 대	박성재(朴性載)	2024. 2. 20. ~ 2025. 6. 4.	
71 대	정성호(鄭成湖)	2025. 7. 19.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1988 ~)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熙)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2021. 3. 4.	
44 대	김 오 수(金 𠂤 五洙)	2021. 6. 1. ~ 2022. 5. 6.	
45 대	이원석(李沅石)	2022. 9. 16. ~ 2024. 9. 15.	
46 대	심우정(沈雨廷)	2024. 9. 16. ~ 2025. 7. 3.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洿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2021. 6. 3.	
64 대	강성국(姜聲國)	2021. 7. 14. ~ 2022. 5. 12.	
65 대	이노공(李魯公)	2022. 5. 13. ~ 2024. 1. 18.	
66 대	심우정(沈雨廷)	2024. 1. 19. ~ 2024. 9. 15.	
67 대	김석우(金錫佑)	2024. 9. 23. ~ 2025. 6. 29.	
68 대	이진수(李鎭琇)	2025. 6. 30.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2021. 6. 10.	
52 대	박성진(朴成鎭)	2021. 6. 11. ~ 2022. 5. 22.	
53 대	이원석(李沅石)	2022. 5. 23. ~ 2022. 9. 15.	
54 대	심우정(沈雨廷)	2023. 9. 7. ~ 2024. 1. 18.	
55 대	신자용(申子容)	2024. 1. 24. ~ 2024. 9. 22.	
56 대	이진동(李進東)	2024. 9. 23. ~ 2025. 7. 3.	
57 대	노만석(盧萬錫)	2025. 7. 4. ~ 2025. 11. 13.	
58 대	구자현(具滋賢)	2025. 11. 15.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개편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2021. 6. 10.	
51 대	주영환(朱映奐)	2021. 6. 11. ~ 2022. 5. 22.	
52 대	권순정(權純汀)	2022. 5. 23. ~ 2024. 1. 23.	
53 대	변필건(卞弼建)	2024. 5. 16. ~ 2025. 7. 3.	
54 대	최지석(崔智錫)	2025. 7. 4.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2021. 7. 13.	
53 대	이상갑(李尙甲)	2021. 8. 6. ~ 2022. 9. 8.	
54 대	김석우(金錫佑)	2023. 2. 6. ~ 2023. 9. 6.	
55 대	구상엽(丘尙燁)	2023. 9. 7. ~ 2025. 2. 3.	
56 대	박성민(朴性玟)	2025. 7. 30.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2021. 2. 8.	
59 대	이정수(李正洙)	2021. 2. 9. ~ 2021. 6. 10.	
60 대	구자현(具滋賢)	2021. 6. 11. ~ 2022. 5. 22.	
61 대	신자용(申子容)	2022. 5. 23. ~ 2024. 1. 23.	
62 대	권순정(權純汀)	2024. 1. 24. ~ 2024. 5. 15.	
63 대	송 강(宋 岡)	2024. 5. 16. ~ 2025. 7. 3.	
64 대	성상헌(成尙憲)	2025. 7. 4.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6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2021. 6. 29.	
13 대	윤웅장(尹雄章)	2021. 8. 6. ~ 2024. 7. 31.	
14 대	이영면(李泳冕)	2024. 8. 1.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 방 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 방 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2021. 8. 5.	개 방 직
14 대	위은진(魏銀鎭)	2022. 1. 3. ~ 2023. 2. 28.	개 방 직
15 대	승재현(昇宰賢)	2023. 10. 5. ~	

• 국제법무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정홍식(鄭洪式)	2024. 2. 26. ~	2023. 8. 8. 신설 개 방 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 방 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 방 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 방 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 방 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 방 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2024. 12. 10.	개 방 직
19 대	민경호(閔庚鎬)	2024. 12. 11. ~ 2025. 5. 18.	직무대리
20 대	김도완(金度完)	2025. 5. 19. ~ 2025. 7. 28.	개 방 직
21 대	최지석(崔智錫)	2025. 7. 29. ~ 2025. 8. 27.	직무대리
22 대	안광현(安匡鉉)	2025. 8. 28. ~	직무대리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2021. 6. 30.	
9 대	유병철(柳炳喆)	2021. 7. 1. ~ 2022. 9. 1.	
10 대	신용해(愼鏞海)	2022. 9. 1. ~ 2025. 5. 28.	
11 대	이홍연(李泓沇)	2025. 11. 8.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郞)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급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2024. 8. 15.	
11 대	배상업(裵祥業)	2024. 8. 16. ~ 2025. 5. 1.	
12 대	차용호(車勇昊)	2025. 11. 8. ~	

• 인사정보관리단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행열(朴幸烈)	2022. 6. 7. ~ 2025. 6. 10.	2022. 6. 7. 신설 2025. 6.10. 폐지

제 5 절 |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1. 본 부(5급 이상)

(2025. 12. 31. 기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정성호**	**2025. 7. 19.**
차 관	**이진수**	**2025. 6. 30.**
감 찰 관(직무대리)	**안광현**	**2025. 8. 28.**
감찰담당관	안광현	2025. 8. 27.
검 사	정정욱	2025. 2. 3.
검 사	현동길	2025. 8. 27.
검찰사무관	최병휘	2022. 7. 18.
〃	정재훈	2024. 1. 29.
〃	조성우	2025. 2. 12.
교 정 관	최정필	2025. 2. 24.
보호사무관	오남주	2025. 3. 31.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관영	2022. 11. 14.
감사담당관	천정훈	2022. 7. 1.
서 기 관	정희동	2025. 2. 24.
〃	이경민	2025. 3. 31.
〃	유재륜	2025. 9. 29.
행정사무관	김용갑	2023. 2. 16.
〃	김경모	2023. 2. 16.
〃	장윤석	2023. 4. 3.
〃	문성호	2025. 9. 29.
시설사무관	최대원	2023. 7. 10.
운영지원과장	조상민	2025. 9. 24.
서 기 관	홍주영	2025. 9. 29.
〃	박상열	2025. 9. 29.
행정사무관	이두형	2023. 2. 16.
〃	이병흔	2023. 7. 10.
〃	이정환	2024. 7. 10.
시설사무관	최명근	2024. 5. 7.
〃	이영규	2024. 5. 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교 정 관	박찬일	2025. 12. 1.
기록연구관	임진수	2024. 3. 18.
대 변 인	김태훈	2025. 8. 27.
부대변인	김재우	2025. 8. 27.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홍보기획팀장	이상우	2024. 3. 4.
행정사무관	이동훈	2024. 7. 1.
교 정 관	이성수	2022. 9. 26.
보호사무관	이진영	2024. 1. 22.
출입국관리사무관	황규택	2025. 7. 21.
전문임기제 나급	양지훈	2025. 9. 30.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2025. 7. 4.**
정책기획관	최정석	2020. 7. 1.
검 사	김예은	2024. 2. 5.
검 사	천재영	2025. 2. 3.
행정사무관	임미랑	2025. 9. 29.
비상안전기획관	류길섭	2024. 3. 11.
행정사무관	하 헌	2022. 9. 19.
정책기획단장	서효원	2025. 8. 27.
검 사	홍지예	2025. 8. 27.
〃	김도희	2025. 8. 27.
검찰사무관	나탁균	2025. 2. 12.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	2022. 7. 1.
서 기 관	김범영	2024. 1. 22.
〃	김승권	2024. 7. 1.
행정사무관	홍찬주	2025. 9. 29.
〃	이동주	2025. 9. 29.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서 기 관	이준석	2025. 9. 2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행 정 사 무 관	손장혁	2025. 5. 7.
〃	유창환	2025. 12. 16.
시 설 담 당 관	강동헌	2022. 9. 26.
과 학 기 술 서 기 관	엄동철	2024. 5. 7.
시 설 사 무 관	김진국	2024. 5. 7.
〃	유영종	2022. 9. 26.
〃	박찬웅	2023. 3. 27.
공 업 사 무 관	손재호	2025. 10. 1.
보 호 사 무 관	정 영	2024. 1. 22.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조용찬	2022. 9. 19.
과 학 기 술 서 기 관	김시은	2024. 5. 1.
〃	서종석	2025. 4. 7.
전 산 사 무 관	이수천	2024. 1. 1.
〃	이미애	2024. 5. 1.
〃	박상영	2022. 10. 31.
〃	노원섭	2024. 11. 4.
〃	이연경	2025. 3. 17.
〃	권만희	2025. 4. 7.
〃	정상규	2025. 7. 7.
정책성과관리팀장	이현정	2025. 7. 11.
행 정 사 무 관	장윤정	2025. 9. 29.
〃	유환희	2023. 7. 10.
행 복 민 원 센 터 장	이영일	2023. 2. 1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인자	2024. 8. 26.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24. 7. 1.
〃	이준서	2023. 2. 1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2025. 8. 27.
검 사	박영우	2025. 8. 27.
전 산 사 무 관	오은정	2021. 3. 2.
〃	윤정희	2021. 8. 9.
〃	황호성	2024. 8. 12.
보 호 사 무 관	명선희	2024. 1. 16.
경 정	황인재	2025. 3. 14.
법 무 실 장	**박성민**	**2025. 7. 30.**
법 무 심 의 관	조아라	2025. 8. 27.
검 사	김영민	2023. 9. 25.
〃	박준석	2023. 9. 25.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이정우	2025. 8. 27.
〃	김민희	2025. 8. 27.
서기관(일반임기제)	김다혜	2023. 7. 3.
행 정 사 무 관	김해경	2025. 5. 7.
송 무 심 의 관	임길섭	2025. 8. 27.
법 무 과 장	정우석	2025. 8. 27.
검 사	김유완	2024. 2. 5.
서기관(일반임기제)	김신우	2024. 4. 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경미	2025. 10. 13.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승재	2025. 10. 13.
검 찰 사 무 관	임동석	2025. 10. 13.
검 찰 사 무 관	이승민	2025. 2. 12.
국 가 소 송 과 장	국 진	2025. 8. 27.
검 찰 사 무 관	이동희	2025. 10. 13.
행 정 사 무 관	강형광	2021. 4. 2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이선민	2022. 9. 5.
〃	이현진	2023. 7. 5.
〃	정유경	2024. 7. 16.
〃	김민수	2025. 8. 1.
행 정 소 송 과 장	최성수	2025. 8. 27.
검 사	김영준	2022. 7. 4.
〃	이희욱	2025. 8. 27.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조병기	2025. 10. 13.
검 찰 사 무 관	안정진	2024. 7. 1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민식	2023. 3. 6.
〃	최정규	2023. 10. 30.
〃	김예진	2025. 11. 3.
통 일 법 무 과 장	이윤구	2025. 8. 27.
검 사	심재신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	김태희	2024. 10. 30.
행 정 사 무 관	홍진희	2025. 9. 29.
검 찰 사 무 관	이정열	2024. 7. 15.
〃	김도언	2024. 7. 15.
상 사 법 무 과 장	조재철	2025. 11. 5.
검 사	박광호	2023. 2. 6.
〃	박혜진	2025. 8. 2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기관(일반임기제)	전혜영	2025. 5. 12.
행정사무관	김영수	2023. 2. 1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23. 12. 14.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2025. 8. 27.
검사	정주희	2025. 2. 3.
서기관	이승항	2025. 9. 29.
검찰사무관	김대경	2025. 2. 12.
행정사무관	김유호	2023. 2. 16.
〃	김현우	2024. 7. 1.
〃	권호연	2025. 9. 29.
검찰국장	**성상헌**	**2025. 7. 4.**
사법연수원부원장	(공석)	
검찰과장	김수홍	2025. 7. 4.
검사	오대건	2025. 8. 27.
〃	안홍균	2023. 2. 6.
〃	김민수	2024. 2. 5.
〃	홍석원	2025. 2. 3.
검찰수사서기관	이재진	2024. 1. 29.
〃	신동규	2025. 10. 13.
〃	김정호	2024. 7. 15.
검찰사무관	정근용	2023. 7. 19.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2025. 8. 27.
검사	곽중욱	2024. 9. 2.
〃	이윤석	2025. 2. 3.
검찰수사서기관	김호진	2024. 7. 15.
검찰사무관	김항수	2023. 1. 30.
〃	홍상채	2024. 7. 15.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2025. 8. 27.
검사	이웅희	2024. 9. 2.
〃	이수영	2025. 2. 3.
검찰사무관	김충범	2023. 7. 19.
〃	이진욱	2025. 10. 13.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2025. 8. 27.
검사	전성환	2024. 2. 5.
〃	황익진	2025. 2. 3.
검찰사무관	심주용	2023. 7. 19.
〃	조운형	2025. 10. 1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2025. 8. 27.
검사	남소정	2024. 2. 5.
〃	김동직	2025. 2. 3.
검찰사무관	김봉수	2023. 7. 19.
〃	이정민	2024. 1. 29.
〃	현용철	2025. 12. 4.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2024. 8. 1.**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중일	2024. 3. 4.
서기관	이경주	2022. 1. 23.
보호사무관	전광수	2024. 1. 22.
〃	배성준	2023. 1. 16.
〃	서용승	2023. 1. 16.
〃	허강무	2024. 7. 22.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2025. 3. 31.
보호사무관	최윤경	2025. 3. 31.
〃	김경환	2024. 1. 22.
〃	손태희	2025. 3. 31.
행정사무관	홍민표	2025. 1. 1.
〃	홍송이	2024. 7. 1.
치료처우과장	조연호	2025. 1. 20.
서기관	권태호	2024. 7. 22.
보호사무관	반기리	2023. 1. 16.
보호사무관	김정현	2023. 1. 16.
검찰사무관	정대일	2025. 10. 13.
보호관찰과장	이정민	2024. 3. 4.
서기관	김구회	2024. 1. 22.
보호사무관	이상기	2022. 1. 24.
〃	배현정	2024. 1. 22.
〃	임익삼	2024. 7. 22.
소년보호과장	오상섭	2025. 3. 31.
서기관	안규용	2025. 3. 31.
행정사무관	황규성	2023. 2. 16.
보호사무관	김지호	2025. 3. 31.
〃	남영일	2024. 7. 22.
〃	서석교	2025. 3. 31.
전자감독과장	김근한	2025. 2. 17.
보호사무관	박지훈	2023. 7. 2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김현옥	2024. 1. 22.
〃	최성우	2025. 3. 25.
소년범죄예방팀장	김동하	2024. 1. 22.
보 호 사 무 관	이경희	2024. 1. 22.
〃	정경아	2024. 7. 22.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김충섭	2025. 3. 31.
보 호 사 무 관	서상목	2024. 7. 22.
〃	김병철	2024. 7. 22.
〃	선종근	2025. 3. 31.
인 권 국 장	**승재현**	**2023. 10. 5.**
인권정책과장	노일석	2025. 2. 17.
서 기 관	차유진	2025. 9. 29.
행 정 사 무 관	전현신	2023. 1. 19.
〃	장현주	2023. 5. 30.
검 찰 사 무 관	이진환	2025. 2. 12.
행 정 사 무 관	신민철	2024. 7. 1.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2025. 8. 27.
검 사	강민정	2025. 2. 3.
서 기 관	서혜주	2025. 1. 1.
검찰수사서기관	이진선	2024. 1. 29.
검 찰 사 무 관	이병주	2025. 2. 12.
행 정 사 무 관	박지수	2025. 5. 7.
〃	김영남	2024. 7. 1.
인권조사과장	서상목	2025. 8. 27.
검 사	김보미	2024. 2. 5.
검찰수사서기관	권주헌	2024. 7. 15.
검 찰 사 무 관	박정순	2022. 7. 18.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2025 8. 27.
검 찰 사 무 관	박승혁	2025. 2. 12.
행 정 사 무 관	이우람	2024. 1. 1.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2025. 10. 13.
검 찰 사 무 관	여유진	2025. 10. 13.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2024. 2. 26.**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2025. 8. 27.
검 사	박재성	2024. 2. 5.
행 정 사 무 관	박노화	2025. 9. 2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박진아	2024. 10. 1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2025. 8. 27.
검 사	김준성	2025. 8. 27.
검 사	박제연	2025. 2. 3.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박다혜	2023. 9.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의석	2024. 6. 14.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2025. 8. 27.
검 사	민경원	2024. 2. 5.
검 사	양준열	2023. 2. 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박소연	2025. 3. 7.
〃	김혜연	2025. 11. 19.
〃	송홍석	2025. 11. 19.
교 정 본 부 장	**이홍연**	**2025. 11. 8.**
교정정책단장	공 석	
보안정책단장	김문태	2025. 2. 3.
교정기획과장	양원동	2025. 2. 3.
서 기 관	임종오	2025. 12. 1.
교 정 관	허길수	2025. 12. 1.
〃	김종원	2025. 12. 1.
〃	양성필	2025. 2. 24.
〃	김상원	2025. 2. 24.
〃	황율민	2024. 7. 15.
〃	이호성	2024. 7. 15.
직업훈련과장	서호성	2024. 1. 22.
교 정 관	정세락	2024. 7. 15.
〃	서호성	2024. 6. 3.
행 정 사 무 관	김정원	2025. 9. 29.
사회복귀과장	허만혁	2024. 6. 3.
교 정 관	김은미	2025. 12. 1.
〃	서기동	2024. 1. 22.
〃	문우식	2024. 1. 22.
복 지 과 장	주기남	2025. 12. 1.
교 정 관	이동근	2024. 1. 22.
행 정 사 무 관	김희종	2024. 7. 1.
시 설 사 무 관	정민수	2024. 5. 7.
특별점검팀장	조영혁	2025. 2. 24.
교 정 관	우치동	2025. 2. 24.
〃	최정우	2024. 6.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오이택	2025. 12. 1.
보 안 과 장	정 진	2025. 2. 3.
서 기 관	오원종	2025. 12. 1.
서 기 관	이영준	2025. 12. 1.
교 정 관	최창민	2025. 12. 1.
분 류 심 사 과 장	이도곤	2025. 12. 1.
서 기 관	이민희	2025. 2. 24.
교 정 관	장규순	2025. 2. 24.
의 료 과 장	박기주	2025. 12. 1.
교 정 관	박병인	2024. 7. 15.
〃	김재형	2024. 7. 15.
심 리 치 료 과 장	이정용	2025. 2. 24.
교 정 관	한성률	2024. 7. 15.
〃	백학훈	2024. 7. 15.
행 정 사 무 관	김지연	2024. 4. 1.
마약사범재활팀장	김진아	2023. 6. 12.
서 기 관	박경식	2025. 12. 1.
교 정 관	강등원	2024. 7. 15.
〃	이승룡	2025. 12. 1.
교정정보빅데이터팀장	김학봉	2025. 2. 3.
교 정 관	김동욱	2024. 6. 3.
교정대외협력단장	승영근	2025. 6. 25.
서 기 관	최소연	2025. 12. 1.
교 정 관	정진영	2025. 12.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2025. 11. 8.**
출 입 국 정 책 단 장	김정도	20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 석	
출 입 국 기 획 과 장	이종철	2025. 12. 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주호	2024. 1. 15.
〃	신하균	2022. 10. 21.
〃	임연주	2023. 2. 8.
〃	최준호	2023. 2. 8.
〃	옥효재	2022. 1. 24.
출 입 국 심 사 과 장	김태형	2025. 6.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영오	2022. 1. 24.
〃	이상배	2024. 1. 15.
〃	유심희	2025. 1. 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체 류 관 리 과 장	박주현	2025. 1. 6.
서 기 관	이향숙	2024.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홍인표	2025. 7. 21.
〃	김종승	2024. 7. 15.
〃	안재필	2025. 1. 6.
〃	김진겸	2025. 9. 8.
이 민 조 사 과 장	유성오	2024. 1. 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성용	2025. 7. 21.
〃	최연준	2024. 11. 18.
〃	김택균	2024. 1. 15.
이 민 정 보 과 장	윤철민	2023. 8. 2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서제선	2022. 1. 24.
〃	권심택	2025. 7. 21.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김병철	2025. 1. 6.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송병희	2023. 6. 8.
외 국 인 정 책 과 장	이종철	2024. 1. 22.
서 기 관	이한식	2024. 7.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전강섭	2024. 1. 15.
〃	김은호	2025. 7. 21.
〃	최웅석	2024. 1. 22.
국 적 과 장	장희정	2023. 8. 1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준철	2025. 1. 6.
〃	김용국	2024. 7. 15.
〃	강성진	2024. 1. 15.
이 민 통 합 과 장	최문정	2025. 1. 6.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최준호	2025. 1. 6.
〃	주도현	2024. 7. 15.
〃	박병건	2025. 7. 21.
난 민 정 책 과 장	이정미	2025. 10.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정욱	2022. 1. 24.
〃	최민수	2025. 1. 6.
난 민 심 의 과 장	김재원	2024. 10. 2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배창준	2025. 1. 6.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명훈	2024. 1. 15.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 장			
기 획 부 장	검 사 장	유 광 렬	2025. 07. 29.
용 인 분 원 장	검 사	구 태 연	2025. 08. 27.
연 구 위 원	검 사 장	이 영 림	2025. 07. 29.
	검 사 장	허 정	2025. 07. 29.
	검 사 장	박 영 진	2025. 07. 29.
	검 사 장	박 혁 수	2025. 12. 15.
	검 사 장	김 창 진	2025. 12. 15.
	검 사 장	박 현 철	2025. 12. 15.
	검 사	류 장 만	2014. 04. 28.
	고 위 공 무 원	이 재 유	2024. 08. 16.
	고 위 공 무 원	황 호 윤	2025. 02. 24.
	고 위 공 무 원	손 주 근	2025. 09. 23.
	이 사 관	유 인 규	2025. 07. 07.
검 사 교 수	검 사	이 주 영	2024. 06. 03.
		이 지 은	2025. 08. 27.
		김 태 호	2025. 08. 27.
		강 민 정	2025. 08. 27.
		방 지 형	2025. 08. 27.
		서 민 석	2025. 08. 27.
		박 상 용	2025. 02. 03.
		김 지 연	2025. 08. 27.
		손 수 진	2024. 09. 02.
		송 명 진	2024. 09. 02.
로 스 쿨 검 사 교 수	검 사	임 하 나	2024. 09. 02.
		이 수 진	2024. 09. 02.
		고 유 진	2024. 09. 02.
		허 수 진	2024. 02. 05.
		최 진 혁	2024. 02. 05.
		양 근 욱	2025. 02. 03.
		강 정 욱	2025. 12. 17.
기 획 과 장	검 사	우 만 우	2025. 08. 27.
법 무 교 육 과 장	검 사	황 현 아	2025. 08. 27.
총 무 과 장	서 기 관	심 경 보	2025. 01. 20.
일 반 연 수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 용 덕	2025. 10. 13.
교 정 연 수 과 장	서 기 관	박 정 민	2025. 12. 01.
교 정 훈 련 과 장	서 기 관	김 진 섭	2025. 09. 29.
운 영 지 원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 도 형	2025. 02. 12.
시 설 팀 장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박 주 선	2025. 10. 01.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공 석)	
차 장 검 사	구자현	2025. 11. 15.
기 획 조 정 부 장	차순길	2025. 7. 30.
반 부 패 부 장	주민철	2025. 11. 21.
형 사 부 장	장동철	2025. 7. 30.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2025. 7. 30.
공 공 수 사 부 장	김도완	2025. 7. 30.
공 판 송 무 부 장	차범준	2025. 7. 30.
과 학 수 사 부 장	최영아	2025. 7. 30.
감 찰 부 장	김성동	2025. 5. 19.
대 변 인	이진용	2025. 8. 27.
범 죄 정 보 기 획 관	이 춘	2025. 8. 27.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	2025. 8. 27.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2025. 8. 27.
형사정책담당관	정 현	2025. 8. 27.
인 권 정 책 관	장준호	2025. 8. 27.
인 권 기 획 담 당 관	장은희	2025. 8. 27.
인 권 감 독 담 당 관	박수민	2025. 8. 2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2025. 8. 27.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강용묵	2025. 8. 27.
정 책 기 획 과 장	나하나	2025. 8. 27.
정 보 통 신 과 장	김희영	2025. 8. 27.
반 부 패 기 획 관	장재완	2025. 8. 27.
반 부 패 1 과 장	안동건	2025. 8. 27.
반 부 패 2 과 장	안창주	2025. 8. 27.
반 부 패 3 과 장	김가람	2025. 8. 27.
선 임 연 구 관	임선화	2025. 8. 27.
형 사 1 과 장	박대환	2025. 8. 27.
형 사 2 과 장	김수민	2025. 8. 27.
형 사 3 과 장	김용제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 사 4 과 장	장려미	2025. 8. 27.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2025. 8. 27.
마 약 과 장	전수진	2025. 8. 27.
조 직 범 죄 과 장	천대원	2025. 8. 27.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2025. 8. 27.
공 공 수 사 기 획 관	임삼빈	2025. 8. 27.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2025. 8. 27.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2025. 8. 27.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2025. 8. 27.
공 판 1 과 장	장진성	2025. 8. 27.
공 판 2 과 장	이주희	2025. 8. 27.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2025. 8. 27.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2025. 8. 27.
디 지 털 수 사 과 장	이지영	2025. 8. 27.
사 이 버 수 사 과 장	심형석	2025. 8. 27.
감 찰 1 과 장	주혜진	2025. 8. 27.
감 찰 2 과 장	김은미	2025. 8. 27.
감 찰 3 과 장	이호석	2025. 8. 27.
양 형 정 책 관	유종건	2025. 8. 27.
사 무 국 장	권영준	2025. 9. 29.
운 영 지 원 과 장	설우용	2025. 10. 20.
집 행 과 장	(공 석)	
검 찰 총 장 실	(공 석)	
범죄정보기획관실	안해룡	2025. 2. 12.
반 부 패 기 획 관 실	이규용	2025. 2. 12.
디 지 털 수 사 과	이인수	2020. 2. 10.
법 과 학 분 석 과	이정재	2025. 10. 13.
운 영 지 원 과	변영욱	2024. 7. 15.
운 영 지 원 과	여혜진	2025. 10. 13.
운 영 지 원 과	박두길	2025. 10. 13.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2024. 7. 15.

직 위	성명	발령일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2025. 10. 13.
감찰1과	유정호	2023. 7. 19.
감찰2과	정석현	2024. 1. 29.
비상안전담당관	이영제	2024. 3. 28.
과학기술서기관	원민정	2020. 8. 21.
과학기술서기관	정영민	2024. 7. 1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공석)	
차장검사	정용환	2025. 11. 21.
부장검사	윤병준	2025. 8. 27.
부장검사	박주성	2025. 8. 27.
부장검사	유태석	2025. 8. 27.
부장검사	곽영환	2025. 12. 5.
인권보호관	(공석)	
사무국장	(공석)	
총무과장	강재성	2025. 2. 12.
사건과장	임상업	2025. 2. 12.
관리과장	이철희	2025. 2. 12.
소송사무과장	(공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철우	2025. 11. 21.
차장검사	최재아	2025. 8. 27.
차장검사	장혜영	2025. 8. 27.
차장검사	박준영	2025. 8. 27.
차장검사	이준호	2025. 8. 27.
인권보호관	허지훈	2025. 8. 27.
공보담당관	권내건	2025. 8. 27.
기획담당관	정영서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서경원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장준호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신재홍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최재만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이정화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김지영	2025. 8. 27.
형사제6부장검사	이시전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7부장검사	최태은	2025. 8. 27.
형사제8부장검사	손상희	2025. 8. 27.
형사제9부장검사	김정옥	2025. 8. 27.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용태호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검사	박은혜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검사	정가진	2025. 8. 27.
약식부장검사	김희영	2025. 8. 27.
공판제1부장검사	김지용	2025. 8. 27.
공판제2부장검사	정희선	2025. 8. 27.
공판제3부장검사	윤원일	2025. 8. 27.
공판제4부장검사	정대희	2025. 8. 27.
공판제5부장검사	박경택	2025. 8. 27.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이병주	2025. 8. 27.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송봉준	2025. 8. 27.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윤수정	2025. 8. 27.
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김지언	2025. 8. 27.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김윤용	2025. 8. 27.
중요범죄조사부장검사	소창범	2025. 8. 27.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이희찬	2025. 8. 27.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김봉진	2025. 8. 27.
반부패수사제3부장검사	한문혁	2025. 8. 27.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이태순	2025. 8. 27.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	나희석	2025. 8. 27.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공석)	
사무국장	(공석)	
총무과장	이승희	2024. 7. 15.
사건과장	박민자	2025. 2. 12.
집행제1과장	허종욱	2025. 10. 13.
집행제2과장	김원석	2024. 7. 15.
기록관리과장	유영걸	2025. 2. 12.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2025. 10. 13.
피해자지원과장	고영록	2025. 2. 12.
공공수사지원과장	(공석)	
수사제1과장	정관영	2024. 7. 15.

직 위	성명	발령일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2025. 10. 13.
수사제2과장	박남규	2024. 7. 15.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2025. 10. 13.
조사과장	최제웅	2025. 10. 13.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2025. 10. 13.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2025. 10. 13.
공판과장	이장호	2025. 2. 12.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2024. 7. 15.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2024. 1. 29.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2024. 7. 15.
검사직무대리	정태규	2025. 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은정	2025. 7. 4.
차장검사	안성희	2025. 8. 27.
인권보호관	허성환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황성민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최수봉	2025. 6. 2.
형사제3부장검사	최용락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이유현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정지영	2025. 8. 27.
형사제6부장검사	최재순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박지나	2025. 8. 27.
사이버범죄수사부장검사	정우준	2025. 8. 27.
공판부장검사	최혜경	2025. 8. 27.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장	김보성	2025. 8. 27.
사무국장	오은택	2025. 2. 12.
총무과장	양기용	2025. 2. 12.
사건과장	정유진	2025. 2. 12.
집행과장	고영호	2025. 10. 13.
공판과장	이재곤	2025. 2. 12.
조사과장	조광훈	2025. 2. 12.
수사과장	이재수	2025. 2. 12.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2025. 10. 13.
검사직무대리	(공 석)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태훈	2025. 7. 4.
제1차장검사	김남훈	2025. 8. 27.
제2차장검사	박진성	2025. 8. 27.
인권보호관	최명규	2025. 9. 2.
인권보호부장검사	김종필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송정은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최종필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이윤희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곽금희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류주태	2025. 8. 27.
형사제6부장검사	이경민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최희정	2025. 8. 27.
공판부장검사	장유강	2025. 8. 27.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2025. 8. 27.
금융조사1부장검사	임세진	2025. 7. 4.
금융조사2부장검사	김정환	2025. 8. 27.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이상혁	2025. 8. 27.
사무국장	조현철	2025. 2. 12.
총무과장	최호준	2025. 10. 13.
사건과장	박광수	2024. 7. 15.
집행과장	최성규	2025. 10. 13.
조사과장	조성길	2025. 10. 13.
수사과장	(공 석)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2025. 10. 13.
공판과장	오충훈	2025. 10. 13.
검사직무대리	박상우	2024. 1. 29.
검사직무대리	박상제	2025. 8.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2025. 7. 30.
차장검사	이정배	2025. 8. 27.
형사1부장검사	김은하	2025. 8. 27.
형사2부장검사	유정현	2025. 8. 27.
형사3부장검사	장진영	2025. 8. 27.
형사4부장검사	곽계령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5부장검사	정선제	2025. 8. 27.
조세범죄수사부장검사	이태협	2025. 8. 27.
공판부장검사	전세정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정수정	2025. 8. 27.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국 원	2025. 8. 27.
사무국장	이상남	2024. 7. 15.
총무과장	박정호	2025. 2. 12.
사건과장	신현태	2025. 2. 12.
집행과장	김수연	2025. 10. 13.
조사과장	임종철	2025. 2. 12.
수사과장	윤성훈	2025. 2. 12.
공판과장	심창식	2025. 10. 13.
검사직무대리	최형수	2025. 2. 12.
검사직무대리	이진숙	2025. 2.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임승철	2025. 7. 30.
차장검사	권성희	2025. 8. 27.
인권보호관	최준호	2025. 8. 27.
형사1부장검사	원신혜	2025. 8. 27.
형사2부장검사	김주현	2025. 8. 27.
형사3부장검사	박상범	2025. 8. 27.
형사4부장검사	송인호	2025. 8. 27.
형사5부장검사	김진혁	2025. 8. 27.
공판부장검사	강은선	2025. 8. 27.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검사	변진환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주희	2025. 8. 27.
사무국장	(공 석)	
총무과장	조경익	2025. 2. 12.
사건과장	최정인	2025. 2. 12.
집행과장	강윤정	2024. 7. 15.
조사과장	이동영	2024. 7. 15.
수사과장	배한수	2025. 10. 13.
공판과장	길용철	2025. 10. 13.
검사직무대리	한일철	2025. 2. 12.
(의정부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이만흠	2025. 7. 30.
차장검사	김해경	2025. 8. 27.
인권보호관	임유경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이정민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영주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구민기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윤인식	2025. 8. 27.
환경범죄조사부장검사	이준희	2025. 8. 27.
사무국장	김봉석	2025. 2. 12.
총무과장	조수희	2024. 1. 29.
사건과장	임재홍	2025. 10. 13.
집행과장	유인진	2024. 7. 15.
수사과장	정한석	2025. 10. 13.
공판송무과장	허태봉	2025. 10. 13.
검사직무대리	이인국	2025. 2. 12.
(고양지청)		
지 청 장	(공 석)	
차장검사	김정국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창희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이대성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김민정	2025. 8. 27.
공판부장검사	구진미	2025. 8. 27.
사무국장	조동규	2025. 2. 12.
총무과장	이보균	2025. 2. 12.
사건과장	조수봉	2025. 2. 12.
집행과장	이인용	2025. 2. 12.
수사과장	김우성	2025. 2. 12.
(남양주지청)		
지 청 장	유옥근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정일권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허정은	2025. 8. 27.
사무과장	김은경	2025. 2. 12.
집행과장	김한섭	2025. 10. 13.
수사과장	김주연	2025. 10. 13.
(인천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박영빈	2025. 7. 30.
제 1 차 장 검 사	이정렬	2025. 8. 27.
제 2 차 장 검 사	손상욱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최 혁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오미경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이동현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박종선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정영주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김병철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정미란	2025. 8. 27.
형사제6부장검사	인 훈	2025. 8. 27.
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이승희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정화	2025. 8. 27.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	2025. 8. 27.
공판송무1부장검사	왕선주	2025. 8. 27.
공판송무2부장검사	김민정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고익찬	2024. 1. 29.
사 건 과 장	유혜원	2025. 10. 13.
집 행 과 장	(공 석)	
조 사 과 장	이형근	2024. 7. 15.
수 사 과 장	윤대규	2024. 7. 15.
마 약 수 사 과 장	(공 석)	
공 판 송 무 과 장	이기용	2024. 1. 29.
검 사 직 무 대 리	김형국	2025. 10. 13.
검 사 직 무 대 리	김중호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정준성	2025. 2. 12.
(부 천 지 청)		
지 청 장	(공 석)	
차 장 검 사	홍용화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여경진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남대주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유지연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황윤재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배은호	2025. 12. 3.
총 무 과 장	김지홍	2025. 6. 23.
사 건 과 장	(공 석)	
집 행 과 장	왕진용	2025. 10. 13.
수 사 과 장	김효철	2024. 7. 15.
(수 원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이정현	2025. 11. 21.
차 장 검 사	이준범	2025. 7. 30.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이 헌	2025. 2. 12.
사 건 과 장	윤치기	2024. 7. 15.
(수 원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김봉현	2025. 12. 15.
제 1 차 장 검 사	김현아	2025. 8. 27.
제 2 차 장 검 사	이성범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장윤영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신건호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서영배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고은별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허성규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반 지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박인우	2025. 8. 27.
형사제6부장검사	김현우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손명지	2025. 8. 27.
공공수사부장검사	박지훈	2025. 8. 27.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조정호	2025. 8. 27.
공판제1부장검사	단정려	2025. 8. 27.
공판제2부장검사	양익준	2025. 8. 27.
사 무 국 장	유정민	2025. 12. 1.
총 무 과 장	설용원	2025. 10. 13.
사 건 과 장	차현수	2025. 10. 13.
집 행 과 장	오홍석	2025. 2. 12.
조 사 과 장	임상현	2025. 2. 12.
수 사 과 장	이치길	2025. 10. 13.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과 장	장성자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김건수	2025. 10. 1.
검 사 직 무 대 리	박현경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유봉선	2025. 10. 13.
(성 남 지 청)		
지 청 장	임일수	2025. 8. 27.
차 장 검 사	강선주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정재신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최소연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신승호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강명훈	2025. 8. 27.
사 무 국 장	한생일	2025. 1. 1.
총 무 과 장	권혁일	2025. 10. 13.
사 건 과 장	서종철	2025. 10. 13.
집 행 과 장	박창섭	2025. 2. 12.
수 사 과 장	소재열	2025. 10. 13.
검 사 직 무 대 리	박원석	2025. 2. 12.
(여 주 지 청)		
지 청 장	이찬규	2025. 8. 27.
부 장 검 사	최형규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 균	2025. 2. 12.
수 사 과 장	김종진	2025. 10. 13.
(평 택 지 청)		
지 청 장	조민우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강성기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경목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전철호	2025. 8. 27.
사 무 과 장	윤상현	2025. 2. 12.
수 사 과 장	이춘재	2025. 10. 13.
(안 산 지 청)		
지 청 장	이동균	2025. 8. 27.
차 장 검 사	김윤정	2025. 8. 27.
형 사 1 부 장 검 사	임연진	2025. 8. 27.
형 사 2 부 장 검 사	장욱환	2025. 8. 27.
형 사 3 부 장 검 사	김승우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 사 4 부 장 검 사	최수경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서혜선	2025. 8. 27.
사 무 국 장	이택근	2024. 7. 15.
총 무 과 장	(공 석)	
사 건 과 장	전중삼	2025. 10. 13.
집 행 과 장	노진원	2025. 10. 13.
수 사 과 장	이형택	2024. 7. 15.
검 사 직 무 대 리	이경운	2025. 10. 13.
(안 양 지 청)		
지 청 장	하담미	2025. 8. 27.
차 장 검 사	최순호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남수연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정원석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황진아	2025. 8. 27.
사 무 국 장	조순남	2025. 10. 20.
총 무 과 장	김상우	2025. 7. 1.
사 건 과 장	위승환	2025. 10. 13.
집 행 과 장	박찬길	2025. 2. 12.
수 사 과 장	장 욱	2025. 2. 12.
(춘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이응철	2025. 7. 30.
차 장 검 사	유정호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공 석)	
형사제1부장검사	유효제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지영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조형근	2025. 10. 13.
사 건 과 장	윤대석	2025. 2. 12.
수 사 과 장	윤용채	2025. 2. 12.
집 행 과 장	유문식	2025. 2. 12.
(강 릉 지 청)		
지 청 장	노선균	2025. 8. 27.
형 사 부 장 검 사	김한민	2025. 8. 27.
사 무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공 석)	

직 위	성명	발령일
(원 주 지 청)		
지 청 장	윤원기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차경자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오창명	2025. 8. 27.
사 무 과 장	정재웅	2025. 2. 12.
수 사 과 장	(공 석)	
(속 초 지 청)		
지 청 장	소정수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중호	2025. 10. 13.
(영 월 지 청)		
지 청 장	최용보	2025. 8. 27.
사 무 과 장	윤병훈	2024. 7. 15.
(대전고등검찰청)		
검 사 장	(공 석)	
차 장 검 사	민경호	2025. 7. 30.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정연철	2025. 11. 29.
사 건 과 장	(공 석)	
(대전지방검찰청)		
검 사 장	서정민	2025. 7. 30.
차 장 검 사	이유선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정현승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엄재상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지혜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임두환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이주훈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소재환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박순애	2025. 8. 27.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조은수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정혜승	2025. 8. 27.
사 무 국 장	정연익	2024. 7. 15.
총 무 과 장	송성철	2025. 10. 13.
사 건 과 장	주영수	2024. 7. 15.
집 행 과 장	최순례	2025. 2. 12.
조 사 과 장	김태경	2025. 10. 13.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강용묵	2024. 7. 15.
검사직무대리	권정근	2025. 2. 12.
(홍 성 지 청)		
지 청 장	김성원	2025. 8. 27.
형 사 부 장 검 사	김현우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영환	2025. 10. 13.
수 사 과 장	이상희	2025. 2. 12.
(공 주 지 청)		
지 청 장	최수은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두빈	2025. 10. 13.
(논 산 지 청)		
지 청 장	김형걸	2025. 8. 27.
사 무 과 장	송의영	2025. 2. 12.
(서 산 지 청)		
지 청 장	정광수	2025. 8. 27.
형 사 부 장 검 사	김효진	2025. 11. 5.
사 무 과 장	진성창	2025. 10. 13.
수 사 과 장	정용규	2024. 7. 15.
(천 안 지 청)		
지 청 장	김윤선	2025. 8. 27.
차 장 검 사	김태형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황정임	2025. 9. 2.
형사제2부장검사	이경화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신은식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조기호	2025. 10. 13.
사 건 과 장	장성환	2025. 10. 13.
집 행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고재욱	2025. 10. 13.
(청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김향연	2025. 7. 30.
차 장 검 사	이완희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김상균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재남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송준구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이정훈	2025. 12. 11.
사 무 국 장	김용권	2025. 2. 12.
총 무 과 장	이해형	2025. 2. 12.
사 건 과 장	양동현	2025. 2. 12.
집 행 과 장	박관흠	2025. 2. 12.
수 사 과 장	변의복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김갑수	2025. 2. 12.
(충 주 지 청)		
지 청 장	손정숙	2025. 8. 27.
형 사 부 장 검 사	오민재	2025. 8. 27.
사 무 과 장	(공 석)	
(제 천 지 청)		
지 청 장	김석훈	2025. 8. 27.
사 무 과 장	박종현	2025. 2. 12.
(영 동 지 청)		
지 청 장	고아라	2025. 8. 27.
사 무 과 장	장재호	2025. 2. 12.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 장	(공 석)	
차 장 검 사	박규형	2025. 7. 30.
인 권 보 호 관	(공 석)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이은승	2025. 2. 12.
사 건 과 장	류재능	2025.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 장	정지영	2025. 12. 15.
제 1 차 장 검 사	김은미	2025. 8. 27.
제 2 차 장 검 사	이승형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하재무	2025. 9. 2.
인권보호부장검사	최미화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어인성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최근영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윤 경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미수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공공수사부장검사	김준호	2025. 8. 27.
반부패수사부장검사	박향철	2025. 8. 27.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이근정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최수지	2025. 8. 27.
사 무 국 장	장정호	2025. 2. 12.
총 무 과 장	김재영	2025. 2. 12.
사 건 과 장	(공 석)	
집 행 과 장	김진형	2025. 10. 13.
수 사 과 장	김영채	2025. 10. 13.
조 사 과 장	이광호	2025. 10. 13.
공 판 과 장	(공 석)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대 구 서 부 지 청)		
지 청 장	신동원	2025. 8. 27.
차 장 검 사	정명원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상문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정은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이선기	2025. 8. 27.
사 무 국 장	홍석표	2024. 7. 15.
총 무 과 장	김종철	2025. 2. 12.
사 건 과 장	손대익	2025. 2. 12.
집 행 과 장	정광화	2025. 10. 13.
수 사 과 장	배윤엽	2025. 10. 13.
(안 동 지 청)		
지 청 장	구미옥	2025. 9. 2.
사 무 과 장	박순영	2024. 7. 15.
수 사 과 장	김종열	2025. 2. 12.
(경 주 지 청)		
지 청 장	최선경	2025. 8. 27.
형 사 부 장 검 사	박 수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승재	2025. 10. 13.
수 사 과 장	오형석	2025. 2. 12.
(포 항 지 청)		
지 청 장	최나영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이주용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유시동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호종	2025. 2. 12.
집 행 과 장	최석열	2025. 2. 12.
수 사 과 장	정영한	2025. 2. 12.
(김 천 지 청)		
지 청 장	김재혁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이주현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선현숙	2025. 8. 27.
사 무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박용철	2025. 10. 13.
(상 주 지 청)		
지 청 장	윤효선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진섭	2024. 7. 15.
(의 성 지 청)		
지 청 장	권영필	2025. 8. 27.
사 무 과 장	(공 석)	
(영 덕 지 청)		
지 청 장	허윤희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종웅	2025. 2. 12.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 장	이종혁	2025. 7. 30.
차 장 검 사	(공 석)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허철안	2025. 2. 12.
사 건 과 장	이응현	2025. 10. 13.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김남순	2025. 12. 15.
제 1 차 장 검 사	신준호	2025. 8. 27.
제 2 차 장 검 사	백승주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최재준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이세희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남계식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희주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배상윤	2025. 8. 27.

직 위	성명	발령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장송이	2025. 8. 27.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이건표	2025. 8. 27.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이대헌	2025. 8. 27.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서정화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김지윤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강석한	2024. 7. 15.
사 건 과 장	김해곤	2024. 1. 29.
집 행 과 장	김상현	2025. 2. 12.
조 사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이상범	2025. 10. 13.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2025. 10. 13.
마 약 수 사 과 장	박기영	2025. 10. 13.
공 판 과 장	이필재	2024. 7. 15.
검 사 직 무 대 리	이경두	2024. 7. 15.
검 사 직 무 대 리	이재종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부 산 동 부 지 청)		
지 청 장	최행관	2025. 8. 27.
차 장 검 사	김태헌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이승학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이은윤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엄영욱	2025. 8. 27.
사 무 국 장	이은상	2025. 2. 12.
총 무 과 장	김세철	2025. 2. 12.
사 건 과 장	박해진	2025. 10. 13.
집 행 과 장	조희래	2024. 7. 15.
수 사 과 장	김태규	2025. 10. 13.
(부 산 서 부 지 청)		
지 청 장	손찬오	2025. 9. 2.
차 장 검 사	채희만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신기련	2025. 12. 15.
형사제2부장검사	허용준	2025. 12. 15.
형사제3부장검사	김진우	2025. 12. 15.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이동영	2025. 2. 25.
총 무 과 장	김현철	2025. 2. 25.
사 건 과 장	임동섭	2025. 2. 25.
집 행 과 장	장원일	2024. 7. 15.
수 사 과 장	이상만	2024. 7. 15.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유도윤	2025. 7. 30.
차 장 검 사	이승훈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오세문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강호준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천헌주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신미량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최유리	2025. 8. 27.
형사제5부장검사	홍희영	2025. 8. 27.
공판송무부장검사	조미경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이영민	2025. 10. 13.
사 건 과 장	김태경	2025. 10. 13.
집 행 과 장	이정국	2024. 1. 29.
공공수사지원과장	류성욱	2025. 2. 12.
수 사 과 장	박우홍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창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문현철	2025. 7. 30.
차 장 검 사	조석규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박성민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정혁준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김민구	2025. 8. 27.
형사제4부장검사	한지혁	2025. 8. 27.
공판송무부장검사	최하연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안상보	2025. 10. 13.
사 건 과 장	양미정	2025. 2. 12.
집 행 과 장	여문숙	2025. 10. 13.
조 사 과 장	손종운	2025. 10. 13.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공 석)	
검 사 직 무 대 리	이상인	2025. 2. 12.
(마산지청)		
지 청 장	김승걸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방준성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박영상	2025. 12. 15.
사 무 과 장	임홍철	2025. 10. 13.
수 사 과 장	김일수	2025. 10. 13.
(진주지청)		
지 청 장	강정영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성태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이혜현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승환	2024. 7. 15.
집 행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성상영	2025. 10. 13.
(통영지청)		
지 청 장	김형원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김희영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강진욱	2025. 8. 27.
사 무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최희주	2025. 10. 13.
(밀양지청)		
지 청 장	이한울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태균	2025. 10. 13.
(거창지청)		
지 청 장	이세종	2025. 8. 27.
사 무 과 장	박기철	2025. 10. 13.
(광주고등검찰청)		
검 사 장	고경순	2025. 11. 21.
차 장 검 사	(공 석)	
인 권 보 호 관	(공 석)	
사 무 국 장	정영운	2025. 2. 12.
총 무 과 장	최대진	2025. 2. 12.
사 건 과 장	이종석	2025. 10. 13.
(광주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김종우	2025. 12. 15.
차 장 검 사	오종렬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정보영	2025. 8. 27.
인권보호부장검사	김해중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신승희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은경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임풍성	2025. 8. 2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2025. 8. 27.
공공수사부장검사	김호경	2025. 8. 27.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김진용	2025. 8. 27.
공 판 부 장 검 사	정효민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공 석)	
사 건 과 장	임주형	2025. 10. 13.
집 행 과 장	박춘광	2025. 2. 12.
조 사 과 장	배윤오	2025. 10. 13.
수 사 과 장	유경백	2025. 10. 13.
공 판 과 장	심명숙	2025. 10. 13.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목 포 지 청)		
지 청 장	김민아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홍정연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황영섭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수일	2025. 2. 12.
수 사 과 장	홍영균	2025. 10. 13.
(장 흥 지 청)		
지 청 장	이정호	2025. 8. 27.
사 무 과 장	김일섭	2025. 2. 12.
(순 천 지 청)		
지 청 장	용성진	2025. 8. 27.
차 장 검 사	홍승표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이경석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진희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전영우	2025. 8. 27.
사 무 국 장	김철곤	2024. 7. 15.

직 위	성명	발령일
총 무 과 장	윤한평	2024. 7. 15.
사 건 과 장	황선우	2025. 10. 13.
집 행 과 장	허기중	2025. 10. 13.
수 사 과 장	(공 석)	
(해 남 지 청)		
지 청 장	윤석환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영현	2025. 2. 12.
(전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신대경	2025. 7. 30.
차 장 검 사	조만래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조희영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황수연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김금이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조상규	2025. 8. 27.
사 무 국 장	김영헌	2024. 7. 15.
총 무 과 장	김병호	2025. 2. 12.
사 건 과 장	(공 석)	
집 행 과 장	(공 석)	
수 사 과 장	김왕태	2025. 2. 12.
검 사 직 무 대 리	(공 석)	
(군 산 지 청)		
지 청 장	최형원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홍상철	2025. 8. 27.
형사제2부장검사	오진세	2025. 8. 27.
사 무 과 장	고동재	2025. 10. 13.
집 행 과 장	라승용	2025. 10. 13.
수 사 과 장	임채문	2025. 2. 12.
(정 읍 지 청)		
지 청 장	이상훈	2025. 8. 27.
사 무 과 장	이혜영	2025. 10. 13.
(남 원 지 청)		
지 청 장	김동율	2025. 8. 27.
사 무 과 장	조정훈	2025. 10. 13.
(제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정수진	2025. 7. 30.

직 위	성명	발령일
차 장 검 사	박성민	2025. 8. 27.
인 권 보 호 관	김일권	2025. 8. 27.
형사제1부장검사	한상훈	2025. 9. 2.
형사제2부장검사	황선옥	2025. 8. 27.
형사제3부장검사	성두경	2025. 8. 27.
사 무 국 장	(공 석)	
총 무 과 장	(공 석)	
사 건 과 장	(공 석)	
집 행 과 장	김철민	2025. 10. 13.
수 사 과 장	장연근	2025. 10. 13.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공 석)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심선옥	2024. 3. 4.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임재홍	2024. 1. 22.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안종우	2024. 1. 29.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	2025. 3. 31.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윤현봉	2025. 3. 31.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	2024. 1. 22.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고영종	2025. 6. 16.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황남례	2025. 3. 31.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양현규	2024. 3. 4.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신달수	2024. 1. 22.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	2025. 3. 31.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형섭 배종상 강신원	2024. 11. 4. 2024. 7. 22. 2025. 4. 22.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김시종 홍정원 정주호	2025. 2. 17. 2023. 7. 24. 2024. 1. 22.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이승욱	2025. 3. 31.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윤일중	2025. 3. 31.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민덕희	2024. 1. 20.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용호 정희숙 문덕오	2025. 2. 17. 2025. 3. 31. 2025. 3. 3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염정훈 이재화 정영식	2025. 2. 17. 2025. 1. 20. 2024. 1. 22.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동민	2024. 1. 22.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	2025. 3. 31.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김준성	2025. 3. 31.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	2025. 3. 3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유정호	2025. 3. 31.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정성수 이래강 김정렬	2025. 2. 17. 2024. 7. 22. 2024. 7. 22.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박현배	2024. 1. 22.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충섭	2024. 1. 22.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강영욱	2025. 1. 22.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고정대	2024. 11. 1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5. 1. 2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임합격	2025. 6. 1.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최종철	2025. 1. 20.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정경진	2024. 3. 4.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최배근	2024. 7. 22.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김남중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홍재성	2024. 7. 22.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국립법무병원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윤태영	2024. 10. 28.
행정지원과장	강의곤	2023. 2. 16.
교무과장	김인수	2025. 3. 31.
분류보호과장	이지영	2023. 7. 1.
호송과장	김진우	2024. 7. 22.
의무과장	김창범	2024. 4. 1.
부산소년원		
원장	정 윤	2025. 3. 31.
행정지원과장	하수진	2025. 1. 20.
교무과장	김태섭	2025. 3. 31.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2025. 1. 20.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공 석)	
행정지원과장	김은오	2025. 1. 20.
교무과장	석철우	2024. 3. 4.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2025. 3. 31.
의무과장	(공 석)	
광주소년원		
원장	이승원	2025. 1. 20.
행정지원과장	안은욱	2025. 1. 19.
교무과장	한상경	2025. 3. 31.
분류보호과장	김구회	2025. 12. 14.
의무과장	김재휴	2022. 10. 31.
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	2025. 3. 31.
행정지원과장	최승욱	2025. 3. 31.
교무과장	임춘덕	2024. 7. 22.
분류보호과장	장현철	2025. 1. 20.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	2025. 1. 20.
행정지원과장	김진우	2025. 1. 20.
의료재활과장	박우근	2025. 3. 31.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2025. 3. 31.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청주소년원		
원장	강문덕	2025. 3. 31.
행정지원과장	변형섭	2025. 3. 31.
교무과장	장윤정	2024. 1. 22.
의무과장	손병관	2025. 5. 26.
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	2025. 1. 20.
행정지원과장	윤진철	2024. 7. 22.
교무과장	이춘희	2023. 7. 24.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김형식	2025. 3. 31.
행정지원과장	임명숙	2025. 3. 31.
교무과장	이신주	2025. 3. 31.
분류보호과장	노근성	2024. 1. 22.
의무과장	변우식	2024. 12. 2.
제주소년원		
원장	이용재	2025. 3. 31.
행정지원과장	전영선	2025. 1. 20.
교무과장	양호원	2024. 1. 22.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이법호	2025. 2. 17.
행정지원과장	윤한철	2024. 1. 22.
교무과장	정태근	2025. 3. 31.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2024. 7. 22.
호송과장	고기원	2023. 7. 24.
의무과장	박정환	2024. 9. 6.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양곤	2025. 1. 2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용환	2025. 3. 31.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진경	2025. 3. 31.
국립법무병원		
원장	이영렬	2024. 5. 7.
의료부장	황태영	2025. 5. 21.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2025. 2. 17.
감호과장	정명훈	2025. 3. 31.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공석	-
검 사	이 은 주	2025. 8. 27.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박 상 도	2025. 10. 13.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청장	최제영	2024. 1. 1.	소장	박수연	2025. 2. 3.
총무과장	김성호	2025. 2. 24.	부소장	김현철	2025. 2. 24.
보안과장	서 민	2025. 12. 1.	총무과장	유시록	2025. 12. 1.
사회복귀과장	(공 석)		보안과장	김우석	2025. 12. 1.
분류센터장	한희도	2025. 12. 1.	의료과장	노형균	2024. 8. 1.
대구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청장	(공 석)		소장	윤창식	2024. 12. 8.
총무과장	조형근	2025. 2. 24.	부소장	(공 석)	
보안과장	김홍대	2025. 12. 1.	총무과장	정식영	2025. 12. 1.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2025. 12. 1.	보안과장	노순천	2025. 12. 1.
분류센터장	윤영주	2025. 12. 1.	의료과장	전병구	2024. 8. 19.
대전지방교정청			논산지소장	정영승	2025. 12. 1.
청장	오세홍	2025. 2. 3.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정영모	2025. 2. 24.	소장	박삼재	2025. 2. 3.
보안과장	이영성	2025. 2. 24.	부소장	여주원	2025. 12. 1.
사회복귀과장	공 석		총무과장	김승한	2025. 12. 1.
분류센터장	김수희	2025. 12. 1.	보안과장	오병각	2025. 2. 24.
광주지방교정청			의료과장	강기영	2024. 9. 13.
청장	하영훈	2024. 1. 1.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정진우	2025. 12. 1.	소장	김현우	2025. 8. 18.
보안과장	김희곤	2025. 12. 14.	부소장	위종진	2025. 12. 1.
사회복귀과장	최국진	2025. 2. 24.	총무과장	임성훈	2025. 9. 29.
분류센터장	이규성	2025. 12. 1.	보안과장	권익광	2025. 9. 1.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남병길	2024. 3. 11.
소장	김도형	2025. 8. 18.	부산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2024. 7. 15.	소장	남준락	2025. 2. 3.
총무과장	최장훈	2025. 9. 1.	부소장	김용인	2025. 2. 24.
보안과장	이형직	2025. 9. 1.	총무과장	이성보	2025. 2. 24.
의료과장	이병연	2024. 3. 29.	보안과장	김충원	2025. 12. 1.
			의료과장	양용석	2024. 12.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장	한태환	2025. 12. 13.
부소장	이권상	2025. 2. 24.
총무과장	박형규	2025. 2. 24.
보안과장	문준영	2025. 12. 1.
의료과장	조재관	2020. 2. 24.
평택지소장	정상필	2025. 12. 1.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최규철	2025. 2. 3.
부소장	최창호	2025. 2. 24.
총무과장	권혁규	2025. 9. 1.
보안과장	박자웅	2025. 2. 24.
의료과장	강승원	2021. 9. 13.
인천구치소		
소장	김재술	2025. 1. 20.
부소장	백성현	2025. 2. 24.
총무과장	김세정	2025. 12. 1.
보안과장	박천성	2025. 12. 1.
의료과장	김찬성	2022. 1. 24.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박경선	2025. 2. 3.
부소장	최장문	2025. 12. 1.
총무과장	오희순	2025. 2. 24.
보안과장	박지영	2025. 12. 1.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정혜리	2025. 2. 24.
의료과장	정승기	2024.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안영삼	2025. 2. 3.
총무과장	조영우	2025. 12. 1.
의료과장	최선경	2024.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공 석)	
부소장	권영복	2025. 12. 1.
총무과장	김영춘	2025. 12. 1.
보안과장	이후락	2025. 12. 1.
의료과장	한주섭	2024. 5. 20.
시설과장	최해규	2024. 5. 7.
전주교도소		
소장	윤순풍	2025. 2. 3.
총무과장	구민규	2025. 2. 24.
보안과장	박성현	2025. 2. 24.
의료과장	(공 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주교도소		
소장	최종일	2025. 12. 1.
의료과장	곽연우	2024. 3. 11.
부산교도소		
소장	주정민	2024. 1. 29.
총무과장	최근동	2025. 12. 1.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박진열	2025. 2. 3.
총무과장	박평규	2024. 6. 3.
의료과장	주재호	2021. 9. 13
창원교도소		
소장	이민열	2025. 2. 3.
의료과장	(공 석)	
순천교도소		
소장	윤대하	2025. 12. 1.
의료과장	박경철	2025. 11. 7.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정인식	2023. 7. 1.
의료과장	양정원	2024. 4. 9.
포항교도소		
소장	안경수	2025. 12. 1.
의료과장	우재택	2017. 8. 7.
진주교도소		
소장	이현국	2025. 12. 1.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장귀남	2025. 12. 1
의료과장	강 철	2016. 1. 1
대구구치소		
소장	이현주	2025. 2. 24.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조항덕	2025. 12. 1.
의료과장	최영준	2025. 2. 5.
청주교도소		
소장	김용국	2025. 2. 24.
의료과장	박준석	2024. 3.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안교도소		
소장	박대철	2025. 12. 1.
의료과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김태훈	2025. 12. 1.
의료과장	최창학	2019. 1. 1.
춘천교도소		
소장	이성호	2025. 12. 1.
의료과장	민형식	2024. 4. 1.
원주교도소		
소장	조관성	2024. 7. 15.
의료과장	신재전	2024. 12. 23.
안동교도소		
소장	박원규	2025. 12. 1.
의료과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장	임유정	2025. 2. 24.
의료과장		
청주여자교도소		
소장	김봉영	2025. 12. 1.
의료과장	박병철	2018. 3. 13.
김천소년교도소		
소장	이일환	2024. 7. 15.
의료과장	최인환	2008. 1. 24.
공주교도소		
소장	박승률	2025. 12. 1.
의료과장	이준호	2024. 4. 1.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	오선호	2024. 7. 15.
의료과장	(공 석)	
울산구치소		
소장	박은옥	2025. 12. 1.
의료과장	서보균	2020. 3. 9.
정읍교도소		
소장	김만헌	2025. 12. 1.
의료과장	장성용	2024. 6. 3.
거창구치소		
소장	황인균	2025. 12. 1.
의료과장	김득종	2024. 9. 2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주교도소		
소장	허덕환	2024. 7. 15.
의료과장	박재홍	2018. 8. 20.
홍성교도소		
소장	제환국	2024. 1. 22.
의료과장	윤성로	2022. 8. 1.
서산지소장	노해수	2025. 12. 1.
경주교도소		
소장	박병근	2025. 12. 1.
의료과장	조윤철	2022. 1. 10.
통영구치소		
소장	권창모	2025. 2. 24.
의료과장	(공 석)	
밀양구치소		
소장	이병훈	2025. 2 .24.
의료과장	전윤식	2024. 5. 12.
상주교도소		
소장	송재열	2024. 2. 24.
의료과장	박현우	2022. 10. 4.
강릉교도소		
소장	허영열	2025. 12. 1.
의료과장	한명식	2023. 7. 5.
영월교도소		
소장	윤양호	2025. 12. 1.
의료과장	김건도	2015. 6. 23.
장흥교도소		
소장	이성하	2025. 2. 24.
의료과장	김규정	2020. 2. 17.
해남교도소		
소장	김남진	2025. 12. 1.
의료과장	최영기	2017. 4. 10.
충주구치소		
소장	김 승	2024. 7. 15.
의료과장	이석균	2025. 4. 7.
강원북부교도소		
소장	김성열	2025. 1. 20.
의료과장	손승재	2021. 12. 20.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2025. 4. 30.
지원국장	이호원	2024. 7. 15.
심사1국장	김홍규	2025. 1. 6.
심사2국장	공 석	
총무과장	윤병승	2025. 1.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반재열	2024. 9. 14.
총무과장	공 석	
관리과장	배덕환	2024. 10. 21.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용성	2024. 1. 15.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정혜찬	2025. 4. 7.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2025. 4. 30.
관리과장	이상목	2025. 6. 1.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2025. 6.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2025. 12. 8.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2025. 12.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2025. 12. 1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승현	2024. 7. 15.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재형	2025. 1. 6.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류인성	2024. 8. 2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상한	2025. 1. 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영우	2025. 10. 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태완	2024. 1. 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2025. 1. 6.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진수	2024. 1. 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2024. 7. 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길강묵	2025. 1. 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2025. 6. 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복	2025. 1. 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2025. 1. 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2025. 6. 1.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강성록	2024. 1. 8.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서영군	2024. 7. 15.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2023. 8. 17.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공 석	
사무국장	이기흠	2025. 6. 1.
기획총괄과장	공 석	
조사과장	서석주	2025. 11. 28.

제 6 절 | 인사

• 총 괄

(2025년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26,894	5,576	16,038	2,969	2,311
검 사		1,490	0	1,176	139	175
일반직	소 계	12,702	2,788	7,431	1,415	1,068
	본부 (연수원)	394 (69)	113 (6)	240 (58)	27 (1)	14 (4)
	검찰청	4,502	1,068	2,722	343	369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1,270	140	914	80	136
	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5,154	1,209	2,608	860	477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313	252	889	104	68

제 7 절 |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5년 1 ~ 12월)

직 급 \ 기 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87	55	22	110
검 찰 총 장	-	-	-	-
검 사	187	55	22	110

• 일반직

(2025년 1 ~ 12월)

기 관 \ 기 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278	13	12	253
본 부	106	1	-	105
검 찰 청	62	5	7	50
교 정 기 관	23	2	2	19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6	2	1	3
출입국·외국인기관	80	3	2	75
법 무 연 수 원	1	-	-	1

제 8 절 |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5. 1. 1. ~ 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2. 11.	일본	예방법무지원실장	미즈쿠라 요시타카	• 예방사법지원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체제나 업무내용 및 국가송무 조직과의 관계성 논의	법 무 실
2. 19.	일본	외무성 헤이그협약과 부과장	야나기다 무네타가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관련 일 중앙당국의 업무수행 전반 질의 및 ADR 연계제도 설명 등	국 제 법 무 국
2. 24.	일본	주한법무협력관	요시나가 야스오	• 한·일 양국의 국제거래법 분야 주요현안 공유 및 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국 제 법 무 국
2. 26.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난민기구 아태지역본부 보호국장	카렌 와이팅	• 한-UNHCR 교류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11.	러시아	주한러시아 총영사	로만 뷔코프	• 러시아 국적 보호외국인 강제송환 절차 협조 요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8.	국제이주기구 (IOM)	IOM 본부 국경거버넌스·귀환·재입국 국장	다미앙 튀리오	• 한-IOM 교류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10.	일본	주한법무협력관	요시나가 야스오	• 한·일 양국의 법무·검찰 협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 교류 확대 방안 등 논의	국 제 법 무 국
4. 25.	미국	세계정의프로젝트(WJP) 사무총장	알레한드로 폰세	• 대한민국 법무부의 WJP 법치주의 지수 활용 촉진과 향후 협력 가능성 논의	국 제 법 무 국
4. 29.	이집트	이집트 고등법원장	하니 아메드 마허 후세인 가이단	• 형사사법시스템 전자화 및 차세대KICS 소개	기 획 조 정 실
4. 30.	유럽형사사법 협력기구 (EUROJUST)	유럽형사사법 협력기구 (EUROJUST) 회장	미카엘 슈미트	• 유럽 형사사법협력기구 업무협약	검 찰 국
5. 21.	필리핀	필리핀 이민국장	비아도 조엘 엔서니	• 출입국 및 이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11.	인도네시아	하원 입법위원회 부위원장	아마드 돌리 쿠르니아 탄중	•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1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벡 마라토비치	• 불법체류 감축 등 출입국 및 이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8. 29.	아세안	아세안 대사단 (10개국)		• 한-아세안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9. 3.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신디 음쿠쿠	• 난민정책 공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9. 12.	콜롬비아	법무부 차관	제퍼슨 마우리시오 두에냐스	• 국제 사법 협력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9. 16.	유럽연합 (EU)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라스	• 한-EU 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국제 형사 분야 등 관련 상호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9. 2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압둘라예프 올림존	• 불법체류 감축 등 출입국 및 이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17.	몽골, 크로아티아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차히야 엘벡도르지, 이안 시모노비치	• 사형제 관련 논의	인권국
10. 17.	브라질	상사중재원 과장	Soraya Nunes	• 글로벌 펠로우십,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협력 가능성 논의	국제법무국
10. 27.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장	아티타 코민드르	• 법무부-UNCITRAL 간 협력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10. 28.	일본	법무성 참사관	고바야시 하야토	• 한일 ADR 진흥 방안 협의	국제법무국
11. 3.	베트남	부 찐 탕	베트남 내무부 차관	• 불법체류 감축 등 출입국 및 이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3.	라오스	팟다옹 깨오깐냐	라오스 이민국장	• 국경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17. ~ 11. 18.	말레이시아	내무부 교정국 교정처우과 과장	Mr Murali Rajoo	• 환자, 장애인 등 약자 처우 프로그램 벤치마킹	교정본부
11. 18.	일본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전 일본교정국장)	오오하시 사토루	• 교정본부와 우호증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교정본부
12. 1.	캄보디아	속 비에스타	캄보디아 이민청장	• 국경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0.	대만	검찰총장	Hsing Tai Chao	• 양국 법무·검찰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 논의	국제법무국
12. 18.	중국	리 타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관리사 부사장	• 출입국 및 이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5.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19. ~ 1. 25.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제50차 회의	사무관 심인혜	국제법무국
2. 3. ~ 2. 7.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국제법무정책과장 외 1명	국제법무국
2. 11. ~ 2. 16.	스페인	•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난민정책과 김정욱 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16. ~ 2. 23.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전성환	검찰국
2. 17. ~ 2. 19.	일본	•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ADBI) ADR 컨퍼런스	사무관 박진아 외 1명	국제법무국
2. 19. ~ 2. 20.	일본	• 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실무자급 회의	검사 황익진	검찰국
2. 24. ~ 2. 27.	태국	• 2025 교정 기술 컨퍼런스(CTC) 참가	서기관 박은옥 등 7명	교정본부
3. 10. ~ 3. 15.	프랑스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1분기 정례회의	검사 전성환	검찰국
3. 16. ~ 3. 19.	키르기즈 공화국	•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법률지원(ISDS 등 분쟁예방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검사 이성직 외 5명	국제법무국
3. 16. ~ 3. 23.	미국	• 제46차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유통가능한 화물증권) 회의 참석	검사 박광호	법무실
3. 17. ~ 3. 21.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제46차회의	사무관 박진아 외 1명	국제법무국
3. 24. ~ 3. 28.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제68차회의	법무관 양동준	국제법무국
4. 2. ~ 4. 10.	독일	• 독일 국제소송 및 현지 진출 중견·중소 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5명	국제법무국
4. 6. ~ 4. 12.	영국, 프랑스	• 제49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검사 김봉진 외 1명	법무실
4. 6. ~ 4. 13.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제51차 회의	검사 박제연 외 3명	국제법무국
4. 14. ~ 4. 19.	중국	• 대한민국-중국 FTA 후속협상 제11차 공식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4. 27. ~ 5. 3.	스위스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장 노일석 외 2명	인 권 국
5. 5. ~ 5. 11.	영국	• 제24회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례총회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5. 11. ~ 5. 18.	미국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 제5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 제66차 회의 참석	사무관 김효선	법 무 실
5. 12. ~ 5. 15.	말레이시아	• ANDEX 제8차 연례회의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등 3명	출 입 국 · 외 국 인 정 책 본 부
5. 12. ~ 5. 16.	프랑스	• 제87회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정례회의(PC-OC)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5. 18. ~ 5. 26.	오스트리아	• 제3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국제형사과장 검사 최선희	검 찰 국
5. 20. ~ 5. 25.	프랑스	• OECD 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외국인정책과 황민하 사무관 등 2명	출 입 국 · 외 국 인 정 책 본 부
6. 9. ~ 6. 14.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6. 15. ~ 6. 21.	오스트리아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제16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및 제16차 부패예방 작업반 회의	검사 최선희	검 찰 국
6. 15. ~ 6. 21.	프랑스	• 2025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검사 박제연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6. 22. ~ 6. 28.	프랑스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2분기 정례회의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6. 23. ~ 6. 27.	일본	• 제3회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포럼(Crim-AP) 참가	교정관 정진영 등 2명	교 정 본 부
6. 23. ~ 6. 28.	말레이시아	• ASEAN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체(SOMTC) 회의	국제형사과장	검 찰 국
6. 23. ~ 6. 28.	일본	• 제3회 아·태 형사사법포럼(Crim-AP) 및 SEAJust 본회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7. 2. ~ 7. 5.	인도	• 인도 첸나이 진출기업 법률지원	검사 박제연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7. 13. ~ 7. 17.	태국, 캄보디아	• 태국·캄보디아 범죄인인도 현안사건 논의를 위한 태국 및 캄보디아 기관 면담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7. 20. ~ 7. 23.*	홍콩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 인력양성 등 *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2명(7.20.~8. 1.)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3명	국 제 법 무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8. 13. ~ 8. 15.	브루나이	• 제4차 APT(ASEAN+한·일·중) 이민청장·영사국장 회의(DGICM+3)	장희정 국적과장 등 3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18. ~ 8. 21.	베트남	• UNODC 주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8. 24. ~ 8. 28.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제중재 및 ISDS 예방	국제법무국장 외 2명	국제법무국
9. 8. ~ 9. 13.	말레이시아	• 제19회 아세안 초국가범죄 관련 장관급 회의(AMMTC)	법무부차관 국제형사과장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9. 15. ~ 9. 19.	태국	• 제7회 유엔 책임 기업과 인권 포럼	사무관 장현주 외 1명	인 권 국
9. 17. ~ 9. 20.	베트남	• 법무협력 강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 인력 양성 등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2명	국제법무국
9. 20. ~ 9. 27.	싱가포르	• 제7회 APLC 참가	서기관 김세정 등 14명	교정본부
9. 21. ~ 9. 27.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제52차 회의	검사 김준성 외 5명	국제법무국
9. 22. ~ 9. 24.	인도네시아	• ADB-OECD 아태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10. 4. ~ 10. 13.	스위스	• 제76차 UNHCR 집행이사회(EXCOM)	난민정책과 신은성 주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7. ~ 10. 13.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44차 정기총회	김석우 정부위원 외 2명	법 무 실
10. 15. ~ 10. 22.	캄보디아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납치·감금 사태 대응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10. 19. ~ 10. 24.	프랑스	• OECD 이주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외국인정책과 김은호 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20. ~ 10. 25.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10. 26. ~ 10. 31.	터키	• 2025 ICPA 연례회의	서기관 조영혁 등 5명	교정본부
10. 28. ~ 11. 2.	프랑스	• 제50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등	검사 박혜진	법 무 실
11. 2. ~ 11. 9.	미국	• 신기업환경평가(B-Ready) 대응 관련 미국 워싱턴 D.C 에서 세미나 참석	검사 박광호외 2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3. ~ 11. 5.	프랑스	•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국제법무정책과장 외 2명	국제법무국
11. 3. ~ 11. 7.	프랑스	• 제88회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정례회의(PC-OC)	검사 황익진	검찰국
11. 3. ~ 11. 8.	캐나다	• 제20차 ICAO TRIP 심포지엄	조홍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11. ~ 11. 15.	일본	• APEC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및 ODR(온라인 분쟁 해결) 활용 증진을 위한 워크샵 참석	서기관 전혜영	법무실
11. 12. ~ 11. 14.	프랑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 제4차 총회	사무관 박진아	국제법무국
11. 12. ~ 11. 14.	일본	• APEC ODR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법무관 임진우 외 1명	국제법무국
11. 23. ~ 11. 30.	스위스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유엔 소수자 문제 포럼	사무관 전현신 외 2명	인권국
11. 26. ~ 11. 28.	일본	• 일본 국제중재주간	사무관 박진아 외 1명	국제법무국
11. 26. ~ 11. 28.	홍콩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담보거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제8차 회의	국제법무정책과장 외 1명	국제법무국
11. 30. ~ 12. 6.	프랑스	• 2025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2명	국제법무국
12. 1. ~ 12. 6.	일본	•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국제훈련	서기관 한경태 외 2명	법무실
12. 7. ~ 12. 13.	오스트리아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 제5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 제67차 회의 참석	사무관 김효선	법무실
12. 7. ~ 12. 13.	프랑스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4분기 정례회의	검사 황익진 검사 김민수	검찰국
12. 9. ~ 12. 13.	캄보디아	• UNODC 주최 제2회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검사 전성환	검찰국
12. 9. ~ 12. 13.	영국	• 한-영 FTA 회기간 개선협상 참석 등	검사 김준성 외 1명	국제법무국
12. 9. ~ 12. 12.	일본	• 제5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장희정 국적과장 등 5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4. ~ 12. 20.	카타르	• 제11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	검사 최선희	검찰국

제9절 |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5. 1. 1.~12. 31.)

상훈 \ 직급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77	-	85	19	28	88	344	663	738	282	30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2	-	2	-	-	-	-	-	-	-	-
홍조근정훈장	38	-	7	9	22	-	-	-	-	-	-
녹조근정훈장	249	-	-	-	-	49	200	-	-	-	-
옥조근정훈장	239	-	-	-	-	-	-	228	11	-	-
근 정 포 장	164	-	5	9	4	20	57	56	13	-	-
대통령표창	53	-	3	1	0	13	25	8	3	-	-
국무총리표창	34	-	6	-	1	1	12	6	8	-	-
모범공무원	195	-	-	-	-	-	-	179	16	-	-
법무부장관표창	1,303	-	62	-	1	5	50	186	687	282	30
유관기관표창	-	-	-	-	-	-	-	-	-	-	-

• 기 관

(2025. 1. 1.~12. 31.)

상훈 \ 기관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71	1	19	20	7	12	12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5. 1. 1. ~ 12. 31.)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신응석	2025.04.25.	법의 날 기념유공
	대검찰청	검사	이진동	2025.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승영	2025.04.25.	법의 날 기념유공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서정민	2025.04.25.	법의 날 기념유공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오세홍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의정부교도소	부이사관	박진열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김윤섭	2025.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정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태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진룡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안병훈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부이사관	김재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성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부이사관	최이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김태광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철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검찰부이사관	주도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승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이사관	박찬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부이사관	이천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신은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의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성주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안호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권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정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창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중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기랑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상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부이사관	홍지항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부이사관	이승열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홍흥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찰부이사관	박준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길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조병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수종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배정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녹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기관	권을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조재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보호사무관	신정모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권용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지방교정청	교정관	류양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서기관	손성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전성엽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보호사무관	곽재홍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서기관	최웅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보호사무관	송종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강덕원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권형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함유복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김석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서기관	손용대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김흥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서기관	박진홍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오민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신필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이종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양희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우남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서성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이진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최미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서기관	이효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박창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최연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서기관	김철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박정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정관	한명훈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서기관	남창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관	박동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김성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거창구치소	교정관	우태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최명락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허순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허원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엄기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이동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김장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김정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박구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정진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서기관	최세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곽정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이성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공업사무관	조현풍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간호사무관	임미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간호사무관	최현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나진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왕현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김경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교도소	교정관	오춘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이종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임홍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김선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진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임천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김용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서기관	오우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이용행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용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신준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고동원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안철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윤성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덕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상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광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임경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김기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김재욱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박대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이외경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윤병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이문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김경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조재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함창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임태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홍종권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선득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정천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천성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동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임국빈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윤해숙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박만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김충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지병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정관	서경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배용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우윤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안숙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권오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무관	고미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인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이미숙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홍석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장영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석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전광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진현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김귀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근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전정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최권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종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선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찰사무관	김형빈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찰사무관	박대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수사서기관	한상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사무관	김종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류종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두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김석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사무관	정대웅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사무관	김용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사무관	조상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채진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병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봉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주철중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안태성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길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사무관	박민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흥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영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오상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서기관	신원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소년원	서기관	김대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서기관	손은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차영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상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병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사무관	박상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기관	양병곤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보호사무관	이용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사무관	정진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보호사무관	김규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사무관	채종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사무관	전형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임종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권오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김영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송수면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정관	최옥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교도소	교정관	김원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강대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이용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홍성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창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배치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이교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정관	송관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이진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장후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주상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진도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남한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서선교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이재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정환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김동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은영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홍문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김태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오수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배상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하상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김진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이광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강정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정관	박영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양선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행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신현두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이현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강영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보건사무관	양은옥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보호사무관	정정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보호사무관	편영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이재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정관	조무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김옥건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광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성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장지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최일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전영광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배정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인치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장용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기관	김태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안동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과학기술서기관	김희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신안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효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조재용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황세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경길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안성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정해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수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곽재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강영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태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서상국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기용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신상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서재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진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구주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진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성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신영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원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복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영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강정봉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장정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병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찬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사무관	권기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찰사무관	이상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병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사무관	이용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찰사무관	박광열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방송통신사무관	양동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송문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백충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최형승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신광섭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임현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윤희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오형묵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박정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백승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이상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사무관	조용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황성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이병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안경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이강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보호관찰소	서기관	박종균	2025.12.31.	우수공무원 포상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수희	2025.12.31.	우수공무원 포상
옥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기계운영주사	김동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소년원	열관리운영주사보	현병협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운전주사보	김종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권을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박길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서길원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최병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김태성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양연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강경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관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감	연명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교감	이범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강순병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배동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공업주사	전진섭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김태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용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선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송윤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신원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허순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감	김동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문성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박대송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윤귀홍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이화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장창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교도소	교감	홍성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안기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김행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전병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요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박성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염성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오병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유광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이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이성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이을교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신재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박영섭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하태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송종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이한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이왕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김진홍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문동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신종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김충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김양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오희경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인준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이점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김준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송원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최종묵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신상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이기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우남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제주교도소	운전주사	김양권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신현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우희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박홍국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박병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이기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이정택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강호정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찬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송태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전경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김현숙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진승권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손정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김영란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윤종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윤현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권혁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김병옥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허순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서근범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김재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임정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행정주사보	정미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감	최성용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감	김철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강병훈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기상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신기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형준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선경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정연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박영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최찬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이수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이병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	김지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주사	고은설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방호주사	임태규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방호주사보	김효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병준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최성철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영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여정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권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주진우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신민경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갑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규호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운전주사	이병수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	이지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주사	고창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안준열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김병진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찰주사	황승민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형달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유금자	2025.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	운전주사보	윤길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보호주사	이상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간호주사	이윤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민권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조원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서국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황성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영월교도소	교감	변영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백두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강병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김건효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김창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정유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태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장판협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정연종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최호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위	권정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이경화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위	최광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유제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위	정성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석호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사무운영주사	배명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이창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한철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항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박문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유권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이기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이대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하봉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김형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최성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박선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김명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염종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윤여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백인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목포교도소	교감	김기용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설경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익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정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김정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운전주사보	김선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박수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심익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이준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신현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운전주사	손윤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왕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홍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류정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이덕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황병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황수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진강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김종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김호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송영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사무운영주사	곽선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송병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박의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우시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임성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공업주사	송영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김용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김희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김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박광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조정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인천구치소	교감	허순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감	장건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보호관찰소	운전주사	이봉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소년원	보호주사	이춘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감	최세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박광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장인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정종훈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최영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화섭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손호익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진동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운전주사	이현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김창욱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선석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송형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안연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이상봉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감	김규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오정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	황교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황철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방송통신주사	임기정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거창구치소	교감	김승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운전주사	설진석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명영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송동익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전은용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강청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양회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	김태은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운전주사	정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성헌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상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충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강향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신향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양옥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위명숙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강영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운영주사	전옥주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마미경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이명선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윤국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방호주사	원유연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문경종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원동진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이관수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무운영주사	김명순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	손일호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무운영주사	이승희	2025.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 외부인사 및 단체

(2025. 1. 1. ~ 12. 31.)

훈 격	소 속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원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형남순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숙정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사)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장병천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군산지역협의회	김근섭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안윤근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청주교도소	김영인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홍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전요안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	진명덕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천안지역협의회	임장혁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민포장	안양교도소	김래동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대구교도소	황숙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울산구치소	이재식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태자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행복만들기상담소	최근화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문대식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마리안나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대한치과의사협회	변영남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	전영도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서부지역협의회	김유곤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박남규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김장선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	장영석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정종태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춘천소년원협의회	최규환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채현주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한국나눔연맹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서울구치소	최숙희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청주여자교도소	박대용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순천교도소	박주영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훈 격	소 속	성명	수여일	비 고
대통령표창	경북북부제3교도소	구기현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사)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금선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대전스마일센터	장은진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김용준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원	2025.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이주민센터	한용길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정벤자마트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박정선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고수지승희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벗들의 집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김제시가족센터		2025.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	이희탁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송영식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이동하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성용경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서부지역협의회	김명환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최민휴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	이충복	2025.07.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봉영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경상국립대학교	강석진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계성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신동혁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임관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2025.11.19.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원주교도소	김종태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상주교도소	김학술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원구치소	이호용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천안교도소	신형수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목포교도소	김광길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구구치소	김종호	2025.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한라병원	문이상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기순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여주이천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병두	2025.11.24.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제 10 절 |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5. 12. 31. 현재)

소 관 별	계	총리 소속	기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 관실	인권국	국제 법무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77	1	25	9	13	3	1	6	2	5	8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136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장관 위촉	12~19명	정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법무부 직장방위 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안전 기획관실	
3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544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2명	기획재정 담당관실	
4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18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519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7명		
5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6~11명	혁신행정 담당관실	
6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	법무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8	법무부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혁신행정담당관	9명		
9	법무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0	법무부 보수성과 심의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특별승급·연봉특례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1	법무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차관	5명 이상		
12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0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17명		
13	법무부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2호)	법무부 공무원제안 재심사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9명		
14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296호)	규제신설(강화)되는 경우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차관, 이명로(민간위원)	8~15명	행복민원센터	
15	법무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법무부 훈령 제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심의	정현미(민간위원)	12명		
16	법무부 청원심의회	청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503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기획관	5명		
17	법무부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269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심의	기획조정실장	11명		
18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민간위원)	24명	정책성과관리팀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9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5명		
20	법무시설건축협의회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운영 지침	법무시설조성 설계공모 심사 및 설계 심의 등	법무부 차관	7명	시설담당관실	
21	법무정보화 추진 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법무부 훈령 제1586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3명 이상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22	법무정보화 자문 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법무부 훈령 제1586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신용태 (교수)	8인 이하		
23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6조 (법무부 훈령 제1539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24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규칙(법무부 훈령 제1390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 차관, 문유경	16명		
2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 (법무부 훈령 제1484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	이성환 (교수)	10~15명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26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 : 가족법특별위, 젠더폭력처벌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장관이 임명	25명 이하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7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이하		
28	민법개정위원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법무부 훈령 제1476호)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	양창수 (前 대법관)	27명		
29	법무부변호사징계 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의	법무부 장관	9명	법무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0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7명		
31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결정	법무부 차관	7명	국가소송과	
3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법무부 훈령 제1258호)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 자문	이중기 (교수)	7명	상사법무과	
33	상법 특별위원회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법무부 훈령 제816호)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수행	외부 위원 중 위촉	35명 이하		
3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법조인력과	
35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8명	검찰과	검찰국
36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37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38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39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 국장	4명	형사기획과	
40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41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법무부 훈령 제1514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2명		
42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 국장	6명	공공형사과	
43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44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 국장	10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부령 제1004호)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 국장	4명		
46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법무부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 국장	4명	국제 형사과	
47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부 훈령 제1594호)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	오영근 (교수)	26명	형사 법제과	
48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 검사	각 9명	보호 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9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보호 정책과	
50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8명	치료 처우과	
51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이우영 (교수)	9명	감찰 관실	감찰관실
52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법무부 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 국장 (주재)	28명	인권 정책과	인권국
5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7명	인권 구조과	
54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55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7명		
56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9명	여성 아동	

연번	위원회명	근 거	설치목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57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강동욱 교수	10명	인권과	
58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 장관	구성중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국
59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사항 등 심의	이재협 (교수)	11명	국제법무정책과	
60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 등	법무부 차관	9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61	교화방송자문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 (법무부 예규 1317호)	교화방송 전문성 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황제연 (방송인)	12명	사회복귀과	
62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부 훈령 1479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자문	임대기 (경제인)	16명	교정기획과	
63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8조 (법무부 예규 제1366호)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조성남 (의사)	15명	심리치료과	
64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 훈령 제1087호)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	교정본부장	8명	복지과	
65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제1조 (법무부 훈령 제1553호)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6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 (법무부 훈령 제1549호)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김동욱 (교수)	20명	외국인정책과	
67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9명		
68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법무부 차관	30명	국적과	
69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0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 지침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정책자문 및 외국인의 고충사항 심의·의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3명		
71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난민심의과	
72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법무부 훈령 제1578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7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비공개(외부)	9명	이민조사과	
74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법무부 훈령 제1348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9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5	법무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산자부 고시 제2025-147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운영지원과장	4명		
76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4조 (법무부 예규 제1373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7명		
77	법무부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법무부 훈령 제1540호)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5명		

제 11 절 |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5.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72개 기관(본부 1, 소속 271)	34,367
법무부	2실 4국 2본부	771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2	10,657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 1	134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42
외국인보호위원회	외국인보호위원회 1	32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40, 위치추적관제센터 2	2,030
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61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67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교도소 39, 구치소 12, 지소 3	16,625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2,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1	2,63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5.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334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2, 지소 74, 법문화교육센터 1,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	8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20, 지소 6, 교육원 1	388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3

2025

법무연감

법무연감

Justice 1st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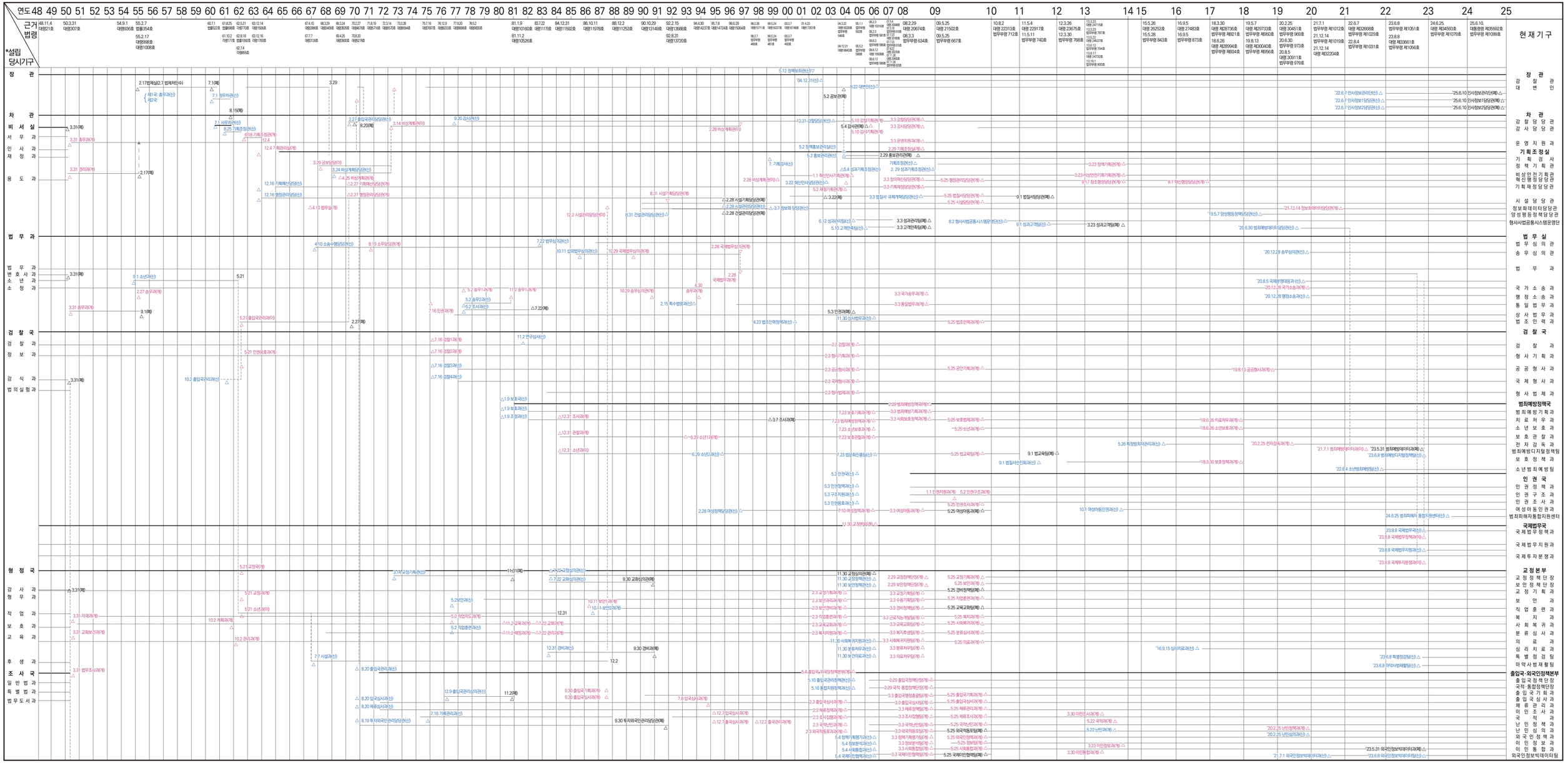

범례: △ 靑(신설) △ 赤(개편, 이관) △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5.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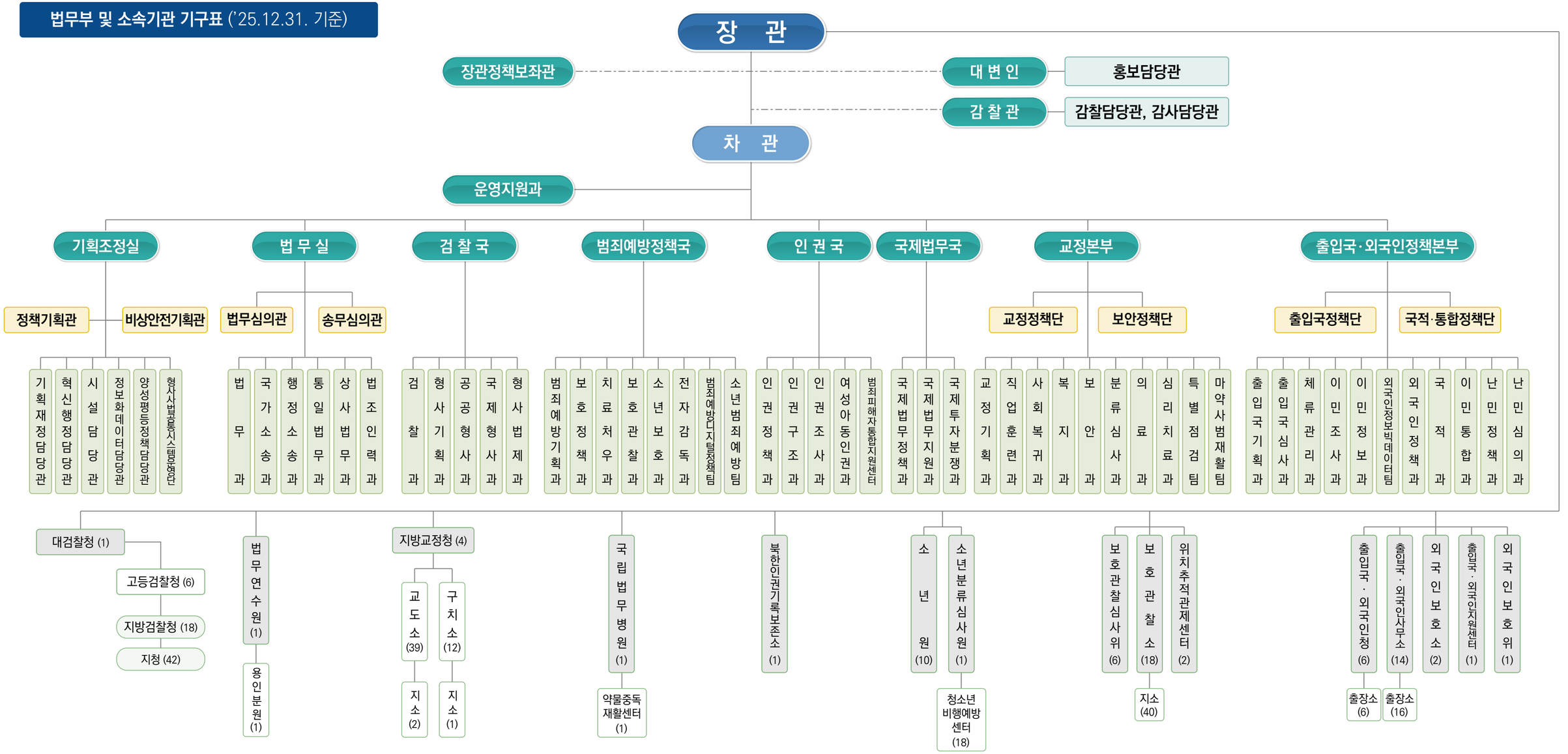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장

기 획 조 정 실	기획조정실장	차 범 준

편 집 위 원

기 획 조 정 실	기획재정담당관	강 의 곤
법 무 실	법 무 과 장	이 윤 구
검 찰 국	검 찰 과 장	김 수 홍
감 찰 관 실	검 사	이 소 연
범 죄 예 방 정 책 국	범죄예방기획과장	오 상 섭
인 권 국	인권정책과장	노 일 석
국 제 법 무 국	국제법무정책과장	최 성 겸
교 정 본 부	교정기획과장	서 호 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	이 종 철
대 변 인 실	홍 보 담 당 관	한 정 진
운 영 지 원 과	운영지원과장	조 상 민
법 무 연 수 원	기 획 과 장	이 주 용

편 집 실 무 위 원

기 획 조 정 실	사 무 관	홍 찬 주
법 무 실	사 무 관	이 동 희
검 찰 국	사 무 관	정 근 용
감 찰 관 실	사 무 관	김 병 태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사 무 관	배 성 준
인 권 국	서 기 관	차 유 진
국 제 법 무 국	사 무 관	박 노 화
교 정 본 부	교 정 관	김 상 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 무 관	홍 인 표
대 변 인 실	서 기 관	이 상 우
운 영 지 원 과	사 무 관	지 상 균
법 무 연 수 원	사 무 관	박 창 현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6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케이에스센세이션
TEL : (02) 761-0031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100062-10

2025
법무연감

법무부